



2026. 10.

국회예산정책처 | 예산안 분석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예산안분석시리즈 IV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총 괄 | 임명현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서재만 예산분석총괄과장
이상은 산업예산분석과장
권순영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중구 행정예산분석과장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임길환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유주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 정금연 예산분석관
서창희 예산분석관

지 원 | 정진아 행정실무관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 의 :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 02) 6788-3770 | i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V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6. 10. 26.)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지난 9월 3일 총수입 880.8조원, 총지출 820.9조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성장 성과의 확산에 중점을 두고, 총지출 증가율을 '26년 8.1%에서 '27년 12.8%로 대폭 상향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를 통해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본예산 대비 194.2조원(49.8%) 증가한 584.4조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은 158.5조원 규모의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4조원을 투자하는 등 재정운용 방식에 큰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세수 전망의 불확실성과 신설 기금의 운용 방식 및 국회 통제 장치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심의하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7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량 분석」,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 「총괄 분석」 3권, 「위원회별 분석」 12권, 「결산 연계 2027년도 예산안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등 총 20권으로 구성되며, 특히 미래대응기금 등 재정제도 개편 및 3대 메가프로젝트·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총괄 분석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보다 심도 깊게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I. 예산안 개요 / 3

1. 현 황	3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0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2

II. 주요 사업 분석 / 1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 예비농업인 역량 강화 사업의 정확한 교육 수요를 반영한 예산 편성 필요 ...	17
2. 인공지능 기반 첨단기술개발 사업의 예산안 조정 검토 필요	23
3. 지자체 토지취득비용 보조금의 지분취득비 편성 검토 필요	30
4.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사업: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한 예산안 재검토 필요	34
5. 양수장 시설개선 사업: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한 일정 지연 방지 필요	39
6. 공동영농확산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 다양화 검토 필요	43

〈미래대응기금〉

- 7.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 확대 신중한 검토 필요 등 51
- 8. 스마트팜필먼트센터 구축 사업: 기존에 지원 중인 산지 APC와의 역할
분담 및 SPC의 공적 책임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58
- 9. 농업 피지컬AX 실증 프로젝트 사업의 계획 보완 필요 등 67

〈공익신고장려기금〉

- 10. 농지불법 신고포상금 사업의 합리적인 신고건수 추계와 계획안 조정 필요 73

〈농업발전기금〉

- 11. 농업발전기금 신설 분석: 실효성 있는 기금 재정 건전화 대책 마련
필요 등 80
- 12.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 법적 근거 없는 출연금 편성 주의
필요 등 92
- 13. 처분농지 매입 사업의 매입 단가 산정 기준 재검토 필요 103
- 14. 채소수급조정충당금: 재정 내에서 사업 운영 방안 마련 필요 111
- 15. 농축산물 알뜰 소비 앱 활성화 사업의 중소기업체 참여 인센티브 보완
필요 11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직불기금〉

- 16. 동물복지축산직불 시범사업: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
의향과 시장가격과의 격차 해소 방안 검토 필요 122

[해양수산부]

I. 예산안 개요 / 133

- 1. 현 황 133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138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140

II. 주요 사업 분석 / 145

〈일반회계〉

- 1. 선박연료 정량공급 운영지원: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정비 및 집행 여건을 고려한 예산안 규모 조정 필요 14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2.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집행부진 원인 분석을 통한 실집행 가능 규모의 예산 편성 필요 152
- 3. 김산업 육성: 사업성 및 시스템 사전 검증을 통한 사업의 단계적 추진 필요 161

〈교통시설특별회계〉

- 4. 북극항로 활성화 지원: 경제성 검증 기반의 단계적 사업 확대 및 내역 사업 간 유사·중복 방지 방안 마련 필요 167
- 5.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 관련 법령 시행 및 실증 수요를 고려한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 174



CONTENTS

- 6. 스마트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부처 내 유사·중복 사업 재설계 및 추진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 정비 필요 180
- 7. 근해어선 현대화 지원: 사업수요의 정밀한 추계 및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188

〈수산발전기금〉

- 8. 연근해어업 발전지원(용자): 예산 추계의 정밀성 제고 및 실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안 편성 필요 195
- 9. 가공시설 및 운영(용자): 합리적인 사업수요 추계 및 실수요 반영 예산 편성 필요 201
- 10. 수산모태펀드출자: 민간투자 유인체계의 실효성 제고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 필요 206
- 11. 활어유통 결제대금지원(용자): 내역사업 간 유사·중복 방지 및 예산안 산출의 정밀성 제고 필요 213

〈자원안보기금〉

- 12. 연안여객선 유류비 보조: 재정사업 전환에 따른 정책 성과 검증 및 법적 근거 마련 필요 218

[농촌진흥청]

I. 예산안 개요 / 227

- 1. 현 황 227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29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31

II. 주요 사업 분석 / 234

〈일반회계〉

- 1. 국제협력사업의 재정 부담구조 구체화 필요 등 23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2. 식량자금률향상모델기반조성 사업의 회계 이관과 보조사업 연장평가 취지
미반영 문제 239
- 3.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사업의 연례적인 집행 부진 해소 필요 246

[산림청]

I. 예산안 개요 / 253

- 1. 현 황 253
-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57
-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58

II. 주요 사업 분석 / 261

〈일반회계〉

1. 산림기술 신고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예산 규모 조정 필요 261
2. 로컬 산림자원 연계 신미식 소재 산업 육성: 사업화 검증을 통한 단계적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체계 정비 필요 26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체계의 타당성 검토 필요 271

〈공통〉

4. 일반회계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의 사업 이관에 대한 신중 검토
필요 278

[해양경찰청]

I. 예산안 개요 / 289

1. 현 황 289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290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291

II. 주요 사업 분석 / 293

〈일반회계〉

1. 드론 도입 사업의 통합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운영 방안 마련 필요 293
2. VTS 구축·운영: VTS 전용회선료 통합 관리·계약을 통한 재정효율성 제고
필요 298
3. 단정 크레인 교체공사: 철저한 사전 검토 및 집행 관리 체계 개선 필요 304



농림축산식품부

1

현황

가. 총수입·총지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5개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5개 기금(농업발전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으로 구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21조 9,857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2조 2,079억원(11.2%)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113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6조 2,586억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4,3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47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 7,039억원, 농업발전기금 3조 9,018억원, 양곡증권정리기금 25억원, 축산발전기금 8,547억원,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782억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601억원이다.

[2027년도 예산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10,171,471	9,497,673	14,620,004	16,988,448	2,368,444	16.2
- 일반회계	15,234	22,318	22,318	11,259	△11,059	△49.6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382,974	8,732,634	13,854,965	16,258,604	2,403,639	17.3
-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3,320	43,047	43,047	-	△43,047	순감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49	45	45	43	△2	△4.4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7,039	11,024	11,024	14,683	3,659	33.2
- 양곡관리특별회계	742,855	688,605	688,605	703,859	15,254	2.2
기 금	4,258,899	5,157,795	5,157,795	4,997,256	△160,539	△3.1
- 농업발전기금	-	-	-	3,901,755	3,901,755	순증
- 농지관리기금	1,080,725	1,426,472	1,426,472	-	△1,426,472	순감
- 양곡증권정리기금	2,442	2,052	2,052	2,465	413	20.1
- 축산발전기금	641,016	726,879	726,879	854,733	127,854	17.6
- 자유무역협정이행 지원기금	226,399	336,124	336,124	-	△336,124	순감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	84,670	55,849	55,849	78,172	22,323	40.0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203,361	2,451,761	2,451,761	-	△2,451,761	순감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20,286	158,658	158,658	160,131	1,473	0.9
합 계	14,430,370	14,655,468	19,777,799	21,985,704	2,207,905	11.2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9월 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21조 294억원으로 전년 추경 예산 대비 3억원(△0.0%) 감소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5,450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조 7,034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조 7,121억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67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 5,546억원, 농업발전기금 6조 2,851억원, 축산발전기금 1조 380억원,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불기금 3조 1,239억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506억원이다.

[2027년도 예산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11,577,511	10,728,029	10,881,807	10,531,835	△349,972	△3.2
- 일반회계	915,479	760,267	760,267	544,998	△215,269	△28.3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372,133	5,407,147	5,490,295	5,703,441	213,146	3.9
-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	16,495	16,837	16,837	-	△16,837	순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467,113	1,916,153	1,986,783	1,712,111	△274,672	△13.8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5,697	15,897	15,897	16,675	778	4.9
- 양곡관리특별회계	2,790,594	2,611,728	2,611,728	2,554,610	△57,118	△2.2
기 금	8,294,631	9,408,151	10,147,904	10,497,580	349,676	3.4
- 농업발전기금	-	-	-	6,285,132	6,285,132	순증
- 농지관리기금	1,856,139	2,661,181	2,719,952	-	△2,719,952	순감
- 축산발전기금	896,995	862,685	1,154,516	1,037,959	△116,557	△10.1
- 자유무역협정이행 지원기금	244,256	289,427	289,427	-	△289,427	순감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	2,784,894	3,012,690	3,012,690	3,123,860	111,170	3.7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287,742	2,531,555	2,920,706	-	△2,920,706	순감
- 농어업재해보험기금	224,605	50,613	50,613	50,629	16	0.0
합 계	19,872,142	20,136,180	21,029,711	21,029,415	△296	△0.0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9월 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2)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 금액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된 예산 1조 1,921억원이 제외된 금액임

1. 총계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세입·세출예산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4개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4개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로 구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안은 34조 8,909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5조 8,027억원(19.9%)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13억원, 농어

촌구조개선특별회계 32조 3,103억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4,3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47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 5,546억원이다.

[2027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5,234	22,318	22,318	11,259	△11,059	△49.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7,542,061	16,273,861	26,400,051	32,310,291	5,910,240	22.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320	43,047	43,047	-	△43,047	순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49	45	45	43	△2	△4.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7,039	11,024	11,024	14,683	3,659	33.2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60	-	-	-	-	-
양곡관리특별회계	3,139,719	2,611,728	2,611,728	2,554,610	△57,118	△2.2
합 계	20,727,582	18,962,023	29,088,213	34,890,886	5,802,673	19.9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9월 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안은 39조 7,998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조 9,238억원(10.9%)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조 5,352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8조 9,813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조 7,121억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67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 5,546억원이다.

[2027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7,779,261	6,524,998	6,524,998	6,535,159	10,161	0.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4,032,129	14,651,368	24,719,770	28,981,276	4,261,506	17.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6,495	16,837	16,837	-	△16,837	순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467,113	1,916,153	1,986,783	1,712,111	△274,672	△13.8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5,697	15,897	15,897	16,675	778	4.9
양곡관리특별회계	2,790,594	2,611,728	2,611,728	2,554,610	△57,118	△2.2
합 계	26,101,289	25,736,981	35,876,013	39,799,831	3,923,818	10.9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9월 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다. 기금운용계획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공익직불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업발전기금으로 구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0조 4,976억원으로 전년 수정 계획안 대비 3,497억원(3.4%) 증가하였다. 기금별로는 농업발전기금 6조 2,851억원, 축산발전기금 1조 380억원,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3조 1,239억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506억원이다.

[2027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농업발전기금	-	-	-	6,285,132	6,285,132	순증
농지관리기금	1,856,139	2,661,181	2,719,952	-	△2,719,952	순감
축산발전기금	896,995	862,685	1,154,516	1,037,959	△116,557	△10.1
자유무역협정이행 지원기금	244,256	289,427	289,427	-	△289,427	순감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 직접지불기금	2,784,894	3,012,690	3,012,690	3,123,860	111,170	3.7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287,742	2,531,555	2,920,706	-	△2,920,706	순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224,605	50,613	50,613	50,629	16	0.0
합 계	8,294,631	9,408,151	10,147,904	10,497,580	349,676	3.4

주: 1)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라. 재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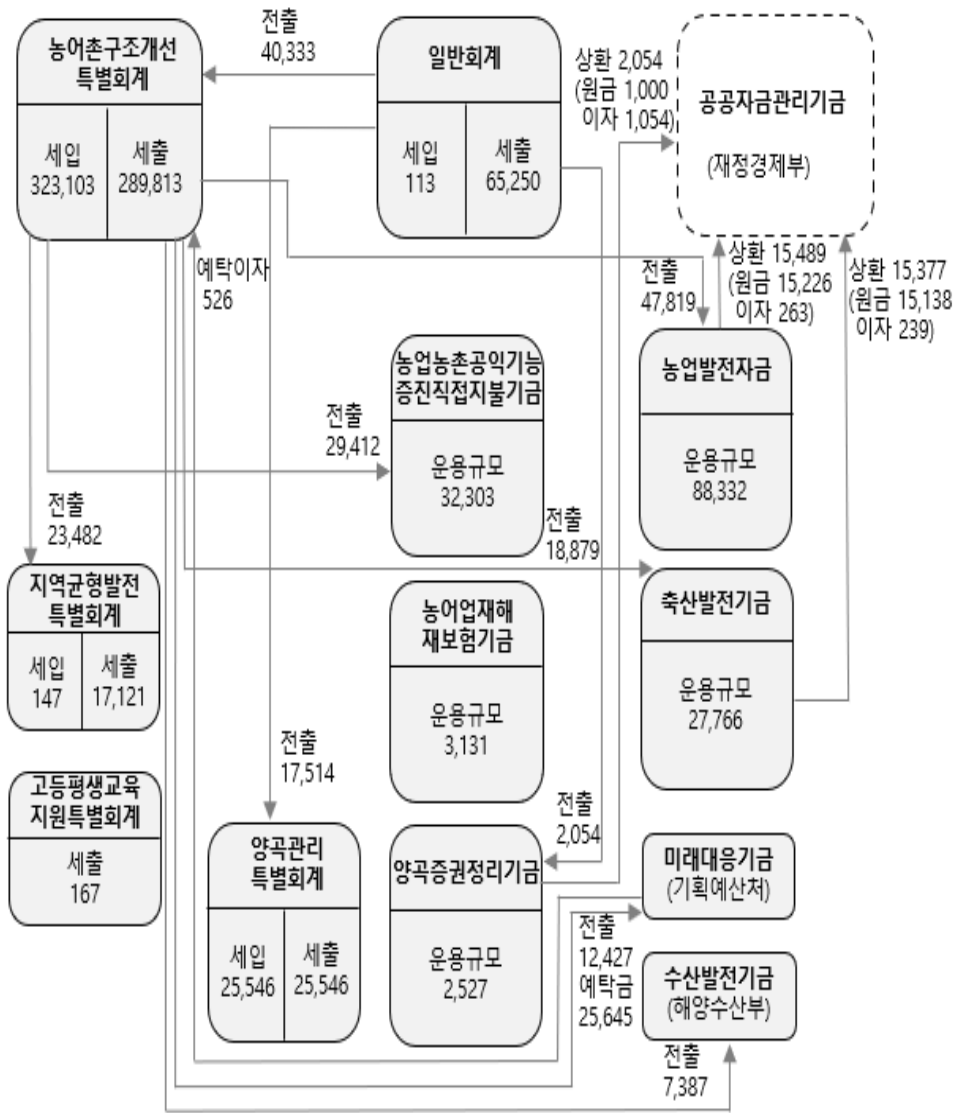
2027년도 예산안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4조 333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로 1조 7,514억원, 양곡증권정리기금으로 2,054억원을 전출한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경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2조 3,482억원, 농업발전기금으로 4조 7,819억원, 축산발전기금으로 1조 8,879억원,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으로 2조 9,412억원, 미래대응기금으로 1조 2,427억원, 수산발전기금으로 7,387억원 전출되고, 미래대응기금으로 2조 5,645억원을 예탁하며, 6조 362억원의 계정 간 전출이 발생한다.

농업발전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1조 5,489억원의 예수원금 및 예수이자를 상환하고, 축산발전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1조 5,377억원의 예수원금 및 예수이자를 상환, 양곡증권정리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2,054억원의 예수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다.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7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직불 예산 3조 원 진입, 가격안정제 도입 등을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농사짓는 국가 책임형 안전망 확충, ② 공동영농 확산과 필수농자재 지원체계 개선 및 선제적 농축산물 수급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 ③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 생활 기반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농촌 필수서비스 확충 및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농촌 조성, ④ AI·첨단기술 활용, K-푸드 글로벌화로 미래성장 동력 확충, ⑤ 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 및 선진국형 동물복지 구현을 위한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다.

2027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정부는 2027년도부터 농안기금·농지기금·FTA기금을 농업발전기금으로 통·폐합하여 8조 8,331억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나, 정부가 제시한 재정건전화 방안 에 따른 경우 통·폐합의 실익이 부족하고, 오히려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국회 심 의 없이 쓸 수 있는 규모가 커질 우려가 있으며, 기금 통폐합의 근거 법률인 「농업 발전기금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통합을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한 점도 문제가 되므로, 통합의 실익과 실효성 있는 재정건전화 방안을 따져 보고 법안 처리 상황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 사업은 2027~2030년까지 총 7,000억 원(2027년 2,000억원)을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려는 것이나, 「국가재정법」에 서 규정한 출연의 법적 근거 없이 계류 중인 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예비타당 성조사 조건부 면제와 예산안 편성이 이루어졌고, 정부 출연으로 기금 조성의 대부분을 충당하면 공적 재원 비중이 80% 이상이 되어 일반 재정사업과 차이가 크지 않게 되므로, 일반 재정사업 편성 여부를 검토하고 출연금의 사용내역 공개, 국회 보고, 정산·환수 등 책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전년 추경 대비 8,610억원 증가한 1조 1,657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동 시범사업은 2년간 효과를 검증한 뒤 본사업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시범사업인데 종료연도인 2027년에 대상을 17개 군에서 35개 군 내외(129.4만명)로 급격히 확대할 경우 대조군 기반 성과평가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대상 인구가 2.48배 늘면서 지자체 총부담도 약 2.07배로 증가하여 지방비 부담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의 매입을 위한 처분농지 매입 사업이 8,868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되었으나, 매입 단가(308백만원/ha)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위주인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단가의 80%로 산정되어 진흥지역 밖 농지가 포함되는 처분 대상의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법정 기준인 공시지가의 72.8% 수준에 그치므로, 단가 산정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영농확산지원 사업의 지원 목표를 6개소에서 30개소로 늘려 보조사업비 227억 5,000만원과 융자사업비 50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면적 규모와 함께 작부체계의 혁신성, 소득모델의 다양성과 확산 가능성 등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선정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도 신규사업은 총 20개 사업, 8,294억원 규모이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예비농업인 역량강화 사업은 경영능력을 갖춘 정예 청년농업인재 양성을 위해 예비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역량진단, 공통교육-품목탐색교육-현장실습 등 맞춤형 교육 제공하는 사업이고, 한국형무인자율노지농업생산을위한피지컬AI핵심요소기술개발(R&D) 사업은 피지컬AI 기반 무인 자율 농업 생산을 위한 관제 시스템 구축 및 통합실증을 통해 농작업기가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적용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업발전기금 사업 중 농산물가격안정제 사업은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 시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 사업은 한-중 FTA 여·야·정 합의에 따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원 조성 목표 달성 및 소멸위기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정부 출연금 지원하는 사업이다.

축산발전기금 축산발전종합자금(용자) 사업은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에 대비하여 시설·증축 비용을 지원하고, 노후 축사들을 스마트축산단지로 집적화·규모화하여 생산성 향상 및 지역경제활력 창출 등을 위한 사업이다.

미래대응기금으로 편성된 스마트풀필먼트구축(농식품부) 사업은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통합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부가가치 제고 위한 상품화 지원 등 농산물 유통 혁신 기반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1개)	동물용의약품인허가심사지원(수입대체경비)	900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11개)	공급망 위험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체계 구축	1,154
	예비농업인 역량강화	9,010
	비료 공공비축 체계 구축 연구 및 실증지원	1,000
	비료 사용체계 개선 실증지구 조성	1,052
	농업현장에적용가능한재생에너지통합활용기술개발(R&D)	3,000
	농업·농촌현장으로단기해결기술개발(R&D)	5,514
	한국형무인자율노지농업생산을위한퍼지컬AI핵심요소기술개발(R&D)	4,600
	데이터표준화기반농산물유통디지털전환플랫폼기술개발(R&D)	2,650
	영농형태양광 활성화 기반구축	1,399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정보화)	180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추진단 운영	1,003
농업발전기금 (4개)	농업발전종합자금(용자)	216,400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	200,000
	농산물가격안정제	9,050
	농축산물 할당관세 통합관리	944
축산발전기금 (2개)	축산발전기금차세대종합정보시스템구축	1,119
	축산발전종합자금(용자)	344,132
미래대응기금 (2개)	스마트폴필먼트센터구축(농식품부)	5,500
	농업퍼지컬AX실증프로젝트(농식품부)	20,810
합 계		829,41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7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 맞춤형농지지원(용자), 농업재해보험, 쌀소비기반구축, 양수장 시설개선사업 등이 있다.

①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농식품부) 사업은 지급 대상 군을 17개에서 35개로 확대하고 국비를 상향함에 따라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고, ② 맞춤형농지지원(용자) 사업은 농지전수조사에 따라 처분이 필요한 농지를 매입하고 처분농지의 생산성 유지를 위해 유휴 농지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이 신규 내역사업으로 반영되어 증액되었으며, ③ 농업재해보험 사업은 보험 운영이 어려운 작물에 대해서도 보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재해 피해를 지원하는 농작물준보험 시범사업이 신규 내역사업으로 반영되어 예산이 증액되었다. ④ 쌀소비기반구축 사업은 내역사업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규모 확대 및 단가 인상으로 증액되었고, ⑤양수장 시설개선 사업은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수위 저하에 대응하여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 공사 착공 비용 등이 반영되어 증액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¹⁾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개)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3,049	3,049	5,013	1,964	64.4
	청사시설지원(종자원)	736	736	1,808	1,072	145.7
	농식품인재개발원공익근무 요원운용	3	3	4	1	33.3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27개)	농작물재해보험부가보험료지원	99,093	99,093	128,782	29,689	30.0
	AX기반지능형농작업협업산 업화기술개발(R&D)	6,975	6,975	9,300	2,325	33.3
	합성화학기반K-신작물보호 제글로벌산업화(R&D)	1,500	1,500	2,000	500	33.3
	농생명자원기반국가필수약품 원료공급망대응기술개발(R&D)	6,000	6,000	8,000	2,000	33.3
	LMO및농산물표시관리	4,656	4,656	6,308	1,652	35.5
	지속가능한저탄소축산확산 을위한기술개발(R&D)	3,000	3,000	4,200	1,200	40.0
	노지스마트농업ICT융복합확산	10,300	10,300	14,505	4,205	40.8
	개식용종식폐업전업지원	22,270	22,270	31,594	9,324	41.9
	농업기반시설치수능력확대	13,250	13,250	18,800	5,550	41.9
	데이터기반스마트농업확산지원	8,012	8,012	11,420	3,408	42.5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26,081	26,081	37,337	11,256	43.2
	한국농수산대학교정보화(정보화)	1,732	1,732	2,498	766	44.2
	동물복지축산인증제활성화	742	742	1,095	353	47.6
	농식품해외시장진출	63,602	63,602	96,281	32,679	51.4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¹⁾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가축질병예방약품	55,569	55,569	101,821	46,252	83.2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15,780	15,780	31,430	15,650	99.2
	반려동물산업육성	3,454	3,454	7,124	3,670	106.3
	축산식품안전관리	2,161	2,161	4,479	2,318	107.3
	농업AX기반조성	7,250	7,250	16,540	9,290	128.1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4,830	4,830	11,140	6,310	130.6
	반려동물난치성질환극복기술개발(R&D)	2,775	2,775	11,900	9,125	328.8
	양수장시설개선	24,590	24,590	250,904	226,314	920.3
	수리시설유지관리	156,078	156,078	167,500	11,422	7.3
	농식품바우처	73,991	73,991	86,610	12,619	17.1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115,751	122,951	136,439	13,488	11.0
	농업인안전재해보험	95,636	95,636	122,754	27,118	28.4
	농업재해보험	887,089	887,089	956,768	69,679	7.9
지역균형 발전특별 회계 (10개)	일반농산어촌개발(제주)	10,698	10,698	14,160	3,462	32.4
	농업농촌국민체감AX전환기술개발(R&D)	1,575	1,575	2,100	525	33.3
	그린바이오산업인프라구축(지원)	3,165	3,165	4,365	1,200	37.9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자율)	12,249	12,249	20,395	8,146	66.5
	임대형스마트팜(자율)	28,500	28,500	51,200	22,700	79.6
	농촌형교통모델(자율)	28,991	28,991	72,384	43,393	149.7
	전통발효식품육성(제주)	9	9	30	21	233.3
	그린바이오산업인프라구축(제주)	700	700	2,500	1,800	257.1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 단지조성(자율)	1,150	1,150	6,565	5,415	470.9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130,380	130,380	159,211	28,831	22.1
양곡관리 특별회계 (1개)	쌀소비기반구축	13,606	13,606	19,930	6,324	46.5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¹⁾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농업발전 기금 (9개)	농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용자)	100,000	100,000	150,000	50,000	50.0
	도매유통활성화지원	1,540	1,540	2,340	800	51.9
	농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	30,387	30,387	50,537	20,150	66.3
	농지종합정보화(정보화)	2,866	2,866	5,224	2,358	82.3
	산지유통종합자금(용자)	320,310	320,310	617,918	297,608	92.9
	인건비(유통개선사업운영)	5,279	5,279	51,043	45,764	866.9
	도매유통활성화지원(용자)	46,000	46,000	57,200	11,200	24.3
	농지연금(용자)	276,629	276,629	344,420	67,791	24.5
	맞춤형농지지원(용자)	1,807,690	1,807,690	2,261,730	454,040	25.1
축산발전 기금 (2개)	축산물수급관리	89,360	89,360	118,019	28,659	32.1
	조사료생산기반확충	88,427	88,427	99,777	11,350	12.8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 지불기금 (2개)	직불제이행점검	30,690	30,690	48,013	17,323	56.4
	공익기능증진직불	2,970,314	2,970,314	3,061,522	91,208	3.1
미래대응 기금 (1개)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농 식품부)	234,075	304,705	1,165,765	861,060	282.6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9월 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II

주요 사업 분석

1

예비농업인 역량 강화 사업의 정확한 교육 수요를 반영한 예산 편성 필요

가. 현 황

예비농업인 역량 강화¹⁾ 사업은 창농 준비 단계에 있는 영농미개시 예비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역량진단, 품목탐색교육, 현장실습, 맞춤형 밀착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90억 1,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027년도 예비농업인 역량 강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비농업인 역량 강화	-	-	-	9,010	9,010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7년도 예산안 90억 1,000만원은 ① 역량진단(13억 6,000만원), ② 예비농업인교육(52억 2,000만원), ③ 맞춤형 밀착지원(24억 3,000만원)의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① 역량진단은 예비농업인별로 영농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수준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제시하는 프로그램에는 본 사업의 예비농업인 교육과 함께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이 이미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과정도 연계된다. 진단은 농정원이 교육 전·후에 실시하며, 민간경상보조(320-01) 국비 100%로 편성되었다.

서창희 예산분석관(seochang@assembly.go.kr, 6788-4629)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130-332

② 예비농업인교육은 공통 기초교육, 품목탐색교육, 현장실습의 3단계로 진행된다. 도별로 농업마이스터대학, 도농업기술원 등을 지정하여 예비농업인 전용 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할 계획이며,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국비 50%로 편성되었다.

③ 맞춤형 밀착지원은 준비-진입-정착-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정부 지원정책, 농지, 주거, 금융 등에 관한 정보와 맞춤형 멘토링·컨설팅을 제공하며, 민간경상보조(320-01) 국비 100%로 편성되었다.

[내역사업별 주요 내용 및 2027년 예산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27년 예산안	주요 내용	국고 보조율	보조 대상	비목
역량진단	1,360	영농역량 수준 진단(교육 전·후),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 제시, 농정원·농진청·지자체 등의 기존 교육과정 연계	100	농림수산 식품교육문 화정보원	민간경상보조 (320-01)
예비농업인 교육	5,220	공통 기초교육(농업정책, 농지·금융 등), 품목탐색교육(재배·축산학 등), 파종~수확 전 작기 현장실습	50	지자체	자치단체경상보조 (330-01)
맞춤형 밀착지원	2,430	준비-진입-정착-성장 단계별 정부 지원정책, 농지, 주거, 금융 정보 및 멘토링·컨설팅	100	미정	민간경상보조 (320-0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참고로, 동 사업의 대상인 예비농업인은 청년농업인(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만 40세 미만인 사람) 중에서 창농을 준비 중인(농어업경영체에 미등록된) 사람으로 정의된다.

[농업인 관련 정책 대상 개념]

구 분	개 념
미래농업인	농업계 고등학교·대학에서 농업 분야를 전공·학습하며 향후 농업 분야 진출을 준비하는 사람
후계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만 50세 미만, 영농 경력 10년 미만인 사람
청년농업인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만 40세 미만인 사람
예비농업인	청년농업인 중 농어업경영체에 미등록된 사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7년 예산안은 예비농업인 약 1,150명을 대상으로 하고, 역량진단, 교육, 맞춤형 밀착지원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먼저 지자체에서 참가자를 접수하고 농정원이 사전·사후 역량진단을 수행하며, 도별로 농업 마이스터대학, 도농업기술원 등을 지정하여 예비농업인 전용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계획이다. 맞춤형 밀착지원은 농식품분야 벤처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농식품벤처 창업센터(전국 6개소)에서 수행할 계획이다.

[2027년도 예비농업인 역량 강화 사업 추진체계]

구 분	내용	대상 인원
① 참가자 모집	9개도 지자체별 접수·선발	1,150명
② 사전 역량진단	농정원, 개별 수준 진단	1,150명
③-1 공통교육	45시간, 영농창업 기초·정책소개·재배·경영 이론	1,150명
③-2 품목탐색교육	30시간, 개인별 적합 품목 진단, 선도농가 견학	1,150명
③-3 현장실습	최대 8개월, 실습장 매칭, 선도농 도제식 인큐베이팅	500명
④ 사후 역량진단·성과관리	영농계획서 수립 → 창농, 우수사례 공유	1,150명
⑤ 맞춤형 밀착지원	정부 지원정책·농지·주거·금융 정보, 멘토링·컨설팅	전국 6개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 대상 인원 1,150명을 산출 시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자 통계를 사용하였으나, 두 사업의 수요 모집단이 상이하고, 해당 통계는 비농업계와 농업계, 경영체 등록과 미등록으로만 구분되어 있을 뿐 정확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의 교육 실수요를 명확히 파악하여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역량강화 사업 이후 예비농업인이 창농준비를 마친 후 ‘영농정착지원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등 정책 지원을 통해 영농에 진입·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계·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청년후계농교육’ 사업²⁾ 예산을 통해 「예비농업인 역량강화(멘토링·교육) 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 대상자는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자 중 비농업계 출신이면서 영농을 개시하지 않은 예비농업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명을 목표로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며, 총 199명을 선발하여 10월까지 멘토링과 교육을 지원 중이다.

[2026년 예비농업인 역량강화(멘토링·교육) 사업과 2027년 예비농업인 역량 강화 사업 비교]

구 분	(2026년) 예비농업인 역량강화 (멘토링·교육) 사업	(2027년 예산안) 예비농업인 역량 강화 사업
대상 요건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자 중 비농업계 출신·영농미개시자	창농준비 단계(경영체 미등록) 예비농업인 등
인원	모집 200명, 선발 199명(남 129, 여 70)	약 1,150명(현장실습 500명)
신청·선발	1.28~2.20 신청, 2.27 시·도별 선발	지자체별 접수·선발
멘토링	4~10월(약 6개월)	전국 6개소 밀착지원
교육	농정원·지방정부의 기존 신규농업인 교육과정에 우선 선발(연중)	도별 예비농 전용 교육과정 개설·운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130-331의 내내역사업

농림축산식품부는 예비농업인 역량강화(멘토링·교육) 사업을 진행하면서 2025년 기준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자(2,986명) 중 비농업계 출신이 2,313명(77.5%), 및 영농 미개시 인원이 2,485명(83.2%)이나, 2025년 교육 수료인원 기준 기존의 농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역량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약 1,200명임을 고려하여 2027년 예비농업인 역량 강화 사업의 예산안 대상 인원을 1,150명으로 설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자와 예비농업인은 모집단이 달라 수요 산정의 근거가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영농계획서 평가를 거쳐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 창농(농업경영체 등록) 및 전업적 독립영농 의무 이행을 전제로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청년농업인은 1년 3개월 이내에 등록 요건을 갖추어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1년 3개월 이내에 등록을 마치지 못하거나 누락한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 취소(자격 박탈) 및 연계 지원되는 자금(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의 중단·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반면 동 사업의 정책 대상인 예비농업인은 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았고 창업 또는 취업 의사가 있을 뿐 창농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다. 따라서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자는 예비농업인에 비해 영농계획서 평가를 통과하였고, 지원금 수령과 등록 의무, 환수 부담이 창농을 사실상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창농 의지와 준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특히, 동 사업의 예산안 90억 1,000만원의 대부분은 대상 인원(1,150명), 현장 실습 인원(500명), 국외연수 인원(50명)에 인당 단가를 곱해 산출되어 예산안 규모가 대상 인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상 인원에 대한 수요 예측이 보다 정교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진단비 4억 6,000만원은 교육 이전·이후 2회 진단을 1,150명 전원에 적용한 것으로 인당 40만원이 적용되었고, 공통교육과 품목탐색교육의 교재비, 교통비·식비 등은 1,150명, 현장실습은 500명(8개월), 국외연수는 50명을 기준으로 인당 단가를 곱해 산출되었다.

[내역사업별 27년 예산안 세부산출 근거]

구 분	세부산출
역량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비) 진단비용 20만원 × 2회(교육이전·이후) × 1,150명 = 460백만원 ○ (역량지원센터 인건비) 5백만원 × 6명 × 12개월 = 360백만원 ○ (역량지원센터 운영비) 홍보비 22백만원 + 임차료 48백만원 + 시설비 30백만원 + 자산취득비 30백만원 + 출장비 30백만원 = 160백만원 ○ (진단기반) 품목별 교육맵 개발 350백만원 + 진단도구 고도화 비용 30백만원 = 38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역량 교육맵* 개발: 35백만원×10개품목 = 350백만원 * 품목별 농업기술분류(재배, 환경, 시설 등)를 수준별(1~4수준)로 체계화한 교육 운영 가이드라인 - 진단도구 고도화* 비용: 60만원×50개품목 = 30백만원 * 예비농업인 수준 진단도구 및 신규품목·최신 농업기술 반영한 진단도구 개발
예비농업인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교육) 강사비 522백만원(58개 과정) + 교재비 230백만원(1,150명) + 교통비·식비 등 184백만원(1,150명) + 성과공유회 81백만원(9개도) = 1,017백만원 ○ (품목탐색교육) 강사비 348백만원(58개 과정) + 교재비 57.5백만원(1,150명) + 교통비·숙박비·식비 등 506백만원(1,150명) = 911.5백만원 ○ (현장실습) 실습장 1,600백만원(500명, 8개월) + 연수생 1,200백만원(500명, 8개월) + 실습장 임차비 3,200백만원(500명, 8개월) + 국외연수비 300백만원(50명) = 6,300백만원 ○ (운영·관리비) 홍보·수용비 996.5백만원 + 자산취득비 등 270백만원 + 교육기관 인건비 945백만원(9개도, 3명씩) = 2,211.5백만원
맞춤형 밀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상담) 전문상담사 연계지원 438백만원(6개소) + 지역·품목별 청년농 네트워크 운영 60백만원(6개소) = 498백만원 ○ (멘토링) 멘토수당 600백만원(6개소) + 멘티 여비 60백만원(6개소) = 660백만원 ○ (운영·관리비) 홍보, 운영·수용비, 임차료 등 1,272백만원(6개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예비농업인 역량강화 사업’의 교육 실수요를 명확히 파악하여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역량강화 사업 이후 예비농업인이 창농 준비를 마친 후 ‘영농정착지원사업’과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등 정책 지원을 통해 영농에 진입·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계·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인공지능 기반 첨단기술개발¹⁾ 사업은 동식물 검역·방역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화와 현장 적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수행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농림축산검역본부이다. 2027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37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인공지능 기반 첨단기술개발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R&D)	39,934	44,778	44,778	43,705	△1,073	△2.4
인공지능 기반 첨단기술개발	-	3,500	3,500	3,750	250	7.1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동 사업은 2026년에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2027년도 예산안 37억 5,000만원은 계속과제 2개(35억원)와 신규 1개 과제(2억 5,000만원)로 구성된다.

[2027년도 인공지능 기반 첨단기술개발 사업 예산안 산출 내역]

2026년 본예산	2027년 예산안
○ 인공지능 기반 첨단기술개발 : 3,500백만원 (신규, 다년) 2개×1,750백만원×12/12=3,500백만원	○ 인공지능 기반 첨단기술개발 : 3,750백만원 (계속) 2개×1,750백만원×12/12=3,500백만원 (신규, 다년) 1개×250백만원×12/12=250백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서창희 예산분석관(seochang@assembly.go.kr, 6788-4629)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234-300의 내역사업

2027년도 예산안의 계속과제 2개는 2026년에 신규 착수한 과제로, ① AI 활용 독성예측과 ② 딥러닝 기반 검역병해충 분류 동정 플랫폼 개발로 구성된다. ① AI 활용 독성예측은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 평가 분야에 AI를 적용하여 급성독성을 예측하려는 것이고, ② 딥러닝 기반 검역병해충 분류 동정 플랫폼 개발은 검역 현장의 병해충 분류·동정에 딥러닝을 적용하는 플랫폼을 개발하려는 과제이다.

[인공지능 기반 첨단기술개발 사업 계속과제 개요]

구 분	AI 활용 독성예측	딥러닝 기반 검역병해충 분류 동정 플랫폼 개발
적용 분야	동물용의약품 등의 안전성 평가	검역 현장의 병해충 분류·동정
핵심 목표	급성독성 예측 AI 모델을 개발·검증 급성독성 대체시험법 개발	딥러닝용 검역병해충 분류 데이터셋 구축 분류 동정 플랫폼 개발
개발 대상	AI 예측모델, 대체시험법, 플랫폼	분류 기반 데이터셋(일반용역), 분류동정 플랫폼(소프트웨어 용역)
기대 효과	동물용의약품 평가 기술 확보, 민간 기업 기술지원	검역 과정의 자동화·정량화, 외래병해충 유입 차단
26년 예산	15억원	20억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인공지능 기반 첨단기술개발 사업은 2026년 신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에 9개월분이 아닌 12개월분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또한, 조달·보안성 검토 지연으로 착수가 늦어져 2026년 9월 기준 예산액 35억원 중 29억 4,300만원(84.1%)이 미집행 상태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2027년도 예산안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은 2026년 9월 기준 연구수행기관의 실집행률이 15.9%에 그치고 있어 예산액 35억원 중 29억 4,300만원(84.1%)이 미집행 상태이다. 그 이유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기획 보완 점검, 조달청의 분리발주 권고에 따른 반려, 소프트웨어 영역의 보안성 검토를 차례로 거치며 신규 과제 착수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2026년 인공지능 기반 첨단기술개발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과제명	예산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미집행액
급성독성 예측 AI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험관내 시험 모델 개발	100	79	79.4	21
급성독성 예측 AI 모델 개발·검증 및 급성독성 대체 시험법 개발 연구	1,400	-	0.0	1,400
딥러닝 활용을 위한 검역병해충 분류 기반 데이터셋 구축	2,000	478	23.9	1,522
합 계	3,500	557	15.9	2,943

주: 실집행액 및 실집행률은 2026년 9월 기준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구체적으로 2026년 예산안 심사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 부처에서 수행 중인 AX R&D 신규사업이 2025년 32개(950억원)에서 2026년 예산안 기준 138개(7,622억원)로 급증하는 가운데, 일부 사업이 컴퓨팅 자원 확보, AI 모델 개발 수준, 데이터 수집·전처리 방식 등 AI 분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에 따라 「2026년도 신규 AX R&D 사업 보완 추진 계획(안)(2025.10.)」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AI R&D 주요 수행부처 19개로 구성된 범부처 협의체가 추진계획과 점검 결과를 확정하고, 인공지능·ICT전문위원회 등 민간전문가가 사업 기획의 적정성을 컨설팅 방식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인공지능 기반 첨단기술개발)은 2025년 10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전검토를 제출하였고, 급성독성 과제는 1차 보완을 2025년 12월 8일에, 검역병해충 과제는 2차 보완을 2026년 1월 5일에 마쳤다.

[2026년도 신규 AX R&D 사업 보완 추진 계획(안)]

□ 추진배경

- (AX 확대) 최근 공공서비스 및 산업 분야 AI 도입 및 AX 전환을 위해 다수 부처에서 AX R&D 사업이 크게 확대 중
 - ※ AX R&D 신규사업 예산/수(억원/개) : ('24) 753/30 → ('25) 950/32 → ('26안) 7,622/138
 - 일부 사업은 심의 과정에서 AI 분야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다는 평가
 - * 컴퓨팅 자원의 확보, AI 모델 개발 수준, 데이터 수집·전처리 방식 등의 사전 준비 필요
- '26년 국가R&D AX 사업에 대하여 정부안 확정 이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철저하고 세밀한 기획 보완 추진(과기자문회의 전원회의, '26.8.22)

□ 추진방향(안):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추진방향, 대상사업 등 확정

- 민간전문가혁신본부 중심 컨설팅
- (범부처 협의체) AI R&D 주요 수행부처(19개) 과장급으로 구성하여, AX R&D 기획 보완을 위한 추진계획 및 점검 결과 등을 확정
 -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추후 기획보완 이외에도 ① 전부처 신규사업 통합 알림, ② '27년 신규사업 공동 발굴, ③ 유사분야 간 통합 체계 구축 등도 검토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도 신규 AX R&D 사업 보완 추진 계획(안)

점검을 마친 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급성독성 과제는 2월 12일, 검역병해충 과제는 1월 30일에 조달공고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조달청이 두 과제 모두 일반용역과 소프트웨어 용역이 혼재되어 있다는 사유로 분리발주를 권고하였고 공고 요청을 반려하였다. 이에 따라 검역병해충 과제는 2026년 4월 7일 일반용역(데이터셋 구축) 부분만 분리하여 공고를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공고 지연 등의 사유로 검역병해충 데이터셋 구축 과제는 2026년 6월 17일에 협약이 체결되었고, 급성독성 예측 AI 과제는 2026년 8월 4일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딥러닝 기반 검역병해충 분류동정 플랫폼 개발(소프트웨어 용역, 4억원)은 아직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인공지능 기반 첨단기술개발 사업 추진 경과]

구 분	일 자	내 용
급성독성 예측 AI 과제 (15억원)	2025.10.1.	2026년 신규 AX R&D 사업 보완 추진계획(안)
	2025.10.20.	AX 관련 신규사업 사전검토 제출(농식품부→과기부)
	2025.11.27.	사업 보완 1차 검토의견서 회신(과기부→농식품부)
	2025.12.8.	1차 점검결과에 대한 검토결과 제출(농식품부→과기부)
	2026.2.12.	조달공고 자료 제출(검역본부)
	2026.3.19.	조달 공고 요청에 대한 반려 공문 수신(조달청) ※ 일반 용역과 소프트웨어용역이 혼재되어 분리발주 권고
	2026.4.9.	조달공고 자료 재제출(검역본부)
	2026.4.27.~5.19.	조달청 1차 공고(단일응찰)
	2026.5.19.~6.2.	조달청 2차 공고
	2026.6.19.	선정평가(대면평가, 검역본부)
	2026.7.9.	수역시담 성립 알림(조달청→검역본부)
	2026.7.20.	기술협상 요청(검역본부→수행기관)
	2026.7.24.	기술협상 완료 후 결과 알림
	2026.8.4.	계약체결(수행기관, 조달청)
	2026.9.14.	선금청구(수행기관→검역본부)
딥러닝 기반 검역병해충 분류동정 플랫폼 개발 ① 데이터셋 구축(16억원)	2025.10.1.	2026년 신규 AX R&D 사업 보완 추진계획(안)
	2025.10.20.	AX 관련 신규사업 사전검토 제출(농식품부→과기부)
	2025.11.27.	사업 보완 1차 검토의견서 회신(과기부→농식품부)
	2025.12.8.	1차 점검결과에 대한 검토결과 제출(농식품부→과기부)
	2025.12.20.	사업 보완 2차 검토의견서 회신(과기부→농식품부)
	2026.1.5.	2차 점검결과에 대한 검토결과 제출(농식품부→과기부)
	2026.1.30.	조달공고 자료 제출(검역본부)
	2026.3.30.	조달 공고 요청에 대한 반려 공문 수신(조달청) ※ 일반용역과 소프트웨어용역이 혼재되어 분리발주 권고
	2026.4.7.	일반용역(1과제) 부분을 분리하여 조달 공고요청
	2026.4.29.~5.20.	조달청 입찰 공고
	2026.6.2.	수행자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
	2026.6.17.	협약 체결
② 플랫폼 개발(소프트웨어 용역, 4억원)	2026.6.16.~6.19.	농림축산검역본부 과업심의회
	2026.7.8.	농림축산검역본부 보안성 검토
	2026.7.22.	농식품부 사전검토
	2026.7.8.~9.3.	국정원 보안성 검토
	2026.7.22.~9.4.	행안부 사전협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편, 2027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과제형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에 실제 소요되는 연구기간과 협약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신규과제는 협약 준비기간을 감안해 9개월분을 편성하되 하반기에 협약하는 과제는 6개월분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계속과제는 회계연도 불일치 개선을 위해 2개월을 감액한 10개월분을 반영하되, 회계연도가 일치하는 과제는 12개월분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계연도 불일치가 지속되는 사업은 예산편성 개월수 축소, 단가 10% 삭감 등 더 강화된 자체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제형 R&D 연구개발사업 예산안 편성 지침]

□ 과제형 R&D 연구개발사업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회계연도에 실제 소요되는 연구기간 및 협약시기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
 - (신규과제) 신규과제는 협약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9개월분을 편성하되 하반기에 협약하는 과제는 6개월분을 반영(단, 상반기 협약체결 예정인 단년도 과제의 경우에는 직전년도 협약준비를 전제로 12개월 예산 편성)

〈 과제형 R&D 편성 기준 〉

상반기 협약과제	하반기 협약과제
9개월분 단, 단년도 과제는 12개월분 반영	6개월분

*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추진하는 신규 과제의 경우 단년도 과제는 9개월분, 다년도 과제는 7개월분 반영

- (계속과제) 회계연도 불일치 개선을 위해 2개월 감액한 10개월 예산을 반영(다만, 그간의 조정으로 '27년 1월부터 회계연도가 일치하는 과제의 경우 12개월 예산을 반영)
- 회계연도 불일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개발 사업은 위 기준보다 강화된 자체기준(예산편성 개월수 축소, 단가 10% 삭감 등)을 적용하여 예산 편성 가능
- 단, 기초연구, 국제공동연구사업,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2제2항), 범부처 현장수요 신속대응 연구개발 사업은 회계연도 일치원칙의 예외를 적용하여 신규·계속과제도 12개월분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허용

자료: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이 과제형 R&D 사업에 대해 실제 소요기간과 협약시기를 고려하여 신규과제는 9개월분(하반기 협약 시 6개월분)을 편성하도록 하고, 회계연도 불일치가 지속되는 사업에는 개월수 축소와 단가 10% 삭감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가재정법」상 각 회계연도의 경비를 해당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고려한 취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은 2026년 신규 과제에 대해 협약 준비 기간을 감안한 9개월분이 아닌 12개월분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²⁾ 이는 예산안 편성 지침에 어긋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전점검과 조달·보안성 검토로 착수가 지연되어 2026년 9월 기준 예산의 84.1%가 집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2027년도 예산안에 여전히 12개월분의 예산이 계속과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예산 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2027년도 예산안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규사업임에도 동 사업(내역사업)이 속하는 세부사업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기초연구”로 12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여, 26년도 R&D 사업비로 12개월 분이 편성되었다고 설명하였으나, 세부사업이 기초연구 사업일지라도 동 사업(내역사업)은 다 부처 AX R&D 사업으로서 기초연구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가. 현 황

농촌공간정비¹⁾ 사업은 농촌 마을 인근의 공장, 축사, 폐건물 등 난개발·유해 요소를 정비하고, 철거 부지에 복합커뮤니티센터, 마을공원, 임대주택 등 재생시설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80억 5,100만원이 감액된 1,238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다.

농촌중심지활성화²⁾ 사업은 읍·면 소재지 등 농촌중심지에 문화·복지·보육 등 복합서비스 거점을 조성하고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6억 6,500만원이 감액된 1,920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다.

기초생활거점조성³⁾ 사업은 농촌중심지보다 하위 거점에 복합서비스 거점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59억 1,200만원이 감액된 1,824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다.

위 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 중 지자체의 토지 취득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목(330-03목)으로 사업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서창희 예산분석관(seochang@assembly.go.kr, 6788-4629)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160-431의 내역사업

2)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180-360의 내역사업

3)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180-360의 내역사업

[2027년도 지자체의 토지 취득이 수반되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115,668	163,715	163,715	132,202	△31,513	△19.2
농촌공간정비	104,450	151,861	151,861	123,810	△28,051	△18.5
일반농산어촌개발	575,718	493,753	493,753	435,162	△58,591	△11.9
농촌중심지활성화	235,663	199,700	199,700	192,035	△7,665	△3.8
기초생활거점조성	239,775	228,392	228,392	182,480	△45,912	△20.1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토지 취득이 수반되는 자치단체 자본보조 세부사업의 경우, 지자체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개별 지구 단위로 토지매입비 상당액을 산출하여 지분취득비(490목)로 예산안을 편성함으로써 지자체에서 자본보조 사업을 통해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국가지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5~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을 통해 지자체가 취득한 토지는 총 801,016㎡이며, 취득가액 기준 1,615억 2,700만원이다.

[2025~2026년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을 통한 지자체 토지취득 현황]

(단위: %, 개, ㎡, 백만원)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회계명	국비 보조율	지자체 수	취득면적	취득가액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농촌공간정비)	농특회계	50	44	708,795	114,888
일반농산어촌개발(농촌중심지활성화)	지특회계	70	20	54,923	29,355
일반농산어촌개발(기초생활거점조성)	지특회계	70	30	37,298	17,284
합 계			94	801,016	161,52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7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국가가 지자체·민간에 대해 토지취득을 지원하는 경우 지분취득비로 편성하고 국가가 지분취득비로 계상된 토지에 대한 지원분만큼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분취득비 예산 편성에 관한 지침]

<p>1. 적용대상</p> <p>☐ 국가가 토지 매입을 위해 지자체·민간에 지원하는 경비</p> <p style="padding-left: 20px;">* 지원대상자인 민간에는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도 포함</p> <p style="padding-left: 20px;">** 지분취득비 신규사업 대상은 토지로 한정함</p> <p>☐ 국가는 지분취득비로 계상된 토지에 대한 지원분만큼 지분을 소유하되, 지원대상자인 지자체·민간에 무상사용 허용</p> <p style="padding-left: 20px;">○ 사업운영 기간의 종료 시, 국가는 지분의 매각회수 또는 타 공공목적으로 활용을 추진</p> <p>2. 세부지침</p> <p>☐ '27년 신규 요구사업 중 국가가 토지매입비를 지자체·민간에 지원하는 경우 지분취득비(490목)로 요구</p> <p>☐ 원칙적으로 세부사업 단위로 요구하되, 사업별 성격을 고려하여 사업의 내역으로도 요구 가능</p> <p style="padding-left: 20px;">○ 토지매입비 등 산출내역을 명확하게 세분화하여 요구</p>

자료: 202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 중 지자체에서 토지를 취득한 3개 세부사업(농촌공간정비,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은 매년 신규 지구를 선정하여 지구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업 자체는 계속사업으로 분류되더라도 개별 지구·지자체 단위로는 사실상 매년 새로운 토지취득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는 “원칙적으로 세부사업 단위로 요구하되, 사업별 성격을 고려하여 사업의 내역으로도 요구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위 3개 세부사업의 경우 매년 새로 선정되는 개별 지구(내역사업)를 단위로 하여 토지매입비 상당액을 지분취득비로 구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동 사항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지적된 사항인 만큼,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결산 시정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

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토지 취득이 수반되는 자치단체 자본보조 세부사업의 경우 지자체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개별 지구 단위로 토지매입비 상당액을 산출하여 지분취득비(490목)로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⁴⁾

4) 다만,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은 토지매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농촌공간계획 기반 공간의 재구조화를 위해 종합 정비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추진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토지매입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으나, 토지매입비를 사전적으로 별도로 편성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및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 역시 지특회계(지역자율계정)로 수행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비 추정이 어려워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편성되는 예산안에 별도로 지분취득비 편성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역시 지자체의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설치·개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특회계(지역자율계정)로 수행되고 있으나 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비를 지분취득비 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사업: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한 예산안 재검토 필요

가. 현 황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¹⁾ 사업은 국내 스마트팜 연관 제품을 상시 전시·실증·홍보하고 해외 투자자 및 바이어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수출지원 플랫폼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2억 5,000만원이 증액된 45억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농산업수출활성화	9,562	11,409	11,409	12,267	858	7.5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	2,250	2,250	4,500	2,250	100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국내 스마트팜 연관 제품을 상시 전시·실증·홍보하고 해외 투자자와 바이어 유치를 지원하는 수출지원 플랫폼이다. 사업기간은 2026~2028년 3년이고, 총사업비 450억원을 국비와 지방비가 각 50%씩 부담한다. 시행주체는 충청남도이며, 연부율은 1년차 10%, 2년차 20%, 3년차 70%로 2027년도 예산안은 45억원이 편성되었다.

서창희 예산분석관(seochang@assembly.go.kr, 6788-4629)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260-375의 내역사업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사업 개요]

구 분	내용
사업내용	국내 스마트팜 연관 제품의 상시 전시·실증·홍보, 해외 투자자·바이어 유치 지원 수출지원 플랫폼 조성
사업기간	2026~2028년(3년)
총사업비	450억원(국비 225억원, 지방비 225억원), 연부율 1년차 10%, 2년차 20%, 3년차 70%
시행주체	지방정부(충청남도)
센터 역할	(필수기능) ① 국내 스마트팜 기업 제품·모형 상시 전시, ②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마케팅 행사(박람회, 시연회, 수출상담회), ③ 방문객 대상 전시장·제품 소개 (부가기능) ① 기업 관계자 수출 역량강화 교육, ② 스마트팜 업계와 타 산업(건설, IT 등) 네트워크 지원, ③ 업무지원시설(회의실, 세미나실 등) 운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은 총사업비 450억원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이어서 기본설계 용역 전에 심사를 통과해야 지자체가 설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모두 마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절차로 인해 2026년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설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일정이 변경되어 2026년 9월 기준 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2027년도 예산안의 규모와 집행 가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 예산은 2026년도 신규로 2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6년 9월 기준으로 집행 실적이 전무하다. 집행 실적이 없는 이유는 지방재정 투자심사²⁾

2)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④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으로 구분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또는 부적정인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시·도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결과, 내용보완 필요 의견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관계로 센터의 사업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26년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2026년 예산현액	집행액 (교부액)	집행률	실집행액	실집행률
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수출지원센터	2,250	-	-	-	-

주: 2026년 9월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구체적으로 사업수행자인 충청남도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2026년 4월에 신청 하였으나 내용보완 의견을 받아 7월에 재신청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해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초 2026년에 실시될 계획이었던 기본·실시 설계 일정이 2027년 상반기로 늦어지게 되었다.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사업 추진 절차별 계획]

구 분	당초 계획	향후 계획
기본계획	2026년	2026년 하반기(투자심사 승인 후 수립)
기본설계	2026년	2027년 상반기
실시설계	2026년	2027년 상반기
공사 입찰·계약	2027년	2027년
착공	2027년	2027년
준공	2028년	2028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현행법상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부터 기본설계 용역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심사 시기는 사업을 시행하는 직전 회계연도에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가 300억원

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의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행정안전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이전재원이 포함된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사업

이상이 되어 중앙(행정안전부) 의뢰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정기심사는 연 3회(3월, 6월, 9월)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³⁾

동 사업은 총사업비 450억원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고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를 통과(적정 또는 조건부)한 이후에야 기본설계 용역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심사를 통과하기 전에는 지자체가 기본설계 용역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므로 설계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통과 시점이 중요하게 된다.

2026년도 예산 22억 5,000만원은 설계비(7억 7,000만원), 감리비(9억 1,650만원), 시설부대비(1억 8,950만원) 등 3억 7,400만원의 예비비를 제외한 대부분이 설계·감리 관련 경비로서, 기본설계가 2027년 상반기로 지연된 이상 2026년도 예산의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7년도 예산안 45억원은 공사비 39억 7,500만원(88.3%), 시설부대비 1,350만원, 예비비 5억 1,150만원으로 구성되어 2027년 중 착공을 전제로 편성되었으나, 기본·실시설계가 2027년 상반기로 지연됨에 따라 설계 완료 후 공사 입찰·계약 절차에 따라 2027년 중 실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기간은 당초 예상보다 단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3)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투자심사의 절차 등) ①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을 말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정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직전 투자심사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②투자심사는 매년 3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3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6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9월 30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부터 4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사업 연차별 국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항 목	2026	2027(안)	2028(안)	합 계
공사비	-	3,975	13,627	17,602
설계비	770	-	-	770
감리비	916.5	-	392.5	1,309
시설부대비	189.5	13.5	570	773
예비비	374	511.5	1,160.5	2,046
합 계	2,250	4,500	15,750	22,5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연된 설계 일정과 2026년도 예산의 이월 규모 등을 고려하여 2027년도 예산안의 규모와 집행 가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 현 황

양수장 시설개선¹⁾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양수장(101개소)의 취수구 위치를 개방 후 수위 이하로 낮추는 등 시설개선을 추진하여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2,263억 1,400만원이 증액된 2,509억 4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양수장 시설개선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양수장 시설개선	-	24,590	24,590	250,904	226,314	920.3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동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취·양수장 시설개선 사업과 병행²⁾하여 추진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2026년 취·양수장 시설개선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부처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2028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소관 양수장 시설개선을 완료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³⁾

2026년 9월 기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양수장 시설 90개소의 설계 추진율은 92%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0월 중으로 90개소 모두 설계와 발주를 완료하고, 90개소 중 2027년에 29개소(한강 2개소, 낙동강 25개소, 영산강 2개소), 2028년에 61개소의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서창희 예산분석관(seochang@assembly.go.kr, 6788-4629)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038-301

2) 지방정부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취·양수장 시설개선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양수장 시설개선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3) 관계부처 합동, “취·양수장 개선사업, 관계부처 협력으로 속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한다”, 2026.4.30

[양수장 시설개선 사업 계획]

2026				2027				2028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설계(90개소)											
인허가											
			승인 발주								
			착공	'27년 준공 29개소				'28년 준공 61개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처럼 농림축산식품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취·양수장 시설개선 사업과 일정을 맞추어 동 사업의 완료 일정을 2028년까지로 계획한 것은 보 개방으로 인해 하천의 수위가 낮아질 경우에도 생활용수(취수장)와 농업용수(양수장)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이다.

2027년도 예산안 2,509억 400만원은 2027년도에 준공 예정인 29개소는 지구당 36억원, 2028년도에 준공 예정인 61개소는 지구당 24억원의 공사비를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에 민간자본보조 방식으로 수행될 계획이다.

[연도별 예산 세부산출 근거(21~23년 양수장 시설개선 사업과 비교)]

구분	’26~’28년 추진계획 (90개소(한강 5, 영산강 9, 낙동강 76))
설계기간	8개월(’26.03~’26.10)
공사기간	3개년(’26.11~’28.12)
1차년도	(’26년) 246억원 ≒ 2.9억원 × 90개소 * 지구당 평균 설계비(0.9억원) + 지구당 평균 공사착수비(2.0억원)
2차년도	(’27년) 2,509억원 ≒ (공사비) 28억원 × 90개소 * 준공 29개소(1,062억원, 지구당 36억), 계속 61개소(1,447억원, 지구당 24억)
3차년도	(’28년) 3,763억원(61개소 잔여사업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을 통해 수행되는 대다수 지구의 공사비가 3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조달청을 통해 공사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2028년까지 양수장 시설개선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⁴⁾에서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 ③ 공사비가 10%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모두 조달청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2027년 준공 계획인 29개소의 평균 공사비가 36억원이고 2028년 준공 계획인 61개소 역시 2027년도에 반영된 평균 공사비만 24억원인 점을 고려할 때, 개별 지구별 편차를 감안하더라도 상당수 지구가 공사비 30억원 기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양수장 시설개선 사업 대상 지구의 대부분이 한국농어촌공사가 자체적으로 입찰하는 방식이 아닌 조달청을 통해 공사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0월 중으로 설계와 발주를 모두 완료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당초 계획보다 설계 완료와 발주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27년도 예산안 2,509억 400만원은 모두 90개소 지구의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편성된 공사비이나 설계 적정성 검토 및 조달청을 통한 발주 절차 과정에서 설계완료·발주·착공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2027년으로 이월되거나 지연될 경우, 2027년도 예산 중 상당 부분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기

4)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2조(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①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단, 제2호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이 경우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추정가격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1.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2. 공사계약 체결
3.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설계완료 이후 조달청의 설계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보완 요구 등으로 일정이 추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동시에 하천 점용허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를 긴밀히 하는 등 2028년까지 목표 일정을 완수하기 위하여 설계·인허가·발주·착공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친 사업 일정 관리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⁵⁾

5)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필요 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2조제2항제3호를 적용하여 조달청을 통한 공사 계약이 아니라 한국농어촌공사 자체 발주 계약으로 설계 완료 이후 공사 발주 완료까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2조(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①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단, 제2호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이 경우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추정가격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1.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2. 공사계약 체결
 3.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외 공사, 재해 또는 긴급 복구 공사, 국가유산과 연계된 국가유산 관련공사 및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기술의 특수성이 요구되는 공사
 2.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 단 공사계약 체결은 제1항에 따른다.
 3. 그 밖에 조속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 현 황

공동영농확산지원(보조, 융자)¹⁾ 사업은 법인 중심의 규모화된 공동영농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농업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공동영농법인에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융자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2027년도 보조 사업 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202억원이 증액된 227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융자 사업 예산안은 504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027년도 공동영농확산지원(보조, 융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공동영농확산지원(보조)	-	2,550	2,550	22,750	20,200	792.2
농업발전종합자금(융자)	-	-	-	216,400	216,400	순증
공동영농확산지원(융자)	-	-	-	50,400	50,400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동 사업의 지원 대상인 ‘공동영농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되며, 두 유형은 설립 요건, 비농업인 참여 방식, 특례 등에서 차이가 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비교]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의의	- 영세농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규모화된 경영체 육성을 위해 도입('90년) - 협업적 경영체 '영농조합법인', 기업적 경영체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	
관련 규정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민법」 중 조합 규정 준용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상법」 중 회사 규정 준용
설립 단체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설립(결원 시 1년 이내 충원, 미충원 시 해산 사유)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설립
설립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설립준비 ① 발기인 모집 ② 정관 작성 ③ 창립총회 개최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설립신고 ① 관할 시군구에 신고 ② 설립신고확인증 발급 </div>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설립등기 ① 관할 등기소에 신청 ② 법인격 생성 </div> </div>	
비농업인 참여	의결권 없는 준조합원으로 참여 가능(이사 총수의 1/3 미만에서 임원 선출 가능하고 이사회 의결권 허용 가능하나 총회 의결권은 없음)	출자지분이 총출자액의 9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총 출자액이 80억원 초과 시 총 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 한도). 위반 후 1년 경과 시 해산 사유. 비농업인도 임원 선출이 가능하며 출자 지분에 따라 의사결정 참여 가능
사업 범위	농업경영(생산),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수출,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농촌융복합사업, 영농자재 생산·공급,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기계 및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판매시설의 수탁·관리	
농지 소유	소유 가능	소유 가능(단,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1/3 이상이 농업인일 것, 농지법 제2조제3호)
국세 특례	법인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면제 및 감면(법인세: ①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전액면제, ② 그 외 작물재배업 소득은 조합원 1인당 수입금액 6억원 이하분까지 감면, ③ 작물재배업 외 대통령령이 정한 소득은 조합원 1인당 연 1,200만원까지 감면)	법인세·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면제 및 감면(법인세: ①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전액면제, ② 그 외 작물재배업 소득은 연 수입금액 50억원 이하분까지 감면, ③ 작물재배업 외 대통령령이 정한 소득은 최초 소득발생연도와 그 다음 4년간 50% 감면)
지방세 특례	부동산 취득세·등록세, 재산세 면제 및 감면	
조합원(구성원) 특례	양도소득세 면제 및 이월과세, 배당소득세 면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및 농업법인 업무안내서(2026) 바탕으로 재작성

연도별 농업법인 현황을 살펴보면, 농업법인 수는 2019년 23,315개에서 2024년 27,021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9~2024년 농업법인 설립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농업법인 수	23,315	24,499	25,605	26,104	26,519	27,021
영농조합법인	10,230	10,136	11,337	10,001	10,132	10,296
농업회사법인	13,085	14,363	14,268	16,103	16,387	16,72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7년도 보조 사업 예산안 227억 5,000만원은 ① 시설·장비 지원(216억원)과 ② 성과관리·교육홍보(11억 5,000만원)의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① 시설·장비 지원은 2026년도에 선정된 기존 6개소(2026년 선정, 2년차 지원)에 개소당 20억원을 지원하고, 신규 30개소(2027년 선정, 1년차 지원)에 개소당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② 성과관리·교육홍보(11억 5,000만원)는 성과관리 6억원, 교육·홍보 2억 5,000만원, 운영비 3억원으로 구성되며, 당해연도 사업 대상 법인(30개소)뿐 아니라 예비 대상 법인(20개소, 사업 전년도 사전교육 대상)까지 포함하여 정규 교육과정(농지, 세무, 경영) 운영, 법인별 맞춤형 컨설팅, 분기별 성과평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7년도 공동영농확산지원 세부 산출 내역]

(단위: 개소, 백만원, %)

내역사업	세부 항목	대상 개소	총사업비 (개소당)	국고 보조율	연부율	국비 지원액
① 시설·장비 지원	기존 개소(2년차)	6	2,000	50	60	3,600
	신규 개소(1년차)	30	3,000	50	40	18,000
	소 계					21,600
② 성과관리· 교육홍보	성과관리	30개소(당해연도)	-	-	-	600
	교육·홍보	30개소+예비 20개소	-	-	-	250
	운영비	-	-	-	-	300
	소 계					1,150
합 계						22,75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7년도 용자 사업 예산안 504억원은 2027년 보조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공동영농법인 36개에 대해 ① 운영자금(180억원)과 ② 시설 등 투자자금(324억원) 용자로 구성된다. ① 운영자금은 개소당 5억원(ha당 생산비 9억 2,100만원의 약 54%)을 지원하는 내역으로 산출되고, 변동금리(기준금리-2%p) 조건으로 단년 상환 조건이다. ② 시설 등 투자자금은 노지 스마트팜 시설 등 추가 시설투자와 농지 추가 확보(매입, 임대차) 등을 위한 자금으로, 개소당 18억원에 국비 100%와 실행률 50%를 적용하여 산출되고, 연리 1.5%로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2027년도 공동영농확산지원(용자) 세부 산출 내역]

(단위: 개소, 백만원, %)

구 분	산출 내역	조건	금액
① 운영자금	36개소 × 500백만원 (ha당 생산비 921백만원의 약 54%)	변동금리(기준금리-2%p), 단년 상환	18,000
② 시설 등 투자자금	36개소 × 1,800백만원 × 실행률 50%	연리 1.5%, 5년 거치 10년 상환	32,400
합 계			50,4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2027년부터 지원 대상 영농법인 조건이 기존 20ha 이상에서 50ha 이상으로 대폭 강화됨과 동시에 사업 목표가 농업법인 6개소에서 30개소 지원으로 대폭 상향될 계획이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시한 성공 모델(경북 영덕) 사례를 참고할 때, 지원 대상 조건을 일률적으로 50ha 이상으로 높이기보다는, 성공 모델 사례를 참고하여 면적 규모와 함께 작부체계의 혁신성, 소득모델의 다양성과 확산 가능성 등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동영농확산지원 사업은 지원 목표가 2026년 6개소에서 2027년 30개소로 상향됨과 동시에 지원하는 영농법인 조건이 2026년(20ha, 5인 이상)에서 2027년(50ha, 25인 이상)으로 대폭 상향될 계획이다.

[2027년도 공동영농확산지원(보조) 사업 개요]

□ 시설·장비

- (목적) 생산성 향상, 소득 극대화를 위한 영농 기반 일체 지원
- (대상) 공동영농법인
 - * (現) 면적 20ha, 참여 농가 5인 → (改) 면적 50ha 이상, 참여 농가 25인 이상
- (규모) 내역 사업 216억원, 50ha 법인 기준 개소당 30억원
 - *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 (기존) 6개소×20억×국비50%×2년차60% = 36억
 - (신규) 30개소×30억×국비50%×1년차40% = 180억
- (내용) 고효율 농기계, 영농시설*, 사업다각화 시설** 등
 - * 공동 육묘장, 타작물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농기계 보관창고
 - ** 농산물 반가공(껍질제거, 절단, 절임 등), 가공(두부 등 가공품 제조), 포장 시설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조건 상향에도 불구하고 ① 2026년에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벼(미곡류)를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대상 후보군을 확대할 계획이고 ② 2027년에는 9개 시·도에 대해 대상 법인을 1~5개소씩 배분하여 2027년 30개소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정부에서 성공 사례로 들고 있는 경북 영덕 팔각산절임배추영농조합법인 사례를 살펴보면, 영농조합법인을 통한 성과의 원인은 “면적의 확대”보다는 “단작에서 이모작으로의 작부체계의 전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영덕 사례는 영농면적 21ha, 참여농가 30호라는 규모에서도 이모작만으로 소득 4배, 가공 결합 시 소득 8배 증가라는 성과를 실증하였다.

[공동영농 추진 사례(경북 영덕)]

□ 사업 개요

- 사업비: 경북형 공동영농 지원사업(도비 40%, 군비 40, 자부담 20)
- 사업기간: 2024~2025(2년간)
- 사업자: 팔각산절임배추영농조합법인(대표 백성규, 63세)
- 사업위치: 영덕군 달산면 인곡1길 40 일원
- 사업규모: **참여농가 30호, 영농면적 21ha**(콩·봄배추/양파·가을배추)
- 지원내용: 10억원(영농장비, 공동육묘장, 농기계 보관창고)
- 작부체계: 벼 단작 → 이모작(夏 봄배추·콩 ↔ 冬 가을배추·양파)

□ 추진 경과

- (2024. 5월) 경북형 공동영농 사업자 선정
- (2024. 8월) 가을배추 식재 15ha, 양파 0.3ha → 가을배추 수확(11월)
- (2024.12월) 참여농가 첫 배당 3,000원/3.3㎡
- (2025. 3월) 봄배추 식재 13ha, 콩 등 5ha → 봄배추 수확(6월)
- (2025. 8월) 가을배추 육묘·식재

□ 성과 창출 계획

- (소득모델) 공동영농(생산) + 가공이 결합된 소득 모델
- (소득증대) 배추 이모작 농업소득 4배 UP, 절임가공시 8배 UP



* 공동영농·가공작업 참여 시 인건비 9~10만원/일, 농기계 작업 15~30만원 별도 지급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북도

그런데 2027년도 지원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성공모델로 제시한 사례의 규모(21ha)보다 2배 이상 큰 50ha로 설정되어 있고, 그동안 대체작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벼까지 지원 대상 작물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영농 면적 확대에 따른 생산비 절감이라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개별 농가 단위로 영농을 하고 있던 농가가 새롭게 영농법인을 결성하여 사업 지원을 받기보다는 기존에도 이미 대규모 영농을 실시하고 있는 법인이 사업 대상 요건을 충족하여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정평가 및 사업관리 과정에서 중복 문제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중간평가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7년에는 9개 시·도에 대해 대상 법인을 1~5 개소씩 배분하여 2027년 30개소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으나, 2025년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 현황서비스에 따른 농업법인의 시·도별 평균 재배면적을 살펴보면, 평균 재배면적이 50ha를 초과하는 지역은 인천, 전북뿐이며,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평균 20~30ha 수준이고, 서울·대구·울산·세종은 10ha 이상 경영체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감안하면 시·도별 법인 규모 등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기준을 설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시·도별 10ha 이상 농업법인 경영체의 재배면적 현황]

(단위: 개소, ha, ha/개소)

구 분	10ha 이상 농업법인 경영체 수	면적합계	평균 재배면적
서울특별시	-	-	-
부산광역시	-	-	-
대구광역시	-	-	-
인천광역시	3	303.54	101.18
광주광역시	-	-	-
대전광역시	1	14.20	14.20
울산광역시	-	-	-
세종특별자치시	-	-	-
경기도	42	919.30	21.89
충청북도	2	47.00	23.50
충청남도	139	3,614.97	26.01
전라남도	279	12,192.75	43.70
경상북도	16	475.10	29.69
경상남도	11	173.02	15.73
제주특별자치도	29	1,115.84	38.48
강원특별자치도	7	95.79	13.68
전북특별자치도	109	6,824.02	62.61
전국(합계)	638	25,775.53	40.40

자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황서비스(agrix) 바탕으로 작성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공동영농확산 지원을 위해 농업법인의 면적 기준을 50ha로 일률적으로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성공 사례(경북 영덕)를 참고하여 면적 규모와 함께 작부체계의 혁신성, 소득모델의 다양성과 확산 가능성 등을 선정 기준에 균형 있게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 현 황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¹⁾은 인구 소멸 위기인 농어촌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사업 대상(군) 주민등록 거주자에게 인당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2026년 추경 대비 8,610억 6,000만원 증액된 1조 1,657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	234,075	304,705	1,165,765	861,060	282.6

주: 1)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예산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의 선순환을 유도하려는 사업으로, 대상 군(郡)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개인당 월 15만원 이상의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을 지급한다. 이 중 국비 지원액은 월 15만원의 40%인 6만원이고, 지자체에서는 자체 지방비 추가 부담을 통해 인당 15만원을 초과하는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국비 지원액은 인당 6만원 상한이 존재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²⁾에 따라 행정

서창희 예산분석관(seochang@assembly.go.kr, 6788-4629)

1) 코드: 미래대응기금(지방계정) 4431-300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

안전부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개의 지정 지표³⁾와 가중치를 종합 고려하여 종합지수를 산정한 후 종합지수가 0.2 미만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하고 있으며,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소멸지역 중에서 농어촌 지역인 69개 군(郡)을 대상으로 한다. 2026년 9월 기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전체 현황은 다음과 같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시·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군(10개 시도 69개 군)
대구(1)	군위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0)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5)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충남(6)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7)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광주(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장흥군, 함평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0)	고령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0)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농림축산식품부는 2년간(2026년~2027년)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후 기간 영향평가 및 효과성 분석 등을 통해 본사업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

2026년 본예산은 10개 군(32.5만명)을 대상으로 월 15만원 기본소득의 국비 40%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었고(월 15만원×12개월×40%), 2026년 제1회 추경을 통해 706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 7개 군(19.6만명)이 추가로 선정되었다(월 15만원×6개월×40%).

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 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연평균 인구증감률, 유소년 인구비율, 고령화 비율, 조출생률, 청년 순이동률, 인구밀도, 재정자립도, 주간인구

2026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을 통해 선정된 지역과 각 지역별 예산은 다음과 같다.

[2026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및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 예산			
		계	국비(40%)	시도비(30%)	군비(30%)
본예산 (10개 군)	경기 연천	80,146	32,058	24,044	24,044
	강원 정선	58,709	23,483	17,613	17,613
	충북 옥천	86,870	34,748	26,061	26,061
	충남 청양	54,000	21,600	16,200	16,200
	전북 장수	36,886	14,754	11,066	11,066
	전북 순창	48,620	19,448	14,586	14,586
	전남광주 곡성	50,400	20,160	15,120	15,120
	전남광주 신안	71,669	28,667	21,501	21,501
	경북 영양	27,980	11,192	8,394	8,394
	경남 남해	69,070	27,628	20,721	20,721
	소계	584,350	233,738	175,306	175,306
제1회 추경 (7개 군)	강원 화천	20,597	8,239	6,179	6,179
	충북 보은	27,534	11,014	8,260	8,260
	전북 진안	22,050	8,820	6,615	6,615
	전북 무주	20,026	8,010	6,008	6,008
	전남광주 구례	22,123	8,849	6,637	6,637
	전남광주 보성	32,743	13,097	9,823	9,823
	경북 청송	21,600	8,640	6,480	6,480
	소계	166,673	66,669	50,002	50,002
합 계		751,023	300,407	225,308	225,30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7년에는 기본소득 대상 지역이 35개 군 내외(129.4만명)로 확대⁴⁾되고, 국비 지원율도 40%에서 50%로 상향될 계획으로,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안은 기본소득 1조 1,647억 6,500만원과 사업 운영비 1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4)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인구소멸지역 농어촌 전 지역(69개 군)으로 확대 시 대상인원은 약 272만명, 총사업비는 약 4조 8,897억원으로 추산되고, 국비 부담률 50% 적용 시 2조 4,449억원의 재정 소요가 추산된다.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계획안 세부 산출 내역]

금액	산출 내역
1,165,765 백만원	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164,765백만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35개 군 내외(129.4만명) ×월15만원×12개월×50% 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운영비) 1,000백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첫째, 동 사업은 2년간(2026~2027년)의 사업 기간 동안 기본소득 지급의 정책 효과를 면밀히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전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본사업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2027년 종료 예정인 사업의 대상 지역을 급격하게 확대하는 것이 시범사업의 검증 기능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성과평가 시 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인구 증가가 인접 시·군 주민의 전입에 따른 것인지를 연계 분석하고, 유입 규모뿐만 아니라 유입 인구의 연령 구성(특히, 청년 인구)과 정착 여부를 중요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시범사업은 본 사업의 본격적인 전국 시행에 앞서 제한된 범위에서 정책을 실행해 보고, 그 효과와 부작용을 확인한 뒤 본사업 확대 여부와 설계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운영된다.

동 사업 역시 사업기간이 2026~2027년 2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당초 사업을 기획할 당시 “시범사업 기간 사회적 논의 및 정책효과 성과평가(인구 유입, 지역 순환경제 활성화 등)를 거쳐 본사업 전환 검토”라는 향후 추진방향을 수립하였듯이 정책 효과를 검증한 뒤 본사업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 본래의 취지였다.

그런데 사업 종료연도인 2027년에 대상 군을 17개에서 전체 인구소멸지역(69개 군)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인 35개 내외로 확대하는 것은 사업 기간 동안의 정책 효과를 면밀히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전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

상으로 한 ‘본사업’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검증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기본소득 사업의 효과를 유의미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농어촌과 기본소득 지급 유무 외에 인구, 소득 등 외생변수가 유사한 비교대상 지역(대조군)을 선정하여 비교 연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⁵⁾ 이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대조군 선정을 통한 성과평가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대상지역(실험군)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비대상지역(대조군)을 선정하여, 두 집단 간 인구·경제 지표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기본소득 지급이라는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동 사업의 대상지역 선정은 공모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특정 인구소멸지역을 성과평가의 대조군이라는 이유로 공모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2027년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이 전체 인구소멸지역 69개 군의 약 50.7% 수준으로 확대되면, 현재 진행 중인 성과평가 연구에서 대조군으로 선정된 지역 중 상당수가 2027년 신규 대상 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성과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시범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2027년 말 예정된 기본소득 성과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27년 종료 예정인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을 급격하게 확대하는 것이 타당한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성과평가 시 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인구 증가가 타 도시 지역으로부터의 신규 유입에 따른 것인지 인접 시·군 주민의 전입에 따른 것인지를 연계 분석할 필요가 있고, 유입 규모뿐만 아니라 유입 인구의 연령 구성(특히, 청년 인구)과 정착 여부를 중요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상지역 확대에 따른 광역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과 그로 인해 대체되는 타 복지 사업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7년 동 사업의 국비 지원율이 40%에서 50%로 상향됨에 따라 지자체 부담률(시도비+군비)이 60%에서 50%로 감소하나, 사업 대상 인구가 2026년 52.1만명

5)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p.72~74 참고

에서 2027년 129.4만명으로 2.48배 확대되면서 지자체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총액은 약 2.07배⁶⁾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기초 지자체의 경우 국비 지원율이 상향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률이 감소하겠으나, 동 사업은 군 단위로 공모하여 대상이 선정되면 실제 재정 부담은 도와 군이 함께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 지자체의 경우 해당 시·도 내에 여러 기초 지자체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인구소멸지역 현황을 보면 전남광주(16개), 강원(10개), 경북(10개), 경남(10개) 등 일부 도에 밀집되어 있어, 2027년에 절반이 넘는 인구소멸지역 군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할 경우 하나의 시·도 내에서 여러 개 군이 동시에 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단위: 개)

구 분	전남 광주	강원	경북	경남	전북	충남	충북	인천	경기	대구	합계
인구감소지역 수	16	10	10	10	7	6	5	2	2	1	6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시·도 지방비 부담 문제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 대상 선정 시 예산확보 계획 및 실현 가능성 등 지방재정 여건을 사전에 고려하여 공모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하였으나, 인구소멸지역이 밀집된 도의 실제 재정 여력을 감안하여 대상지역 확대가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정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동 사업에 막대한 지방비가 투입될 경우 지자체가 기존에 자체적으로 추진해 오던 필수 복지사업이나 취약계층 지원 예산이 대체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기본소득 지급이 지역 주민의 소득안정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인 만큼,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노인복지, 아동복지, 저소득층 지원 등 기존 복지사업의 예산을 삭감한다면, 전체 주민 복지 수준에 실질적인 순증이 미미할 수 있고, 이는 기본소득 사업 효과의 취지를 반감시키게 된다.

6) - 2026년 지자체 총부담: 52.1만×60% = 31.26,
- 2027년 지자체 총부담: 129.4만×50% = 64.7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2027년 예산안 심사 시 대상지역 확대에 따른 광역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과 그로 인해 대체되는 타 복지 사업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풀필먼트센터 구축 사업: 기존에 지원 중인 산지 APC와의 역할 분담 및 SPC의 공적 책임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스마트풀필먼트센터 구축¹⁾ 사업은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통합 물류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공과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프로젝트형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55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027년도 스마트풀필먼트센터 구축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스마트풀필먼트센터 구축	-	-	-	5,500	5,500	순증

주: 1)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기간은 2027년~2030년이고, 총사업비(안)는 1,000억원²⁾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정부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 예산을 출자한 후 aT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농협, 도매법인, 농업법인, 유통업체 등의 민간 컨소시엄이 합작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계획이다. SPC의 지분은 공공 최대 49% 이하, 민간 최소 51% 이상으로 구성하여 민간 주도로 운영하되 공공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의사결정에만 참여할 계획이다.

서창희 예산분석관(seochang@assembly.go.kr, 6788-4629)

1) 코드: 미래대응기금(지방계정) 4431-310

2) 정부출자분 최대 490억원, 민간출자분 최소 510억원

[스마트풀필먼트센터 구축 사업 개요]

목적	공공·민간이 출자하는 프로젝트형 SPC를 설립하여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산지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통합 물류체계와 상품화 지원 등 농산물 유통 혁신 기반 마련
사업 기간	2027년 ~ 2030년
사업 규모	총 1,000억원 (정부 출자 최대 490억원, 민간 출자 최소 510억원) * 토지매입·부지조성 300억원, 건축비 450억원, 설비비 150억원, 설계·감리 및 부대비용 100억원
추진 방식	공모를 통해 민간 컨소시엄 선정, 프로젝트형 SPC 설립(지분: 공공 49% 이하, 민간 51% 이상, 민간 주도 운영) * 컨소시엄은 유통업체, 농협, 도매법인, 농업법인, 지방정부 등 가능
추진 체계 (안)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p style="text-align: center;">특수목적법인(SPC)</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공공 정부 → aT</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민간 컨소시엄(예시) 농협, 도매법인, 농업법인, 유통업체, 지방정부 등</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margin: 5px 0;"> 출자 ↓ ↑ 배당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2px solid black;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width: 60%;">스마트 풀필먼트 센터</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width: 10%;"> 대출 ← → 상환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width: 25%;"> 대출 (필요 시) 정책금융기관 · 금융기관 </div> </div> </div>
주요 방향 (안)	통합물류(산지 물량 집하, 수요별 재분류 후 합배송, 온라인도매시장 물량의 수도권 분산), 상품화 지원(소분·소포장·라벨링), 재고관리 대행(증장기)을 수행하는 스마트 풀필먼트센터 구축 * 크로스도킹 허브(1층), 상품화시설(1.5~2층), 냉장·냉동창고 등을 갖추고, 수도권 인근(경기 이천, 안성, 용인 등)에 신규 건립 또는 기존 물류시설 리모델링으로 조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7년도 계획안 55억원은 ① 스마트풀필먼트센터 구축을 위한 출자금 50억원
과 ② 마스터플랜수립 용역비 3억원, ③ SPC 설립·운영 지원비 2억원으로 구성된다.

[스마트팜필먼트센터 구축 사업 2027년도 계획안 세부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년 계획안	피보조 대상	비목
출자금	5,000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일반출자금 (480-01)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300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민간경상보조 (320-01)
운영비	200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민간경상보조 (320-0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첫째, 스마트팜필먼트센터 구축을 신규 추진하기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존에 지원 중인 산지 APC와의 역할 분담 및 연계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농산물 물류 경로는 ① 도매시장(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³⁾) 경유, ② 산지(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APC)⁴),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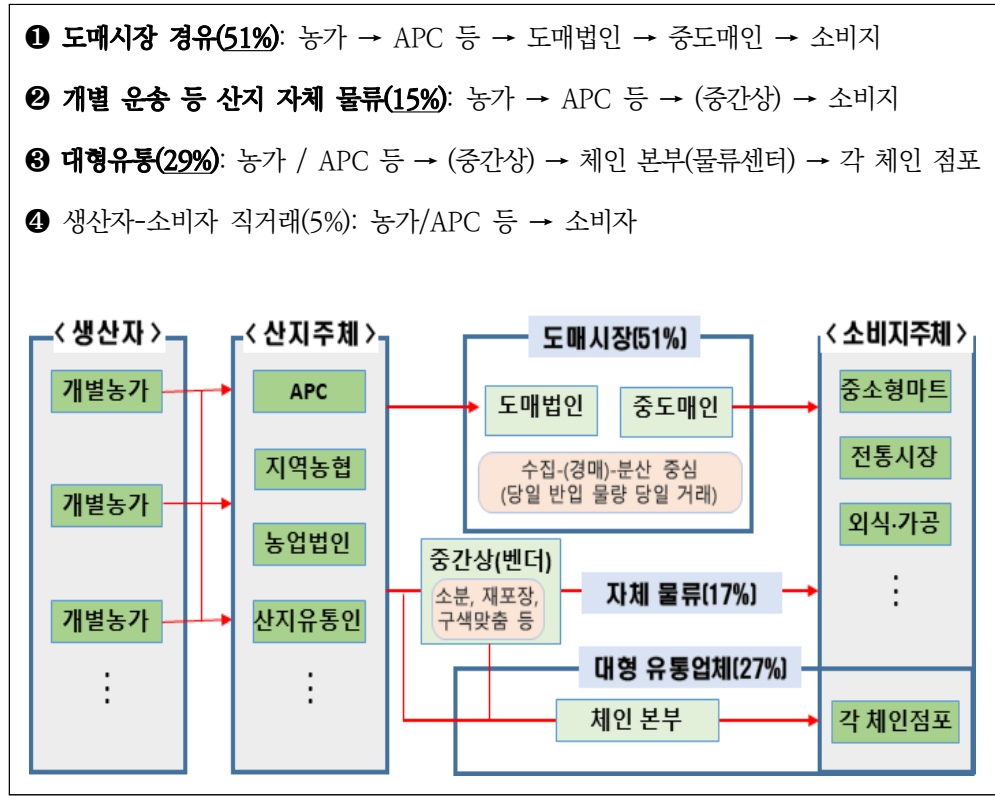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청과류·화훼류·조수육류(鳥獸肉類)·어류·조개류·갑각류·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3. ~ 6. (생략)
7. “**도매시장법인**”이란 제23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上場)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買受)하여 도매하는 법인(제2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생략)
9. “**중도매인**”(仲都賣人)이란 제25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 나.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非上場)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농협, 농업법인, 산지유통인 등) 자체 물류, ③ 대형 유통업체, ④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각각의 물류 경로별 비중은 ① 도매시장 경유가 51%이고, ② 산지 자체 물류가 15%, ③ 대형유통업체가 29%, ④ 생산자-소비자 직거래가 5%이다.

[농산물 물류 주요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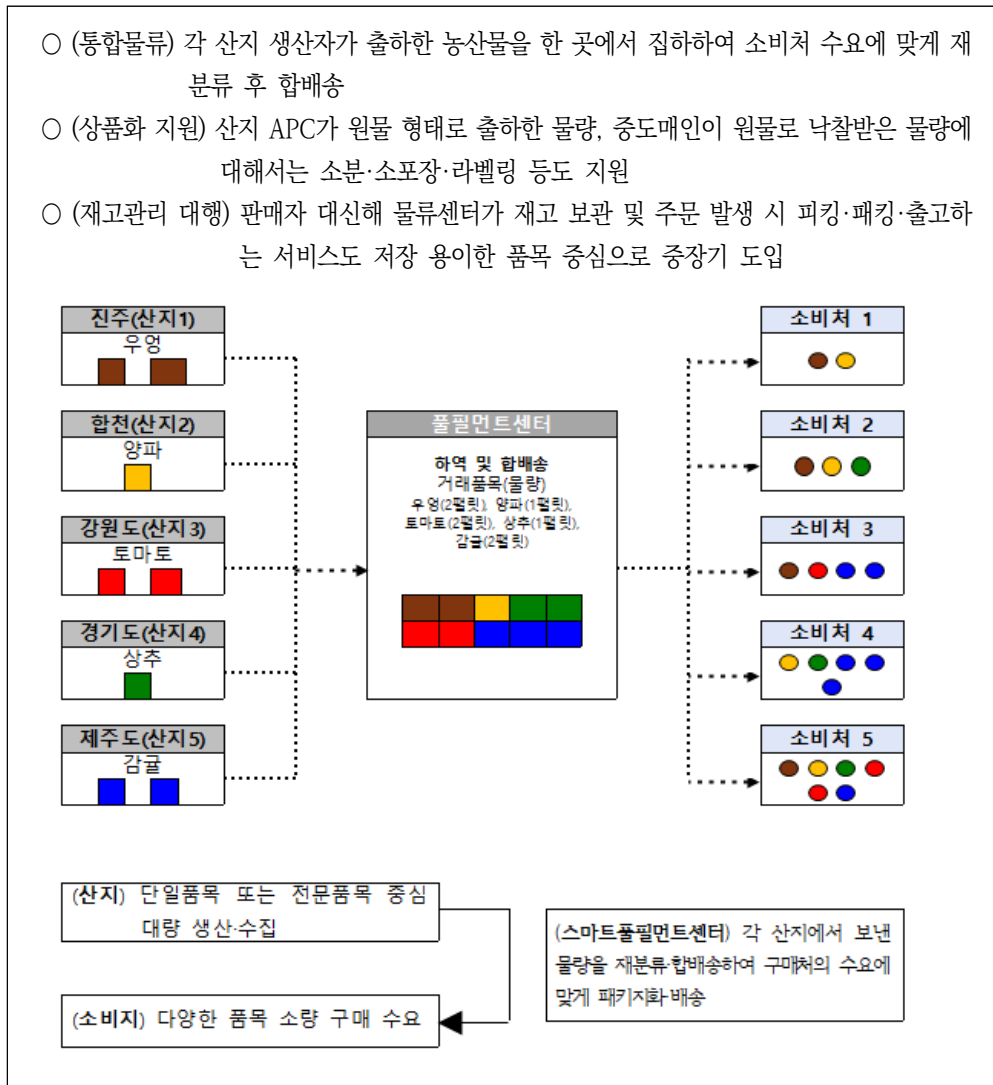
주: 2024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농산물이 생산자단체 등의 농가 단위 수집을 거쳐 APC에서 상품화된 뒤 소비지(도매시장, 대량 수요처 등)로 분산되며, APC의 상품화 역량과 소비지 유통 효율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에 따르면, APC 등 산지에서는 단일 품목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 반면, 소비지에서는 다품목 소량 구매를 희망하기에 양자가 상이하여 이를 연결하는 통합물류 기능이 필요하고, 이에 스마트풀필먼트센터를 설립하여 산지 물량을 모아 소비지로 합배송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스마트풀필먼트센터의 주요 기능]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APC는 대부분 소품목을 대량으로 출하하는 구조이고, 소포장시설을 갖춘 APC는 전체의 3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APC 단계에서 소분·소포장 등 상품화 역량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통합 물류와 상품화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유통비용을 낮추려는 동 사업의 목적은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지 물류의 디지털화와 유통 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스마트 APC 지원사업⁵⁾을 통해 산지의 선별·포장 자동화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APC 지원사업은 산지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저장·출하 기능을 갖춘 APC를 자동화·정보화 역량을 갖춘 스마트 APC로 전환하거나 새로 건립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7년 예산안은 277억 7,400만원(전년 대비 37억 7,400만원 증액)이 편성되어 있다. 사업의 주요 목적은 센서, 로봇, 통신 등 ICT로 APC 기능을 자동화하고 데이터 기반 경영과 정보 공동활용 체계를 갖춘 스마트 APC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소당 총사업비 80억원을 2년간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공공유형은 국비 50%, 지방비 50%)이다.

스마트 APC는 2023년 14개소에서 2024년 30개소, 2025년 60개소로 늘어났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030년까지 스마트 APC를 300개소로 확충하여 전체 APC의 50% 이상을 스마트 APC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5) 코드: 농업발전기금 3033-350의 내역사업

[스마트 APC 지원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목적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에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출하 등 복합 기능을 갖춘 APC의 스마트 APC 전환 및 건립 지원
지원 방식	시설·설비(H/W)와 정보시스템(S/W) 투트랙 지원 · (시설·설비) 시설 증축, 비파괴 선별기·자동 포장기 등 자동화 설비 · (정보시스템) APC 지원시스템 보급·고도화, 시스템 운영비 등
지원 내용	감리비, 토목·건축 공사, 전기·통신·소방, 시설·장비 설치, ICT 시스템 설치 비용 등
지원 비율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공공유형은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 한도	개소당 총사업비 80억원 이내
사업 기간	2년(사업계획에 따라 연차별 차등 배정)
2027년 예산안	277억 7,400만원 (시설자금 250억 8,700만원, 시스템 및 행정경비 26억 8,700만원)
추진 실적	스마트 APC(누계): ('23) 14개소 → ('24) 30개소 → ('25) 60개소
목표	2030년까지 300개소 구축(전체 APC의 50% 이상 스마트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런데 APC의 스마트화 수준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2024년 말 기준 전체 APC 577개소 중 수작업 또는 부분 자동화 수준(Level 0~1)인 APC가 498개소(86.3%)에 달하고, 업무 전반이 자동화된 Level 2는 74개소(12.8%), 공정·수발주가 통합된 Level 3는 5개소(0.9%)에 불과하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가능한 Level 4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난다.⁶⁾

[2024년 말 기준 APC 스마트화 수준 현황]

구분	스마트화 수준	개소	비중(%)
Level 0~1	수작업·정보 수기 관리 / 부분 자동화	498	86.3
Level 2	업무 전반 자동화, 입고·선별·저장 정보 전산 관리	74	12.8
Level 3	공정·수발주 통합, 로트 단위 관리·이력 추적	5	0.9
Level 4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글로벌 이력 추적	0	0.0
합 계		577	57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6) 국회예산정책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평가」, p.37~43 참고

이처럼 현재 수행 중인 APC의 스마트화가 부진한 상황에서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별도의 물류센터를 새로 구축하려는 것인데, 이는 기존의 APC를 스마트화하여 산지 단계의 가공·유통 역량을 강화하고 직거래 경로를 다양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스마트 APC 지원사업과 기능 측면에서 유사·중복될 우려가 있어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 APC 지원사업은 출하단계의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물류거점 기능이 없다는 점에서, 산지 물량(소품목 대량 출하)을 모아 소비지(다품목 소량 구매)로 합배송하는 것이 주요 기능인 스마트풀필먼트센터와 중복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유통구조 개선의 측면에서는 산지(APC) 단계에서의 소분·소포장 등 상품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스마트풀필먼트센터는 여러 산지의 품목을 한 곳에 모아 소비처별로 재분류·배송하는 거점 역할에 집중하고, 상품화 지원은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스마트풀필먼트센터 구축을 신규 추진하기에 앞서, 스마트풀필먼트센터와 스마트 APC 간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고, 유통구조 개선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두 시설을 서로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동 사업은 민간 주도 SPC 방식(민간 51%, 정부 49%)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물류비용 절감 및 농산물 물류체계 효율화 촉진이라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SPC의 공적 책임성 확보 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SPC 지분을 공공 49% 이하, 민간 51% 이상으로 구성함으로써 사업을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의사결정에만 참여할 계획이다. 이는 대규모 시설 투자에 필요한 민간 자본을 원활히 조달하고, 물류 전문성을 갖춘 민간이 경영 자율성을 가지고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민간의 혁신성과 효율성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일응 타당한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스마트폴필먼트센터에 출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통합 물류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는 반면, 민간이 주도하는 SPC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공익 목적이 민간 주주의 수익 추구 유인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에 따르면 SPC를 주도할 컨소시엄은 유통업체, 도매법인, 농업법인 등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 사업자로 구성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센터 이용요금을 낮추면 SPC의 수익과 배당이 감소하는 구조이므로, 민간 주주들은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용 요금과 운영 방식을 결정할 유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aT를 통해 간접적으로 의결권에 참여하므로 정부가 직접 의사결정에 관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마저도 정부 지분의 최대 비율은 49%라는 점에서 공모 단계에서부터 SPC의 공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모 이전에 정부 사전동의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정관·사업협약 등에 공익적 운영을 위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SPC의 공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공모지침 및 평가기준에 반영하여 SPC가 사업의 정책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농업 피지컬AX 실증 프로젝트¹⁾ 사업은 지난 2026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수립한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 전략」에 따라 농기계·로봇·방역·식품제조 등 농식품 전(全) 분야에 피지컬 AI 도입·실증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는 208억 1,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027년도 농업 피지컬AX 실증 프로젝트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농업 피지컬AX 실증 프로젝트	-	-	-	20,810	20,810	순증

주: 1)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기간은 2027~2030년이고, 총사업비는 5,562억원(국비 3,295억 5,000만원, 지방비 2,053억원, 민간부담 213억 5,000만원)이다.

[2027년도 농업 피지컬AX 실증 프로젝트 사업 연차별 소요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연차별 소요 예산				
	2027	2028	2029	2030	계
합 계	30,950	130,640	236,160	158,450	556,200
국비	20,810	79,183	138,142	91,415	329,550
지방비	6,150	46,350	92,350	60,450	205,300
민간부담	3,990	5,107	5,668	6,585	21,35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서창희 예산분석관(seochang@assembly.go.kr, 6788-4629)

1) 코드: 미래대응기금(지방계정) 4431-320

동 사업은 ① AI 농기계 공유지원(22억 5,000만원), ② AI 농업로봇 현장 확산 지원(97억 6,000만원), ③ 농장·지역 방역 AX 통합 패키지(78억원), ④ 국가식품클러스터 피지컬AI 테스트베드(10억원)의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① AI 농기계 공유지원(22억 5,000만원)은 AI 농기계 공유센터 15개소에 개소당 300백만원(지자체 보조 50%)을 지원하는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15개소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② AI 농업로봇 현장 확산 지원(97억 6,000만원)은 다시 ❶ 컨소시엄 지원(39억 600만원)과 ❷ 공동영농법인 등 지원(54억 400만원), ❸ 사업 운영 및 성과확대(4억 5,000만원)로 구성된다. ❶ 컨소시엄 지원은 로봇기업과 농가로 구성된 컨소시엄 5개소에 농가를 18호씩 배정하여 대당 6,200만원(국비 70%)을 지원할 계획이다. ❷ 공동영농법인 등 지원은 규모화된 공동영농법인·선도 경영체 등에 AI 농업로봇 120대를 대당 6,430만원(국비 70%) 지원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❸ 사업 운영 및 성과확대(4억 5,000만원)는 선정평가(7,000만원), 이행점검(6,800만원), 성과분석(6,200만원), 성과확산(1억 2,000만원), 기술지원(1억 3,000만원)으로 산출되었다.

③ 농장·지역 방역 AX 통합 패키지(78억원)는 ❶ 농장 AX 보급(25억원)과 ❷ 통합 지역거점소독시설 구축·운영(53억원)으로 구성된다. ❶ 농장 AX 보급(25억원)은 출입통제, 기록관리, 청소·소독 자율주행 로봇·차량, CCTV·탐지장비, 자기진단 시스템 등 5대 분야의 피지컬 AI 기술을 개소당 5억원씩 10개소에 지원(지자체 보조 50%)할 계획이다. ❷ 통합 지역거점소독시설 구축·운영은 센터 구축 비용 6억원, 연계 AI 솔루션 15억원, 로봇·드론 운영 32억원으로 산출된다.

④ 국가식품클러스터 피지컬AI 테스트베드(10억원)는 통합 MP·ISP 수립 1억원, 멀티모달 데이터 수집 인프라 구축 2억 7,000만원, 5G 특화망·로봇 연계 인터페이스 구축 1억 8,000만원, 디지털 트윈·3D 맵 구축 2억원, 데이터 저장·관리·보안 체계 마련 1억 5,000만원, 공정 SOP·위생·안전 체계 마련 1억원으로 산출된다.

[농업 피지컬AX 실증 프로젝트 2027년도 예산안 세부 내역]

구 분	2027년 계획안	세부 내역
① AI 농기계 공유지원	22억 5,000만원	AI 농기계 공유센터 15개소 × 3억원 × 지자체 보조 50%
② AI 농업로봇 현장 확산 지원	97억 6,000만원	컨소시엄(39억 600만원, 5개소×농가 18호×6,200만원×국비 70%) + 공동영농법인 등(54억 400만원, 120대×6,430만원×국비70%) + 사업 운영 및 성과확대(4억 5,00만원)
③ 농장·지역 방역 AX 통합 패키지	78억원	농장 AX 보급(25억원, 5억원×지자체 보조 50%×10개소) + 통합 지역거점소독시설 구축·운영(53억원)
④ 국가식품클러스터 피지컬AI 테스트 베드	10억원	통합 MP·ISP 수립(1억원) + 멀티모달 데이터 수집 인프라 구축(2억 7,000만원) + 5G 특화망·로봇 연계 인터페이스 구축(1억 8,000만원) + 디지털 트윈·3D 맵 구축(2억원) + 데이터 저장·관리·보안 체계(1억 5,000만원) + 공정 SOP·위생·안전 체계(1억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농업·방역 분야 피지컬 AI 구현을 위해서는 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사업을 통해 생성·수집되는 데이터의 축적·활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을 통해 농가에 보급하는 AI 농기계나 방역 AX 통합 패키지 등은 센서·통신·소프트웨어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피지컬 AI 구현을 위해서는 GPS·통신 등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 구축, 체계적인 사후 A/S 체계가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에 따르면, 지역 선정이나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 통신·GPS 인프라 여건이 미흡한 지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²⁾

2)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희망 지자체의 사업계획이 AI농기계 공유 지원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지 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 지자체를 공모·선정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농업 피지컬AX 실증 프로젝트 사업 추진 계획]

□ AI 농기계 구입 방법 및 절차

- 지자체*(시·군·구)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구입대상 세부기종, 모델을 선정 및 AI 농기계 구입(조달 구입 등) 실시하고, 농식품부**는 지자체에서 AI 농기계(자율주행 트랙터, 등)에 맞게 구입 및 운영 여부 점검할 계획

* 지자체는 지역여건, 현장수요, 호환성, 유지보수 등을 고려하여 농기계 선정·구입 운영중

** 사업대상자 선정 검토 시 지자체 사업계획서 내 세부 구입계획(농기계 세부기종 등) 적절성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특히, 이러한 인프라 문제는 밭농업 분야에서의 피지컬 AI 적용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논농업과 달리 밭농업은 경지가 산지나 구릉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고 필지 형상이 불규칙하며 과수원처럼 수목이 위성 신호를 가리는 지형적 특성을 가진 경우도 많아, 이동통신 기지국 밀도가 낮고 GPS 위성 신호의 수신 감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유사한 성격의 타 부처 사업인 농촌진흥청의 ‘농업용 로봇 실증지원 사업’에서도 통신·GPS 수신 불량 문제가 여러 해에 걸쳐 지속적으로 지적³⁾된 바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농장·지역 방역 AX 통합 패키지 사업은 2027년에 1개 도, 2030년까지 9개 도로 순차 지원할 계획인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거점소독시설 등은 기존 통신망 및 전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대상 선정 전에 지역별 통신망 및 전산 연계 여건 등을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고, 대상 지자체·농장을 어떤 절차로 선정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지컬 AI의 핵심은 현장에서 장비가 작동하며 생성되는 방대한 주행·작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학습하여 성능을 고도화하는 것인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한 현재 사업 계획에는 데이터의 체계적인 축적 및 활용 방안이 미흡하다.

3)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p.294~302 참고

농림축산식품부는 AI 농기계 공유지원 사업의 주 목적은 AI 농기계의 활용 확산이며 관련 데이터 수집·활용은 추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으며, 향후 데이터의 유형·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공데이터 연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농업 피지컬AX 실증 프로젝트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 축적·활용 계획]

- AI 농기계 공유지원 사업을 통해 생성·수집되는 데이터의 축적·활용계획
 - ‘AI 농기계 공유지원’ 사업은 농업인의 자율주행 트랙터 등 AI 농기계 활용 확산(접근성 제고 등)이 주목적으로 하며, ‘AI 농기계 공유지원’과 관련한 데이터 수집·적재는 필요 시 수집 방안을 검토할 계획
- 로봇 보급·운영 과정에서 생성되는 현장 데이터는 참여기업이 수집하여 AI 기술 및 로봇 성능 고도화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향후 수집 데이터의 유형·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공 데이터 연계 방안을 구체화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를 통해 볼 때, 현재는 동 사업을 통해 생성·수집되는 데이터의 축적·활용 계획은 별도로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 사업의 추진 배경인 「농업·농촌 AX 데이터 전략」(2026.6.29.)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9년까지 농산업 종사자가 별도로 데이터를 기록·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농기계·시설장비·유통설비 등의 작동 과정에서 데이터가 자동으로 축적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위해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보조사업 추진 시 데이터 생성·제공을 유도하고, 데이터셋 구축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③ 현장 데이터 자동 수집 체계 구축

- **농산업 종사자가 별도로 데이터를 기록·제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농기계·시설장비·유통 설비 등이 작동 과정에서 데이터가 자동 축적되는 구조 기반 마련(~2029.)**
 - 장비를 활용하는 농작업에 대한「현장 데이터 자동수집 기반 구축」사업 추진
 - 수집이 어려운 생육·농작업 데이터를 자동·간편 수집하는 체계 구축
 - **데이터 수집 가능한 보조사업 추진 시 데이터 생성·제공 유도, R&D 과제는 기업과 데이터 공개 협의, 데이터셋 구축 사업과 연계**

자료: 농업·농촌 인공지능 대전환(AX) 데이터 전략(2026.6.29.)

따라서, 농기계, 농업로봇 등 동 사업 대상 역시 데이터 자동 축적 및 데이터셋 구축 사업과 연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해서는 농업 피지컬AX 실증 프로젝트 사업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자동 수집·표준화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방역 분야 피지컬 AI 구현을 위해서는 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사업을 통해 생성·수집되는 데이터의 축적·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농지불법 신고포상금¹⁾ 사업은 「농지법」 제52조²⁾에 따라 농지 소유 상한 위반, 거짓·부정 농지 소유, 불법 농지전용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여 농지법 위반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신고·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2027년부터 기획예산처 소관으로 공익신고장려기금이 신설되면서 기존에 농지관리기금에서 수행되어 온 농지불법전용 신고포상금³⁾ 사업이 공익신고장려기금으로 이관되어 신규로 편성되었고, 2027년도 계획안에는 11억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농지불법 신고포상금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농지불법 신고포상금	-	-	-	1,100	1,100	순증

주: 1)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서창희 예산분석관(seochang@assembly.go.kr, 6788-4629)

1) 코드: 공익신고장려기금 3010-464

2) 「농지법」

제52조(포상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 1의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2.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4.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5.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6.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7.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3)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사업명은 '농지불법전용 신고포상금'이나 농지불법전용 외에 부정농취증 발급,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모두 지급하고 있음

2027년 계획안 11억원은 신고포상금 10억원과 일반수용비 1억원으로 구성되며, 신고포상금 10억원은 연간 2,000건에 대해 건당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역으로 편성되었다.

[2027년도 농지불법 신고포상금 사업 계획안 산출 내역]

2026년 계획(농지관리기금)	2027년 계획안(공익신고장려기금)
가. 포상금 : 0.5백만원 × 14건 = 7백만원	가. (포상금) 0.5백만원 × 2,000건 = 1,000백만원 나. (일반수용비) 1식 × 100백만원 = 100백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법령 개정으로 인한 신고 대상 확대, 지급 요건 완화를 근거로 2027년 계획안에 신고 건수 2,000건이 편성 근거로 산출되었으나, 2026년 10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행적·경미한 위반은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한 점을 고려하여 2027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산출근거인 2,000건의 농지불법 신고 건수를 재검토하고 이에 따라 계획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26년 6월 「농지법」이 개정(시행 2026.8.28.)됨에 따라 「농지법」상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거짓·부정 농지 소유, 불법 농지전용 외에 불법 농지 임대차 행위가 추가⁴⁾되었고, 2026년 8월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시행 2026.9.18.)되면서 포상

4) 「농지법」

제52조(포상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 1의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2.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4.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5.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6.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7.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금의 지급기준과 연간 상한액이 상향(기준 150만원→ 개정 1,500만원)⁵⁾되었다.

〔「농지법」 개정으로 인한 농지불법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세부 내역〕

구 분	위반행위	포상금(건당)	
		개정 전	개정 후
법 제52조제1호	부정 농취증 발급	10만원	100만원
법 제52조제1호의2	(신설) 불법 농지 임대차·무상사용	-	50만원
법 제52조제2호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 위반	30만원	50만원
법 제52조제3호	무허가·부정 농지전용	50만원	100만원
법 제52조제4호	무신고 농지전용	10만원	30만원
법 제52조제4호	무신고 농지전용 특례 위반	50만원	30만원
법 제52조제5호	무허가 타용도 일시사용	30만원	50만원
법 제52조제6호	무신고 타용도 일시사용	10만원	30만원
법 제52조제7호	전용 토지 무단 목적변경	30만원	50만원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고하여 재구성

뿐만 아니라,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 사유 범위가 늘어났는데, 구체적으로 오직 수사기관의 처분 시에만 지급할 수 있었던 신고포상금을 수사기관의 처분 외에 행정처분(처분명령, 허가취소, 원상회복명령, 시정명령)이 확정된 경우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⁶⁾

5) 「농지법 시행령」

제72조(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4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의 1명당 연간(포상금 지급 결정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지급상한은 1천5백만원**으로 한다.

6) 「농지법 시행령」

제72조(포상금의 지급)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5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한 자에 대하여 해당 고발 또는 신고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1. 검사가 공소제기·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 가. 법 제11조제1항(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항(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명령**
 - 나.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취소나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조치 명령
 - 다. 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 라.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농지불법전용 적발건수는 33,320건(연평균 6,664건)이고, 이 중 고발은 1,885건, 원상회복명령은 30,131건으로 나타났고, 이를 근거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연간 2,000건에 대해 건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역으로 2027년 동 사업 계획안 중 신고포상금 10억원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최근 5년(21~25년)간 농지불법전용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금액]

(단위: 건)

구 분	고 발	원상회복명령	성실경작 지시등	합 계
2021	545	4,007	236	4,788
2022	360	4,563	292	5,215
2023	381	9,022	395	9,798
2024	335	6,805	214	7,354
2025	264	5,734	167	6,165
합 계	1,885	30,131	1,304	33,32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2,000건은 전국 1,447만 필지(농지대장 기준)의 약 0.01% 수준으로 편성한 것이고,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불법행위 경각심 확대와 최근 신고 건수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신고센터 접수 건수는 2026년 6월 45건에서 8월 362건으로 증가하였고, 이 추세(2개월 평균 약 317건 증가)가 이어질 경우 2027년 8월까지 신고 건수는 2,264건 이상 누적될 것으로 추계하였다.

[농지불법신고 건수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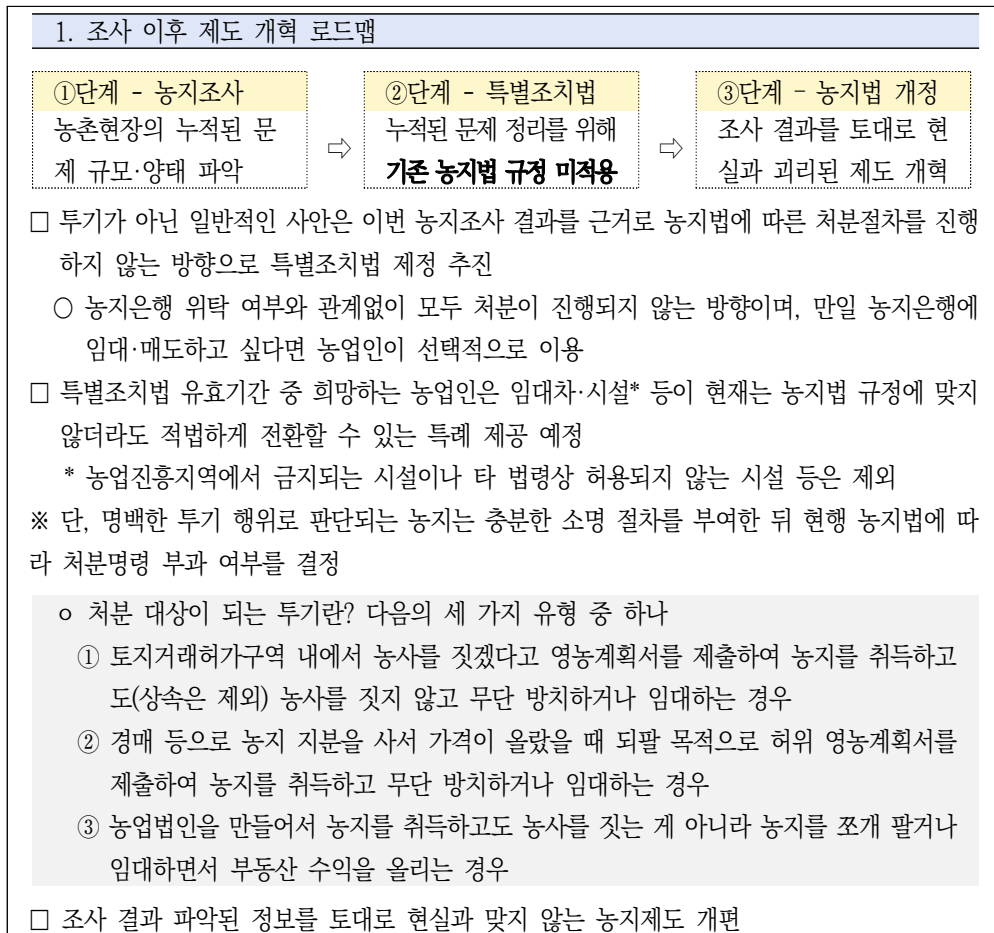
(단위: 건)

구분	2026.6	2026.8	2026.10월 (추계)	2026.12월 (추계)	2027.2월 (추계)	2027.4월 (추계)	2027.6월 (추계)	2027.8월 (추계)
건수	45	362	679	996	1,313	1,630	1,947	2,264+ α
증가분	-	317	317	317	317	317	317+ α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6년 10월 8일 농지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하면서, 명백한 투기 행위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안은 농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농지 전수조사 이후 제도 개혁 로드맵]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참고자료”, 2026.10.8

구체적으로 상속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영농 곤란 농지 등은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않고, 인허가 없이 설치된 농업용 창고 등에 대해서도 원상회복 조치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특례기간을 운영하여 관행적 임대차를 서면계약 체결 시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하고, 미허가 시설은 사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주요 유형별 후속조치 및 농지 이용 양성화 특례기간 운영 계획]

2. 주요 유형별 후속조치

- ※ 특별조치법 제정 후 적용될 사항으로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음
- (상속농지) 농지조사에서 상속농지의 휴경이나 소유상한 초과 등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처분 대신 향후 제도 개선하는 자료로 활용
 - * 현행법상으로도 상속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농업인이 소유하면서 임대차 가능
-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고령으로 직접 경작하지 못하거나 이웃·친척 등이 대신 경작하는 경우, 현행 농지법 상의 임대 허용요건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조사에 따른 처분 진행하지 않음
 - * 현행법상으로도 고령농이 은퇴 후 보유하는 농지는 일정 요건 하에 임대차 가능
- (중증·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 복잡한 농지) 소유자가 다수이거나 명의관계가 복잡하여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 체결이 어려운 경우에도,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진행하지 않음
- (맹지·영농곤란 농지) 현실적으로 영농이 불편하여 비워두고 있는 농지의 경우에도 세 가지 투기 유형 외에는 처분 진행하지 않음
-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 농업용 창고, 농업인 주택, 간이 농산물 처리시설 등이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된 경우, 조사에서 그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원상회복 조치를 진행하지 않음
 - ⇒ 그 외에도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농지조사 이후에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

3. 농지 이용 양성화 특례기간 운영

- ※ 특별조치법 제정 후 적용될 사항으로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음
- (관행적 임대차) 현재 규정에 합치하는 임대차 여부인지를 묻지 않고, 특례기간 중 서면 계약 체결하면 계약기간 동안 적법 임대차 인정
 - 농지은행 위탁 시에도 기존 실경작자를 지정하여 계약 체결 가능
- (미허가 시설) 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사전에 전용 허가 등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았던 시설은 사후 허가 신청 가능
 - 단, 비농업용 시설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할 필요
- (지목 현실화) 장기간 임야화된 농지, 농지로 장기간 이용되어 온 임야, 묘지 등 지목과 실제 상태가 다른 경우에는 신청 시 지목 변경 가능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참고자료”, 2026.10.8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향후 정책 방향에 따르면, 관행적 임대차 등이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고 특례기간 중 적법한 임대차로 전환될 수 있게 되면서 2027년 농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가 당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계한 건수에 비해 감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여 2027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지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참고하여 신고포상금의 산출근거인 2,000건의 농지불법 신고 건수를 재검토하고 이에 따라 계획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부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 농지관리 기금(이하 “농지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이하 “FTA기금”)을 ‘(가칭)농업발전기금’으로 통·폐합하여 운용할 계획이다.

현재 농안기금과 FTA기금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농지기금은 한국농어촌공사(KRC)에 위탁되어 관리 중이다.

농업발전기금의 2027년도 총수입 계획안은 2026년 계획 대비 2조 4,751억 3,000만원 증액된 8조 8,331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고, 21개의 목(目)으로 구성된다.

[2027년도 (가칭)농업발전기금 총수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세입 목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총수입	4,658,400	6,358,041	6,466,812	8,833,171	2,366,359	36.6
토지대여료(51-511)	9,234	11,170	11,170	13,653	2,483	22.2
기타관유물대여료(51-513)	1,870	1,418	1,418	1,527	109	7.7
지방자치단체이자수입(54-541)	149	39	39	39	-	-
기타민간이자수입(54-544)	56,408	72,289	72,289	77,661	5,372	7.4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59,112	109,402	109,402	109,482	80	0.1
물수금및추징금(56-562)	-	32	32	32	-	-
과징금(56-565)	15	-	-	-	-	-
변상금(57-571)	2,141	-	-	-	-	-
위약금(57-572)	6,624	3,098	3,098	4,060	962	31.1
가산금(58-581)	2,192	2,189	2,189	2,250	61	2.8
법정부담금(59-593)	813,426	912,321	912,321	819,545	△92,776	△10.2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111,826	115,294	115,294	115,294	-	-

서창희 예산분석관(seochang@assembly.go.kr, 6788-4629)

(단위: 백만원, %)

세입 목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기타잡수익(69-691)	50	-	-	-	-	-
재고자산매각대(73-731)	647,847	778,449	778,449	764,501	△13,948	△1.8
기타민간용자원금회수(75-754)	1,799,591	2,208,656	2,208,656	1,993,711	△214,945	△9.7
특별회계전입금(91-912)	-	704,030	812,801	4,781,870	3,969,069	488.3
기금예탁원금회수(92-923)	700,000	90,000	90,000	-	-	-
기금예수금(94-943)	150,338	460,000	460,000	10,000	△450,000	△97.8
기금예탁이자수입(95-953)	-	1,350	1,350	-	-	-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85-852)	23,087	10,000	10,000	10,000	-	-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85-853)	274,490	878,304	878,304	129,546	△748,758	△85.3

주: 1)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7년도 총지출 계획안 역시 8조 8,331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고, 24개의 프로그램과 6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2027년도 (가칭)농업발전기금 총지출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총지출	4,661,911	6,358,041	6,466,812	8,833,171	2,366,359	36.6
피해보전직불	139	18,000	18,000	12,200	△5,800	△32.2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센터운영	2,998	3,190	3,190	1,932	△1,258	△39.4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출연	-	-	-	200,000	200,000	순증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용자)	182,400	182,400	182,400	182,400	-	-
맞춤형농지지원(용자)	1,113,440	1,807,690	1,807,690	2,261,730	454,040	25.1
농지관리기능강화구축	38,085	39,308	39,308	43,941	4,633	11.8
종자산업기반구축	10,446	10,121	10,121	6,896	△3,225	△31.9
비축지원	906,946	898,394	898,394	677,154	△221,240	△24.6
농산물유통소비정보조사	4,146	4,248	4,248	4,336	88	2.1
자조금 지원	13,110	16,045	16,045	16,045	-	-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20,958	19,249	19,249	20,876	1,627	8.5
농업관측	-	-	-	9,050	9,050	순증
도매유통활성화지원	1,540	1,540	1,540	2,340	800	51.9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산지유통종합자금	343,156	320,310	320,310	617,918	297,608	92.9
도매유통활성화지원(용자)	115,399	146,000	146,000	57,200	△88,800	△60.8
농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용자)	-	-	-	150,000	150,000	순증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용자)	-	7,234	7,234	4,460	△2,774	△38.3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9,271	18,795	18,795	6,727	△12,068	△64.2
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	29,387	47,380	47,380	39,733	△7,647	△16.1
농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	14,868	30,387	30,387	50,537	20,150	66.3
화훼산업진흥지역육성(시범)	800	1,000	1,000	-	△1,000	순감
농산물 공동 출하확대 지원	-	25,879	25,879	21,663	△4,216	△16.3
농산물안정생산공급지원	-	37,659	37,659	47,325	9,666	25.7
과수생산유통지원(용자)	27,277	27,277	27,277	23,185	△4,092	△15.0
과수생산유통지원	63,569	63,474	63,474	50,216	△13,258	△20.9
원예시설현대화	7,073	5,172	5,172	4,330	△842	△16.3
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	17,870	17,870	17,870	15,190	△2,680	△15.0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6,175	5,497	5,497	4,886	△611	△11.1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용자)	60,135	39,500	39,500	18,450	△21,050	△53.3
농업발전종합자금(용자)	-	-	-	216,400	216,400	순증
농식품소비기반조성	-	122,716	172,716	109,971	△62,745	△36.3
국가인증농식품지원	-	5,067	5,067	4,967	△100	△2.0
축사시설현대화(용자)	77,736	106,761	106,761	-	△106,761	순감
축사시설현대화	35,430	35,892	35,892	38,046	2,154	6.0
대단위농업개발(농지)	104,500	90,300	90,300	84,058	△6,242	△6.9
새만금지구개발	51,516	176,000	176,000	128,500	△47,500	△27.0
농지연금(용자)	274,547	276,629	276,629	344,420	67,791	24.5
농지이용관리지원	13,540	13,944	72,715	36,742	△35,973	△49.5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	2,835	2,710	2,710	2,830	120	4.4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용자)	6,000	4,000	4,000	3,400	△600	△15.0
종자수매·공급	72,738	68,543	68,543	73,078	4,535	6.6
농지종합정보화(정보화)	2,882	2,866	2,866	5,224	2,358	82.3
농축산물 할당관세 통합관리	-	-	-	944	944	순증
인건비	2,491	2,580	2,580	2,757	177	6.9
인건비(유통개선사업운영)	-	5,279	5,279	51,043	45,764	866.9
기타경비	2,519	1,203	1,203	1,196	△7	△0.6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관세할당물량수입관리비	185	172	172	162	△10	△5.8
농지은행교육지원사업	326	315	315	308	△7	△2.2
농지은행사업관리비	57,387	58,812	58,812	64,617	5,805	9.9
조성토지관리처분비	6,344	4,291	4,291	4,309	18	0.4
FTA사업계획수립및관리비	885	840	840	836	△4	△0.5
유통개선사업 운영	57,605	56,249	56,249	16,236	△40,013	△71.1
농지불법전용신고포상금	6	7	7	-	△7	순감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원금상환	-	-	-	1,522,547	1,522,547	순증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16,663	27,712	27,712	26,335	△1,377	△5.0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예탁	90,000	-	-	-	-	-
통화금융기관예치	11,849	10,000	10,000	-	△10,000	순감
비통화금융기관예치	155,264	838,166	838,166	999,157	160,991	19.2
농식품글로벌벌육성지원자금(융자)	459,410	510,000	510,000	400,000	△110,000	△21.6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170,065	143,368	143,368	144,368	1,000	0.7

주: 1)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첫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시하는 기금 통·폐합의 구체적인 실익이 부족하고 통·폐합에 따른 기금의 재정 건전성 개선 효과는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농특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의존하는 방식 외에 적극적인 세입 발굴과 엄격한 지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기금 재정 건전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기금 통·폐합의 주요 배경은 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7개 기금¹⁾ 중 상당수가 자체 재원만으로 사업비 소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과 ② 개별 기금의 규모가 작아, 효율적인 집행과 여유자금의 신속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FTA기금, 축산발전기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기금 통·폐합의 주요 배경]

- 농식품부가 운용 중인 7개 기금* 가운데 상당수는 자체 재원만으로 앞으로의 사업비 소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 * 농안기금, 농지기금, FTA기금, 축발기금, 직불기금, 재보험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 기금은 자체 재원(부담금 등)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출↑ + 자체 재원↓' 흐름이 이어지며 기금 재정 여건 악화
 - 농특회계 전입 근거가 법률에 명시된 기금 외에는 부족 재원을 충당하기 어려워 채무가 누적*되고, 필요한 지출마저 제약
 - * 농지·농안·축발·FTA 기금은 공자기금 예수금 잔액은 총 3.1조원 수준이며, 연간 이자 부담은 1,200억원 내외로 추산(2026. 8월 기준)
- 개별 기금의 규모가 작아, 효율적 집행과 여유자금의 신속적 운영에 한계
 - 피해보전직불, 가격안정제와 같은 예비비성 성격의 사업에서 대규모 소요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감당할 재원을 별도로 마련하기 곤란
- 정책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소관 기금 체계의 재정비 필요
 - 기금이 처음 설치된 '60~'00년대와 달리, 기후변화, 고령화, AX 등 이전에 없던 과제에 대응하도록 요구받는 상황
 - 반면, 기금 간 칸막이로 인해 새로운 정책과제에 대한 여유 재원 재배분과 여건에 맞춘 탄력적 기금운용 곤란
- 농특세 세입 증가* 계기로 기금을 통합하여, 기금의 부족 재원·채무를 해소하는 동시에 기금 재정 지속가능성과 운영 효율성 제고 필요
 - * ('25.7월, 누적) 46,376억원 → ('26.7월, 누적) 129,876억원(+83,500억원, 180.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구체적으로, 2026년 8월 기준 3개 기금(농안기금·농지기금·FTA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잔액은 총 1.5조원 수준이며, 이에 따라 연간 이자 부담이 600억원 내외로 추산된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지관리기금·FTA기금·축산발전기금의 공자기금 예수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잔 액
농안기금	180,000	379,758	-	13,300	127,666	339,151	1,039,875
농지기금	-	-	-	-	-	460,000	460,000
FTA기금	-	-	-	-	22,672	-	22,672
합 계	180,000	379,758	-	13,300	150,338	799,151	1,522,54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동 3개 기금의 재정 건전성 저하 원인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원의 확보 없이 농산물 할인지원, 농지매입 등 사업비 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점을 들고 있다.

농안기금은 2020년까지는 수입이 양호하였으나 이후 소비자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²⁾의 지출이 매년 당초 계획을 크게 초과하여(2024년 계획액:1,236억원/지출액:1,823억원, 2025년 계획액:1,234억원/지출액:2,434억원, 2026년 계획액:1,227억원/지출액:4,727억원) 그 부족분을 공자기금 차입으로 충당 해왔다.

FTA기금은 본래부터 자체 수입 재원이 부족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하 '농특회계') 전입금에 의존³⁾해 온 구조였으나, 2023년부터 농특회계 세수 부족으로 전입금마저 편성되지 못하였고, 민간융자원금회수 실적도 2022년 1,994억원에서 2025년 1,019억원으로 매년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농지기금은 농지보전부담금 수입이 2021년 1조 3,000억원에서 2025년 6,500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세부사업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의 지출이 2025년 1조 1,134억원에서 2027년 2조 2,617억원으로 급증하여, 2025년에 여유자금이 고갈 되고 채무가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2)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041-300의 내역사업

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②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자유 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으로의 전출금

[농안기금·농지기금·FTA기금의 재정 건전성 저하 원인]

(단위: 백만원)

□ 수입원의 확보 없이 농산물 할인지원, 농지매입 등 사업비의 급격한 지출증가는 공자기금 예수금 등 채무 증가 및 기금 재정 건전성 저하의 원인이 됨

- (농안기금) '20년까지 수입 양호 → 농산물 할인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지출 큰 폭 증가 (+1~2천억원), 수입 감소, 사업 이관(일반회계→기금) 등에 따라 악화
- 소비자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세부사업 “농식품소비기반조성사업”의 내역사업)의 급격한 지출증가*

* 농식품소비기반조성사업: ('24년) 당초 123,649 → 수정 182,349(+58,700, 예비비), ('25년) 123,424 → 243,424(+120,000, 공자기금 예수), ('26년) 122,716 → 472,716(+350,000, 공자기금 예수)

- (FTA기금) 수입 재원이 부족한 기금으로 농특에 의존하는 구조 → 농특 전입 중단('23년~) 후, 융자금 회수 감소*, 사업 축소·이관 등 지출예산 대폭 감소

* 민간융자원금회수: ('22년) 199,399, ('23) 152,985, ('24) 139,559, ('25) 101,889

- (농지기금) 부담금 개편('23년) 전 흑자 유지 → 농지매입 등 지출 폭 증가, 부담금 감소 ('21년 1.3조원 → '25. 0.65) 등 여유자금 고갈('25년) 및 채무 증가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처분농지 매입 등으로 농지매입사업비(세부사업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의 내역사업)의 급격한 지출증가*

*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25년) 1,113,440, ('26년) 1,807,690, ('27년) 2,261,730
(내역)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25년) 962,500, ('26년) 1,617,000, ('27년) 1,155,000
(내역) 처분농지매입: ('27년) 886,800(신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채무·이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금의 통·폐합을 통해 농특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아 기존의 채무를 정리하고, 농특회계로부터 전입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발생하는 결손을 보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2027년 농업발전기금 계획안에는 특별회계전입금이 4조 7,818억 7,000만원 편성되어 있다.

[2027년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전입금 계획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

목명	2025년 결산	2026년 계획		2027년 계획		증감 (B-A)	증감률 (B-A)/A
		당초(A)	수정	요구안	확정(B)		
특별회계전입금	-	704,030	812,801	4,781,870	4,781,870	4,077,840	579.2

주: 1)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특별회계전입금 편성 근거 신설 외에 농림축산식품부는 ① 기금 관리 전담 조직 신설 ② 농지보전부담금 징수 체계 합리화 ③ 미대출 용자금 신속 회수 ④ 지자체 보조사업 정산 체계 개선 등의 제도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① 전담 조직 신설과 관련하여 ‘기금운용평가담당관실’ 신설을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안정적 수입 재원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엄격한 평가를 통한 지출구조 조정을 이행해 나갈 방침이며, ② 현재 농지 전용 협의(의제 포함) 시 농지보전부담금을 징수 결정하고, 향후 2년 이내 실제 농지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징수 취소하는 부담금 징수 체계를 실제 농지전용 발생 직전(준공 허가 등)에 징수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또한, ③ 대출취급기관에 용자금을 대여한 후 2개월 내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미대출 대여금과 이자를 즉시 회수하도록 하고, ④ 지자체 보조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성적인 미정산 및 미반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농어촌특별세(농특세)는 증권거래세를 주요 세입원으로 하는 목적세로, 그 세수 규모는 주식시장 거래대금의 등락에 직접적으로 연동되어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농특회계전입금 편성을 통해 추후 발생이 예상되는 결손을 보전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2023년과 2024년에는 농특세수가 오히려 부족했던 시기도 있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FTA기금의 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 원인 중 하나가 2023년부터 세수부족으로 인해 농특회계로부터 전입금이 중단되었던 것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2023~2024년 농특세 세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 (B)	수납률 (B/A)	증감 (B-A)
2023	6,988,000	6,562,807	6,562,807	93.9	△425,193
2024	7,619,900	7,024,873	7,024,873	92.2	△595,02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설명한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들 역시 새로운 기금 세입원을 발굴하거나 지출구조 자체를 조정하는 근본적인 조치가 아니라 기존에 다소 부실하게 관리되어 왔던 기금 운용 방식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보이고 기존의 3개 기금을 단순히 하나의 기금으로 편성한 것 외에 기금 통·폐합에 관한 구체적인 실익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일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기금 통합에 따른 책임성 강화 방안으로 전담조직인 '기금운용평가담당관실'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이는 기존에 3개 기금을 각각 수탁·관리해 온 한국농어촌공사(KRC)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의 기금관리부를 대체하거나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두 기관의 기금관리부 체계를 그대로 존속시킨 채, 상위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에 별도의 전담조직을 추가로 두는 형태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기금으로 수행되는 사업에 대한 관리 업무는 여전히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로 이원화된 기존 체계에서 그대로 수행되고,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의 기금 통합 전담조직이 하나 더 추가되는 구조이다. 이는 기존 수탁 기관 체계의 중복이나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이라기보다는, 기존 조직은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관리·조정 기능을 수행할 조직을 하나 더 신설하는 방식에 가까워, 오히려 의사결정 단계와 행정 소요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

실제로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편성된 기금운영비(인건비, 기타경비)를 살펴해보더라도, 3개 기금에 각각 편성되어 있는 운영비를 하나의 사업으로 단순히 합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2026년 기준 3개 기금 전담기관의 인건비와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농안기금(인건비 8억 5,900만원, 12명), FTA기금(인건비 4억 6,800만원, 5명), 농지기금(인

건비 12억 5,300만원, 13명)이다. 농안기금과 FTA기금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농지기금은 한국농어촌공사(KRC)에 각각 기금운용 전담기관(기금관리부)이 설치되어 관리·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2027년 농업발전기금의 인건비는 한국농어촌공사(KRC) 기금관리부 인건비 13억 3,700만원(13명)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기금관리부 인건비 14억 2,000만원(17명)으로 구성되며, 이는 기존의 각 기금 전담기관의 인건비와 인력을 단순히 합산한 수치로 산출된다.

[2026년 3개 기금 인건비와 2027년 농업발전기금 인건비 비교]

(단위: 백만원, 명)

2026년				2027년			
구 분 (사업코드)	계획액	전담기관	전담인력	구 분 (사업코드)	계획액	전담기관	전담인력
농지기금 (7077-101)	1,253	한국농어촌 공사	13	농업발전기금 (7079-101)	1,337	한국농어촌 공사	13
농안기금 (7076-101)	859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12	농업발전기금 (7079-101)	1,420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17
FTA기금 (7079-101)	468		5				
합계	2,580	-	31	-	2,757	-	3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타경비 역시 2026년에 각 기금 전담기관에 편성된 기타경비를 기관별로 별도로 편성한 후 단순히 합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026년 3개 기금 인건비와 2027년 농업발전기금 기타경비 비교]

(단위: 백만원)

2026년			2027년		
구 분 (사업코드)	계획액	산출내역	구 분 (사업코드)	계획안	26년 대비
농지기금 (7077-201)	656	일반수용비 161.6 공공요금및제세 38.9 피복비 2, 유류비 2 시설장비유지비 6 복리후생비 8 관리용역비 354 국내여비 43.8 사업추진비 7.6 관서업무추진비 4.1 일반연구비 18 자산취득비 8	농업발전기금 (7079-201)	656	전년동
농안기금 (7076-201)	357	일반수용비 177 공공요금및제세 28, 유류비 1 시설장비유지비 7 복리후생비 29 관리용역비 80 기타용역비 3, 국내여비 18 사업추진비 14	농업발전기금 (7079-201)	540	일반수용비 △7 임차료 +12 시설장비유지비 (전년동) 복리후생비 +16 위탁사업비 +90, 국외업무여비 +3 (신설) 관서업무추진비 +4(신설) 등
FTA기금 (7079-201)	190	일반수용비 79 공공요금및제세 8, 임차료 12 유류비 1, 시설장비유지비 48 복리후생비 16 위탁사업비 10 기타운영비 4, 여비 5 업무추진비 7			
합계	1,203	-		1,196	△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처럼 기금운영 관리비 측면에서도 통·폐합에 따른 효율성 제고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

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규모만 늘어나 국회의 예산 심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기금 통·폐합을 추진함에 있어 농특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의존하여 결손을 해소하는 방안에서 나아가, 실집행이 저조한 용자금의 적기 회수 등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세입 발굴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방만한 지출 소요에 대한 엄격한 구조조정 원칙을 확립하여 기금의 근본적인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농안기금·농지기금·FTA기금을 통합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농업발전기금법안」이 지난 2026년 9월 8일자로 발의되어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인바, 법안 의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기금 통합을 전제로 편성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회는 해당 법안의 처리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관련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

2026년 9월 8일 「농업발전기금법안」⁴⁾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3개 기금(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지관리기금·FTA기금)을 통합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농산물 가격조절·유통시설 현대화, FTA 피해보전과 생산자단체 지원, 농지매매·임대차와 청년농 지원, 농업생산기반 정비 등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며, 기금 수입으로 농특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이러한 농업발전기금의 신설을 전제로 편성되어 있어, 법안 의결이 지연될 경우, 통·폐합을 전제로 편성된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농업발전기금법안」의 국회 심사 및 처리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

4) [2221142] 농업발전기금법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 법적 근거 없는 출연금 편성 주의 필요 등

가. 현 황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¹⁾ 사업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당시 여·야정 합의에 따라 도입되어 기업·공공기관 등의 자발적 출연으로 조성·운영되어 온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2,00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027년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	-	-	-	200,000	200,000	순증

주: 1)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농어촌 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²⁾에 근거하고 있다.

동 기금은 정부 외의 자(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서창희 예산분석관(seochang@assembly.go.kr, 6788-4629)

1) 코드: 농업발전기금 1072-396

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상생기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내에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설치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으로 조성한다.

④ 상생기금의 조성액 목표는 매년 1천억원으로 하고,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고, 연간 목표 미달 시 정부가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기금 조성 목표 규정은 법 시행(2017.1.17) 후 10년간³⁾만 효력이 있어 2027년 1월 16일 만료 예정이며, 이에 20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 3건⁴⁾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법상 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에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설치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운영되고,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 사업,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등 법에서 정한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부 외의 자가 출연 시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기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에 따르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민간기업은 세제 혜택과 평가상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내국법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한 금액의 10%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되고, 출연금은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된다. 상생협력 촉진세제가 적용되는 대기업은 출연액을 상생협력 지출로 인정받아 미환류소득에서 출연금액의 3배를 차감할 수 있다. 또한 기금 출연 시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최대 3.0점)와 민간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최대 2.0~3.0점)에 반영된다. 지수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업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일정기간 면제와 조달청 공공입찰 가점 등의 혜택도 있다.

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 칙(법률 제14528호, 2017. 1. 17.)

제2조(유효기간) 제1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4) [221026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흠의원 등 10인)

[221048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0인)

[220488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혜택]

구 분	내 용	근거·비고
법인세 세액공제	2028.12.31.까지 출연한 금액의 10%를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제1항제2호
기부금 손금산입	출연금을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 과세소득 감소	「법인세법」상 한도 적용
상생협력 촉진세제	출연액을 상생협력 지출액으로 인정, 미환류소득에서 출연금액의 3배 차감	대기업 대상, 최대 60% 절세효과
동반성장 평가 반영	공공기관 평가 최대 3.0점, 민간기업 지수 평가 최대 2.0~3.0점 반영 * 지수 평가 시 농어촌ESG실천제도 인정기업은 0.5점 가점	지수 평가 우수기업에 공정 위 직권조사 일정기간 면제, 조달청 공공입찰 가점 등
농어촌 ESG 실천제도 가점	농어촌ESG실천제도 진단시 가점(10점) 부여	인정기업에 3개 부처(농식품부, 해수부, 산업부) 공동 명의 인정패 수여, 지수평가 우대, 정책자금 지원 한도·금리 우대 등
포상	출연 우수기업 포상	2026년 장관표창(안) 농식품부 22점, 산업부 20점, 해수부 3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조성 이후 2026년 8월 말까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조성액은 3,285.1억원으로 목표액 1조원 대비 32.9%에 불과하다. 연간 조성액은 매년 목표 1,000억원에 미치지 못했고, 조성액이 가장 많았던 해는 2025년도로 490.7억원(49.1%)이었다. 조성액의 52.4%는 공공기관, 47.4%는 민간기업의 출연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연자가 용도·사업을 지정하여 출연한 지정출연이 3,215.2억원(97.9%)이고 비지정출연금은 69.9억원(2.1%)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공공기관		민간기업		개인 및 단체		합 계	목표 달성률
	참여	금액	참여	금액	참여	금액		
2017	14	306.3	2	3.0	68	0.4	309.6	31.0
2018	30	179.3	9	52.2	27	0.1	231.6	23.2
2019	43	175.4	26	50.5	9	0.05	225.9	22.6
2020	65	204.3	76	170.5	16	1.1	376.0	37.6
2021	94	257.4	70	196.8	5	1.0	455.3	45.5
2022	101	159.5	111	192.5	7	2.3	354.2	35.4
2023	117	133.9	103	169.4	5	1.7	305.0	30.5
2024	116	136.3	88	209.4	9	0.8	346.5	34.7
2025	122	130.2	95	360.4	5	0.05	490.7	49.1
2026.8	56	37.5	65	130.4	1	0.01	167.9	16.8
다년협약 잔여분	-	-	1	22.5	-	-	22.5	-
총 계 (중복제외)	758 (141)	1,720.0	646 (249)	1,557.6	152 (136)	7.5	3,285.1	32.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처럼 당초 1조원 조성을 목표로 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민간 기부 한계로 약 7,000억원의 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개년에 걸쳐 총 7,000억원을 출연하여 인구감소지역 등 소멸위기 농어촌 지원을 위해 투자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2027년도 계획안에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을 위해 2,0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출연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기금 1조원 조성 목표 중 민간 기부 한계로 발생한 부족분(약 7,000억원)을 정부 재정으로 확충, 인구감소지역 등 소멸위기 농어촌 투자
사업기간	2027~2030년(4년)
사업규모	7,000억원
지원 형태	출연(국비 100%), 사업시행주체 농림축산식품부, 피출연기관 재단
사업내용	정부 출연금 전액을 '비지정기금'으로 운용 「FTA농어업법」 제18조의2제6항의 법정 용도(교육·장학, 복지증진, 지역개발, 공동협력, 상품권, 운용·관리)에 대해 지자체 등 대상 공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첫째, 2015년 한·중 FTA 비준 당시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취지를 고려할 때, FTA로 이득을 보는 민간기업의 출연이 아닌 정부 재정 출연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설령 정부 재정으로 출연금을 편성하더라도 현행 「국가재정법」상 정부의 직접적인 출연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 개정을 전제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예산안 편성부터 진행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재정 운용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 제12조5)는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출연금의 법적 근거를 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⁶⁾에서는 기금을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조성액이 부족할 때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부의 출연 근거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국가재정법」에서 출연의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취지는 출연은 일반적인 보조금이나 위탁 사업비와 달리, 국가가 반대급부 없이 재산상 권리를 기관에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 재정 지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동 사업은 총사업비 7,000억원으로 「국가재정법」⁷⁾상 예비타당성조사

5)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③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으로 조성한다.

④ 상생기금의 조성액 목표는 매년 1천억원으로 하고,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

대상 사업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 3건⁹⁾의 통과를 전제로 2026년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26.8.26)에서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임을 근거로 “조건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민간기업은 세제 혜택과 평가상 인센티브를 받고 있지만 민간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와 관련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출연기업과 사업 연관성이 낮고 사회공헌적 성격의 사업 위주로 활용되어 민간의 기부 유인이 상대적으로 약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국가적 과제인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해 7,000억원 규모의 국비를 농업·농어촌 분야에 적극 투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한·중 FTA 비준 과정에서 제기된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도입된 것으로,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으로부터 이익의 일부를 조세나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무역이득공유제 방식 대신, 민간기업 등이 농어촌의 어

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다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 중 해당 연구개발의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물의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은 제외한다.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삭제

4. 그 밖에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사업으로서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 9. (생략)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중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8)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에 따르면, 동 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다.

9) [221026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221048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0인)

[220488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상생협력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 출연으로 기금의 대부분을 조성할 경우, FTA로 이득을 보는 기업의 이익 일부를 농어촌에 환원하려는 무역이득공유제의 취지가 반감될 수 있다.

더욱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정부 출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 개정을 전제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출연금 예산안 편성부터 진행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재정 운용이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¹⁰⁾

둘째, 4년간 7,000억원을 재단에 출연하면 기금은 공적 자원 중심으로 바뀌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서 정부 출연금을 통해 수행되는 사업은 일반 재정사업과 실질적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당 사업을 기금을 통해 수행하기 보다는 일반 재정사업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설령 출연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민간 출연 실적과 연계하는 매칭 방식 등을 통해 정부 재정이 민간 참여를 대체하지 않고 촉진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고, 정부 출연금의 사용내역 공개, 국회 보고, 감독, 성과관리 등 책임성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조성 이후 2026년 8월 말까지 기금의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1,268개 사업에 대해 2,797.4억원이 집행되었고, 법에서 정한 용도¹¹⁾ 중 지역개발(제3호),

10) 개정안 3건은 2026년 9월 29일자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나, 2026년 10월 30일 기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1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⑥ 상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되, 재단은 상생기금이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 1의2.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중 농림·해양·수산에 관한 과목을 편성·운영하는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농학·수의학·수산물 등 농어업 관련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및 농어촌 지역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학사업
2.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등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3. 정주 여건의 개선, 마을공동체 활성화, 경관 개선 등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4. 농수산물 생산, 유통, 판매 등의 분야에서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 협력 사업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사업
6. 상생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공동협력(제4호), 복지증진(제2호) 3개 분야가 2,409.2억원으로 전체의 86.1%를 차지한다. 이어 상품권(제5호) 8.5%, 교육·장학(제1호) 4.9%, 운용·관리(제6호) 0.4% 순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2026년 8월 말까지 3,285.1억원이 조성되고 2,797.4억원이 집행되어 기금 내 약 487.7억원이 미집행 상태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용도별 지원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 분	사업 수	지원금액	비중
지역개발(제3호)	556	1,315.3	47.0
공동협력(제4호)	256	552.0	19.7
복지증진(제2호)	318	541.8	19.4
상품권(제5호)	11	238.1	8.5
교육·장학(제1호)	121	137.9	4.9
운용·관리(제6호)	6	12.1	0.4
합 계	1,268	2,797.4	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뿐만 아니라, 2026년 8월 기준 조성액의 52.4%가 공공기관 출연분인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2030년까지의 정부 출연금 7,000억원이 더해지면 공적 재원 비중은 8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서 정부 출연금을 통해 수행되는 사업은 일반 재정사업과 실질적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할 때,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통해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보다는 일반 재정사업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6년 8월 말 기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공공기관	민간기업	개인·단체	합계
출연금액	1,720.0	1,557.6	7.5	3,285.1
비중	52.4	47.4	0.2	1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7. 그 밖에 민간기업등과 농어촌·농어업인등 간 상생협력 촉진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령 출연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민간 출연 실적과 연계하는 매칭 방식 등을 통해 정부 재정이 민간 참여를 대체하지 않고 촉진하는 방향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행 운영체계로는 정부 출연금에 대한 충분한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산하의 '상생기금 운영위원회'가 연간·중장기 운영계획, 집행의 적정성 및 성과평가, 제도개선 등을 심의하고, 그 산하 '심의조정위원회'가 개별 사업의 용도 적합성, 집행점검, 정산·환수를 담당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금 조성·지원 현황의 통계자료만 제출받고 있으며, 운영위원회 심의자료는 대외 비공개로 별도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재단은 목적별 사용액 총액만 공개하며, 운영·관리 내부 규정에 따라 출연주체의 동의 없이 출연·지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체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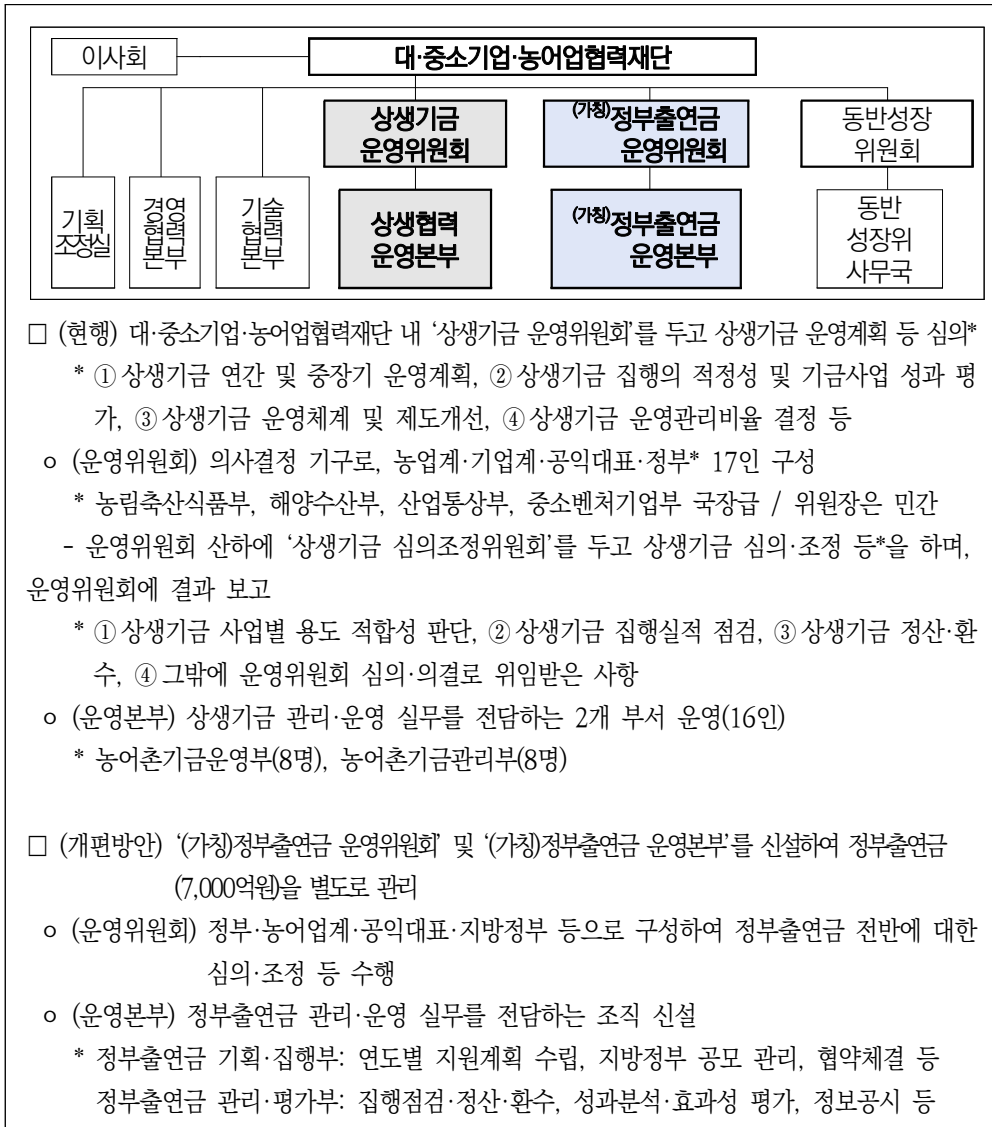
구 분	내용
설치 근거	「FTA농어업법」 제18조의2제2항,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관리 규정 제4조
운영위원회 구성	20명 이내(현 17명): 위원장(민간) 1, 농어업계 4, 기업계 4, 공익대표 4, 정부당연직 4(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해수부 수산정책관, 산업부 통상협정정책관,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
의결	정기회의 연 2회, 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
심의조정위원회	16명 이내, 원칙적으로 월 1회 개최, 사업 용도 적합성·정산·환수 심의
실무 조직	상생기금 운영본부(농어촌기금운영부 8명, 관리부 8명)
농식품부 보고	통계자료 제출만 있음, 심의자료는 재단 내부 비공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도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정부 출연금 7,000억원을 기존 민간 출연금과 분리하여 관리하는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현재는 재단 내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상생기금 운영본부'가 민간 출연금의 운영을 맡고 있는데, 여기에 '(가칭)정부출연금 운영위원회'와 '(가칭)정부출연금 운영본부'를 추가로 신설한다는 계

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에서 출연하는 만큼 순수 민간 출연금보다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별도의 운영·심의 체계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사용처, 성과를 대외에 공개하여 검증받겠다고 설명하였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 조직 개편(안)]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정부 출연에 따른 재정 책임성 확보와 관련하여 현행법¹²⁾상 조성액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정부 조치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출연금 사용내역의 공개와 국회 보고, 출연 이후의 감독·정산·환수, 의사결정구조, 성과관리를 포함한 책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의 개편안은 현행 재단 이사회 아래에 ‘(가칭)정부출연금 운영위원회’와 ‘(가칭)정부출연금 운영본부’를 신설하는 것인데, 재단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이라는 점에서 재정 책임성 확보와 관련하여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을 출연하는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이나, 재단의 이사회와 조직·인사·회계는 재단의 체계를 따르고 재단의 소관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이다. 신설 본부가 재단 내에 있는 한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직과 인력, 집행 방식에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여 정부출연금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재단 내 신설 본부에서 운영하는 개편안 외에 신설 본부를 별도로 분리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④ 상생기금의 조성액 목표는 매년 1천억원으로 하고,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현 황

처분농지 매입 사업¹⁾은 「농지법」²⁾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 시 해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하기 위한 자금을 융자하려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8,868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027년도 처분농지 매입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맞춤형농지지원(융자)	1,113,440	1,807,690	1,807,690	2,261,730	454,040	25.1
처분농지 매입	-	-	-	886,800	886,800	순증

주: 1)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농지법」은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³⁾을 확립하고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 관리 방안으로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이용 실태조사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⁴⁾

서창희 예산분석관(seochang@assembly.go.kr, 6788-4629)

1) 코드: 농업발전기금 1160-350의 내역사업

2) 「농지법」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④한국농어촌공사가 제3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1조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이하 “농지관리기금”이라 한다)에서 융자한다.

3) 대한민국헌법

제121조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

4) 「농지법」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은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를 시작으로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에 관한 농지대장을 현행화하고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2026년 제1회 추경을 통해 농지 전수조사 사업⁵⁾ 예산 670억 2,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농지 전수조사는 2026년과 2027년에 걸쳐 2단계에 나누어 진행될 계획이며, 2026년에는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이후에 취득한 농지 약 930만 필지를 대상으로, 2027년에는 1996년 1월 이전에 취득한 농지 약 470만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될 계획이다.⁶⁾

2026년 5월~7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는 행정정보·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전국 1,049만 필지에 대한 기본조사를 완료하였으며, 8월~12월까지 해당 농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심층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조사 대상의 27.0%인 283만 7천 필지(30만 2천ha)가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된 상황이다.

위반 의심 유형별로는 불법 임대차 의심이 220만 9천 필지(21.1%)로 가장 많았고, 무단 휴경 의심 122만 1천 필지(11.6%), 불법 전용 의심 95만 필지(9.0%), 소유 제한 위반 14만 3천 필지(1.4%) 순으로 나타나, 불법 전용, 무단 휴경 등 농지를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일정기간 내에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 코드: 농업발전기금 4130-412의 내역사업

6) 참고로, 농지 전수조사 사업 2027년도 계획안은 제1회 추경(수정 계획) 대비 489억 4,500만원 감액된 180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다.

[농지 전수조사 기본조사 결과 위반 의심 농지 현황]

(단위: 천 필지, 천ha, %)

구 분	필지수	면적	비율	심층조사 분류 사유
불법 임대차 의심	2,209	253	77.9	농지대장·경영체 등록 정보상 '자경'이나 비료, 면세유, 재해보험 등 지원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등
무단 휴경 의심	1,221	120	43.0	항공사진 확인 결과 농지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임야화
불법 전용 의심	950	98	33.5	시설물(비닐하우스 등 제외)을 설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도 적법한 전용허가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유 제한 위반	143	33	5.0	비농업인인 상속·이농자의 소유 농지가 농지은행 임대위탁 면적을 제외하고 1ha 초과
합 계	2,837	302	100	-

주: 하나의 필지가 복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어 유형별 비율의 합은 100%를 초과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한편, 지난 5월 7일자로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 대상 사유에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농지 불법 전용 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지를 경영하지 않는 경우가 신설(시행일: 2028년 6월 17일)되고, 지자체장의 재량에 해당하는 처분명령이 의무화(시행일: 2026년 8월 28일)되었다.⁸⁾

7) [221884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농지법」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3.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토지거래허가구역내농지를 소유한 자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소재한 농지(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소유한 농지)로 한정한다. 이하 “토지거래허가구역내농지”라 한다)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제3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또한,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의 농지 처분 의무가 신설되어 농지 소유자는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를 6개월 이내에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등을 제외한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해당 농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자가 매수청구권 행사 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농지를 매입해야 할 의무가 있다(시행일: 2026년 8월 28일).⁹⁾

3.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체험농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4의2.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4의3.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5의2. 제6조제2항제10호마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지 아니하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
- 5의3. 제6조제2항제10호바목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7.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농업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9) 「농지법」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②농지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
 3.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비속
 4.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5.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상법」 제542조의8제2항제5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 ③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한국농어촌공사의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농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처분농지 매입 사업은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 시 매입 의무가 발생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 매입 예산을 용자 방식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2027년 동 사업 계획안의 세부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농지매입금액은 1ha당 3억 800만원으로 2,850ha를 매입하는 것으로 산출된다.

[2027년도 처분농지 매입 사업 계획안 산출 내역]

- 기타민간용자금 : 877,800백만원
 - 농지매입금액 (877,800백만원) : **308백만원/ha×2,850ha=877,800백만원**
- 민간자본보조 : 9,000백만원
 - 유희농지복구비(9,000백만원) : 30백만원/ha×300ha=9,000백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첫째, 2027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처분농지 매입 단가(308백만원/ha)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의 농지 매입 단가(385백만원/ha)의 80% 수준으로 산출되었다. 그러나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은 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매입대상으로 하고 있어 진흥지역 밖 농지도 포함하는 처분 농지와는 매입 대상의 성격이 달라, 그 매입 단가를 처분농지 매입 단가의 산정 기준으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처분 농지 매입 단가의 산정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7년 처분농지 매입 사업의 매입단가 308백만원/ha는 현재 고령 은퇴농, 비농업인(상속) 소유농지 등을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청년농 등에게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는 사업인 공공임대용 농지매입¹⁰⁾ 사업에 적용된 매입단가(385백만원/ha)의 80% 수준으로 산출되었다.

10) 코드: 농업발전기금 4130-412의 내역사업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매입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이유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농지법」¹¹⁾에서는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2025년 농지의 표준지 공시지가(42,314원/㎡)가 실거래가(53,518원/㎡) 대비 79%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에 적용된 매입단가(385백만원/ha)의 80% 수준으로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2020~2025년 농지 표준지 공시지가와 실거래가]

(단위: 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7
표준지 공시지가(A)	37,397	41,441	44,706	41,681	41,925	42,314	43,291
실거래가(B)	67,284	81,434	77,753	61,612	57,207	53,518	50,085
(A/B)	56	51	57	68	73	79	8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나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은 대상 농지의 90% 이상이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이라는 점에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단가는 전국 농지 전체가 아니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시세를 밀접하게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전국 농지의 평균 실거래가는 53,518원/㎡으로, 진흥지역 내 지가 38,402원/㎡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진흥지역 밖 농지가 68,845원/㎡으로 진흥지역 내 농지보다 실거래가가 높기 때문이다.

11) 「농지법」

제11조(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③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한국농어촌공사의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농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2020~2026년 농업진흥지역 내·외 농지 실거래가]

(단위: 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7
■ 농지가격	67,284	81,434	77,753	61,612	57,207	53,518	50,085
-진흥지역 내	40,555	44,774	43,732	40,726	39,435	39,205	36,717
· 전	63,156	56,629	50,284	46,767	39,307	46,063	36,010
· 답	37,898	43,182	42,508	39,969	39,316	38,402	36,669
· 과수원	50,833	56,730	70,546	53,378	51,551	55,542	46,663
-진흥지역 외	86,436	103,991	100,687	78,825	74,056	68,845	65,196
· 전	82,629	100,082	97,519	76,317	70,991	65,513	61,958
· 답	90,299	106,511	100,652	78,186	76,410	71,426	68,073
· 과수원	97,013	130,773	138,780	112,788	92,485	86,155	75,58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처럼 농업진흥지역 내·외 농지 실거래가의 괴리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부분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매입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단가를 전국의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처분농지 매입사업의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농업경영이 엄격히 관리되고 개발압력이 낮은 농업진흥지역보다는 개발압력이 크고 투기 유인이 높은 진흥지역 밖 농지를 매입해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도 처분농지 매입단가를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 가격을 주로 반영하는 공공임대용 매입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둘째, 2027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처분농지 매입 단가는 「농지법」상 매입 단가 산정 기준인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매입 단가를 최소한 법정 기준인 공시지가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농지법」은 처분명령에 따른 매수청구 시 공시지를 매입 단가 산정 기준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2027년 계획안 기준 처분농지 매입단가(30,800원/㎡)는 2025년 전국 평균 농지 공시지가(42,314원/㎡)의 72.8%에 불과하여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 매입 여부는 한국농어촌공

사의 재량이 아닌 법률상 의무이고, 처분농지 매입 예산은 매수청구가 있으면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의무지출적 성격의 예산이라는 점에서, 매입 단가를 과소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매입 단가를 최소한 공시지가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추가 재정 소요는 3,282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한편, 매입 단가 산정의 법정 기준인 공시지가 자체도 실거래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2025년 기준 공시지가(42,314원/㎡)는 실거래가(53,518원/㎡)의 79% 수준에 그치고 있어, 매입 단가를 공시지가 수준으로 상향하더라도 여전히 시세보다 낮은 보상에 그칠 수 있다.

다만, 매입 단가에 실거래가 등을 추가로 반영하려면 현행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문제 의식에 따라 처분명령 대상 농지의 매입 단가를 감정가격의 100분의 80 또는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¹²⁾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향후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동 개정안에 대한 논의 경과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 [222057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가. 현 황

수급안정지원¹⁾ 사업은 채소 및 과일 재배농가 등을 대상으로 계약재배 소요자금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 안정을 바탕으로 농산물 수급조절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는 전년 대비 79억 9,500만원이 감액된 2,506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수급안정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산지유통종합자금(용자)	343,156	320,310	320,310	617,918	297,608	92.9
수급안정지원	308,407	258,629	258,629	250,634	△7,995	△3.1

주: 1)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동 사업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²⁾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용자 사업으로, 배추·무·고추·마늘·양파·대파·당근·양배추·감자의 9개 품목을 대상

서창희 예산분석관(seochang@assembly.go.kr, 6788-4629)

1) 코드: 농업발전기금 3033-304의 내역사업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거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절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생산자와 수요자 간에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 물량·가격 등을 미리 정하여 생산 또는 출하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거래(이하 “계약거래”라 한다)를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을 이행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농산물 수요자에 대하여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계약금의 대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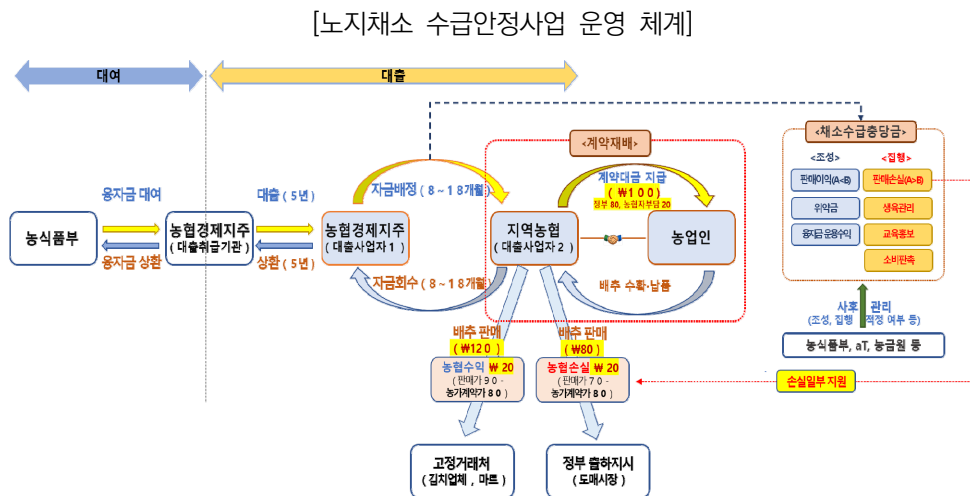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거래를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절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생산자(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수요자와 협의하여 매년 계약거래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거래 농산물이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활용되는 경우 생산자단체등에게 손실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26.>

으로 한다. 동 사업의 사업대상자는 크게 농협경제지주가 관리하는 지역·품목농협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관리하는 영농법인·회사법인·협동조합·지방공사 등 그 밖의 조직으로 나뉘며, 정부는 사업대상자(계약주체)에게 계약재배 원물확보 자금 등을 무이자로 용자 지원(국비 80%, 자부담 20%, 5년 상환)하되, 계약물량의 30%에 대해 출하조절 등 수급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사업 수행 방식은 ① 농림축산식품부가 대출취급기관인 농협경제지주에 용자금을 대여하면, ② 대출취급기관인 농협경제지주가 대출사업자인 농협경제지주에 5년 만기로 대출하고, ③ 대출사업자인 농협경제지주가 품목별 사업기간에 맞추어 8~18개월 동안 지역농협에 자금을 배정 또는 회수하고, ④ 지역농협은 배정받은 자금으로 계약농가에 계약가격을 지급하고 수확물을 납품받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때,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농협경제지주가 관리하는 지역·품목농협으로 하여금 용자금(정부 80%, 농협 자부담 20%)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농가로부터 징수한 위약금, 계약재배 후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익금의 20%를 채소수급조정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립된 충당금은 계약재배 물량의 판매손실 보전, 면적조절·생산안정·출하조절 등 수급안정, 판매촉진, 교육·홍보 등에 사용된다.

[채소수급조정총당금 개요]

구 분	내 용
목적	‘노지채소 수급안정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사업손실, 수급조절, 판매촉진 등) 지원
조성기간	1995년~
조성·사용 주체	농협경제지주, 사업농협
재원	정책자금(융자금) 운용 수익, 판매수익, 계약농가 위약금
용도	계약재배 농산물의 생산·출하조정 시 발생하는 손실, 생육관리, 농가교육, 소비홍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관리체계	농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협경제지주가 조성 및 사용 적정성 등을 정기 점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1~2026년 8월까지 총당금 조성액은 1,078억원이며, 이 중 융자금의 이자가 약 780억원(72.4%)이다. 융자금은 국비 80%와 농협 자부담 20%로 구성되므로, 이자 중 국비 해당분은 약 624억원으로 산출되며, 이는 전체 총당금 조성액의 57.9%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동안 총당금을 통해 649억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내역은 수급안정이 346억원(53.3%)으로 가장 많다. 2026년 8월 말 기준 총당금 잔액은 751억원이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채소수급조정총당금 조성 및 집행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8	합 계
조성	합 계(A)	110	199	245	246	191	87	1,078
	운용수익(예치이자)	54	132	206	197	134	57	780
	국비(80%)	43	106	165	158	107	46	624
	농협자부담(20%)	11	26	41	39	27	11	156
	판매수익(판매이익금, 위약금 등)	56	67	39	49	57	30	298
집행	합 계(B)	74	98	132	129	127	89	649
	손실보전	18	48	43	31	10	39	189
	수급안정	48	38	69	72	98	21	346
	판매촉진	3	6	10	16	11	17	63
	교육홍보	3	3	4	4	4	4	22
	기타	2	3	6	6	4	9	30
전년도 잔액(C)		326	362	462	572	689	753	-
당해연도 말 잔액(D=C+A-B)		362	462	572	689	753	751	-

주: 1) 국비분·자부담분은 운용수익에 융자금 재원 비율(국비 80%, 자부담 20%)을 적용하여 산출

2) 2026년은 8월 말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채소수급조정충당금 적립·운영은 정부 수급조절 의무 이행에 따른 계약주체(지역농협)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는 측면이 있으나,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조성액의 57.9%(약 624억원)가 국비 용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이자수익이 농업발전기금의 수입으로 계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용자금 이자를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으로 계상하고 수급조절에 필요한 사업은 재정 내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채소수급조정충당금 중 용자금 이자는 780억원이며, 이 중 국비(80%) 해당분은 약 624억원이다. 이는 충당금 조성액 1,078억원의 57.9%를 차지하며, 충당금 조성액 대비 용자금(국비분)의 비중은 2021년 39.3%, 2022년 53.1%, 2023년 67.3%, 2024년 64.1%, 2025년 56.1%, 2026년(8월) 52.4%로, 2022년 이후 매년 조성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채소수급조정충당금 재원별 조성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8	합 계
운용수익(예치이자)	54	132	206	197	134	57	780
국비분(A)	43	106	165	158	107	46	624
농협 자부담분(B)	11	26	41	39	27	11	156
판매수익(판매이익금, 위약금 등)	56	67	39	49	57	30	298
합 계(B)	110	199	245	246	191	87	1,078
국비 비중(A/B)	39.3	53.1	67.3	64.1	56.1	52.4	57.9

주: 국비분은 운용수익(예치이자)에 용자금 국비 비율(80%)을 곱하여 산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계약재배 사업대상자는 계약물량의 30~50%를 정부가 지정하는 출하처에 출하해야 하므로 사전에 고정판매처를 확보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시장가격이 계약가격보다 낮게 형성되면 지역농협에 판매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채소수급조정충당금은 이러한 수급의무 이행에 대한 반대급부로 손실을 보전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 수급정책의 기반인 계약재배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수급안정지원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통해 정부 정책자금(용자금)의 운용수익을 세입·세출 예산 외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채소수급조정충당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용자금 이자를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으로 계상하고 수급조절에 필요한 사업은 재정 내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5.8.4.)됨에 따라 생산자의 재배면적 조절, 출하정지, 출하장려 등 수급조절의무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수급조절지원’ 사업이 ‘농산물안정생산공급지원’³⁾의 내역 사업으로 2026년부터 수행 중이며, ‘수급조절지원’ 사업의 2027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94억 6,400만원 증액된 420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다.

채소수급조정충당금에서 수급안정 용도(면적조절·생산안정·출하조절)로 수행되는 사업도 재배면적 조절, 출하조절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필요 시 기금 사업인 수급조절지원 사업 내에 계약주체 손실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코드: 농업발전기금 3033-369

[수급조절지원 사업과 채소수급조정총당금 비교]

구 분	수급조절지원 사업	채소수급조정총당금
근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법률상 적립 근거 없음
도입 시기	2026년	1995년
구성·사용 주체	농식품부 → 광역지자체 → 기초지자체 또는 광역수급관리센터	농협경제지주, 사업농협(230개 지역농협)
재원	기금(지자체 경상보조) 과수·채소가격안 정: 국비 40% 유통협약·명령: 국비 50%	정책자금(사업대기자금 등) 이자, 계약농 가 위약금, 사업정산 이익금의 20%
대상 품목	과수·채소	노지채소 9개(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대파, 당근, 양배추, 감자)
지원 대상	주산지협의체가 구성된 지역의 생산자(농 협, 농업법인 등)	계약재배에 참여하는 지역농협 등(주산지 협의체 미구성 지역 포함)
지원 내용	재배면적 조절, 출하정지, 출하장려 등 수 급조절의무 이행 소요비용 일부, 유통협 약·명령 이행 지원	손실보전(판매손실·가격차보전), 수급안정 (면적조절·생산안정·출하조절), 판매촉진, 교육·홍보, 기타(우수사업자 인센티브 등)
국회 통제	기금운용계획 심의 및 결산 심사 대상	예·결산 심의 및 정기 보고 없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수급안정지원 사업’의 용자금 운용에서 발생한 이
자를 농업발전기금의 수입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수급조절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보
전·수급안정 등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농협이 재정 외로 채소수급조정총
당금을 적립하여 수행하도록 하기보다는 수급조절지원 사업 등 기금사업으로 편성
하여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농축산물 알뜰 소비 앱 활성화¹⁾ 사업은 소비자가 농축산물 가격 동향과 거주 지역 판매처별 가격을 확인·비교하고 식재료를 추천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알뜰 소비 앱을 확산·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10억 8,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027년도 농축산물 알뜰 소비 앱 활성화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농식품소비기반조성	242,794	122,716	472,716	109,971	△362,745	△76.7
농축산물 알뜰 소비 앱 활성화	-	-	-	1,080	1,080	순증

주: 1)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 알뜰 소비 앱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2025.7.4) 사업 중 하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AX 프로젝트’ 사업²⁾ 중 농축산물 분과 과제로 수행 중이다. 그러나 공공AX 프로젝트의 과업 범위는 개발·실증에 국한되고, 이에 따라 사업 지원 범위 또한 인프라 지원으로 클라우드 사용 계약 1년(2026.6~2027.6)까지만 반영되어 있다.

이에 동 사업은 ‘농축산물 알뜰 소비 앱 활성화’ 사업을 통해 2027년 7월부터 농축산물 알뜰 소비 앱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운영비를 편성하려는 취지이다. 참고로, 농축산물 알뜰 소비 앱은 2026년 9월 21일 “알뜰하게 장볼지도”라는 이름으로 시범 출시³⁾되었으며, 대상 지역은 5개 지역(수원, 원주, 청주, 전주, 창원)이다.

서창희 예산분석관(seochang@assembly.go.kr, 6788-4629)

1) 코드: 농업발전기금 3041-300

2) ‘공공 AX 프로젝트 사업’은 2025년 제2회 추경(2025.7.4.)을 통해 공공부문에 AI를 선도적으로 접목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으로, 2026년~2027년까지 20개의 과제에 대하여 2025년 15억원, 2026년 15억원을 지원한다.

2027년도 계획안 10억 8,000만원은 ① 서버·보안 체계 구축(6억원)과 ② 소비자·중소 유통업체 참여 지원(4억 8,000만원)으로 구성되며, 모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 보조할 계획이다.

① 서버 및 보안 체계 구축(6억원)은 앱을 전국 상용화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 비용으로, 유통업체의 농축산물 가격 정보를 수집·처리하는 클라우드 서버를 유지하고 모바일 앱(플랫폼) 운영과 망 연계를 위한 정보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비용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2027년 6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 AX 프로젝트 사업비를 통해 지원되는 기간을 제외한 6개월분만을 편성한 것이다.

② 소비자·중소 유통업체 참여 지원(4억 8,000만원)은 소비자 가격 제보 활성화 위한 인센티브(1억 8,000만원)와 중소 유통업체의 플랫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설비 지원(3억원)으로 구성된다. 소비자 인센티브는 소비자가 실거래 가격 정보를 앱에 제보(등록)하면 건당 2,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9만 건을 목표로 편성되었다. 중소 유통업체 참여 지원은 전자 판매 표지판 설치비 60만원의 50%인 30만원을 업체당 지원하는 것으로, 1,000개소를 목표로 편성되었다.

[농축산물 알뜰 소비 앱 사업 개요]

구 분	세부 내용
사업 목적	소비자가 농축산물 가격 정보를 쉽게 확인·비교할 수 있도록 농산물 가격 동향, 거주지역 내 판매처별 가격, 식재료 추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앱’ 활성화 지원
사업 기간	'27~계속
지원 형태	민간경상보조(국비 100%)
사업 시행 주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27년 사업 규모	1,080백만원
27년 예산안 세부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업체 농축산물 가격 정보수집·처리 등 클라우드 서버 유지, 모바일 앱(플랫폼) 운영·망 연계 등 정보보안 체계 구축(6개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0백만원 = 클라우드 서버 유지(360백만원), 정보보안 체계 구축(240백만원) - 소비자 가격 제보 활성화 및 중소 유통업체 플랫폼 참여 지원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80백만원 = 소비자 인센티브(180백만원, 2,000원/건 x 9만 건), 중소 유통업체 참여 지원(300백만원 - 전자 판매 표지판 설치 비용(60만원)의 50%(30만원) 지원(1,000개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3) 2026년 9월 21일 시범 출시한 ‘알뜰하게 장볼지도’에는 151개의 마트가 등록되어 있고, 약 32만 개의 상품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정비하여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나. 분석의견

첫째, 동 사업은 소비자에게 농축산물 물가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유통업체 간 가격 경쟁을 통해 농축산물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는 것이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 유통업체는 앱에 참여할 유인이 부족하다. 이를 고려하여 현재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시범사업의 성과(농축산물 가격 인하 효과, 유통업체 참여 현황 등)를 평가한 후, 중소 유통업체의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알뜰 소비 앱은 소비자가 거주지역 내 판매처별 농축산물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통업체 간 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농축산물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대형 유통업체뿐 아니라 소비자가 실제로 장을 보는 중소 유통업체까지 폭넓게 참여하여, 시장 전체의 가격 정보가 앱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알뜰 소비 앱은 참여 유통업체의 품목별 가격 및 재고 상황이 별도의 가공 없이 그대로 표출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 매장의 판매 데이터가 알뜰 소비 앱의 시스템으로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자동 연동되어야 한다.

대형 유통업체는 이미 POS(판매시점정보관리) 시스템, 통합 재고관리시스템, 온라인몰 등 전산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어, 별도의 추가 투자 없이도 기존 데이터베이스와 앱을 연동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 중소 유통업체나 전통시장 상인과 같이 판매 품목별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POS 시스템을 도입했다라도 데이터 외부 연동 기능이 없는 경우,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알뜰 소비 앱과 연동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스템 구축 또는 수기 입력이라는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더욱이 앱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춘 대형 유통업체와 가격이 직접 비교되는 구조에서, 중소 유통업체가 자신의 가격을 앱에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영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중소 유통업체의 참여가 저조하여 앱이 대형 유통업체 위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중소 유통업체가 할인 전단을 보유한 경우 이미지 분석(OCR)을 활용해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2027년 계획안에는 중소 유통업체 참여 지원이라는 내역으로 전자 판매 표지판 설치비 60만원의 50%인 30만원을 1,000개소에 지원하는 3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는 참여에 따른 비용 부담 일부를 지원하는 것일 뿐, 가격 경쟁력이 열악한 중소 유통업체가 앱에 참여하여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중소 유통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 우선 한국마트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시범지역 중소형 마트가 참여토록 추진 중이며,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마트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임
- 또한, 중소 유통업체 참여를 빠르게 확대할 수 있도록 개별 POS社와의 데이터 연계를 논의 중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중소 유통업체의 참여가 저조하여 앱이 대형 유통업체 위주로 운영되면 앱에서 제공하는 가격 정보와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고, 유통업체 간 경쟁을 통해 농축산물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는 사업의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재 5개 지역(수원, 원주, 청주, 전주, 창원)에서 시범 출시되어 운영 중인 시범사업에 대해 앱이 실제로 농축산물 가격 인하에 기여하는지, 중소 유통업체가 얼마나 참여하는지 등을 성과평가한 후, 중소 유통업체의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허위 가격·재고 정보 게시는 알뜰 소비 앱의 신뢰도를 손상시킨다는 점에서 유통업체가 허위 가격·재고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알뜰 소비 앱은 참여 유통업체가 제공하는 가격 정보를 가공 없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노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이 경우 유통업체가 실제

로는 판매 의사가 없거나 재고가 없는 상품을 낮은 가격으로 게시해 소비자를 매장으로 유인한 뒤 정작 구매 시점에는 품절되었다고 안내하는 허위 가격·재고 정보 게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허위 가격·재고 정보 게시는 알뜰 소비 앱의 신뢰도를 손상시키며, 소비자가 알뜰 소비 앱의 가격 정보를 신뢰할 수 없게 되면 앱 이용 자체를 기피하게 되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구축한 플랫폼이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허위 가격·재고 게시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비자가 매장을 직접 방문해 실제 가격과 앱상 가격의 차이를 인지하고 관리자만 확인 가능한 댓글로 이를 공유하도록 유도하고, 가격 불일치 사례가 빈번할 경우 해당 매장에 연락하여 가격 정보 정확성 제고를 요청할 계획이며, 사례 누적 시 참여 배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하였다.

[알뜰 소비 앱 허위 가격·재고 정보 유통업체 통제 방안]

- ☐ 소비자 참여 기능 및 모니터링단 운영 등으로 가격 불일치 매장에 대한 가격 정보 정확도 제고를 요청할 계획임
- 소비자가 매장 방문 시 앱 가격과 다를 경우 관리자만 확인할 수 있는 댓글 기능을 통해 해당 사실을 공유토록 유도
- 가격 불일치 사례가 빈번할 경우 해당 매장에 연락하여 가격 정보 정확성 제고를 요청하고, 사례 누적 시 참여 배제 방안 검토 중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물론 모니터링단이 해당 매장에 연락해 가격 정보 정확성 제고를 요청하고 사례가 누적될 경우 참여 배제를 검토한다는 사후적인 통제 방안도 필요한 측면이 있겠으나, 소비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거나 번거로워 신고하지 않는 허위 게시는 통제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공모 전에 참여 배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적발 횟수, 판정 절차 등)을 확정하고, 유통업체가 허위 가격·재고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실효성 있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동물복지축산직불 시범사업: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향과 시장가격과의 격차 해소 방안 검토 필요

가. 현 황

동물복지축산직불 시범사업¹⁾은 현행 「동물보호법」²⁾에 따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의 생산비 상승에 따른 소득감소분 차액을 직불금 지급을 통해 보전하려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에 34억 3,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027년도 동물복지축산직불 시범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공익기능증진직불	2,953,622	2,970,314	2,970,314	3,061,522	91,208	3.1
동물복지축산직불 시범사업	-	-	-	3,433	3,433	순증

주: 1)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서창희 예산분석관(seochang@assembly.go.kr, 6788-4629)

1) 코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 1071-302의 내역사업

2) 「동물보호법」

제5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하 “농장동물”이라 한다)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6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하여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하 “인증농장”이라 한다)의 경영자는 그 인증을 유지하려면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인증 또는 제5항에 따른 인증갱신에 대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 및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인증농장의 인증 절차 및 인증의 갱신, 재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현재 5개 축종(산란계, 육계, 양돈, 젓소, 한우)에 대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이 운영 중이며,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이 위탁받아 인증 업무를 수행 중이다.

참고로, 전체 동물복지 축산인증 농장 수는 2019년 262개소에서 2026년 6월 기준 517개소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축종별로는 달걀을 생산하는 산란계와 닭고기용 육계 농장이 전체 인증 농가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9~2026년 동물복지 축산인증 농장 및 사육규모 현황]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6월
산란계	농장 (개소 %)	144 (55)	168 (56.5)	190 (52.2)	223 (52.7)	241 (53.4)	253 (52.2)	280 (55.9)	293 (56.7)
	사육규모 (천마리)	2,315.9	2,863.3	3,391.1	4,519.8	5,320	5,798	6,566	7,068
육계	농장 (개소 %)	89 (34)	97 (32.6)	131 (36)	145 (34.3)	153 (33.9)	162 (33.4)	148 (29.6)	151 (29.2)
	사육규모 (천마리)	6,754.3	7,200.8	9,651	10,905.4	11,486	12,252	10,965	11,071
돼지	농장 (개소 %)	18 (6.9)	19 (6.5)	16 (4.4)	18 (4.3)	22 (4.9)	28 (5.8)	28 (5.5)	27 (5.2)
	사육규모 (천마리)	48.1	51.3	46.2	52.0	96.5	115	109	114
젓소	농장 (개소 %)	11 (4.1)	13 (4.4)	26 (7.1)	31 (7.3)	29 (6.4)	30 (6.2)	26 (5.3)	24 (4.6)
	사육규모 (마리)	1,412	1,345	3,420	4,538	4,142	4,391	4,000	3,757
한우	농장 (개소 %)	-	-	1 (0.3)	6 (1.4)	6 (1.3)	12 (2.5)	19 (3.7)	22 (4.3)
	사육규모 (마리)	-	-	180	778	778	1,166	2,656	2,944
합 계 (농장)		262	297	364	423	451	485	501	517

다만, 2027년도 계획안 34억 3,300만원은 ① 산란계(25억 6,300만원)와 ② 돼지(8억 7,000만원)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고, 축종별 지원단가는 동물복지축산 인증 농장의 예상 소득 감소분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산출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에 따르면, 산란계와 돼지를 시범사업을 통해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소득 감소율과 인증제 참여율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돼지는 소득 감소율(21.4%)이 가장 높은 축종이고, 산란계는 인증제 참여율(29.3%)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2027년도 동물복지축산직불 시범사업 예산안 산출 근거]

- ⑦ 동물복지축산직불 시범사업
- : (2026 당초 계획) 0백만원 → (2027 계획안) 3,433백만원, 3,433백만원 증액
 - (요구)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생산비 증가에 따른 소득감소분 차액 보전으로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 요구
 - * 국정과제 80 :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 (산출) 3,433백만원
 - (산란계) 2,563백만원 = 6,395천수(295호) × 365일 × 0.61(산란율) × 1.8원(지원단가) × 국비 100%
 - (돼지) 870백만원 = 115천두(29호) × 10%(모돈수) × 22.5두(아유두수) × 0.897(육성율) × 6,800원(지원단가) × 국비 100%(지급한도 30백만원 적용)
 - * 지급단가는 일반(관행) 사육농가와 동물복지축산 인증농장의 생산비 및 판매 수입 등을 분석하여 예상 소득감소분의 50% 적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산란계와 돼지의 지급 단가는 각각 개당 1.8원과 마리당 6,800원이며, 세부 산출은 다음 표와 같이 관행 사육과 동물복지 사육 간 생산비 차이에서 동물복지 인증에 따른 추가 수입을 차감하여 소득 감소액을 구하고, 그 감소액의 50%를 지급단가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027년도 동물복지축산직불 시범사업 지급단가 산출 근거]

(단위: 원, %)

구분	관행사육 (A)	동물복지 (B)	차액 (C=B-A)	소득 차액			감 소 율	지급단가 (E × 50%)
				추가 수입 수입(D)	차액 (C-D)	감소액 (E)		
산란계	12,705/100개	14,881/100개	2,176/100개	1,800	376	3.7/개	7.1	1.8/개
돼지	388,825/마리	432,571/마리	43,746/마리	30,000	13,746	13,746/마리	21.4	6,800/마리
젖소	89,633/100리터	95,748/100리터	6,115/100리터	동일	6,115	61/리터	17.3	30/리터
육계	23,529/10마리	26,256/10마리	2,727/10마리	2,574	153	15.3/마리	6.9	7/마리
한우	8,623,445/마리	8,797,596/마리	174,151/마리	동일	174,151	174,151/마리	2.0	87,000/마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분석의견

동물복지축산직불 시범사업을 동물복지 인증 농가의 생산비 증가에 따른 단기적 소득 보전 수단으로 운영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인증제 활성화 사업을 통해 소비자의 인식 개선과 구매행태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자발적인 지불을 통해 농가의 수입 증가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5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5,000명의 응답자 중 3,782명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3,782명 중에 62.6%인 2,369명이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인지도 및 인증 축산물 구입경험 여부 조사]

(단위: 명, %)

구 분		표본 수	응답 비율
① 오늘 처음 알게 되었다		1,220	24.4
② 표시만 알고 내용은 모른다		1,635	32.7
③ 내용만 알고 표시는 모른다		1,135	22.7
④ 내용과 표시를 모두 잘 알고 있다		1,010	20.2
합 계		5,000	100.0
인지도(②+③+④)		3,782	75.6
구입경험 여부	구입경험 있다	2,369	62.6
	구입경험 없다	1,413	37.4

자료: 2025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 인지자 중 인증 축산물을 구입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 1,413명에게 미구입 이유를 조사한 결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축산물이 뭔지 몰라서”가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일반 축산물보다 비싸서”(32.5%), “직접 장을 보지 않아서”(18.9%),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축산물을 찾기 어려워서”(11.0%) 순이었다.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 미구입 이유]

(단위: 명, %)

구 분	응답 비율	표본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축산물이 뭔지 몰라서	36.4	514
일반 축산물보다 비싸서	32.5	459
직접 장을 보지 않아서	18.9	267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축산물을 찾기 어려워서	11.0	155
기타	0.7	10
특별한 이유 없음	0.5	7
합 계	100.0	1,413

자료: 2025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한편,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농장동물 복지수준 개선을 위한 추가 지불 의향을 조사한 결과, 2025년에는 ‘1~10%’ 추가 부담 의향이 37.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31% 이상’(17.6%), ‘11~20%’(12.6%), ‘21~30%’(5.8%) 순으로 나타났다으며, 추가 지불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26.8%로 조사되었다. 평균 추가 지불 의향은 21.5%로 분석되었다.

[농장동물 복지수준 개선을 위한 추가 지불 의향 조사]

(단위: 명, %)

구 분	표본 수	응답 비율
의향없음	1,340	26.8
1~10%	1,855	37.1
11~20%	630	12.6
21~30%	290	5.8
31% 이상	880	17.6
합 계	5,000	100.0

자료: 2025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한편, 2027년 예산안 산출 내역을 보면, 동물복지축산 방식으로 사육 시 추가 수입이 2025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에서 응답한 농장동물 복지수준 개선을 위한 추가 부담 의향보다 낮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동물복지 인증 돼지 농가는 관행적인 사육 방식 대비 마리당 43,746원(11.3%)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반면, 수입은 관행적인 사육 방식의 452,989원 대비 30,000원(6.6%) 증가한 482,989원에 그쳐, 추가 수입 증가율이 비용 증가율(11.3%)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부 비용 항목별로는 고용 노동비(17.0%), 영농시설비(14.0%), 수도광열비(12.4%) 등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의 증가가 나타났다.

[동물복지 인증 돼지 농가의 수입-비용 분석]

(단위: 원/마리, %)

구 분	관행(A)	동물복지(B)	차액(B-A)	증감률
수입	452,989	482,989	30,000	6.6
비용	388,825	432,571	43,746	11.3
가축비	84,652	94,810	10,158	12.0
사료비	216,643	241,557	24,914	11.5
수도광열비	9,046	10,168	1,122	12.4
방역치료비	12,752	14,206	1,454	11.4
고용노동비	18,207	21,302	3,095	17.0
영농시설비	9,893	11,280	1,387	14.0
그 외 항목	46,632	49,248	2,616	11.3
소득	64,164	50,418	△13,746	△21.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 인증 산란계 농가 역시 관행적인 사육 방식 대비 100마리당 2,176원 (17.1%)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반면, 수입은 관행적인 사육 방식의 18,000원 대비 1,800원(10.0%) 증가한 19,800원에 그쳐, 추가 수입 증가율이 비용 증가율 (17.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동물복지 인증 산란계 농가의 수입-비용 분석]

(단위: 원/100마리, %)

구 분	관행(A)	동물복지(B)	차액(B-A)	증감률
수입	18,000	19,800	1,800	10.0
비용	12,705	14,881	2,176	17.1
가축비	2,552	2,603	51	2.0
사료비	7,833	9,489	1,656	21.1
방역치료비	152	205	53	34.8
고용노동비	529	688	159	30.0
그 외 항목	1,639	1,896	257	21.7
소득	5,295	4,919	△376	△7.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처럼 두 축종의 수입 증가율은 각각 6.6%, 10.0%로 모두 소비자들이 설문조사에서 농장동물 복지수준 개선을 위해 추가로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21.5%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어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물복지축산 직불제는 동물복지인증 농가의 생산비 증가와 소득 감소를 완화하는 단기적 소득 보전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동물복지축산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재정 지원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시장가격을 통한 수입 확보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2025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추가 지불의향은 21.5%로, 동물복지인증에 따른 돼지의 비용 증가율(11.3%)과 산란계의 비용 증가율(17.1%)을 모두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불의향이 실제 시장가격에 반영될 경우 농가의 소득 개선으로 이어져, 재정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동물복지축산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2025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에서 나타난 소비자의 지불의향은 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된 것으로, 실제 구매행태에 비해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지불의향이 실제 구매로 이어지고 있는지, 나아가 그 가치가 시장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어 산지 농가의 수입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불금을 통해 생산비 증가분과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는 방식을 지속할 경우, 인증 농가와 사육규모가 확대될수록 재정 부담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가 지속될 수 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축산인증제도를 운영함과 동시에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인증 농가, 희망 농가 대상 권역별 교육 및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고, 동물복지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동물복지인증 가치소비 페스타”, 대형 마트 홍보 등 사업³⁾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인증제 활성화 사업을 통해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적극 알리고 판매처를 확대하는 등 소비자의 구매 행태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지불의향이 실제 자발적인 지불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741-302

[동물복지축산인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 현황]

- 사업명: 동물복지축산인증제활성화(2027년 예산안: 10억 9,500만원)
- 목적: 일반농가의 동물복지축산 인증제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농가 교육·컨설팅 지원 및 동물복지축산물 소비 촉진 행사 추진
 - (교육·컨설팅) 인증 농가, 희망 농가 대상 권역별 집합교육 추진 및 인증제 신청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2027년 예산안: 8,200만원)
 - * (교육) 법령, 인증 기준 및 사양관리 등(5,000만원)
 - ** (컨설팅) 인증제 신청 준비, 인증 후 운영관리 등(3,200만원)
 - (소비 촉진) 동물복지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동물복지 인증 페스타」 및 대형 마트 등 홍보(27년 예산안: 1억 2,500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축산직불 시범사업을 동물복지 인증 농가의 생산비 증가에 따른 단기적 소득 보전 수단으로 운영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인증제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소비자의 인식 개선과 구매행태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동물복지 인증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의향이 실제 시장가격과 농가 수입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장 기반의 소득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

1

현황

가. 총수입·총지출

해양수산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하 “예산안”)은 일반회계, 3개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및 1개 기금(수산발전기금)으로 구성된다.

해양수산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1조 3,689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470억원(22.0%) 증가하였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920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11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2,063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3억원, 수산발전기금 1조 42억원이다.

[2027년도 예산안 해양수산부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431,451	421,478	421,478	364,680	△56,798	△13.5
-일반회계	129,552	89,189	89,189	91,962	2,773	3.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9,014	53,112	53,112	61,120	8,008	15.1
-교통시설특별회계	186,238	273,154	273,154	206,335	△66,819	△24.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281	2,696	2,696	-	△2,696	순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366	3,327	3,327	5,263	1,936	58.2
기 금	564,362	700,396	700,396	1,004,230	303,834	43.4
-수산발전기금	564,362	700,396	700,396	1,004,230	303,834	43.4
합 계	995,813	1,121,874	1,121,874	1,368,910	247,036	22.0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8조 140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4,026억원(5.3%)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조 209억원,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1조 9,528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1조 8,016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 회계 8,510억원, 수산발전기금 1조 3,876억원이다.

[2027년도 예산안 해양수산부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 산	6,001,417	6,209,103	6,290,906	6,626,321	335,415	5.3
-일반회계	1,888,035	2,049,637	2,049,637	2,020,855	△28,782	△1.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768,427	1,537,407	1,595,195	1,952,833	357,638	22.4
-교통시설특별회계	1,653,352	1,749,796	1,751,196	1,801,585	50,389	2.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1,802	57,661	70,547	-	△70,547	순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29,801	814,602	824,331	851,048	26,717	3.2
기 금	658,678	1,147,476	1,320,476	1,387,647	67,171	5.1
-수산발전기금	658,678	1,147,476	1,320,476	1,387,647	67,171	5.1
합 계	6,660,095	7,356,579	7,611,382	8,013,968	402,586	5.3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자료: 해양수산부

나. 세입·세출예산안

해양수산부 소관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해양수산부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안은 1조 9,599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618억원(3.3%)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20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11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1조 8,016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3억원이다.

[2027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29,552	89,189	89,189	91,962	2,773	3.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2,014	53,112	53,112	61,120	8,008	15.1
교통시설특별회계	1,836,488	1,749,796	1,749,796	1,801,585	51,789	3.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281	2,696	2,696	-	△2,696	순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366	3,327	3,327	5,263	1,936	58.2
합 계	2,084,701	1,898,120	1,898,120	1,959,930	61,810	3.3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1. 총계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안은 7조 9,318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3,225억원(4.2%)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조 3,263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조 9,528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1조 8,016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510억원이다.

[2027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355,001	3,236,518	3,237,918	3,326,344	88,426	2.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768,427	1,667,495	1,725,283	1,952,833	227,550	13.2
교통시설특별회계	1,653,352	1,749,796	1,751,196	1,801,585	50,389	2.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1,802	57,661	70,547	-	△70,547	순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29,801	814,602	824,331	851,048	26,717	3.2
합 계	7,468,383	7,526,072	7,609,275	7,931,810	322,535	4.2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다. 기금운용계획안

해양수산부 소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산발전기금 1조 7,610억원으로만 구성되어 전년 수정 계획안 대비 4,279억원(32.1%) 증가하였다.

[2027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수산발전기금	911,950	1,160,036	1,333,036	1,760,982	427,946	32.1

주: 1)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자체변경 포함)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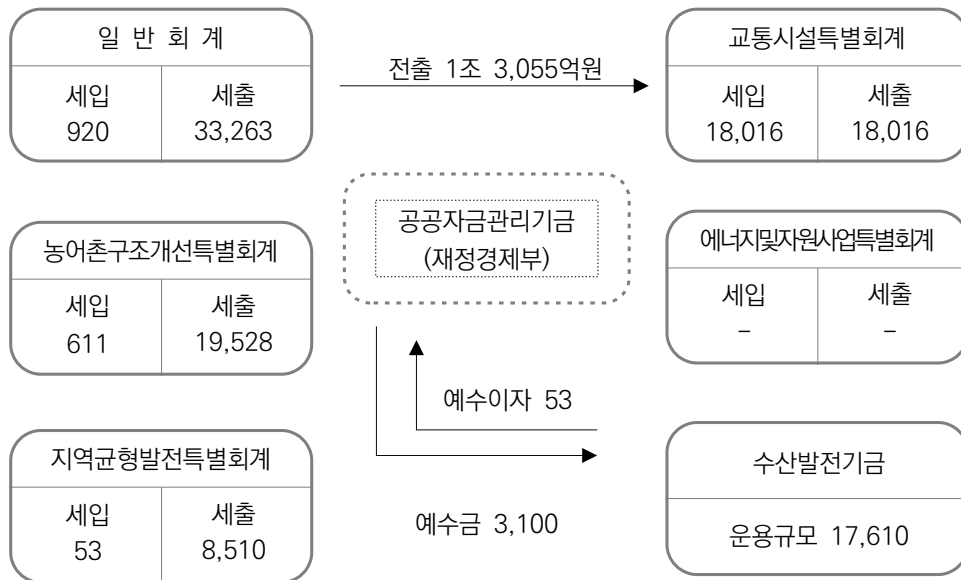
라. 재정구조

2027년도 예산안의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교통시설특별회계로 1조 3,055억원을 전출한다. 수산발전기금의 경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3,100억원을 예수받고 53억원의 이자를 상환한다.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2027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해양수산분야의 가시적인 성과 달성을 위하여, ① 해양수도권 본격 육성, ② 수산업 체질 혁신과 어촌 활력 회복, ③ 깨끗한 바다와 함께 성장하는 해양 신산업을 위한 사업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부문별 편성은 수산어촌에 3조 8,795억원(전년 대비 +11.2%), 해운항만에 2조 2,038억원(+2.8%), 물류등기타(해양산업)에 1조 1,596억원(+10.8%), 해양환경에 4,977억원(+15.6%), 과학기술연구지원에 2,733억원(+10.8%)을 편성하였고, R&D 예산은 9,183억원으로 666억원(+7.8%) 증가하였다.

2027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선박연료 정량공급 운영지원 사업은 질량유량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재정 지원 수요가 본격적으로 창출되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해양수산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6년(24척, 42억원)에 이어 2027년도(48척, 108억원)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사업 추진의 실효성과 재정 집행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와 어업 구조개선을 위해 2027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대폭 증액(71.3%) 편성하였으나, 최근 지자체의 감척 및 실집행 실적에 비추어 볼 때 연내 전액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행정절차 개선 등 사업 집행 부진의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해결 방안을 우선 마련하고, 지자체와 수행기관의 실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집행이 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차세대 디지털 육상 임대양식장 구축 사업은 육상양식의 생산원가 및 경제성, 민간 확산 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 검증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사업 대상지 및 입주기업 확정, 민간의 투자 및 운영 참여 여부 등을 우선 검증한 후 사업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인 재정 운용 측면에서 타당해 보인다.

넷째, 스마트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사업은 기존 수산물산지거점 유통센터(FPC) 사업 등과 추진 목적 및 기능 측면에서 유사·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FPC 등의 가동률, 물량 확보 현황 및 운영 성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기능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기존 시설과의 역할분담과 연계·활용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후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섯째, 연근해어업 발전지원(용자) 사업은 최근 실적을 크게 웃도는 용자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근거가 미흡한 상황에서 1,000억원의 계획안을 편성한 것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 편성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실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계획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북극항로 활성화 지원 사업은 북극항로 활성화라는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하되, 시범운항을 통해 실제 운항비용과 수요,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 민간 부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 규모와 추진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의 2027년도 신규사업은 총 33개 사업, 2,288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정지궤도 환경·해양위성개발사업(R&D)’은 한반도 및 주변 환경·해양의 연속적인 광역 관측이 가능한 정지궤도 환경·해양위성(천리안위성 6호)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247억원이 편성되었다. 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 중 ‘북극항로 활성화 지원 사업’은 미래 북극시대에 대비하여 북극항로 시범 운항 준비 지원과 북극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것으로 169억원이 편성되었다.

수산발전기금 사업 중 ‘연근해어업 발전지원(용자)’ 사업은 어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27년 6월 시행 예정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의무이행 어업인에게 저리의 정책자금을 용자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은 1,000억원이 편성되었다.

[해양수산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25개)	BBNJ 협정이행	1,960
	관할해역통합관리	2,000
	지능형해저지형 정보구축	3,896
	자율운항 시스템(운항보조) 보급 지원	2,933
	AI 협력형 자율 해양조사체계(정보화)	207
	해양전략광물정밀자원량평가및환경관리체계구축(R&D)	1,200
	정지궤도환경·해양위성개발사업(R&D)	24,748
	AI·멀티모달기반국가해양기존선변화자동탐지및예측기술개발(R&D)	1,500
	그린란드빙하변동진단및기후변화대응원격탐사연구(R&D)	1,000
	해양환경변화에따른로스해해양보호구역의생태계반응연구(R&D)	1,000
	북극수중항해를 위한 해양정보예보 및 음향탐지성능분석 시스템개발(R&D)	730
	북극해현안대응해빙-해양-해저환경 변화연구(R&D)	11,500
	기후위극복을위한지능형대양관측 및예측연구(R&D)	2,000
	AI기반 바이오 데이터·소재 통합·활용지원(해수부)(R&D)	6,205
	연골어류 나노바디활용 정밀타겟팅 소재 기술개발(R&D)	1,000
	해양수산 상생협력 기술사업화 지원(R&D)	1,065
	탄소중립 선도 해양용 용융염원자로(MSR) 핵심기술개발(해수부)(R&D)	6,300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해양미세플라스틱오염 및 생태위해성 통합관리기술 개발(R&D)	2,000
	해양생태계 신속관측 및 정밀진단기술 개발(R&D)	1,400
	연안·하구유입 해양쓰레기 확산방지 및 통합관리 기술개발(R&D)	1,930
	AI기반 스마트수산물 유통·공급망 구축(R&D)	800
	물김 생산성 평가 및 장기저장 기술개발(R&D)	1,850
	수산물 스마트가공 고도화를 위한 Physical-AI 적용 기술개발(R&D)	2,400
	피지컬AI기반 스마트항만 자율하역 기술개발(R&D)	2,920
	에이전틱 AI기반 차세대 항만운영 기술개발(R&D)	5,520
교통시설 특별회계 (7개)	북극항로 활성화 지원	16,903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	9,800
	북극항로 협력기반 구축	1,549
	AI기반 항만 안전관리 플랫폼 개발(R&D)	1,000
	AI기반 해사안전 재난·재해 관리시스템 구축(R&D)	2,500
	북극항로 운항선 추진·발전시스템의 안전·환경 기술개발 및 실증(R&D)	1,640
	항만 자율하역이송장비 AX 실증사업	7,350
수산발전기금 (1개)	연근해어업 발전지원(용자)	100,000
합 계		228,806

자료: 해양수산부

2027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북극新항로 개척을 위한 친환경 쇄빙 컨테이너선 개발(R&D),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R&D),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부산항 진해신항, 가공시설및운영(용자) 등이 있다.

① 북극新항로 개척을 위한 친환경 쇄빙컨테이너선 개발(R&D) 사업은 미래 북극시대에 대비하여 쇄빙컨테이너선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②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R&D)은 완전자율운항 기술 확보를 통하여 국제해사기구(IMO) Lv.4 달성 등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다.

③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사업은 5년간 근해어선 집중감척 추진 비용이 반영되었으며, ④ 부산항 진해신항 사업은 거점 항만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다. ⑤ 가공시설및운영(용자) 사업은 수산물가공업체에 스마트가공 지원을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다.

[해양수산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¹⁾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31개)	갯벌유산보전원 건립	1,057	1,057	9,900	8,843	836.6
	해양연구선(온누리호) 대체건조 사업(R&D)	2,700	2,700	22,694	19,994	740.5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통합관리 체계 구축	2,800	2,800	12,652	9,852	351.9
	세월호 인양 및 추모사업 지원	15,609	15,609	57,319	41,710	267.2
	해양공간 통합관리	4,490	4,490	12,461	7,971	177.5
	항만물류정보(정보화)	2,893	2,893	7,951	5,058	174.8
	해양영토관리역량강화	1,647	1,647	4,287	2,640	160.3
	크루즈산업 활성화 지원	998	998	2,568	1,570	157.3
	자율주행차 해상수출입서비스 기술개발(R&D)	1,400	1,400	3,600	2,200	157.1
	항만서비스 산업 선진화 지원	4,450	4,450	11,150	6,700	150.6
	국제해양환경규제대응 친환경선박 평형수처리 기술고도화 및 미세플 라스틱 포집 기술 개발(R&D)	1,000	1,000	2,500	1,500	150.0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R&D)	6,344	6,344	15,700	9,356	147.5
	공해생물다양성 보존(R&D)	1,000	1,000	2,400	1,400	140.0
	관공선건조 및 운영	22,578	22,578	52,288	29,710	131.6
	지능형해양수산재난정보체계운영 (정보화)	1,538	1,538	3,128	1,590	103.4
	CO2 수송-주입 복합기능선박 기술개발(R&D)	1,800	1,800	3,600	1,800	100.0
	해양생물독 생산 및 기능성 활용 기술개발(R&D)	5,300	5,300	9,800	4,500	84.9
	항행안전정보(정보화)	889	889	1,402	513	57.7
	오염퇴적물 정화,복원	15,643	15,643	24,021	8,378	53.6
	선원정책 지원	836	836	1,223	387	46.3
	해양조사선 건조 및 운영	8,797	8,797	12,713	3,916	44.5
	해저공간 관리체계 구축 핵심기술 개발(R&D)	1,600	1,600	2,300	700	43.8
	해양수산 융합형 전문인력양성 사업(R&D)	3,700	3,700	5,100	1,400	37.8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4,298	4,298	5,920	1,622	37.7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¹⁾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해양 글라이칸 활용 맞춤형 케어소재 산업화(R&D)	2,100	2,100	2,800	700	33.3
	해양생물 유래 바이오소재를 활용한 노화 극복 기술개발(R&D)	4,850	4,850	6,450	1,600	33.0
	북극新항로 개척을 위한 친환경 섀빙컨테이너선 개발(R&D)	3,700	3,700	4,900	1,200	32.4
	해양수산연수원 지원	49,125	49,125	64,152	15,027	30.6
	항만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	1,702	1,702	2,221	519	30.5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운영지원(R&D)	61,029	61,029	77,756	16,727	27.4
	한국해양과학기술원운영지원(R&D)	83,164	83,164	100,742	17,578	21.1
농어촌 특별회계 (13개)	전자어업허가관리기반구축(정보화)	200	200	1,555	1,355	677.5
	어촌어항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238	238	530	292	122.7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10,555	10,555	22,476	11,921	112.9
	원양어선감독관리체계구축	648	648	1,365	717	110.6
	연근해어선 안전관리 기술개발(R&D)	1,500	1,500	3,020	1,520	101.3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반구축	7,193	7,193	14,143	6,950	96.6
	수산자원조사선 건조	1,745	1,745	3,037	1,292	74.0
	연근해어선감적(지자체)	203,664	203,664	348,814	145,150	71.3
	해양수산 다자협력(ODA)	14,567	14,567	24,693	10,126	69.5
	소비자유통시설 지원	3,400	3,400	5,475	2,075	61.0
	어촌발전기반조성지원	385	385	530	145	37.7
	스마트수산업육성	13,300	13,300	17,800	4,500	33.8
	국가어항	374,549	374,549	385,631	11,082	3.0
교통시설 특별회계 (12개)	군장항(2단계)	8,577	8,577	184,599	176,022	2,052.3
	울산신항	1,340	1,340	27,273	25,933	1,935.3
	마리나 항만	359	359	4,751	4,392	1,223.4
	여수신항	3,792	3,792	9,790	5,998	158.2
	화물차 중량정보 플랫폼 구축 및 육상-항만 연계 실증사업(R&D)	400	400	700	300	75.0
	물류기업유치지원	8,592	8,592	13,230	4,638	54.0
	평택,당진항	50,452	50,452	77,035	26,583	52.7
	부산북항 재개발	1,378	1,378	2,069	691	50.1
	항만 민자유치 및 해외개발 협력	4,917	4,917	7,070	2,153	43.8
	표지시설(측위원)	7,432	7,432	10,682	3,250	43.7
	항만시설유지보수(비충액)	125,825	125,825	137,013	11,188	8.9
	부산항 진해신항	462,181	462,181	481,609	19,428	4.2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¹⁾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지역균형 발전 특별회계 (17개)	권역별 해양바이오 특성화 거점 구축	1,200	1,200	6,273	5,073	422.8
	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	13,400	13,400	42,100	28,700	214.2
	어촌신활력증진	2,613	2,613	3,714	1,101	42.1
	해양배터리 특화 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 기술 개발(R&D)	2,000	2,000	2,700	700	35.0
	해양 및 수자원 관리	69,401	69,401	97,949	28,548	41.1
	권역별 해양바이오 특성화 거점 구축(자율)	1,674	1,674	14,041	12,367	738.8
	추자항	4,590	4,590	14,997	10,407	226.7
	수산장비(임대)활용(제주)	10	10	378	368	3,680.0
	관상어산업육성(자율)	530	530	3,200	2,670	503.8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3,500	3,500	9,000	5,500	157.1
	제주외항(2단계)	6,081	6,081	12,885	6,804	111.9
	국가어항(제주)	5,353	5,353	10,569	5,216	97.4
	수산식품새싹기업도약지원(자율)	1,450	1,450	2,679	1,229	84.8
	어촌신활력증진(제주)	6,425	6,425	10,656	4,231	65.9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자율)	6,264	6,264	9,695	3,431	54.8
	해양레저관광기반(자율)	13,772	13,772	19,975	6,203	45.0
	친환경양식어업육성(자율)	6,250	6,250	8,250	2,000	32.0
수산발전 기금 (7개)	양식어업지원(용자)	2,240	2,240	20,000	17,760	792.9
	가공시설및운영(용자)	29,400	29,400	90,000	60,600	206.1
	해양폐기물 정화 지원(보조)	14,322	14,322	24,031	9,709	67.8
	원양어선안전관리	12,000	12,000	18,250	6,250	52.1
	수산식품산업육성	11,922	11,922	17,522	5,600	47.0
	원양어업경영자금	300,000	300,000	400,000	100,000	33.3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용자)	153,500	153,500	199,400	45,900	29.9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II

주요 사업 분석

1

선박연료 정량공급 운영지원: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정비 및 집행 여건을 고려한 예산안 규모 조정 필요

가. 현 황

선박연료 정량공급 운영지원 사업¹⁾은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를 도입하고 선박연료공급선에 질량유량계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7억원이 증액된 11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항만서비스 산업 선진화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항만서비스 산업 선진화 지원	1,470	4,450	4,450	11,150	6,700	150.6
선박연료 정량공급 운영지원	1,100	4,450	4,450	11,150	6,700	150.6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최근 선박연료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국제적으로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가 확대²⁾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탈세 원천 차단과 항만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동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항행선박 연료공급선에 질량유량계(MFM) 설치를 지원하는 선박연료 정량공급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보조사업자인 한국석유관리원이 사업 관리를 맡아 급유선의 질량유량계 설치와 점검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통해 불법 면세유 유통을 원천 차

정금연 예산분석관(nosmoking@assembly.go.kr, 6788-4632)

1) 코드: 일반회계 6133-355의 내역사업

2) 싱가포르의 2015년 기술기준(TR 48)을 제정한 후 2017년부터 선박연료 정량공급 제도를 전면 의무화하여 시행 중이며, 로테르담항·앤티워프-브뤼헤항 등 유럽 주요 항만도 자체적으로 질량유량계(MFM) 도입을 권장하거나 상당수 급유선박에 적용하고 있다.

단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병커링 산업의 신뢰를 회복하여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박연료 정량공급 운영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선박연료 면세유 불법유통 차단을 통해 선박연료 정량공급 실현
○ 사업내용
- 선박연료공급선을 대상으로 질량유량계 설치·운영비 지원
○ 수행주체: 해양수산부, 한국석유관리원(보조사업자), 급유선사(간접보조사업자)
○ 기대효과
- 세수증가
- 병커링 산업의 신뢰도 회복을 통한 산업성장 및 친환경연료 공급거점 항만 육성

자료: 해양수산부

한편, 해양수산부는 선박연료 정량공급 운영지원 사업을 2025년에 시범 사업으로 실시하였고, 2026년부터 예산안에 편성하였다. 2027년도 예산안은 총 111억 5,000만원 편성되었으며, 예산비목별로 보면 질량유량계(척당 4억 5,000만원)를 48척에 설치하기 위한 민간자본보조비가 108억원이고, 운영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비가 3억 5,000만원이다.

[2027년도 선박연료 정량공급 운영지원 사업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 산출내역	금액
선박연료 정량공급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경상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연료 정량공급 운영지원 350백만원 ○ 민간자본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연료공급선 48척×질량유량계 450백만원×국고보조 50% = 10,800백만원 	11,150

자료: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

첫째, 선박연료 정량공급 운영지원 사업은 질량유량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재정 지원 수요가 본격적으로 창출되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해양수산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6년(24척, 42억원)에 이어 2027년도(48척, 108억원)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사업 추진의 실효성과 재정 집행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선박연료 공급 과정의 급유량 분쟁과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공급의 투명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선박연료공급선에 질량유량계(MFM)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부터 질량유량계를 활용한 정량공급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당시 추진 과정에서는 제도 도입을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이 전제되어 있었다.

그런데 현행 「항만운송사업법」에는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질량유량계 등 정량 측정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 질량유량계 설치 의무화를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국회에 발의³⁾되어 있으며, 두 개정안 모두 외항선 선박연료공급업자에게 정량공급 의무를 부과하고 측정기기 설치를 명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동 사업은 해당 법률 개정이 완료되어야 민간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질량유량계 설치 의무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 수요도 본격화되는 구조이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정량공급제도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6년 예산(4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7년에는 이를 전년 대비 2.5배 수준인 111억 5,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3)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84, 2024. 7. 12. 정부 제출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09, 2026. 5. 11. 송재봉의원
제26조의4(측정기기의 설치 등) ① ~ ③ (생략)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설치하려는 선박연료공급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동 법 제27조의9⁴⁾를 근거로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항만운송사업 등의 육성을 위한 일반적인 지원 근거에 불과하며,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질량유량계 설치 의무화나 비용 보조를 명시한 구체적인 근거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정부가 별도의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정량공급 및 측정기기 설치 의무를 신설하고자 한 사실 자체가,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정량공급제도를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내 급유선 업체는 업체당 평균 1척, 총톤수 500톤 미만의 소형 선박을 주로 보유하고 있어 매우 영세한 실정이다. 법률상 설치 의무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고보조율 50%를 지원하더라도 적당 약 2억 2,500만원의 자부담이 발생하므로, 업체의 자발적인 사업 참여 수요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동 사업은 질량유량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재정 지원 수요가 본격적으로 창출되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해양수산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6년에 이어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사업 추진의 실효성과 재정 집행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질량유량계 설치 지원 사업은 실제 수요와 집행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지원 물량을 단기간에 과다하게 확대 편성한 측면이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실집행이 가능한 규모로 예산안을 재조정하고, 2026년도 사업의 최종 집행 실적, 실제 신청률, 설치 완료 척수, 미신청 사유 등을 정밀 분석한 후 단계적으로 지원 물량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질량유량계 설치 지원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은 지원 단가 인상(3억 5,000만원 → 4억 5,000만원) 및 지원 규모 확대(24척 → 48척)에 따라 전년 대비 157.1% 증액 편성되었다. 그러나 2026년도 예산의 집행 실적 부진 및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한 자발적 수요 저조 상황을 고려할 때, 2027년도 예산안은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다.

4) 제27조의9(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항만운송사업·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하여 항만운송사업자·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선박연료 정량공급 운영지원 예산안 비교]

2026년	2027년
- 선박연료공급선 24척×질량유량계 350백만원 ×국고보조 50% = 4,200백만원 ※ 적용환율: 1,380원/USD	- 선박연료공급선 48척×질량유량계 450백만원 ×국고보조 50% = 10,800백만원 ※ 적용환율: 1,490원/USD

자료: 해양수산부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단가 인상의 경우 질량유량계(해외 제작)의 운송비 및 환율 상승, 설치기간 연장(당초 7일 → 14일)에 따른 조선소 임차료와 인건비 증가 등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한 결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지원 척수 확대는 질량유량계 설치 급유선에 대한 순회급유 허용, 정유사 물량 우선 배정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에 따른 자발적 수요 증가를 예측하여 산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2024년 보조사업 적격성평가 결과에는 3년간 총 284척(2025년 4척, 2026년 140척, 2027년 140척)의 지원 계획이 제시되었다.⁵⁾ 그러나 실제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2025년 4척, 2026년 24척에 그쳤으며, 2027년 계획 물량 또한 48척에 불과하여 당초 적격성평가 계획 대비 집행 규모가 현저히 축소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도별 질량유량계 설치 계획]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지원척수	4척	24척	48척	55척	55척	186척

자료: 해양수산부

이처럼 당초 사업 계획(284척)과 조정된 지원 계획 규모(76척 수준) 간에 커다란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단순한 집행 지연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 이는 사업 추진

5) [선박연료 정량공급 운영지원 사업 보조사업 적격성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선박연료공급선 284척 ○ 사업기간: 2025~2027년 ○ 총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시범사업: 4척 × 2.5억원 × 보조율 100% = 10억원 - 2026년 본사업: 140척 × 2.5억원 × 보조율 50% = 175억원 - 2027년 본사업: 140척 × 2.5억원 × 보조율 50% = 175억원
--

자료: 해양수산부

초기 단계에서 급유선사의 실제 수요, 선박 구조상 설치 가능성, 노후도, 조선소 수리 일정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지원 물량을 과다 산정한 결과로 판단된다.

질량유량계는 일반적인 소모성 장비가 아니라 급유선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 설치해야 하는 장비이다. 특히 국내 급유선 업체는 1척 평균 500톤 미만의 소형 선박을 보유한 영세 사업자가 대다수이고, 설치 대상 선박(186척) 중 35%(65척)가 선령 20년 이상의 노후 선박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단순히 제도 시행에 따른 자연 수요 발생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실제 설치 희망 선박 및 선사에 대한 면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연도별 지원 물량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

[설치 대상선박 선령별 현황]

구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합계
척수	27척	26척	68척	50척	15척	186척

자료: 해양수산부

또한, 동 사업의 2026년 8월 기준 실집행액은 3,000만원(실집행률 0.7%)으로 확인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10월까지 11억 5,000만원을 추가 집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계획대로 집행되더라도 2026년도 전체 예산(44억 5,000만원) 대비 예상 집행률은 26.5%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 질량유량계 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교부현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A)			이월액	(B)	(C)			
2025	1,470	1,470	1,470	1,470	-	1,470	1,448	-	-	98.5
2026.8	4,450	4,450	3,115	3,115	-	3,115	30	-	-	0.7

자료: 해양수산부

동 사업의 특성상 질량유량계 설치를 위해서는 급유선의 조선소 입거, 선박검사, 장비 제작·설치, 작동 점검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실제 추진 일정을 보

면 4~9월 사전 준비, 10~11월 설치, 11~12월 검사 및 점검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질량유량계 설치 절차]

단계	흐름	내용	일정
설치 준비	MFM 계약	-(보조사업자) 입찰, 계약, 구매	'26.4 ~ '26.9
	선박정보조사	-(MFM 업체) 선박점검 및 규격 작성, 자료(도면 등) 확보	
	MFM 제작	-(MFM 업체) 규격에 따른 MFM 제작	
	MFM 검수	-(보조사업자) 규격에 따른 MFM 검수	
설치	조선소 입항	-(급유선) MFM 설치를 위해 조선소 입항	'26.10 ~ '26.11
	MFM 설치	-(MFM 업체) 선박 규격에 따라 맞춤 제작된 MFM 설치 및 작동 확인	
	선박검사	-(급유선) KR, KOMSA를 통한 선박검사 수행	
점검	MFM 작동점검	-(보조사업자) 설비작동점검, 하자검사, 데이터 분석, 오차범위 확인, 등	'26.11 ~ '26.12
활용	MFM 활용	-(급유선사) 급유기록보관, 급유티켓발행 등 * 설치확인서를 발행하여 급유 시 본선에 MFM 설치여부 증빙	'27~

자료: 해양수산부

따라서 동 사업은 실제 수요와 집행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지원 물량을 단기간에 과다하게 확대 편성한 측면이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실집행이 가능한 규모로 예산안을 재조정하고, 2026년도 사업의 최종 집행 실적, 실제 신청률, 설치 완료 척수, 미신청 사유 등을 정밀 분석한 후 단계적으로 지원 물량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집행부진 원인 분석을 통한 실집행 가능 규모의 예산 편성 필요

가. 현 황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¹⁾은 연근해²⁾ 어선을 수산자원량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고 어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51억 5,000만원이 증액된 3,488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연근해어업감척(지자체)	220,567	203,664	203,664	348,814	145,150	71.3
연근해어선감척	220,067	203,164	203,164	348,014	144,850	71.3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500	500	500	800	300	60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1994년 도입된 이래, 지난 32년간(1994~2025년) 총 2조 6,0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체 어선의 32.2%에 해당하는 2만 2,090척³⁾을 감척한 것으로 확인된다.

정금연 예산분석관(nosmoking@assembly.go.kr, 6788-4632)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145-300

2) 「수산업법」에 따르면, ‘근해어업’은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動力漁船)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말한다. 또한 ‘연안어업’은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구획어업 외의 어업을 지칭한다.

3) 1994년 기준 6만 8,629척의 어선 중 2만 2,090척을 감척(근해 3,161척, 연안 1만 8,929척)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실적(1994~2025년)]

(단위: 척, 억원)

구 분	합 계		일반감척('94~계속)		국제감척('99~'02) ¹⁾	
	척수	금액	척수	금액	척수	금액
연안어선	18,929	8,073	18,929	8,073	-	-
근해어선	3,161	17,937	1,853	11,494	1,308	6,443
합 계	22,090	26,010	20,782	19,567	1,308	6,443

주: 1) 국제감척은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 특별법」에 근거하여 1999년부터 2002년간 시행되었으며, 국제감척의 폐업지원금은 일반감척 지원 비율보다 높은 개별 평가에 의하여 평년수익액 3년분의 90%를 지원함

자료: 해양수산부

정부는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조성 and 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단위의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매년 감척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감척 대상 어업 지정, 대상자 선정, 어업인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연근해어선 감척 방식은 어업인의 신청에 따른 ‘자율감척’과 목표 물량 미달 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직권감척’으로 구분되고, 사업 대상 어업자에게는 어선·어구의 감정평가에 따른 매입비용과 평년 수익액 3년분 범위의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며, 실직한 어업종사자에게는 별도의 생활안정지원금⁴⁾을 지급하고 있다.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개요]

구분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사업목적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구조조정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어업 경영여건 개선 도모
법적근거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2. 7. 시행)
사업기간	1994년~

4)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대상은 자율감척 대상자 선정 통보일 기준으로 감척대상 어선에 승선중이어야 하며, 선정 통보일까지의 근로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선원으로 선정 통보일까지 노무를 제공한 자여야 한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선원 1인당 통상임금 고시액의 최대 6개월분이 지급되며, 금액은 근로기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구분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감척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감척(어업인의 신청) • 직권감척(자율감척 신청 저조 시 해양수산부 또는 시도지사가 직권감척)¹⁾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척대상자로 선정된 선주에게 아래 비용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업지원금(평년 수익액의 3년분×100%) - 어선·어구 잔존가치 - 어선원 생활안정자금(실직어선원, 통상임금의 최대 6개월분) 지원 • 직권감척 불응자는 면세유, 영어자금 신규용자 지원 축소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세유·신규용자 조정률 :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이후 50%

주: 1) 2022년 이후 직권 감척 실적은 없음

자료: 해양수산부

2027년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예산안은 총 3,488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적으로 연근해어선 감척 예산 3,442억 7,700만원과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및 감정평가 등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45억 3,700만원이다.

[2027년도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 산출내역	금액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344,57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근해어선감척(344,27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해어선 감척: 295,350백만원 - 연안어선 감척: 495척×121백만원×국고 70% = 41,927백만원 - 정치망어업: 5개×2,000백만원×국고 70% = 7,000백만원 ○ 연근해어업실태조사(3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어업 실태조사: 11시도×54.54백만원×국고 50% = 300백만원 	348,814
☐ 민간위탁사업비(320-02): 4,23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근해어선감척(3,73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해어선 감정평가: 281척×13.3백만원×국고 100% = 3,737백만원 ○ 연근해어업실태조사(5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해어업 실태조사: 1식×500백만원×국고 100% = 500백만원 	

자료: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와 어업 구조개선을 위해 2027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대폭 증액(71.3%) 편성하였으나, 최근 지자체의 감척 및 실집행 실적에 비추어 볼 때 연내 전액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행정절차 개선 등 사업 집행 부진의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해결 방안을 우선 마련하고, 지자체와 수행기관의 실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집행이 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7년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예산안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 편성하였다. 2027년도 예산안은 3,488억 1,400만원으로, 2026년도 예산(2,036억 6,400만원) 대비 1,451억 5,000만원(71.3%) 증가하였다.

반면, 전체 감척 목표 물량은 700척(근해·연안·정치망 포함)으로 전년(752척) 대비 52척(6.9%) 감소하였는데, 이처럼 총 감척 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은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근해어선 감척 물량이 74척에서 200척으로 126척(170.3%)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027년도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의 목표감척수 증감]

(단위: 척, 백만원)

구분	2026년 예산(A)		2027년 예산안(B)		증감(B-A)	
	감척수	금액	감척수	금액	감척수	금액
연근해어선	752	201,661	700	344,277	△52	142,616
근해어선	74	135,000	200	295,350	126	160,350
연안어선	671	56,861	495	41,927	△176	△14,934
정치망어업	7	9,800	5	7,000	△2	△2,800

주: 근해어선 감정평가비 제외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2027년도 감척 물량 및 예산안을 증액한 이유로, 기후변화 고영향 업종을 중심으로 과도한 어선 세력을 집중 감척하여 어선당 어획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위해 수산자원 영향력이 큰 근해어선은 36%를 감척하는 한편, 어촌 일자리 유지가 필요한 연안어선은 8% 수준으로 차등 감척한다는 방침이다.⁵⁾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⁶⁾에 따라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24~2028)』(이하 “제3차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추진하고 있는데, 동 계획에 따르면 2027년 수산물 자급률 79% 달성과 연근해 생산량 104.8만톤 유지를 목표로, 5개년(2024~2028년)간 근해어선 524척, 연안어선 1,500척을 감척할 계획이다.⁷⁾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24~2028)」에 따른 감척규모]

(단위: 척, 만톤)

업종	어선척수 (’22년)	감척 규모	잔여 어선	장기 생산량	비고
①연근해어업	37,238	2,024	28,178	89.0	-
근해어업	2,385	524	1,861	65.6	1척당 352.4톤 생산 전망
연안어업	34,853	1,500	33,353	23.4	1척당 7톤 생산 전망
②구획·정치망·신고	-	-	-	15.8	’22년 수준 생산유지
합계(①+②)	-	-	-	104.8	자급률 79%

자료: 해양수산부

5) 해양수산부는 연구용역 『연근해어업 적정 어선규모 분석』(2026.2.~ 8.) 결과에 따른 수치로 설정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6)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평가와 이 법 제4조에 따른 어업 실태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5년마다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업구조개선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어업구조개선의 추진전략과 추진방법
3. 어업구조개선을 위한 재원 규모와 연도별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어업구조개선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업구조개선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를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외 어업여건의 변화, 특정 수산자원의 변화 및 어업자의 경영 상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동 기본계획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대형트롤, 동해구트를 등 불법조업, 경영실태를 고려하여 근해어선을 단기간 내 집중 감척하고, 연안어선은 타 업종과 분쟁이 심한 업종을 중심으로 감척할 계획이다.

이처럼 해양수산부가 제3차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맞춰 연도별 감척 목표를 수립하고 예산에 반영한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27년도 감척 목표가 기본계획 달성을 위해 다소 과도하게 설정된 측면이 있다.

우선, 2027년 감척 목표 수치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2024년부터의 누적 실적과 2027년 계획을 합산한 추정치는 근해어업이 목표(524척) 대비 88.5%(464척), 연안어업이 목표(1,500척) 대비 105.7%(1,586척)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최근 연도의 감척 실적과 지자체 실집행률을 고려할 때, 2027년도 예산안은 실제 집행 가능 수준을 초과하여 과다 편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연도별 연근해어선 감척 실적을 살펴보면, 감척 척수 기준(연안·근해 합산)으로 2023년 252척, 2024년 267척, 2025년 343척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나, 실제 감척은 연간 250~340척 안팎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면 2027년도 감척 목표 척수는 총 700척(근해 200, 연안 495, 정치망 5)으로, 최근 최고 실적인 2025년(343척)과 비교하더라도 2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연도별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의 감척 실적]

(단위: 척, 백만원)

연도	구분	감척실적		
		계	연안어선	근해어선
2023	척수	252	176	76
	금액	132,578	25,785	106,793
2024	척수	267	181	86
	금액	181,223	27,005	154,218
2025	척수	343	239	104
	금액	198,555	30,674	167,881
합계	척수	862	596	266
	금액	512,356	83,464	428,892

주: 2025년은 이월되어 추진 중으로 사업완료 후 변동 가능함

자료: 해양수산부

또한,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의 지자체 실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실집행률은 2023년 83.0%, 2024년 86.0%를 기록하고, 2025년도에는 교부현액 2,414억 2,800만원 중 1,307억 4,900만원이 집행되어 실집행률이 54.2%에 그쳤으며, 미집행 예산은 이월 및 불용 처리되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도 전년도 이월액을 포

함한 교부현액 2,163억원 중 실집행액은 769억 6,100만원(실집행률 35.6%)에 머물고 있다.

2025년 실집행이 저조했던 주요 원인은 감척지원금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⁸⁾이 됨에 따라 어업인들의 감척 신청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확인된다.

[연도별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예산액		집행액 ¹⁾	교부액 ¹⁾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23	134,078	134,078	118,411	117,368	10,642	128,010	106,278	18,423	3,309	83.0
2024	162,607	162,607	178,317	176,122	18,423	194,545	167,321	23,534	3,690	86.0
2025	220,567	220,567	220,567	217,894	23,534	241,428	130,749	105,531	5,148	54.2
2026.8	203,664	203,664	112,472	110,769	105,531	216,300	76,961	-	-	35.6

주: 1) 해양수산부 집행액과 지자체 교부액이 다른 것은 지자체 교부액은 근해어선 감척 감정평가, 근해어업 실태조사(민간위탁) 예산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자료: 해양수산부

감척사업은 일반 시설사업과 달리 예산 투입만으로 감척 대상 어선이 자동 확보되지 않으며, 어업인의 신청·동의 및 감정평가·손실보상 등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경제적 유인 부족, 행정 절차 지연 등 과거 집행 부진을 초래한 원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한 뒤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낮게 책정된 폐업지원금으로 인한 어업인 수용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⁹⁾을 개정(2026.9.11.)하였고, 이를 통해 연근해어업의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이 기준액¹⁰⁾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어업인의 참

8) 1999년 도입된 비과세 특례가 2009년 12월 31일 일몰 종료됨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2010년부터 과세 대상이었으나, 장기간 현장에서 과세가 유예되어 왔다. 그러나 국세청이 2024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감척지원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서 실제 과세가 시작되었다.

9)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어업자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연근해어업의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여를 유도하여 감척 실적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¹¹⁾으로 감척지원금 과세 방식이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변경됨에 따라 어업인의 세부담이 완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감척 사업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폐업지원금 증액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감척사업의 집행 부진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획기적인 개선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근해어선 감척 절차는 ‘감척 대상 어업 고지(공고)’부터 ‘최종 어업허가 취소 및 폐선 처리’까지 총 13단계의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¹²⁾, 이에 따라 2027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하더라도 사업 수행 주체인 지자체와 한국수산업자협회의 행정 및 감정평가 처리 역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집행 지연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집행 역량 및 행정 병목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사전 검토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동 사업의 실질행 부진과 관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2023 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동 사업에 대하여 ‘감척신청절차 개선 등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집행부진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시정요구한 바 있다.

10) [기준액 산출방법]

(추진 배경) : 기후변화 등 최근 어획량 급감으로 일부 업종은 감척 시 지원받는 폐업지원금 개별 평가액이 낮거나, “0원”으로 평가되는 사례 발생
* 폐업지원금 = 평년수익액의 3년분 = (3년평균 어획량×평균판매단가-평년어업경비)×3
(산출방식1): 3년 평균어업이익의 3년분으로 산정하되, 어업이익이 전년 대비 1.5배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만큼 소급하여 산정
(산출방식2): 기준액의 급등락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 산정한 기준액이 직전기준액의 1.5배 초과 시 1.5배로 한정
- 산정한 기준액이 기준액보다 낮으면, 직전기준액 유지

1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의3. 어업권, 양식업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포기·취소 또는 제한으로 지급받는 지원금 또는 보상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나. 「수산업법」 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고 지급받은 금액

12) 해양수산부는 행정 절차 간소화(13단계 → 11단계)와 사업 기간 단축(12개월 → 10개월)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있다.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 관련 시정요구사항]

구 분		시정요구사항	유형
2023회계연도 결산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는 감척신청절차 개선 등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의 집행부진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수산자원량 증대, 경영개선 등 감척 효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 개선

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보고서」

종합하여 볼 때,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와 어업 구조개선을 위해 2027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대폭 증액(71.3%) 편성하였으나, 최근 지자체의 감척 및 실집행 실적에 비추어 볼 때 연내 전액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¹³⁾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행정절차 개선 등 사업 집행 부진의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해결 방안을 우선 마련하고, 지자체와 수행기관의 실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집행이 가능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13) 해양수산부는 최근 어획량 감소로 어업인의 경영이 악화되어 감척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동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어업인의 높은 감척 수요에도 불구하고 실제 신청을 포기하거나 감정평가액 불만족 등으로 사업을 철회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단순한 수요조사 결과만으로 최종 감척 물량이 많을 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 감척수요(척) : ('20) 223 → ('21) 652 → ('22) 555 → ('23) 622 → ('24) 966 → ('25) 1,137

가. 현 황

김산업 육성 사업¹⁾은 김산업 발전 및 수출 기반 구축 등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고수온, 이상 해황 등 기후변화와 글로벌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K-GIM AX 선도지구 기반 조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93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27년도 김산업 육성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김산업 육성	-	-	-	9,300	9,300	순증
마른김 가공공장 세척수 공동 배출시설	-	-	-	500	500	순증
마른김 품질정보 플랫폼 구축	-	-	-	250	250	순증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협정 체결 전략 마련	-	-	-	150	150	순증
K-GIM 산업 생태계 조성	-	-	-	600	600	순증
K-GIM 지속가능한 생산 시스템 구축	-	-	-	4,500	4,500	순증
차세대 디지털 육상 임대양식장구축	-	-	-	3,300	3,300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동 사업은 김 생산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 지원 및 AI 혁신 추진으로 김 생산량 증대, 수출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김 가공공장의 세척수 공동배출시설 구축 지원, 플랫폼 구축 지원 등으로 기존 김 산업계를 지원하고, K-GIM AX 수출전략기지(선도지구) 구축을 통해 김 분야 AI·AX 혁신 추진으로 기존 전통 김 생산·가공

정금연 예산분석관(nosmoking@assembly.go.kr, 6788-4632)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832-314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양 데이터 수집·분석 및 생육 예측 모델을 적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6개의 내역사업에 93억원을 2027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하였다.

[2027년도 김산업 육성 사업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 산출내역	금액
① 마른김 가공공장 세척수 공동배출시설 500백만원 - 10,000백만원 x 국비 50% x 1식 x 연부율 10% = 500	500
② 마른김 품질정보 플랫폼 구축 250백만원 - 마른김 품질정보 플랫폼 구축 250백만원 x 국비 100% x 1식 = 250	250
③ 유기가공식품 인증 동등성 인정 협정전략 마련 150백만원 -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150백만원 x 국비 100% x 1식 = 150	150
④ K-GIM 산업 생태계 조성 -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600백만원 x 국비 100% x 1식 = 600	600
⑤ K-GIM 지속가능한 생산 시스템 구축 4,500백만원 - 해상 스마트 김 양식장 지원 · 3,000백만원=1,500백만원×2권역×국비 100% - 지속가능한 생산 시스템(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1,500백만원=플랫폼 1식×국비 100%	4,500
⑥ 차세대 디지털 육상 임대양식장 구축 3,300백만원 - 임대생산 시설 구축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 1식 x 3개소 x 2,000백만원 x 국비 50% = 3,000 - 운영·전문인력 양성 전문기관 민간위탁 · 1식 x 300백만원 = 300	3,300
합 계	9,300

자료: 해양수산부

정부는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²⁾(이하 “김산업법”)에 따라 김산

2)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김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3. 김산업 전문인력의 육성 및 통계·정보화에 관한 사항
4. 김양식의 생산성 향상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5. 김과 김가공품의 판매확대를 위한 시장 개척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2023~2027년)」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 중이다.

특히 김을 수산식품 핵심 수출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품질 고도화, 생산성 향상, 시장 확대,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 예산안에도 'K-GIM 산업생태계 조성' 등 스마트·고부가가치 수산업 육성을 주요 정책으로 반영하였다.

「김산업법」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보화, 생산성 향상, 유통 지원, 수출시장 개척, 국제협력, 품질 향상 등 다각적인 정책 수단이 포함되므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분석의견

첫째, 차세대 디지털 육상 임대양식장 구축 사업은 육상양식의 생산원가 및 경제성, 민간 확산 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 검증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사업 대상지 및 입주기업 확정, 민간의 투자 및 운영 참여 여부 등을 우선 검증한 후 사업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인 재정 운용 측면에서 타당해 보인다.

동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 93억원 중 'K-GIM 지속가능 생산시스템 구축(45억원)'과 '차세대 디지털 육상 임대양식장 구축(33억원)' 두 사업이 전체 예산의 83.9%(78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김 산업 육성 사업의 핵심 예산이 품질관리나 수출지원 등 기존 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보다는, 대규모 시설 및 디지털 시스템 구축에 치우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차세대 디지털 육상 임대양식장 구축' 사업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230억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며, 첫해인 2027년에는 3개소의 기본·실시설계비로 33억원이 반영되었다.

-
6. 국제교류·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7.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향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7의2. 김 종자의 배양 및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차세대 디지털 육상 임대양식장 구축 사업의 연차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7	2028	2029	2030	2031	계
① 임대생산 시설 구축 자치단체자본보조(국비 50%)	3,000	4,500	9,500	2,000	1,000	20,000
② 운영·전문인력 양성 (민간위탁사업비)	300	600	700	700	700	3,000
합계	3,300	5,100	10,200	2,700	1,700	23,000

자료: 해양수산부

동 사업은 김 양식시설 구축과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청년 등 신규 양식업자의 진입을 돕고, 거점 센터의 교육·실습 및 초기 사업화 지원을 거쳐 성공 모델을 확산³⁾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차세대 디지털 육상 임대양식장 구축 운영 현황]

지역	전남 고흥	전북 군산(새만금)	충남 홍성	김제
규모(예정)	약 1,000㎡	약 800㎡	약 1,000㎡	약 1,200㎡
목표생산량 (’29)	약 60톤	약 300톤	약 30톤	약 35톤
생산 방식	반폐쇄식(유수식)	바이오리엑터	부유식/순환여과식	유수식
기타	대상(주) 실증지	플무원(주) 실증지	어민 대상 김 육상양식 교육 진행 예정	

주: 현재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육상 임대양식장임

자료: 해양수산부

그러나 육상 양식장은 일반 시설 지원 사업과 달리 초기 투자비 외에도 전력비, 취·배수비,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등 대규모 운영비가 지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정부가 시설을 조성하여 임대하더라도 입주기업의 실질적인 수익 창출 및 자립 가능 여부가 사업 성패의 핵심 요소로 판단된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장별 생산목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생산량 증가가 입주기업의 실질적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임대료 및 운영비를 부담하고도 사업성이 확보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성 분석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3) 임대 grow-out bay(종자 상태의 수산생물을 성어까지 키우는 수조)를 어업인·기업에 임대 → 운영경험 → 성공모델 확산(임대 선순환)

즉, 육상양식은 해상양식 대비 시설투자비, 해수 취·배수 및 정화 비용, 전력비, 인건비 등 지속적인 비용 부담이 커 단순히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를 반영한 단위 생산량당 비용, 기존 해상양식 대비 생산원가, 손익분기점, 민간 이양 가능성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차세대 디지털 육상 임대양식장 구축 사업은 육상양식의 생산원가 및 경제성, 민간 확산 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 검증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사업 대상지 및 입주기업 확정, 민간의 투자 및 운영 참여 여부 등을 우선 검증한 후 사업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인 재정 운용 측면에서 타당해 보인다.

둘째, K-GIM 지속가능 생산시스템 구축 사업은 AI 생산예측의 정확도 등에 대한 사전 검증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향후 표준 데이터 체계 구축, AI 예측 모델의 정확도 검증, 해역별 생산성 개선 효과 분석 등을 검증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K-GIM 지속가능 생산시스템 구축’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 및 생산량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김 주산지 양식장에 IoT 센서를 설치하여 환경 정보를 실시간 수집하고, AI를 활용해 생산량·질병·성장 상태 등을 예측·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GIM 지속가능한 생산시스템 구축 프레임워크(안)]



자료: 해양수산부

동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산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정부 역시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고수온 적응 품종 개발과 생산 공정의 자동화·스마트화를 추진하는 등 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50억원(국비 100%)을 투입할 계획이고, 2027년도 예산안에는 데이터 수집용 해상 스마트 김 양식장 조성 지원(IoT 센서망 구축·운영),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 45억원을 편성하였다.

[K-GIM 지속 가능한 생산 시스템 구축 사업 개요]

추진배경	고수온·황백화 등 기후변화 리스크 대응하여 AI 기반 생산 최적화 시스템 구축을 통한 생산 안정성과 K-GIM 수출 경쟁력 확보
사업위치	지자체 공모 평가를 통해 선정 예정(고수온·질병 우심해역)
사업기간	2027년~2031년
총사업비	15,000백만원(국비 100%)
2027년도 예산안	- 해상 스마트 김 양식장 지원: 3,000백만원=1,500백만원×2권역×국비 100% - 지속가능한 생산 시스템(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500백만원=플랫폼 1식×국비 100%

자료: 해양수산부

그런데 동 사업은 AI 기반 생산예측의 정확성, 예측 정보 활용에 따른 생산비 절감 및 폐사율 감소 효과, 개별 어가의 시스템 지속 활용을 위한 경제적 유인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전 검증 및 조사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특히, AI 시스템은 단순 센서 및 플랫폼 설치만으로 성과를 내기 어려우며, 장기간 축적된 데이터와 정밀한 학습모델이 필수적이고, 또한 김 양식은 해역별 수온·염분·조류 및 품종·양식 방식에 따라 생산 조건의 격차가 크므로, 특정 지역에서 실증된 AI 모델을 타 해역에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성과 검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K-GIM 지속가능 생산시스템 구축 사업은 AI 생산예측의 정확도 등에 대한 사전 검증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향후 표준 데이터 체계 구축, AI 예측 모델의 정확도 검증, 해역별 생산성 개선 효과 분석 등을 검증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북극항로 활성화 지원: 경제성 검증 기반의 단계적 사업 확대 및 내역사업 간 유사·중복 방지 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북극항로 활성화 지원 사업¹⁾은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하여 시범운항을 실시하고 취득한 데이터를 우리 기업 등에 공유하여 글로벌 해운기업 육성과 북극항로 상업운항 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169억 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27년도 북극항로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북극항로 활성화 지원	-	-	-	16,903	16,903	순증
북극항로 정기노선화 지원	-	-	-	12,465	12,465	순증
운항데이터 수집 시스템 구축 지원	-	-	-	2,100	2,100	순증
극지운항선박 안전 운항 지원	-	-	-	80	80	순증
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운영	-	-	-	2,258	2,258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동 사업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2026.12.17.시행)(이하 “북극항로법”)에 따라 추진되었고, 북극항로 개척 초기의 국적선사의 시범운항 지원, 운항 데이터 수집 시스템 구축, 극지운항선박 안전운항 지원 및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북극항로의 상업적 운항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7년도 북극항로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 산출내역	금액
북극항로 정기 노선화 지원	○ (운항 지원) 1.5항차 운항, 11,715 ○ (종합지원센터 운영) 750	12,465
운항 데이터 수집 시스템 구축지원	○ (수집시스템 구축) 2회 운항, 2,100	2,100
극지운항선박 안전운항 지원	○ (위험성평가 운항메뉴얼 마련 및 개별화 지원) 80 - 40 × 2척 × 100%	80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데이터 플랫폼 구축) 1,558 ○ (마스터플랜 수립 및 데이터 수집) 700	2,258
합계		16,903

자료: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

첫째, 북극항로 활성화 지원 사업은 북극항로 활성화라는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하되, 시범운항을 통해 실제 운항비용과 수요,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 민간 부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 규모와 추진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예산의 74%를 차지하는 ‘북극항로 정기 노선화 지원’은 연 1.5회²⁾의 시범운항을 전제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동 시범운항 사업은 과거 총 5회³⁾[2013년(1회), 2015년(1회), 2016년(3회)] 실시 이후 중단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중단 사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나 재추진 시 실효성 확보 방안 없이 2027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다.

- 2) • 지원 규모: 최대 1.5회 지원 (왕복 1회 및 2회차 입항 0.5회)
• 민간 부담: 2회차 출항 비용은 민간 선사 자체 부담

3) [과거 운항 현황]

- 2013년: 현대글로벌비스(시범 운항)
- 2015년: CJ대한통운(1회, 단발성 운항)
- 2016년: 팬오션(2회), SLK국보(1회, 단발성 운항)

북극항로⁴⁾는 운항 거리가 단축된다는 이점만으로 경제성이 확보된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 북극항로 운항은 상시 정기항로가 아닌 여름철 등 특정 시기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러시아·중국 등 일부 국가 선박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또한, 기존 항로 대비 쇄빙서비스 이용료, 높은 보험료, 극지운항 선박 건조·개조 비용, 계절적 운항 제약, 항만 및 물류 인프라 미비, 해빙 상태 변화에 따른 운항 지연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의 2027년도 예산안은 ‘시범운항 → 운항 데이터 축적 → 경제성 검증 → 정기 노선화’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 대신 정기노선화를 전제로 상당한 규모의 운항비를 지원하는 구조이다. 더욱이 운항비 지원, 데이터 시스템 구축, 안전운항 지원 등의 내역사업이 각각 병렬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동일한 정책목표를 중복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북극항로 활성화 지원 사업의 북극항로 1회 운항비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 산출내역	금액
연료비	○ 소모량: 1,496톤	1,824(1,215,958\$)
선박비	○ 용선료: 34,695/일, 총 50일	2,602(1,734,750\$)
보험비	-	222(148,000\$)
안전정보 이용료	-	29(19,200\$)
쇄빙서비스 이용료	-	1,359(906,111\$)
항만 이용료	-	900(600,000\$)
운항비 총계(A)		6,936(4,624,019\$)
기타 비용(B)	○ 인건비, 선용품, 운영비 등	694(462,402\$)
운항 백서(C)	-	100
합 계(A+B+C)		7,730

주: \$1 = 1,500원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4) [항로별 거리 단축 효과]

주요 구간	북극항로 (km)	기존항로 (km)	단축효과 (km)
부산-로테르담	(북동항로) 13,000	(수에즈) 20,000	7,000 (35%)
부산-뉴욕	(북서항로) 14,000	(파나마) 19,000	5,000 (27%)
부산-퀘벡	(북서항로) 13,000	(파나마) 22,000	9,000 (41%)

자료: 해양수산부

시범운항 자금 지원은 민간 선사의 참여를 유도하는 마중물 성격이어야 함에도, 운항 손실분 전액과 운항 경비 전반을 재정으로 일괄 보조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타 해운 지원 정책과의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선사의 자부담 비율 설정 없이 회당 76억원의 국비를 100% 신규 지원하는 방식은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인 재정 운용 측면에서는 시범운항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운항 원가 및 기존 항로 대비 비용 절감 효과를 선행 검증한 후 정기 노선화 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동 사업은 북극항로 활성화라는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하되, 시범 운항을 통해 실제 운항비용과 수요,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 민간 부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 규모와 추진 방향을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해양수산부는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을 적기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의 업무가 데이터 수집 시스템 및 플랫폼 구축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는바, 2027년도에는 실제 운항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와 규모를 우선 검증한 후, 사업 간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북극항로법」은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의 지정 근거와 업무 범위(조사·연구·개발, 데이터 구축, 플랫폼 운영, 안전운항 지원 등)를 규정하고, 지정·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사업은 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 산출내역	금액
종합지원센터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운영비: 75 위탁수수료: 675 	750

자료: 해양수산부

그러나 2026년 9월 현재 관련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해양수산부는 동 법률 시행일(2026. 12. 17.)에 맞춰 시행령 제정을 추진 중으로 확인된다. 즉, 센터의 지정 여부, 조직 규모, 인력 배치, 업무 범위 등이 불확정된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센터 지정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센터 지정이 지연될 경우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처럼 관련 법령 정비 및 기관 지정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운영 예산을 전액 반영하는 것은 예산 편성 절차상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한편, 동 사업 내에는 데이터 구축·수집 및 플랫폼 관련 사업비 43억 5,800만원이 별도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북극항로법」⁵⁾에 따른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의 주요 업무 역시 ‘운항·물류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정보 플랫폼 운영, 안전 정보 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동 센터 고유업무와 별개로 데이터 수집 시스템 및 플랫폼을 이중으로 구축하는 구조는 사업 간 기능적 중복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

5)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극항로 연관산업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2. 북극항로 운항 및 물류 데이터 구축·제공 및 상업 운항 지원
3. 북극항로 정보플랫폼 구축
4. 북극항로 안전운항 정보, 고정밀 위치 정보 및 최적항로 정보 제공 등 항해안전 지원
5. 그 밖에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27년도 데이터 관련 사업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 산출내역	금액
운항데이터 수집시스템 구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시스템 구축: 2회 운항 2,100 - 1차 운항 : (데이터수집·저장 800 +데이터분석·전송 200 +데이터 활용 200) × 1차운항×100% - 2차 운항 : (데이터수집·저장 700백만) +데이터분석·전송 150백만 +데이터 활용 50백만) × 2차 운항×100% 	2,100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운영 2,258백만원 - (데이터 플랫폼 구축) 1,558 - (마스터플랜 수립 및 데이터 수집) 700 	2,258
합 계		4,358

자료: 해양수산부

특히, 데이터 플랫폼 사업에는 원천DB·표준DB·분석DB·서비스DB·실증DB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어,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상당한 규모의 정보시스템을 신규 구축하는 과업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운항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시스템을 조기 구축할 경우, 초기 활용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구축 비용이 과도하게 선투자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2027년도에는 실제 운항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와 규모를 먼저 확인한 후, 이에 맞춰 플랫폼 구축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재정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종합하면 해양수산부는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을 적기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의 업무가 데이터 수집 시스템 및 플랫폼 구축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는바, 2027년도에는 실제 운항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와 규모를 우선 검증한 후, 사업 간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양수산부는 재정 투입 규모 대비 성과 목표 수준을 낮게 설정하였으므로, 재정지출의 효과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물동량 확보, 운송비 절감 등 실질적 성과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성과지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의 대표 성과지표로 ‘북극항로 시범운항 1회’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의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중장기 추진계획 및 과거 추세치 등을 고려하여 사업 개선 의지 등이 반영되도록 도전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재정지출의 효과성을 평가하려는 「국가재정법」⁶⁾의 성과관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행 성과지표 설정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2023~2027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단위: 회)

성과지표	구분	2023~2026	2027	2027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북극항로 시범운항	목표	-	1	내부검토	횟수	내부보고
	실적	-	-			자료,
	달성도	-	-			언론보도 등

자료: 해양수산부

현행 성과지표인 ‘북극항로 시범운항 횟수’는 사업의 이행 여부만을 확인하는 단순 활동지표에 불과하다. 그러나 동 사업의 본래 정책 목표는 단순 운항을 넘어 북극항로 이용 활성화, 국내 선사의 극지 운항 역량 강화, 물류비 절감, 연관 산업 육성 및 정보 체계 구축 등에 있다.

따라서 단순 시범운항 1회 실시라는 결과만으로 본 사업의 정책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시범운항을 실시하더라도 화물 확보 실패, 경제성 미입증, 후속 운항 미연계 등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사업 성과는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해양수산부는 물동량 확보, 선사 참여도, 운송비 절감 효과, 데이터 활용 실적, 민간 투자 유발 등 실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6) 「국가재정법」

제85조의3(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 ①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통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실시할 때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결과를 공개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 관련 법령 시행 및 실증 수요를 고려한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

가. 현 황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 사업¹⁾은 북극항로 활성화에 대비하여 북극항로와 연계된 조선·기자재, 해운·물류, 항만·인프라, 극지자원, 해양관측·금융 등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술의 실증 및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9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2027년도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	-	-	-	9,800	9,800	순증
북극항로 연관기술 실증지원	-	-	-	6,500	6,500	순증
북극항로 연관산업 핵심인재 양성	-	-	-	2,500	2,500	순증
북극항로 연관 신산업 및 공급망 다변화 전략 수립	-	-	-	800	800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동 사업은 북극항로 연관 산업 육성 및 해양신시장 선점을 목적으로 다음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북극항로 연관기술 실증지원’은 오픈랩 지정·운영 및 현장 실증 테스트 베드 구축을 통해 연관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둘째, ‘북극항로 연관산업 핵심인재 양성’은 극지 해운·물류 등 파생 해양신시장을 선점할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이며, 셋째, ‘북극항로 연관 신산업 및 공급망 다변화 전략 수립’은 전후방 산업 육성과 해운·물류 비용 절감을 위한 다변화 전략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정금연 예산분석관(nosmoking@assembly.go.kr, 6788-4632)

1) 코드: 교통시설특별회계 3031-301

나. 분석의견

첫째,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에 따른 지원분야와 사업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2027년도 사업에서는 산업 및 기술수요 조사, 기존 실증시설 현황조사, 기술로드맵 수립, 실증사업 모델 설계 등의 사전 기획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실증사업 및 인프라 구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동 사업은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북극항로법”)을 근거로 추진되나, 해당 법률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6월 공포)으로 현재 시행령 제정이 진행 중인 단계이다.

하위법령은 입법예고(2026. 8.) 단계이며, 기본·실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북극항로종합지원센터 지정, 연관산업 범위,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그런데 동 사업의 주요 내용에는 북극항로 연관산업 기술로드맵 수립, 산업현장 수요조사, 전문가 자문, 기술실증, 오픈랩 구축, 산업현장 실증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는 2027년 사업 초기 단계에 어떤 기술과 산업을 집중 육성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확정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로 볼 수 있다. 즉 법률 시행 전이자 기본·실행계획과 연관 산업의 범위조차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기술·현장 실증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것은 사업 절차의 선후관계 측면에서 타당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북극항로법」에 따른 기본계획²⁾에는 연관산업 동향과 전망, 지역·부문별 육성

2)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북극항로의 활용을 촉진하고 북극항로 연관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북극항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북극해와 북극항로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북극항로 연관산업의 국내외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지역별·부문별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5.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도시개발, 도시재생 및 교통망 확충에 관한 사항
6.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항만배후단지, 물류단지, 산업단지의 조성·지원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방향, 연구·기술개발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향후 수립될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은 개별 사업의 지원 분야와 추진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적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27년부터 실증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경우, 향후 수립될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서 육성 우선순위가 변경되거나 대상 산업이 조정되면 이미 구축된 시설·장비의 활용도가 낮아지고 예산 중복투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

종합해 볼 때,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에 따른 지원분야와 사업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2027년도 사업에서는 산업 및 기술수요 조사, 기존 실증시설 현황조사, 기술로드맵 수립, 실증사업 모델 설계 등의 사전 기획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실증사업 및 인프라 구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둘째, 북극항로 연관 기술 실증 지원 사업은 이미 확보된 북극항로 관련 실증 수요를 바탕으로 추진하되, 2027년도에는 기존 연구기관, 대학,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시험·실증시설을 우선 활용하고 신규 시설 및 장비 구축이 필요한 분야를 엄격히 선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내역사업인 ‘북극항로 연관 기술 실증 지원 사업’은 관련 분야 스타트업의 기술 실증 인프라를 확대·연계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남부 해양수도권의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7. 북극항로 연관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북극항로 연관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9. 북극항로 연관산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북극항로 연관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적인 북극항로 운항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12. 북극항로 안전운항을 위한 수색구조 선박·장비 및 지원 인프라 확보 계획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북극항로 이용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북극항로 연관 기술 실증 지원 사업 개요]

구분	북극항로 연관기술 실증지원
사업목적	북극항로 연관 기술 실증 지원 확대로 해양 스타트업 기술 경쟁력 강화
법적근거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2026.12.17.시행예정)
사업기간	2027년~
사업예산	90.8억원(국비 65억원, 지방비 20.6억원, 민간 5.2억원)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증 지원 관리 체계 구축: 5억원(전액 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 실증 지원 전문 분야 구성 및 전담기관 운영비 지원 • 오픈랩 지정·운영 : 68.6억원(국비 48억원, 지방비 20.6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픈랩 실증지원 장비 신규 구축 및 장비 운영비 지원 • 산업현장 실증 지원 : 17.2억원(국비 12억원, 민간비 5.2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현장 내 실증장비 설치·철거비, 안전시설 구축비 및 운영비 지원

자료: 해양수산부

동 사업의 세부 내역은 실증지원 관리체계 구축(5억원), 오픈랩 지정·운영(국비 48억원, 지방비 20.6억원), 산업현장 실증지원(국비 12억원, 민자 5.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27년도 북극항로 연관 기술 실증 지원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 산출내역	금액
북극항로 연관 기술 실증 지원	가. 북극항로 연관 기술 실증 지원(6,5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증 지원 관리 체계 구축 [4개 분야(육상, 해상, 규제, 기업 매칭) × 90백만원] + [사무공간 임차, 사무기기, 전문가회의 등 운영비 × 140 백만원] = 500백만원 • 오픈랩 지정·운영 : 3,430백만원 × 2곳(오픈랩 2개) × 약 70% = 4,800백만원 • 산업현장 실증 지원 : 860백만원 × 2곳(산업현장 보유 기업 2개) × 약 70% = 1,200백만원 	6,500

자료: 해양수산부

전체 예산안 가운데 오픈랩 지정·운영 항목에 국비의 73.8%인 48억원이 편성되어 있어, 사업의 상당 부분이 스타트업의 기술·제품을 시험·검증하는 실증 인프라 구축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동 사업의 오픈랩은 단순 장비 구비 시설이 아닌, 디지털 제작·해양환경 시험·수중모빌리티 등 실증 장비를 구축하여 스타트업의 기술·제품을 실제 환경 수준에서 시험·검증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연구용역에서 확인한 실증수요가 기존 시설로 대응하기 어려운 수요인지, 오픈랩 2개소와 장비 구축 규모를 뒷받침하는지 추가 검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업 계획에는 오픈랩을 이용할 대상 기업, 실증 기술·제품, 실증 과제 및 예상 이용 건수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실제 수요에 기반하여 오픈랩의 규모와 구축 장비가 정밀하게 설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오픈랩은 구축 이후에도 장비 유지관리, 전문인력 운용, 시설 운영 등에 지속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초기 구축비용뿐만 아니라 향후 기업의 지속적인 이용 수요와 운영재원 확보 가능성을 종합 고려하여 신규 구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극항로 관련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 충분한 이용 수요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 구축된 인프라의 가동률이 저하되고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커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기술 실증 수요를 확보하였으며, 향후 오픈랩 운영을 통해 추가적인 수요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오픈랩 구축이 북극항로 연관 기술·제품의 실증에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 장비 활용 가능성 수준을 넘어, 기존 대학, 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시험·실증 시설로 대응할 수 없는 북극항로 특화 실증 수요가 실제 존재하는지 우선 검증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세부 실증 분야로 제시된 디지털 제작, 해양환경 시험 및 수중모빌리티, 복합 환경시험 챔버, 금속 3D 프린터 등은 북극항로에 한정된 기술이라기보다 일반 해양산업, 조선·해양플랜트, 해양신산업 전반에 폭넓게 활용되는 범용 기술이다.

[북극항로 연관 기술지원 사업 내 오픈랩 지정·운영 개요]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타트업과 지방정부 수요를 기반으로 기존 연구기관 자원을 활용하여 육상에 스타트업 기술·제품 실증이 가능한 오픈랩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제작랩, 해양환경 시험랩, 수중모빌리티 실증랩 등 3개 오픈랩 실증 지원 장비 신규 구축 및 장비 운영비 지원 - 장비 예시: 복합 환경시험 챔버, 염수 분무 시험기, 수중 음향통신장비, 금속 3D프린터

자료: 해양수산부

따라서 대학·출연연구기관·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기존 시험·실증시설을 활용할 경우 신규 인프라 구축에 따른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2027년도에는 기존 시설의 활용 방안을 우선 마련하고, 신규 시설·장비 구축이 필요한 분야를 엄격히 선별한 후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종합해 볼 때, 동 사업은 이미 확보된 북극항로 관련 실증 수요를 바탕으로 추진하되, 2027년도에는 기존 연구기관, 대학,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시험·실증시설을 우선 활용하고 신규 시설 및 장비 구축이 필요한 분야를 엄격히 선별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스마트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부처 내 유사·중복 사업 재설계 및 추진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 정비 필요

가. 현 황

스마트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사업¹⁾은 산지 공급망부터 가공·유통·물류까지 통합 수행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운영함으로써 유통단계와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자 수취 가격은 높이며 소비자가격 부담은 완화하려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5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2027년도 스마트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스마트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	-	-	5,500	5,500	순증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동 사업 기간은 2027~2030년이고, 총사업비는 812억원²⁾ 규모로 추진되며, 사업 재원은 정부가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에 출연한 후, 공단이 해당 출연금을 SPC(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달하고, SPC에는 수산물 생산자, 수산업 관계 기업, 유통·물류·온라인 플랫폼 기업 등이 참여할 예정으로, 향후 배당·지분 매각·청산 등을 통해 회수되는 공공출자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며, 국고 귀속 또는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관련 정책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정금연 예산분석관(nosmoking@assembly.go.kr, 6788-4632)

1) 코드: 미래대응기금(지방계정) 4431-300

2) 정부출자본 404억원, 민간출자본 408억원

[스마트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사업 개요]

목적	새로운 수산물 유통혁신 모델을 구축하여 유통단계·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기반 확충
사업 기간	2027년 ~ 2030년
사업 규모	총 812억원(국비 404억원(정부출자 392억원, 사업관리 등 12억원), 민간출자 408억원)
추진 방식	공모를 통해 민간참여자 선정,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추진 체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p>출연(공공기관 출자)</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공공 정부(출연) → 어촌어항공단(출자)</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민간 컨소시엄(예시) 어업인, 민간기관(공급, 가공, 유통, 물류 등)</p> </div> </div> <p style="margin-top: 10px;">출자 ↓ ↑ 배당</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수산물 유통 SPC(특수목적법인)</p> </div> </div>
사업내용	산지 공급망부터 가공·유통·물류까지 통합 수행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운영 SPC의 유통 기반 시설 유통센터 구축

자료: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

첫째, 스마트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사업은 기존 수산물산지거점 유통센터(FPC) 사업 등과 추진 목적 및 기능 측면에서 유사·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FPC 등의 가동률, 물량 확보 현황 및 운영 성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기능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기존 시설과의 역할분담과 연계·활용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후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동 사업은 민간자본과의 SPC 공동 출자로 공급·가공·유통·물류 기능을 통합한 신규 수산물 유통모델을 구축하고, 유통단계를 효율화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 2030년까지 국비 총 404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첫해인 2027년에는 총 55억원을 편성하며, 세부 내역은 SPC 설립 출연금 49억원, SPC 운영비 2억원, 스마트 수산물 유통센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억원이다.

[스마트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사업 연차별 소요 세부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총계
스마트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106 (국비 55)	122 (국비 60.8)	342 (국비163.7)	242 (국비 124.5)	812 (국비 404)
SPC 설립·운영 (국비 49%, 민간 51%)		100	100	100	100	
수산물 유통 플랫폼 운영지원 (국비 100%)		2	2	2	2	
센터 구축	기본계획 용역	4	-	-	-	
	센터 구축 (국비 49%, 민간 51%)	-	20	240	140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하고자 SPC 설립을 추진하려는 것인데, 정부는 이미 수산물산지거점 유통센터(FPC) 및 소비지 분산 물류센터(FDC)를 통해 산지-소비지 유통망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유통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온라인 도매시장을 운영 중이며, 이에 따른 온라인 도매 지원 및 산지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³⁾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수산물산지거점 유통센터 및 소비지분산 물류센터 사업]

구분	수산물산지거점 유통센터(FPC)	소비지분산 물류센터(FDC)
사업목적	산지에서 수산물을 수집하여 가공·선별·포장 등을 거쳐 소비지 도매시장 및 대형 유통업체에 직접 공급	산지 등에서 대량으로 수집한 수산물을 가공 후 대형유통·급식 등 소비지로 직접 출하
사업기간	2012년~	2016년~
운영센터	속초, 강릉 등 9개소 준공 완료, 인천, 경북 등 10개소 추진 중 (2026년 19개소 → 2030년 32개소)	수도권(인천) 호남권(나주) 준공 완료, 호남권(나주) 증축, 중부권(홍성) 추진 중 (2026년 3개소 → 2030년 5개소)
추진방식	국비 30%, 지자체 30%, 자부담 40%	국비 50%, 지자체 25%, 자부담 25%
2027년 예산(안)	41억 4,000만원	54억 7,500만원

자료: 해양수산부

3)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융자): 수산물발전기금(3068-300)

기존 FPC(수산물산지거점 유통센터)와 FDC(소비지분산 물류센터) 사업은 세부 역할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산지 수산물을 수집·가공·선별·포장하여 소비지 도매시장이나 대형 유통업체에 직접 공급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이를 통해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산지 가공·유통 역량을 강화하며 직거래 경로를 다양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사업들은 신규 추진되는 ‘스마트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사업’과 추진 목적 및 기능 측면에서 유사·중복될 우려가 있어 보인다.

또한, FPC 사업은 2026년 19개소에서 2030년 32개소까지 확충될 예정이며, FDC 사업은 2개소(호남권·중부권)의 증축 및 건립이 진행 중이어서 본격적인 운영 전 단계에 있다. 이처럼 기존 공공 유통망이 본격 가동되기 전 상황에서 가동률, 물량 확보 현황, 운영 성과 등에 대한 사전검토 없이 신규 유통센터를 신설한다면, 기존 공공 유통시설의 활용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어 보인다.

즉, 정부는 이미 FPC, FDC, 온라인 도매시장 등을 활용해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가격경쟁력 제고 및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정책 사업과의 차별성에 대한 명확한 검토 없이 별도 SPC를 신설하여 유통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 운영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종합하면, 스마트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 사업은 기존 수산물산지거점 유통센터(FPC) 사업 등과 추진 목적 및 기능 측면에서 유사·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FPC 등의 가동률, 물량 확보 현황 및 운영 성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기능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기존 시설과의 역할분담과 연계·활용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후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둘째, 동 사업은 수산물 유통 업무 및 공단의 SPC 출자·운영이 「어촌·어항법」에 따른 공단의 법정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공단의 법정 사업 범위와 사업 시행 근거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비하는 등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을 조속히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공단이 정부의 출연금을 받아 정부를 대신하여 SPC에 출자하고 ‘스마트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사업’을 수행하는 구조이다. 다만,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이라는 정책적 목적과 별개로, 출자 및 사업 수행 주체인 공단의 법정 업무범위에 해당 사업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촌·어항법」 제58조⁴⁾는 공단의 주요 사업으로 ① 어촌·어항 및 어장의 조사·연구·정보화, ② 어촌·어항 개발·관리, 관련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 ③ 관계자 교육·훈련, ④ 어촌·어항 개발사업 관련 용역·위탁 업무, 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위탁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산물 유통 업무’나 ‘수산물 유통 사업자에 대한 출자’⁵⁾ 등은 공단의 법정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법」 제2조제2호⁶⁾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의 범위에 ‘수산물 유통 및 가공 시설 확충’을 포함하고 있고, 동 법 제9조제1항⁷⁾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단에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

4) 「어촌·어항법」

제58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어촌·어항 및 어장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보화
 2. 어촌·어항의 개발·관리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국제협력
 3. 어촌 및 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어항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조사·측량·설계·감리 및 기술에 관한 용역업무 또는 시설물 안전점검·유지·보수 및 준설에 관한 위탁업무
 5.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6. 어촌·어항 및 연안수역의 정화·정비·조사와 관련된 사업
 7. 어촌·어항과 관련된 도서의 발간·보급 및 홍보
 8. 어촌·어항 및 어장과 관련된 관광자원의 개발·관리 및 관광 활성화 사업
 9. 어촌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및 어항시설의 교통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공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5) 해양수산부는 공단의 SPC 출자는 공단 정관상 사업·재산운용 규정에 따라 추진하고, 출자 전 공단 이사회 의결과 해양수산부의 사업운영계획·예산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칠 예정이고, 법 제58조의6에 공단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어촌종합개발사업”이란 어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연안시설의 정비, 수산자원의 조성, 수산물 유통 및 가공 시설의 확충 등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개선·확충 사업

나. 어촌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생활환경의 개선 및 관련 부대사업

다. 어촌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어촌의 자연경관, 특산물 또는 그 지역 특유의 풍속 등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사업

7) 제9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2. (생략)

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서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을 공단의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을 통한 동 사업 추진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동 법 제2조제2호의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수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의 확충 등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개선·확충 사업 등을 말하는바, 이를 근거로 수산물의 구매·가공·운송·판매 및 유통 플랫폼 운영 등 유통사업 전반이 어촌종합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동 사업은 단순한 시설의 개선·확충을 넘어 정부(공단)와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SPC를 설립하여 유통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구조이므로, 기존 어촌종합개발사업과는 사업의 본질적인 성격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동 법 제9조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조항을 적용하려면 해당 사업이 법률상 ‘어촌종합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명확히 검토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산물 유통사업 전반이 ‘어촌종합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동 법 제58조제1항제5호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규정 역시, 정부의 위탁만 있으면 공단의 설립목적이나 법정 업무범위와 무관한 사업까지 무제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포괄적 근거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를 인정할 경우 개별 법률에서 공단의 업무 범위를 명문으로 제한한 입법 취지와 상충될 우려가 있다. 더욱이 동 사업은 공단에 단순 위탁하는 방식의 사업 구조도 아니다.

따라서 동 사업은 수산물 유통 업무 및 공단의 SPC 출자·운영이 「어촌·어항법」에 따른 공단의 법정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공단의 법정 사업 범위와 사업 시행 근거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비하는 등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을 조속히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동 사업은 정부 출연금의 최종 귀속자산이 국가가 아닌 공단의 SPC 지분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가 부담한 재정투자의 회수권 및 국고 귀속 여부가 불명

3.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확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자금의 차질 없는 회수를 위해서는 출연금의 SPC 출자 전환 근거를 명시하고, 투자회수금의 국고 귀속 절차 및 회수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상 보완 장치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정부가 공단에 출연하고, 공단이 이 출연금을 SPC에 출자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공단은 「어촌·어항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동 조 제4항에 따라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재단법인은 주주나 지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부의 출자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동 법 제58조의5제1항8)에 따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의 출연 등으로 조달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공단이 직접적인 정부 출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공단에 대한 출연을 거쳐 SPC에 출자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기관의 고유목적사업 수행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재원인 반면, 출자금은 특정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자본금을 분담·확보하기 위해 지출하는 재원이라는 점에서 양자의 법적 성격과 목적은 엄격히 구별된다.

공단이 SPC에 출자할 경우 정부의 출연금이 사실상 SPC의 자본금으로 변환되는 구조가 되는데, 이러한 사업 구조는 사업 존속기간 만료 시 투자 회수 자금이 국고로 직접 환수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즉, SPC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공단이므로 회수 자금은 원칙적으로 공단의 자산 및 수입으로 우선 처리된 후, 공단이 이를 다시 국가에 반환하는 간접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출연금은 출자금과 달리 원칙적으로 정부의 투자원금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재원이 아니다. 따라서 공단이 SPC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더라도, 정부가 해당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러한 투자 구조는 국회의 예산 심의 대상이 공단 출연금으로 한정되므로,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재정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 사업의 지분율 구조, 자금 회수 방안, 사업 종료 후 처리 절차 등을 사전에 보다 구체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
- 8) 제58조의5(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금
 2. 제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받은 금품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이에 따라, SPC 설립 시 존속기한을 명확히 설정하고, 사업 협약서 또는 계약서에 투자회수금의 국고 귀속 등 자금 회수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공자금의 국고 회수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 사업은 정부 출연금의 최종 귀속자산이 국가가 아닌 공단의 SPC 지분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가 부담한 재정투자의 회수권 및 국고 귀속 여부가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자금의 차질 없는 회수를 위해서는 출연금의 SPC 출자 전환 근거를 명시하고, 투자회수금의 국고 귀속 절차 및 회수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상 보완 장치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근해어선 현대화 지원: 사업수요의 정밀한 추계 및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가. 현 황

근해어선 현대화 지원 사업¹⁾은 노후화된 근해어선을 신조·현대화하여 어선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어업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어획량 중심의 새로운 어업관리체계에 대응하여 근해어선의 규모와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451억 6,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27년도 근해어선 현대화 지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근해어선 현대화 지원	-	-	-	45,162	45,162	순증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동 사업은 정부출자 60%, 금융기관 대출 30%, 선사 자부담 10%의 구조로 운영되며, 해양수산부는 2027년에는 5척을 시작으로 8년간 매년 5척, 이후 2년간 매년 4척을 선정하여 총 48척의 근해어선 현대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근해어선 현대화 펀드 사업 개요]

- 사업내용: 선령 21년 이상 어선 중 건조 비용이 높은 핵심 업종* 우선 지원
* 건조 비용 70억원 이상, 업종 선정 시 감척 목표량 도달 수준·물가 영향 등 반영
- 2027년 예산규모: 451.6억원 반영
- 사업기간: 2027~2038
- 출자비율: 국비 60% / 금융기관 대출 등 유치 30% / 자부담 10%
- 총 국비부담액: 평균 선가 96억원 추정, 총 48척 신조 시 펀드 조성금액 2,661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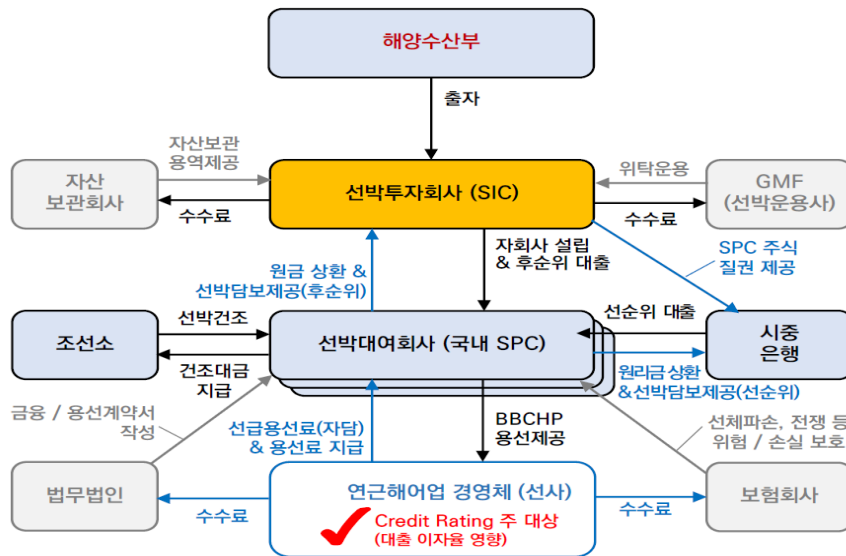
자료: 해양수산부

정금연 예산분석관(nosmoking@assembly.go.kr, 6788-4632)

1) 코드: 미래대응기금(지방계정) 4431-310

동 사업은 정부가 펀드를 조성하여 신조 선박 선가의 최대 60%를 지원하며, 잔여 선가는 금융기관 대출(30%) 및 선사 자부담(10%)으로 충당하는 구조이다. 지원받은 선사는 선박대여회사와 20년 용선계약(5년 거치, 15년 상환)을 체결해 지원금을 용선료 명목으로 상환하며, 상환이 끝난 후 선사는 선박의 소유권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근해어선 현대화지원 펀드 운용 체계]



자료: 해양수산부

2027년도 근해어선 현대화 펀드 계획안 세부내역을 보면, 근해어선 척당 추정 선가 96억원에 1년차 정부자금 지출률 10%를 적용하여 5척의 당해 연도 건조자금 소요액을 48억원으로 산정하고, 펀드 운영비·이자수익·기말잔액을 반영하여 출자금을 편성하였다.

[근해어선 현대화 지원 사업 계획안 산출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 산출내역	금액
근해어선 현대화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해어선 현대화 펀드: ④-③+②+① ① (1년차 지출) 9,600/척 × 5척 × 10% = 4,800 ② (펀드운영) 282 ③ (이자수익) 811 ④ (펀드잔액) 40,891 	45,162

자료: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

근해어선 현대화 지원 사업은 펀드 참여에 대한 업종별·지역별 실제 참여 수요 조사와 사업성 검증이 부족하므로, 해양수산부는 자금조달 능력, 담보 제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실수요 규모를 정밀하게 재추계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2027년도 계획안은 펀드 조성액 대부분이 실제 사업 집행이 아닌 기말잔액으로 적립되는 구조로 자금이 펀드에 유보될 우려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자금 유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을 통해 선령 21년 이상 어선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8년까지 총 48척을 건조한다는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였다. 동 계획의 소요 예산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452억원을 출자하고, 2032년부터 2037년까지는 연도별 상황·감자 계획에 따라 총 403억원을 추가로 출자한 뒤, 2039년부터 2055년까지(17년간) 출자금을 회수하는 구조로 편성되어 있다.

[근해어선 현대화 펀드 운영계획안]

(단위: 척, 억원)

연도	N+0	N+1	N+2	N+3	N+4	N+5	N+6
사업선정 척 수	5	5	5	5	5	5	5
기초현금	-	409	630	805	984	1,166	910
(+) 출자금	452	452	452	452	452	19	38
(-) 감자액	-	-	-	-	-	19	38
(-) 대여금	48	240	288	288	288	288	288
(+) 상환액	-	-	-	-	-	19	38
(+) 이자	8	12	16	20	23	18	12
(-) 수수료	3	3	4	4	5	5	6
기말현금	409	630	805	984	1,166	910	667
연도	N+7	N+8	N+9	N+10	N+11	N+12~28	
사업선정 척 수	5	4	4	-	-	사업 종료 후 회수기간	
기초현금	667	438	233	82	0		
(+) 출자금	58	77	96	115	-		
(-) 감자액	58	77	96	115	29		
(-) 대여금	288	278	240	192	38		
(+) 상환액	58	77	96	115	134		
(+) 이자	8	3	-	-	-		
(-) 수수료	6	6	7	5	5		
기말현금	438	233	82	-	-		

주: <펀드 운영 가정>

- 신조선가 - 신조선가 70억원 이상, 선박 신조 추정가: 척 당 96억원
- 선가 납부 방식 - (어선 건조 기간) 3년
 - (자금 납부 순서) 자부담, 펀드 자금, 금융사 순
 - (건조 대금 납부 시점) 20%씩 5회 납부, 연도별 10%, 40%, 10% 납부 가정

자료: 해양수산부

그런데 정부출자 60%, 금융기관 대출 30%, 선사 자부담 10%라는 구조는 정부가 선박건조에 필요한 자금을 상당 부분 부담하는 방식이므로, 실제 선사의 자금상환능력과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 사업은 실제 수요조사와 선사별 건조계획, 금융기관의 대출 가능성 등이 확인된 이후 출자금모를 확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 노후화 심화, 선원 고령화, 국제 환경규제 강화 등을 근거로 사업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나, 동 사업 예산 산출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사업 예상 수요(457척)는 전체 근해어선(2,293척) 소유자의 16.6%에 불과한 근해어업인 381명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추계되었고, 업종별 표본 수가 명시되지 않아 전체 사업수요 근거로 삼기에는 예측의 정확도와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

[근해어선 현대화 펀드 대체 신조 수요조사 결과]

(단위: 척, %)

구분	업종	어선척수('24)		신조의향 비율	예상 수요 척수
		전체	선령 21년이상		
근해 어업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41	15	66.7	10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72	31		21
	대형트롤어업	36	18	57.1	10
	동해구중형트롤어업	32	26		15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33	26	40.0	10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43	14		6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	18	0		0
	대형선망어업	106	101	50.0	51
	소형선망어업	34	10	62.5	6
	근해채낚기어업	332	181	32.2	58
	근해안강망어업	204	30	58.5	18
	기선권현망어업	252	163	33.3	54
	근해봉수망어업	1	0	0.0	0
	근해자망어업	368	91	53.4	49
	잠수기어업	238	100	57.5	58
	근해통발어업	135	57	53.6	31
	근해장어통발어업	26	13		7
	근해형망어업	44	25	50.0	13
	근해연승어업	270	87	43.9	38
	근해문어단지어업	8	3	50.0	2
	합계	2,293	991		457

자료: 해양수산부

뿐만 아니라, 평균 선가가 약 96억원에 달해 선사의 자부담(10%) 및 대출(30%)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할 때, 단순 참여 의향이 실수요로 연계될지는 미지수이므로, 동 수요조사는 단순 선호도 조사에 그치며, 개별 선사의 자금 조달·담보 능력 및 어업 수익성을 반영한 객관적 실수요로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업종별로 펀드 참여 의향과 신청 규모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는 만큼, 업종별 선박 노후도, 조업 여건, 경제성, 선사의 채무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사업 지원 및 예산 규모를 정밀하게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수요 산정도 명확하지 않은 사업 초기부터 대규모 재원을 일시에 조성할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사업 착수 이전에 업종별·지역별 실제 수요와 사

업성에 대한 정밀 검증을 선행하고, 사업초기에는 참여수요를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동 사업은 2027년 총 5척을 지원할 예정으로, 척당 1년차 건조 지출액(9.6억원)을 고려한 당해 연도 실제 사업 소요액은 약 48억원 수준인데, 해양수산부는 신규 펀드 조성을 위해 실제 집행 수요보다 약 9.4배나 많은 451억 6,200만원 전액을 2027년도 계획안에 일시 편성하였다.²⁾

[근해어선 현대화 지원 사업 2027년도 계획안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 집행 계획
근해어선 현대화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7년 요구액 45,162 - 5척 1년차 실제 지출: 4,800 - 펀드 운영비: 282 - 기말잔액 : 40,891

자료: 해양수산부

펀드 사업의 특성상 출자금의 당해연도에 전액 집행되지 않고 향후 용자 및 대출에 사용될 수 있으나, 향후 수년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을 신규사업 첫해에 대규모로 선출자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 사업기간이 장기간이고 선박 건조 후에도 15년간 상환이 이루어지는 구조이므로, 한 번의 출자로 상당기간 정부자금이 펀드에 묶일 가능성이 있어, 재정의 탄력성을 저하시키고, 실제 사업수요가 예상보다 적을 경우 불필요한 펀드 잔액이 장기간 유지되는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동 사업의 자금 상환 방식(5년 거치, 15년 상환)은 초기 선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부 입장에서는 지원 자금이 장기간 회수되지 않는 구조이다.

특히, 어선의 경제적 내용 연수와 어업경영 여건을 고려할 경우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획량 및 수산자원 변동, TAC 확대 등 어업규제 변화, 유류비 등 조업비용 상승 등의 외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용선료를 통한 원금 회수계획만 제

2)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펀드의 초기 출자금이 당해연도 집행뿐만 아니라, 신설 SPC의 지급능력 확보, 조선소와의 건조계약 이행 확약, 그리고 건조대금 지급시기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재원이라는 입장이다.

시할 것이 아니라, 연체·부실·사업자 폐업 등 상황별 회수대책과 정부의 손실부담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2027년 사업 대상 선정 및 실제 건조 공정에 맞추어 자금을 단계적으로 출자하도록 사업을 설계하고, 아울러 불필요한 자금 유보를 최소화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 및 집행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종합하면 동 사업은 펀드 참여에 대한 업종별·지역별 실제 참여 수요 조사와 사업성 검증이 부족하므로, 해양수산부는 자금조달 능력, 담보 제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실수요 규모를 정밀하게 재추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2027년도 계획안은 펀드 조성액 대부분이 실제 사업 집행이 아닌 기말잔액으로 적립되는 구조로 자금이 펀드에 유보될 우려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자금 유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연근해어업 발전지원(용자): 예산 추계의 정밀성 제고 및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안 편성 필요

가. 현 황

연근해어업 발전지원(용자) 사업¹⁾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2027.6.17.)에 따라 어획보고, 위치통지, 지정 양륙장소 이용, 어획확인서 발급·전달 등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어업인에 저리의 정책 자금을 용자하여 법·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1,000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27년도 연근해어업 발전지원(용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연근해어업 발전지원(용자)	-	-	-	100,000	100,000	순증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총허용어획량(이하 “TAC”, Total Allowable Catch) 제도는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연간 어획량 한도를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1999년 최초 도입(4개 어종·2개 업종) 이후 2026년 8월 현재 19개 어종·23개 업종으로 확대 적용되어 연근해 전체 어획량의 약 50%를 관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혁신 2030 계획」(2019년)에 따라 어업관리정책을 TAC 중심으로 전환하고, 2030년까지 TAC 관리 비율을 연근해 어획량의 8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²⁾

정금연 예산분석관(nosmoking@assembly.go.kr, 6788-4632)

1) 코드: 수산발전기금 3465-310

2) TAC 관리대상종 어획비율 : (‘17년) 25% → (‘30년) 80%

해양수산부는 2026/2027 어기부터 TAC(총허용어획량)³⁾ 적용 대상을 19개 어종·23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2030년 7월부터 전체 연근해어업으로 TAC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TAC 관리대상이 확대되어 기존 TAC 미적용 업종 및 어선 신규 편입,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에 따른 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정책금융 지원의 확대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동 사업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 및 TAC 확대에 맞춰, 제도 참여 대상 어업인 중 5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평균 2억원(한도: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의 용자를 지원하기 위해 계획안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연근해어업 발전지원(용자) 사업 계획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 산출내역	금액
연근해어업 발전지원(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민간용자금(450-04) - TAC 참여어업인 연근해어업 발전지원(용자) · 500명 × 200백만원=100,000백만원 	100,000

자료: 해양수산부

동 사업은 저리 용자를 통해 어선어업 가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세부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다.

[연근해어업 발전지원(용자) 사업 개요]

사업대상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적용 대상 어선어업 어가를 대상으로하며, 어선어업 범위는 면허·허가를 기준으로 판단
용자조건	한도(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 금리조건(어업인 2.5%, 법인 3.0%), 1년 만기
집행기관	수협은행
자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어업 경영비 ② 대출금(일반·정책) 대환 용도로 한정, 만기도래(최대 3년)시 전액상환/他정책자금으로 전환 필요

자료: 해양수산부

3) TAC(Total Allowable Catch, 총허용어획량) 제도란 어종별 연간 포획·채취 상한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 어획만 허용하는 것으로 TAC를 어업자에게 배분하고 합계가 TAC에 도달하면 어획 종료하는 정책을 말한다.

나. 분석의견

첫째, 연근해어업 발전지원(용자) 사업은 최근 실적을 크게 웃도는 용자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근거가 미흡한 상황에서 1,000억원의 기금 계획안을 편성한 것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 편성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실집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계획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세부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TAC 관리 대상 어선은 기존 대비 5.1배(21,882척) 확대되는 것에 반해, 용자 지원 인원은 50명에서 500명으로 10배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지원 비율(TAC 어선 대비 지원 대상) 역시 기존 1.16%에서 2.29%로 약 2.0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근해어업 발전지원(용자) 사업 계획안 세부산출 내역]

구분	TAC 용자사업 ¹⁾	연근해어업 용자	증감
대상 어선	4,300척	21,882척	5.1배
지원 대상	50명	500명	10배
지원 규모	210백만원	200백만원	△10백만원
용자 규모	105억원	1,000억원	9.5배
지원 비율 (지원 대상/TAC 어선)	1.16%	2.29%	2.0배

주: 1)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용자) 사업

자료: 해양수산부

특히, 확대 대상 어선(4,300척→21,882척)의 증가분(17,582척) 중 97.2%는 영세 연안어업의 신규 편입에 따른 것으로, 주요 증가 업종은 연안복합(7,641척), 연안자망(6,470척), 연안통발(2,635척), 연안개량안강망(345척) 순이다.

그런데 이들 소형 연안어업은 대형선망, 쌍끌이대형저인망 등 기존 근해어업 위주의 TAC 체계에서와 달리 경영 규모 및 자금 수요 패턴이 다를 수 있음에도, 예산안 산출 과정에서 영세 연안어업의 특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예산 산출의 전제가 되는 어선 확대 추계 자체가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준비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영세 연안어업의 신규 편입 여부에 좌우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종의 실제 용자 수요, 업종별 자금 소요 및 예상 신청률 등에 대한 객관적인 수요 추계 근거가 부재하여, 예산 추계의 객관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적용 대상 어선 척수 현황

(단위: 척)

구분	'25/'26어기 대상어선	법 ¹⁾ 적용 대상어선
합계	4,300	21,882
근해안강망	602	196
근해연승	279	255
근해자망	1,072	126
근해채낚기	653	303
근해통발	42	132
대형선망	80	95
대형트롤	110	33
동해구외끌이대형	66	-
동해구중형트롤	34	31
마늘어업	102	-
서남해구쌍끌이중형	27	18
서남해구외끌이중형	-	43
쌍끌이대형	180	72
연안복합	23	7,914
연안자망	273	6,743
연안통발	5	2,640
연안개량안강망	-	345
외끌이대형	68	39
잠수기	528	236
근해형망	62	43
기선권현망	48	240
소형선망	46	34
기타 근해어선	-	297
기타 연안어선	-	732
정치망어업	-	450
구획어업	-	863

→ 확대
(17,582척 증가)

주: 1)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자료: 해양수산부

또한, 최근 TAC 용자 사업의 지원 실적은 연간 38~105건 수준(2021년 41건, 2022년 38건, 2023년 47건, 2024년 105건, 2025년 45건)에 불과하여, 2027년 도 지원 목표(500명)는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측면이 있다.

특히, 2025년 실적(45건)과 비교하면 2027년 지원 인원 목표는 약 11배, 지원 금액은 약 9.6배(10,457백만원 → 100,000백만원)로 확대되는 규모이다. 그럼에도 사업 계획서에는 TAC 참여 어선 증가만을 근거로 제시할 뿐, 대상 확대에 따른 실제 용자 수요나 예상 신청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 조사 및 추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TAC 용자 사업⁴⁾ 집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좌수	41	38	47	105	45
대출금액	8,579	10,316	10,473	10,500	10,457

자료: 해양수산부

연근해어업 발전지원(용자) 사업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 및 TAC 적용 확대에 따른 어업인의 제도 적응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최근 실적을 크게 웃도는 용자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근거가 미흡한 상황에서 1,000억원의 계획안을 편성한 것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합리적 편성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계획안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의 실질 집행 기간이 하반기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획안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원대상을 TAC 참여 어업인 등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기존 정책자금 대환 허용 시에도 기존 용자 사업과의 중복지원 및 정책금융 간 대체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은 2027년 6월 시행 예정으로, 어획·양륙 실적 보고, 어획확인서 발급,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등 연근해어업 관리 강화를 위한 신규 의무 조항은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된다. 법 시행 전인 상반기(1~6월)에는 신규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자금 수요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에도, 2027년도 예산

4) 수산발전기금: 3465-300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 자금 지원(용자), 2026년 종료 사업

안은 연초부터의 수요를 전제로 연간 전액(1,00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월별·분기별 집행계획도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정책 용자는 대상자의 신용도·담보 능력·상환 능력 등에 따라 실제 대출 액이 결정되므로, 용자 규모를 늘린다고 해서 자금이 자동으로 집행되는 구조가 아니다. 따라서 실제 대출 신청 및 실행은 2027년 하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용자 심사 및 수협은행의 여신 심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1,000억원의 예산을 하반기 6개월 이내에 전액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동 사업의 자금용도가 기존 정책용자 사업과 뚜렷하게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점도 검토가 필요하다. 동 사업은 자금용도를 ① 어업경영비 충당과 ② 기존 대출금(일반·정책자금) 대환으로 제한하고 있어, 기존 정책자금의 경영지원 기능과 유사하다. 특히, 기존 대출금의 대환을 허용함에 따라, 신규 정책수요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보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리 용자로 전환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

즉, 동 사업은 기존 정책용자와 구분되는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음에도, 실제 지원내용은 기존 경영자금이나 대환자금과 유사해 사업 간 차별성이 불분명하다.⁵⁾ 특히 기존 정책자금 대환이 주요 자금용도로 활용될 경우,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시행에 따른 신규 자금수요를 충족하기보다는 기존 정책금융의 전달 체계만 변경하는 결과에 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1,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신규 용자 편성에도 불구하고, TAC 제도의 현장 정착이나 신규 법적 의무 이행을 촉진하는 정책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의 실질 집행 기간이 하반기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원대상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참여 어업인 등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기존 정책자금 대환 허용 시에도 기존 용자 사업과의 중복지원 및 정책금융 간 대체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동 자금이 관련 법령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인센티브 성격의 저금리 용자 자금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가공시설 및 운영(용자): 합리적인 사업수요 추계 및 실수요 반영 예산 편성 필요

가. 현 황

가공시설 및 운영(용자) 사업¹⁾은 수산물 가공업체에 가공시설 및 운영자금을 융자하여 수산물 위생·가공시설 개선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전년 수정 계획 대비 606억원이 증액된 900억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가공시설 및 운영(용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가공시설 및 운영(용자)	14,450	29,400	29,400	90,000	60,600	206.1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동 사업은 수산물 가공업체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EU 수준의 위생시설 및 어획물 처리·가공조건을 충족하고 수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2027년도 계획안에 900억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가공시설 및 운영(용자) 사업 계획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 산출내역	금액
가공시설 및 운영(용자)	가공시설 및 운영: 90,000백만원 - 시설자금: 40,000백만원(20개소×2,000백만원×100%) - 가공시설운영자금 50,000백만원(71개소×700백만원×100%)	90,000

자료: 해양수산부

정금연 예산분석관(nosmoking@assembly.go.kr, 6788-4632)

1) 코드: 수산발전기금 3066-301

나. 분석의견

가공시설 및 운영(용자) 사업은 지원 한도 증액 및 수혜 업체 수 확대에 대한 객관적인 수요조사 결과와 실증적인 신청 수요가 제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의 대규모 예산 증액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지원 수요와 대출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실수요를 반영한 적정 규모로 계획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세부 산출내역에 따르면, 가공시설 운영자금의 지원 대상을 기존 43개소에서 2027년부터 71개소로 확대하고, 시설자금을 신규 편성하여 용자 기간을 3년 거치 7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가공시설 및 운영(용자) 사업 개편(안)]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 계획	2027년 계획안
예산액	29,400	90,000
지원한도	- 운영자금: 업체당 7억원	- 시설자금: 업체당 20억원 - 운영자금: 업체당 7억원
지원규모	- 42개소(42개소×7억원×100%)	- 시설자금: 20개소(40,000백만원) * 마른김(321개소), 조미김(284개소), 어묵류(76개소)의 3% 수준 반영 - 운영자금 : 71개소(50,000백만원) * 2025년 가공업체 용자 수요 반영
용자기간	1년 고정금리(연2.5~3%), 변동금리(매월고시)	- 시설자금: 3년 거치 7년 상환 - 운영자금: 1년

자료: 해양수산부

우선, 운영자금 용자 대상 확대(42개소→71개소)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전체 수산물 가공업체(약 3,416개소) 대비 2025년 기준 동 사업의 수혜 업체 비중이 1.3%(43개소)에 불과하여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27년도 운영자금 계획안은 500억원(71개소)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예산은 70.1%(206억원), 업체 수는 69.0%(29개소) 각각 증가한 규모이며, 2025년 실제 집행액(121억 4,200만원)의 약 4.1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동 사

업의 최근 예산 집행 실적 및 실질 자금 수요를 고려할 때, 2027년도 계획안은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다.

[가공시설 및 운영(용자) 사업 실적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A)							
2023	19,530	19,530	-	19,530	18,464	94.5	94.5	-	1,066
2024	19,530	19,530	-	19,530	18,233	93.3	93.3	-	1,297
2025	14,450	14,450	-	14,450	13,342	92.3	92.3	-	1,108
2026	29,400	29,400	-	29,400	13,173	44.8	44.8	-	-

주: 2026.8.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동 사업의 과거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2023~2024년 각각 51개 업체(업체당 평균 약 3억 6,000만원), 2025년 43개 업체(업체당 평균 2억 8,200만원)를 지원하는 등 소규모 운영자금 지원 위주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5년간 가공시설 및 운영(용자) 지원 대상자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계좌수	54	54	51	51	43
평균 대출금액	362	359	362	358	282

자료: 해양수산부

2027년도 계획안은 과거 수혜 실적이 43~51개소 수준이었음에도 지원 대상을 71개소로 대폭 확대 편성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수요 근거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전체 수산물 가공업체 대비 낮은 수혜 비율(전체 3,416개소 대비 1.3%)을 이유로 지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앞서 현행 지원 체계가 왜 극히 일부 업체에만 한정되어 이용되는지에 대한 근본적 원인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즉 담보, 신용등급 요건, 상환 능력 부족 등 수혜가 제한된 원인에 대한 정밀한 분석 없이 지원 규모만 확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용자 사업은 예산을 증액한다고 해서 수혜 기업이 자동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신청 수요와 대출 실행 가능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예산 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낮은 수혜율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분석 없이 추진하는 단순 예산 증액은 정책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시설자금으로 총 400억원(20개 업체, 업체당 2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해당 지원 규모(20개 업체)가 어떠한 수요조사나 사전 신청 의향 조사 등을 거쳐 산출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산가공업체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를 반영하여 소요 예산을 산출하였으며, 이는 주요 수산가공 품목인 마른김(321개소), 조미김(284개소), 어묵류(76개소) 전체 업체의 약 3% 수준에 해당한다. 즉, 김 가공공장의 노후화에 따라 시설 개선 자금 수요가 늘고 있으나 기존 대출 한도(7억원 이내)로는 실질적인 투자 지원에 한계가 있어 용자 한도를 현실화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 시설자금 수요조사 결과, 신청 예정 업체 현황, 사업별 투자계획, 예상 수혜업체 선정 기준, 지역별·품목별 수요분석 등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동 사업은 보조사업이 아닌 용자사업이므로, 지원 한도 확대 시 수혜 기업의 상환 부담은 물론 정책금융 재원의 회수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²⁾

또한 영세한 수산가공업체의 구조적 특성(전체의 약 96%가 소상공인·영세기업)을 고려할 때, 업체당 2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용자금을 원활히 상환할 수 있는 담보력과 재무건전성을 갖춘 업체는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간담회 수준의 단순 건의 사항만을 근거로, 사전 대출 실행 가능성(신용 및 담보 평가 등)에 대한 정밀 조사 없이 20개소 대상 총 400억원의 예산을 일시에 편성한 것은 예산 편성의 타당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2) 해양수산부는 기존 대출 조건(한도 7억원, 만기 1년)을 대출 한도 20억원,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완화함으로써 업체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대출금의 회수 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2027년부터 시설자금을 별도 신설하여 업체당 20억원씩 총 20개 업체를 지원하는 것은 기존 사업과 지원 성격 및 규모 면에서 상당히 다른 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 시설자금 융자 예산은 사업 공고 전 실증적인 수요조사 및 사전 신청 의향 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실제 수요를 바탕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종합해 볼 때, 가공시설 및 운영(융자) 사업은 지원 한도 증액 및 수혜 업체 수 확대에 대한 객관적인 수요조사 결과와 실증적인 신청 수요가 제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의 대규모 예산 증액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지원 수요와 대출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실수요를 반영한 적정 규모로 계획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수산모태펀드출자: 민간투자 유인체계의 실효성 제고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 필요

가. 현 황

수산모태펀드출자 사업¹⁾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유망한 수산경영체 등에 투자하는 정책펀드 사업으로, 202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전년 수정 계획 대비 200억원이 증액된 200억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수산모태펀드출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수산모태펀드출자	7,000	-	-	20,000	20,000	100.0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모태펀드출자 사업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서 동 펀드를 관리하고 있다. 동 사업은 정부출자를 통한 모태펀드의 조성, 펀드 운용사의 선정, 민간출자자 모집을 통한 자펀드 결성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자펀드별로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 및 회수를 실시하는 것이다.

[수산모태펀드 출자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 산출내역	금액
신규 출자금 : 200억원	200
- 수산바이오펀드 9,000백만원 × 국비 100%	
- 후속투자펀드 11,000백만원 × 국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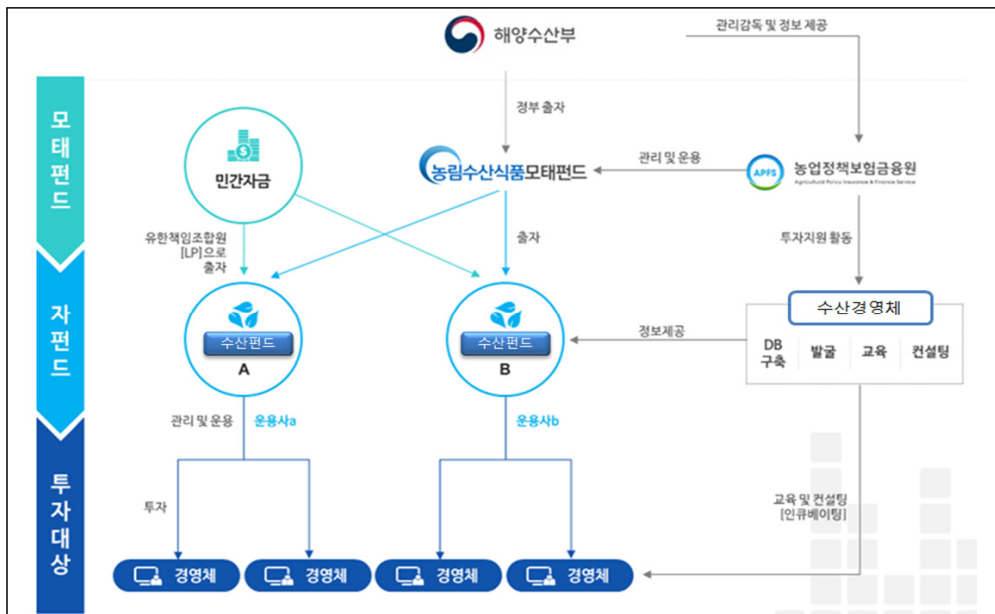
자료: 해양수산부

정금연 예산분석관(nosmoking@assembly.go.kr, 6788-4632)

1) 코드: 수산발전기금 3465-370

동 사업의 집행절차를 살펴보면, 해양수산부는 ① 정부재정으로 매년 수산모태펀드에 출자하고, ② 수산모태펀드와 민간이 매칭하여 수산투자조합(자펀드)을 결성하며, ③ 수산투자조합은 성장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수산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수산식품사업자 등)에 투자하고, 투자관리전문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며, ④ 사업관리기간이 종료되면 수산투자조합을 청산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고, ⑤ 회수한 금액으로 새로운 자펀드를 결성하여 재투자하게 된다.

[수산모태펀드 사업 추진 체계]



자료: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

수산모태펀드출자 사업은 민간 대비 정부 출자 비중이 높고 존속기간이 만료된 자펀드의 청산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민간 출자 지분을 최소 기준(40%)보다 높게 제안하는 경우 선정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등 민간 투자 유인체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미청산 자펀드가 적기에 청산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수산모태펀드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2)에 따라, 정부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유망 수산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안정적 투자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정책펀드이다. 주요 투자 분야는 수산물 생산·유통·가공·식품·바이오·기자재 등 수산업 전반에 해당한다. 동 펀드의 운용기간은 30년이며, 당초 계획상 2010년부터 2027년까지 총 1,819억원을 출자할 예정이었다.³⁾

우선, 수산모태펀드의 자펀드(투자조합) 결성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총 21개 자펀드가 3,173억원 규모로 조성되었다. 그런데 주체별 출자 비중을 살펴보면, 정부 출자액이 총 2,035억원인 반면 민간 출자액은 1,138억원에 그쳐 정부 출자 규모가 민간의 약 1.8배에 달하고 있다.

총 21개 자펀드 중 2011~2013년 조성된 ‘캐피탈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등 초기 4개 펀드는 정부와 민간의 출자 비율이 1:1로 동일했으나, 이후 결성된 펀드부터는 정부 출자 규모가 민간 대비 최대 4.0배 수준으로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 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이하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
- ②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농식품투자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3) 2028년 이후 투자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

[수산모태펀드 사업 자펀드 조성 현황]

(단위: 억원)

연번	펀드명	존속기간	주체별출자규모		총규모
			정부	민간	
1	캐피탈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11.08~’19.08	100	100	200
2	유니 수산식품투자조합 1호	‘11.12~’18.12	35	35	70
3	엘앤에스 농수산업 투자조합	‘12.07~’19.07	80	80	160
4	IDV-IP 수산전문투자조합	‘13.07~’20.07	75	75	150
5	캐피탈원 농림수산식품 투자조합 2호	‘14.08~’21.08	100	50	150
6	캐피탈원 농림수산식품 투자조합 3호	‘15.07~’23.07	100	50	150
7	K-Innovation 수산전문 투자조합	‘16.09~’24.09	140	60	200
8	POSCO-NSC 수산투자조합	‘17.08~’25.08	100	50	150
9	KB 신자산어보 투자조합	‘18.07~’26.07	100	50	150
10	IDV-IP 수산전문투자조합 2호	‘19.12~’27.12	105	45	150
11	마이다스동아-엔에스씨 수산펀드 2호	‘19.12~’27.12	140	60	200
12	가이아 수산벤처창업투자조합 1호	‘20.07~’28.07	120	30	150
13	비엔케이 수산투자조합 제1호	‘20.07~’28.07	120	30	150
14	엔브이씨 2021 수산벤처투자조합	‘21.07~’29.07	80	25	105
15	IDV-IP 수산전문투자조합 3호	‘21.11~’29.11	100	50	150
16	넥스트웨이브 2022 수산벤처 투자조합	‘22.07~’30.07	60	36	96
17	유니온 수산투자조합	‘22.07~’30.07	70	30	100
18	가이아수산벤처창업투자조합 2호	‘23.10~’31.10	80	53.4	133.4
19	미래수산식품투자조합	‘24.07~’32.07	120	82.03	202.03
20	푸른-엔브이씨 2024 수산세컨더리 투자조합	‘24.09~’32.09	90	61.5	151.5
21	미래수산밸류체인펀드	‘25.07~’33.07	120	85	205
합 계			2,035	1,137.93	3,172.93

주: 2026년 8월말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수산모태펀드의 자펀드별 출자 비율을 살펴보면, 정부 출자 비중은 최저 50%에서 최고 80%(평균 64.1%)에 달하는 반면, 민간 출자 비중은 최소 20%에서 최대 50%(평균 35.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산모태펀드가 위험도가 높은 수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높은 정부 출자 비중이 지속·고착화될 경우, 민간자본 참여 유도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사실상 직접적인 정책금융 사업처럼 운영될 우려도 있다.

해양수산부는 정부 출자 비중이 높게 형성된 사유로 수산 기업의 구조적 영세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수산 분야 기업은 중소·벤처기업 및 농림축산기업 대비 규모가 영세하여 투자회수기간이 긴 특성이 있는 데다, 2014년 이후 수산 자펀드에 대한 관심도 저하와 전반적 경기 침체로 민간 자본 유치가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정부 출자 비율이 불가피하게 상승했다는 입장이다.

물론 수산 기업의 영세성과 기후변화·자연재해(태풍·고수온·적조 등)에 따른 생산 변동성 등 산업 특유의 리스크를 감안할 때, 자립 기반 구축 시까지 국가 재정이 마중물로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동 사업은 2010년 착수 이후 올해로 17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부 출자 비중이 유지되고 있고, 이는 국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모태펀드 본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최근 결성된 자펀드별 민간 자본 유치 성과를 분석하고, 민간 자본 유치 실적이 우수한 운용사에 대해서는 차기 자펀드 출자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민간 투자 유인 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수산모태펀드는 자펀드가 투자기업으로부터 회수한 자금을 신규 자펀드에 재출자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신규 정부 출자 규모를 산정할 때에는 단순한 가용 재원 부족이 아닌, 기존 펀드의 투자금 회수 및 청산이 얼마나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026년 8월 말 기준 수산모태펀드가 출자하여 결성된 자펀드는 총 21개인데, 이 중 ‘유니 수산식품투자조합 1호’ 등 9개 펀드는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캐피탈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등 4개 펀드만 청산이 완료되었고 ‘유니 수산식품투자조합 1호’ 등 나머지 5개 펀드는 청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다.

[수산물태펀드 자펀드 현황]

(단위: 억원)

연도	존속기간	펀드명	사업단계	결성금액	투자금액	회수금액
2010	'11.08~'19.08	캐피탈원 농림수산물투자조합	청산완료	200	160	140.4
2011	'11.12~'18.12	유니 수산물투자조합 1호	청산중	70	61	22
2012	'12.07~'19.07	엘앤에스 농수산업 투자조합	청산중	160	153.4	113.2
2013	'13.07~'20.07	IDV-IP 수산물전문투자조합	청산완료	150	122.5	193.5
2014	'14.08~'21.08	캐피탈원 농림수산물 투자조합 2호	청산완료	150	164	93
2015	'15.07~'23.07	캐피탈원 농림수산물 투자조합 3호	청산완료	150	121	64.5
2016	'16.09~'24.09	K-Innovation 수산물전문 투자조합	청산중	200	173.5	75.8
2017	'17.08~'25.08	POSCO-NSC 수산물투자조합	청산중	150	132.47	93
2018	'18.07~'26.07	KB 신자산어보 투자조합	청산중	150	135.36	39
2019	'19.12~'27.12	IDV-IP 수산물전문투자조합 2호	회수기간	150	139.19	54.6
	'19.12~'27.12	마이다스동아-엔에스씨 수산물펀드 2호	회수기간	200	160.68	68
2020	'20.07~'28.07	가이아 수산물벤처창업투자조합 1호	회수기간	150	128.03	25.9
	'20.07~'28.07	비엔케이 수산물투자조합 제1호	회수기간	150	132.26	38
2021	'21.07~'29.07	엔브이씨 2021 수산물벤처투자조합	회수기간	105	84.63	-
	'21.11~'29.11	IDV-IP 수산물전문투자조합 3호	회수기간	150	134.04	-
2022	'22.07~'30.07	넥스트웨이브 2022 수산물벤처 투자조합	회수기간	96	82.8	-
	'22.07~'30.07	유니온 수산물투자조합	회수기간	100	80.98	-
2023	'23.10~'31.10	가이아수산물벤처창업투자조합 2호	투자기간	133.4	61	-
2024	'24.07~'32.07	미래수산물식품투자조합	투자기간	202.03	161.98	-
	'24.09~'32.09	푸른-엔브이씨 2024 수산물센터리 투자조합	투자기간	151.5	31.14	-
2025	'25.07~'33.07	미래수산물밸류체인펀드	투자기간	205	98.98	-
합 계				3,172.93	2,518.94	1,020.9

주: 2026년 8월말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2027년도 모태펀드 회수 자금 등 가용 재원이 약 38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여 정부 출자금 20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기존 자펀드의 회수·청산 지연에 따른 재원 부족 문제를 자체적인 자금 선순환이 아닌 추가 재정 투입으로 보완하는 구조가 될 우려가 있다.

수산물태펀드 출자 사업은 정부 재원을 마중물로 자펀드를 조성하여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존속기간 만료 후 출자금과 수익금을 회수해 관련 분야에 재투자하

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일부 자펀드의 경우 존속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잔여재산 분배 지연, 소송 진행 등의 사유로 청산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미회수 투자금은 312억 7,300만원⁴⁾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자펀드 청산이 지연될 경우 투자금 미회수로 인한 재투자가 지연되어 재정투자의 효과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수산모태펀드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는 민간 투자자의 참여 유인을 위축시켜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한 수산업 투자 활성화라는 본래의 정책 목표 달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정부 출자금의 효율적 관리 및 재투자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자펀드 결성 이후 운용사의 사후관리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기 청산이 이행될 수 있도록 자펀드 관리·감독 체계를 철저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

종합해 볼 때, 수산모태펀드출자 사업은 민간 대비 정부 출자 비중이 높고 존속기간이 만료된 자펀드의 청산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민간 출자 지분을 최소 기준(40%)보다 높게 제한하는 경우 선정 우대 혜택을 부여하는 등 민간 투자 유인체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미청산 자펀드가 적기에 청산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청산 중인 5개 자펀드의 투자원금 대비 미회수 잔액 합계임

활어유통 결제대금지원(용자): 내역사업 간 유사·중복 방지 및 예산안 산출의 정밀성 제고 필요

가. 현 황

활어유통 결제대금지원(용자) 사업¹⁾은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용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결제대금 지원사업자가 활어 양식업자 및 산지 수집상 등 생산자에게 결제대금을 선지급하면, 유통사업자가 이를 후정산할 수 있도록 해당 결제대금을 용자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5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27년도 활어유통 결제대금지원(용자)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용자)	131,286	153,500	153,500	199,400	45,900	29.9
· 활어유통결제대금지원	-	-	-	50,000	50,000	순증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활어 유통 과정의 외상·후정산 거래에 따른 생산자의 대금 회수 지연을 방지하고, 비계통 거래²⁾로 인한 유통 실태 파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500억원 규모로 활어유통 결제대금 지원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다. 이는 거래 내역 확인을 전제로 결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자의 대금 회수 안정성을 확보하고 거래 정보의 체계화 및 합리적 가격 형성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정금연 예산분석관(nosmoking@assembly.go.kr, 6788-4632)

1) 코드: 수산발전기금 3068-300의 내역사업

2) [계통거래와 비계통 거래]

구분	계통 거래	비계통 거래
유통경로	생산자→수협/농협·위판장·공판장→중도매인/유통업자	생산자→산지수집상/유통업자(직거래)
정보 투명성	거래량·가격 정보가 공식 집계·공개	거래 정보가 비공개·미집계
결제 방식	정해진 정산 시스템에 따른 신속·안정적 결제	외상, 후정산, 당사자 간 대금 지연 가능성 존재
장단점	거래 안정성 높음, 위판 수수료 발생	수수료 절감 가능, 대금 회수 위험 및 시장 왜곡 위험

자료: 해양수산부

[2027년도 활어유통 결제대금 지원 계획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 산출내역	금액
활어유통 결제대금 지원	활어유통 결제대금 지원(50,0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0억원 $\div$ 1.4조원 $\times$ 39% $\div$ 12회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조원: 연간 활어 유통 규모 39%: 넙치(대표 양식활어) 계통출하 비중(사업 초기 대상을 설정하기 위한 비중) 12회전: 어대금 결제자금 회전수 	50,000

자료: 해양수산부

등 사업은 저리 용자를 통해 활어 양식업자, 유사·법정 도매시장을 활용하는 산지 수집상·도매업자·유통업자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세부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다.

[활어유통 결제대금 지원(용자) 사업 개요]

사업대상	활어 양식업자, 유사·법정 도매시장을 활용하는 산지 수집상·도매업자·유통업자 등
용자조건	용자 100%, 금리 3%, 1년 상환
집행기관	수협중앙회(수협은행, aT)
자금용도	결제대금 지원사업자(수협 등)가 양식업자 등 생산자에게 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유통사업자가 결제대금 지원사업자에게 사후 정산

자료: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

활어유통 결제대금 지원 사업은 기존 산지위판장 출하지원 사업 등 유사 용자 사업과의 차별성 및 중복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하고, 사업비 산출 근거의 객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내역사업 간 유사·중복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계획 및 수요 추계를 정밀하게 재정립한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우선, 동 사업 계획안의 사업비 500억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활어 시장 규모(약 1.4조원)에 일정 비율(39%)을 곱하고 연간 회전율(12회)로 나누어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즉, 연간 활어 유통 규모(약 1.4조원)에 넉치 계통 출하 비중(39%)을 곱한 후 어대금 결제자금 회전수(연 12회)로 나누어 사업비 500억원을 산정하고 있으나, 해당 적용 비율(39%) 및 연간 회전수(12회)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산출 근거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연간 12회전 전제는 결제자금이 평균 1개월 단위로 회전함을 의미하나, 활어는 어종·생산방식·출하시기·유통경로별로 거래 및 결제 기간이 상이하므로, 실제 유통 현장의 자금 회전 일수, 생산자·유통업체 간 결제 주기 등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정 회전율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사업비 산정 방식은 실증 자료 없이 임의의 비율과 회전율을 적용한 단순 추정 수준에 그치고 있어, 예산 편성의 구체적 산출 근거로서 타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현행 방식은 정책대상자의 실질적 용자 수요나 자금 수급 실태에 대한 조사 없이, 전체 시장 규모에 임의의 비율과 회전율을 단순 적용한 간접 추계 방식이라는 점에서 예산 편성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인 용자 수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활어 생산자의 연간 거래·결제 규모, 기존 금융 이용 실태, 평균 대금 회수 기간, 자금 조달 애로 사업자 비중, 기존 산지유통자금 집행 현황(신청·지원·탈락 규모), 2027년도 예상 용자 수요(신청액 및 업체 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실증 자료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실증적인 수요조사 없이 전체 활어 시장 규모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신규 사업비(500억원)를 산정한 것은 신규 용자사업 예산의 객관적 근거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 특히, 용자사업은 상환을 전제로 실질적 자금 수요자에게 집행되는 사업이므로, 정책적 ‘지원 필요성’과 ‘500억원 규모의 실제 용자 수요 존재 여부’는 별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용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산지위판장 출하지원 사업’, ‘산지유통활성화’ 등 출하·유통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내역 사업 개요]

구분	산지위판장출하지원	산지유통활성화	도매시장출하지원	온라인도매지원
사업 내용	산지위판장의 어대금 결제자금 및 산지중도매인 구매자금 용자	생산자(단체)의 판매능력 제고를 위한 원물확보 및 직거래자금 용자	도매시장의 어대금 결제자금 및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자금 용자	온라인도매시장의 수산물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산, 결제자금 용자
시작 년도	■ (위판장) '79 ■ (중도매인) '01	■ (원물확보) '13 ■ (직거래) '98	■ (어대금) '82 ■ (정가수의) '15	■ '25
지원 대상	■ 위판장 ■ 산지중도매인	■ (원물확보)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화원조합 등 생산자(단체) ■ (직거래) 직판장 운영 수협 등 직거래 업체	■ (어대금) 공판장,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 (정가수의) 공판장,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 (결제자금) 온라인도매시장 구매자 ■ (정산지원자금) 온라인도매시장 정산소 운영기관
용자 한도	■ (위판장) 사업자당 50억원 * 부산공동어시장 150억원 ■ (중도매인) 사업자당 7억원 * 신규 사업자 7천만원	■ 당해 판매사업계획 80% 이내	■ (어대금·정가수의) 최근 1년간 거래실적의 12분의 1	■ 업체당 10억
금리 및 상환 기간	■ (위판장) 용자 100%, 금리 3%, 1년 상환 ■ (중도매인) 용자 100%, 금리 3%, 1년 상환	■ (원물확보) 용자 80%, 금리 3%, 3년 상환 ■ (직거래) 용자 80%, 금리 3%, 1년 상환	■ (어대금) 용자 100%, 금리 3%, 1년 상환 ■ (정가수의) 용자 100%, 금리 1.5%, 1년 상환	■ (결제자금) 금리 1.5%, 1년 상환 ■ (정산지원자금)정산소 대상 - 무이자, 1년 상환 * 구매자 대상 - 무이자 기간 20일, 연체시 금리 3%, 약정기간 1년(개별약정)
운용 기관	■ 수협중앙회/수협은행	■ 수협중앙회	■ 수협중앙회/수협은행	■ aT
요구 내용	■ (위판장) 86,515백만원 - 35개소×2,471백만×100% ■ (중도매인) 23,485 - 150명×157백만×100%	■ (원물확보) 5,800백만원 - 4개소×1,813백만×80% ■ (직거래) 3,600 - 3개소×1,500백만×80%	■ (어대금) 11,000백만원 - (법인 등) 8개소×750백만×100% - (중도매인) 30명×167백만×100% ■ (정가수의) 8,000 - 4개소×2,000백만×100%	■ (결제자금) 5,500백만원 - 6개소×917백만×100% ■ (정산지원자금) 5,500 - 1,000억원÷18.25×0.4
반영 필요성	수산물 유통 단계별 용자지원을 통해 생산자와 유통주체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거래 안정성 및 유통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 및 소비 활성화에 기여			

자료: 해양수산부

특히, ‘산지위판장 출하지원 사업’이 위판장 출하자금 지원을 통한 수산물 거래 대금 결제를 지원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규 ‘활어유통 결제대금 지원 사업’ 역시 생산자의 대금 회수 및 결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사업 간 지원 목적과 대상 측면에서 유사·중복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활어 생산자가 기존 ‘산지위판장 출하지원 사업’으로 지원받기 어려운 구체적 사유가 무엇인지, 기존 사업의 대상에서 실제 배제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원 한도 부족으로 별도 사업 신설이 불가피한 것인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신규 사업 편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5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신설하기에 앞서, 기존 사업의 용자 한도 및 지원 대상을 변경하여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기존 사업의 체계 안에서 활어 유통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다면, 기존 사업을 확충·개편하여 지원 대상, 용자 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과 통합 관리 측면에서 합리적일 것이다.

종합하면 활어유통 결제대금 지원 사업은 기존 산지위판장 출하지원 사업 등 유사 용자 사업과의 차별성 및 중복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하고, 사업비 산출 근거의 객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내역사업 간 유사·중복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업계획 및 수요 추계를 정밀하게 재정립한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연안여객선 유류비 보조: 재정사업 전환에 따른 정책 성과 검증 및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가. 현 황

연안여객선 유류비 보조 사업¹⁾은 섬 주민의 교통권 보장 및 항로 단절 방지를 위해 연안여객 선사를 대상으로 유류세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2027년도 계획안은 492억 9,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27년도 연안여객선 유류비 보조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계획안(B)	증감	
		당초	수정(A)		B-A	(B-A)/A
연안여객선 유류비 보조	-	-	-	49,296	49,296	순증

주: 1) 수정계획은 8월말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동 사업은 기존 연안여객선 면세유 조세지출 사업을 재정 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최근 3년 평균 연안여객선 유류 사용량²⁾에 따른 유류세액 면제분을 근거로 2027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정금연 예산분석관(nosmoking@assembly.go.kr, 6788-4632)

1) 코드: 자원안보기금 5101-301

2) [최근 3년간 유류 사용량 현황]

구 분	유류 공급량(kℓ)		
	경 유	중 유	계
2023년	76,745	53,774	130,519
2024년	78,404	46,448	124,852
2025년	71,370	42,965	114,335
평 균	75,506	47,729	123,235

[2027년도 연안여객선 유류비 보조 사업 계획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 산출내역	금액
연안여객선 유류비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유 43,463백만원 = 575.62원 - (교통·에너지·환경세 319원 + 교육세 47.85원 + 부가가치세 125.83원 + 자동차세 82.94원) × 75,560kl 중유 4,533백만원 = 98.1원 - (개별소비세 17 + 교육세 2.55원 + 부가가치세 78.55원) × 46,213kl 운영수수료 1,300백만원(사업비의 2.7%) 	49,296

자료: 해양수산부

나. 분석의견

첫째, 연안여객선 유류비 보조 사업은 기존 ‘연안여객선 면세유 조세지출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효과, 재정효율성 증대 여부, 행정비용 증가 규모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지원방식 변경에 따른 정책성과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과도한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추진 및 관리 체계를 면밀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재정경제부의 현행 조세지출 중 재정지출 전환으로 정책 효과성·효율성이 제고되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분야 발굴·전환 검토³⁾ 요청에 따라 현행 연안여객선 면세유 조세지출분의 재정사업 전환을 추진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수혜대상(연안여객선사)과 지원 규모는 기존 면세유 조세지출 제도와 사실상 동일하며 지원 방식(조세감면 → 보조금 지급)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

3) [재정전환 검토 기준]

- ① 양극화 완화 및 소득재분배에 효과적
- ② 조세지출 대비 효과적으로 정책효과 달성
- ③ 유사·중복지출로 행정비용 절감 등 효율화 가능

자료: 재정경제부

즉, 기존 면세유 조세지출 제도의 정책효과 분석, 재정지출 전환에 따른 개선효과 및 재정부효율성 분석, 행정비용(집행·정산·사후관리 등) 증가 규모에 대한 사전 검토 내역이 제시되지 않아, 지원방식 변경에 따른 정책성과 개선 여부를 입증할 실증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동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조금 집행·관리 업무 위탁에 따른 운영수수료(사업비의 약 2.7%)가 신규 편성되어 행정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2027년도 연안여객선 유류비 보조 사업 계획안 상세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평균 조세감면액(원/리터)						공급량	총계
	교통세	개별 소비세	교육세	부가 가치세	자동차세	소계		
경유	319	-	47.85	125.83	82.94	575.62	75,506	43,463
중유	-	17	2.55	78.55	-	98.1	46,213	4,533
유류세 보조금 합계								47,996
보조사업자 운영수수료								1,300

자료: 해양수산부

또한, 해양수산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4)를 근거로 보조사업자 운영수수료를 사업비의 2.7%인 13억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기존에는 한국해운조합이 연안여객선 면세유 공급·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별도의 재정 지출이 없었던 반면, 동 업무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운영수수료(13억원)가 신규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 ~ 16. (생략)

17. 기타 용역: 100분의 6

②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이윤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용역(「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4항의 기준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을 제외한다) : 100분의 10

그리고 운영수수료 산정 근거로 제시한 동 규칙 제8조는 통상 용역계약의 일반 관리비율 상한을 규정한 조항으로, 보조금 집행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는 보조사업 관리기관의 운영수수료 산정 기준으로 직접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게다가 해양수산부의 보조사업자 공모 절차와 여객선사의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절차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피수혜자와 관련 기관의 행정적 부담과 비용 또한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종합하면 동 사업은 기존 ‘연안여객선 면세유 조세지출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효과, 재정효율성 증대 여부, 행정비용 증가 규모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지원방식 변경에 따른 정책성과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과도한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추진 및 관리 체계를 면밀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유류비 보조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7년도 계획을 편성하였으므로, 동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5)에 따라 연안여객선용 석유류에 대해 적용되어 온 조세감면 혜택(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면제)이 2026년 12월 31일 일몰 종료됨에 따라 2027년부터 이를 직접적인 재정지원(보조금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면세유”라 한다)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 (후단 생략)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박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2027년도 연안여객선 유류비 보조사업 계획안 개요]

사업명	연안여객선 유류비 지원(민간경상보조 320-01)
사업시행주체	보조사업자[해수부 → 보조사업자(예: 해운조합 등) → 여객선사]
보조율	국비 100%
법적근거	「해운법」 제41조 등 개정 예정(현재 근거 부재)
사업목적	기존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 조세지출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

자료: 해양수산부

동 사업은 명확한 근거 법률인 「해운법」 제41조의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7년도 계획안이 편성되었다. 그런데 대중교통으로서 연안여객선의 지속 가능한 운항을 지원하고 국가적 의무 명시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앞서 유류세 지원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말까지 관련 법률 개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개정안을 마련·준비 중이며, 개정안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유류세 보조금 지급) 근거와 한국해운조합 등에 대한 사업 위탁 근거를 명시할 예정으로 확인된다.

[연안여객선 유류비 지원 사업 관련 법률 개정 필요 사항(현행 「해운법」 제41조)]

제41조(재정지원)
① (생략)
② 정부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에 한정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u>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선박에 사용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유류세 보조금”이라 한다)를 보조할 수 있다.</u>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런데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 시점까지 지원대상·보조율·환수요건 등 보조사업의 핵심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예산 집행의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 더욱이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도 법률 개정이 지연될 경우, 법률적 근거 없이 예산이 집행되거나 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유류비 보조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7년도 계획안을 편성하였으므로, 동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농촌진흥청

1

현황

가. 세입·세출예산안

농촌진흥청 소관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농촌진흥청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안은 151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0억원(7.1%)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19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5억원이다.

[2027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4,005	11,635	11,635	11,942	307	2.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04	746	746	746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981	1,737	1,737	2,452	715	41.2
합 계	16,190	14,118	14,118	15,140	1,022	7.1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안은 1조 2,134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740억원(6.5%)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137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772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225억원이다.

[2027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904,750	997,290	997,290	513,725	△483,565	△48.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768	9,346	9,346	477,230	467,884	5,006.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9,609	132,804	132,804	222,460	89,656	67.5
합 계	1,031,127	1,139,440	1,139,440	1,213,415	73,975	6.5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농촌진흥청

한편, 농촌진흥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안 총계와 같다.

2027년도 농촌진흥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농업인 안전 및 발농업 기계화 등 현장중심의 농업·농촌 현안 해결, ② AI·데이터 등 첨단기술 기반 농업혁신 확산, 그린바이오 기술 활용 식품산업 육성 지원,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등 농업 미래 신산업육성, ③ 지역특화작목 육성 강화 및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치유농업 산업화 육성, 지역농촌지도 기반 확충 등 농업·농촌의 성장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2027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농산업글로벌혁신협력(R&D) 사업이 신규 편성되면서 이 중 14억 5,000만원이 국제부담금(340-02목)으로 편성되었으나, 해당 국제부담금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협정이 아닌 기관 간 양해각서(MOU)에 근거한 것이므로, 농촌진흥청은 상대 기관과 과제협약(ACP)을 체결하여 현금·현물 분담 내역과 산정 근거, 성과 귀속사항을 명확히 하고 국제부담금이 필요 최소한도로 편성되었는지 점검하는 한편 집행·정산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식량자급률향상모델기반조성 사업은 2026년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과의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어 예산 조정 검토 의견을 받았음에도, 2027년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로 이관되면서 지출 구조조정 없이 전년과 동일한 3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농촌진흥청이 연장평가 결과를 사업 내용이나 예산 규모에 반영하지 않고 회계만 이관한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사업의 2027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3억 5,200만원(23.6%) 증액된 750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최근 3년간 평균 실

집행률이 52.6%에 그치고 2026년에도 대다수 지역에서 전년도 이월액조차 집행하지 못한 채 약 360억원이 다시 이월될 전망이므로, 집행이 부진한 지자체를 중점 관리하고 보조금 교부 시 지자체별 연내 집행가능성과 사업 준비 정도를 면밀히 점검하며 지자체 담당자 대상 사전 컨설팅과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농촌진흥청의 2027년도 신규사업은 총 15개 사업 544억원 규모이다.

지역맞춤형중소규모스마트팜모델실증및고도화(R&D) 사업은 재배 비중이 높은 중소농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마트농업 확산을 실현할 수 있는 중소규모 농가에 적합한 저비용·고효율의 작물별 중소형 스마트팜 모델 및 모듈형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업이고, AI기반바이오데이터소재통합활용지원사업(R&D)은 농생명 바이오데이터-기술-전문인력 중심의 연구 기반 마련과 농생명 바이오소재의 지속적인 관리·활용을 통한 AI·빅데이터 기반 바이오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이다.

[농촌진흥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15개)	중북부한계지역적응형농업생산성향상기술개발(R&D)	3,000
	영농형태양광기반고소득식량-에너지NEXUS개발(R&D)	6,000
	중앙치유농업센터 운영	9,645
	수출패스트트랙K-농업기술개발(R&D)	3,000
	AI기반바이오데이터소재통합활용지원사업(R&D)	7,291
	농산업글로벌확산협력(R&D)	2,950
	한국형무인자율노지농업생산을위한피지컬AI핵심요소기술개발(R&D)	3,600
	지역맞춤형중소규모스마트팜모델실증및고도화(R&D)	5,000
	전통발효유산과학화를통한K-명주세계화기술개발(R&D)	3,000
	농산물수확후전주기데이터표준화기술개발(R&D)	2,250
	팜테크기반친환경농업생산수익혁신을위한전주기기술패키징리빙랩(R&D)	3,000
	건강기능식품원료국산화지원	770
	사료작물종자처리종합플랜트구축	736
	민간협력규제병해충감시체계구축	500
	농업특화인공지능서비스(정보화)	3,612
합 계		54,354

자료: 농촌진흥청

2027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데이터기반농업관측을위한위성영상활용기술개발(R&D), 농업기술정보화(정보화), 농작업재해예방(보조) 사업 등이 있다.

① 데이터기반농업관측을위한위성영상활용기술개발사업(R&D)은 위성과 AI를 활용하여 벼 주요 병충해를 탐지하는 과제 및 농경지 침수 피해를 모니터링하는 과제 수행을 위해 증액되었으며, ② 농업기술정보화(정보화) 사업은 기상 이상으로 인한 농작물 침수, 냉해, 병해충, 가축 폐사 등 농업재해에 선제적 대응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이 신규 내역사업으로 반영되어 증액되었고, ③ 농작업재해예방사업(보조)은 농작업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과 농업인온열질환예방사업의 전국 확대가 반영되어 증액되었다.

[농촌진흥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¹⁾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9개)	국가농업환경종합관리기술개발(R&D)	4,025	4,025	5,367	1,342	33.3
	기후변화대응생명공학작물활용기술개발(R&D)	4,200	4,200	5,600	1,400	33.3
	가축생산비절감정밀사양최적기술개발및고도화(R&D)	3,000	3,000	4,000	1,000	33.3
	AI기반생체·정서반응형농업활동서비스플랫폼개발(R&D)	3,000	3,000	4,000	1,000	33.3
	데이터기반농업관측을위한위성영상활용기술개발(R&D)	1,770	1,770	3,360	1,590	89.8
	지능형농업로봇핵심기반기술개발(R&D)	2,950	2,950	3,933	983	33.3
	농작업안전관리기술및웨어러블편이장비개발(R&D)	3,000	3,000	4,000	1,000	33.3
	농업기술정보화(정보화)	6,823	6,823	9,145	2,322	34.0
	농업과학관운영	668	668	968	300	44.9
농어촌구조개선훈별회계 (3개)	농작업재해예방(보조)	5,070	5,070	6,935	1,865	36.8
	농업기초기반전문기술인재양성(R&D)	3,200	3,200	4,400	1,200	37.5
	AI기반작물모니터링및진단플랫폼개발(R&D)	7,800	7,800	12,600	4,800	61.5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¹⁾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지역균형 발전특별 회계 (9개)	지역특화작목연구기반고도화 (R&D, 보조, 지역자율)	5,128	5,128	13,975	8,847	172.5
	농업기술협력지원(보조, 지역 자율)	11,842	11,842	25,474	13,632	115.1
	스마트영농지원체계구축(보조, 지역자율)	4,950	4,950	10,755	5,805	117.3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보조, 지역자율)	4,270	4,270	6,512	2,242	52.5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보조, 지역자율)	60,732	60,732	75,084	14,352	23.6
	농촌자원소득화지원(보조, 지 역자율)	2,715	2,715	9,474	6,759	249.0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보조, 지역지원)	1,508	1,508	8,353	6,845	453.9
	지역특화작목연구기반고도화 (R&D, 제주, 지역자율)	600	600	1,200	600	100.0
	농촌자원소득화지원(보조, 지역 지원)	70	70	617	547	781.4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금은 각각 2026년 당초계획과 8월말 기준 수정계획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농촌진흥청

II

주요 사업 분석

1

국제협력사업의 재정 부담구조 구체화 필요 등

가. 현 황

농산업글로벌확산협력(R&D)¹⁾ 사업은 한-중국, 브라질, 멕시코, 몽골 등과의 정상외교 성과 기반의 글로벌 거점 인프라를 기반으로 농업 분야 공동 연구를 수행 하려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29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농산업글로벌확산협력(R&D)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농산업글로벌확산협력(R&D)	-	-	-	2,950	2,950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농촌진흥청

2027년도 동 사업 예산안 29억 5,000만원은 ① 한중 그린바이오 협력(16억원), ② 글로벌 농산업 전략거점 구축(13억 5,000만원)의 2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① 한중 그린바이오 협력은 중국과 질병·해충 등 농업·식량 위기를 공동 대응 하기 위해 양국 그린바이오 농업기술의 개발·실증·확산을 협력하는 사업으로, 6개 과제에 대하여 과제당 3억 5,600만원(국비 100%, 9/12개월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산출된다. 비목별로는 시험연구비(210-13) 4억 8,000만원, 국제부담금(340-02) 9 억원, 연구개발활동비(360-05) 2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다.

② 글로벌 농산업 전략거점 구축은 브라질, 몽골,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 멕시코 등 한-중국을 제외한 정상외교 협력국을 대상으로 현지 농업연구기 관과의 협력을 통해 농산업 분야의 해외 거점을 구축·확산하는 사업으로, 5개 과제

서창희 예산분석관(seochang@assembly.go.kr, 6788-4629)

1) 코드: 일반회계 1136-397

에 대하여 과제당 3억 6,000만원(국비 100%, 9/12개월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산출된다. 비목별로는 시험연구비(210-13) 3억 5,000만원, 국제부담금(340-02) 5억 5,000만원, 연구개발활동비(360-05) 4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및 비목별 편성 내역]

구 분		한중 그린바이오 협력	글로벌 농산업 전략거점 구축
27년 예산안		1,600백만원	1,350백만원
산출 근거		6과제(신규)×356백만원×9/12개월	5과제(신규)×360백만원×9/12개월
비 목	시험연구비 (210-13목)	480백만원	350백만원
	국제부담금 (340-02목)	900백만원	550백만원
	연구개발활동비 (360-05목)	220백만원	450백만원

자료: 농촌진흥청

나. 분석의견

농촌진흥청은 양해각서에 따른 상대 기관과 과제협약(ACP)을 체결하여 상호 역할과 현금·현물 분담 내역과 산정 근거, 성과 귀속사항을 명확히 하고, 국제부담금의 집행·정산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중국, 브라질, 멕시코 등 정상외교 대상국과 공동연구를 통해 국내 농업기술 및 농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기술 개발과 현지 실증을 하려는 것으로,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동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각 협력국과는 MOU 형태의 협약이 체결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농촌진흥청은 중국(연변대), 브라질(농업축산부 등), 몽골(식량농업 경공업부 등),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농업부), 멕시코(국립산림농업축산연구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국제협력사업 수행 국가와의 MOU 체결 현황]

구 분	체결일	협약 형태 및 기관
중국	2026.6.3	MOU(연변대), 동북아시아 농업 R&D 협력 연구실 개소
브라질	2026.2.23	MOU 2건(농약 인허가: 농업축산부·위생감시청·환경청, 농업기술협력: 농업연구청)
몽골	2026.7.9	MOU(식량농업경공업부, 수의청)
중앙아시아 (우즈베크 등 5개국)	2026.9.14	MOU(우즈베크 농업부)
멕시코	2026.9.24	MOU(국립산림농업축산연구소)

자료: 농촌진흥청

그런데 2027년 동 사업 예산안에는 국제부담금(340-02목)으로 한중 그린바이오 협력 사업에 9억원, 글로벌 농산업 전략거점 구축 사업에 5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동 사업은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조약·협정 등과 달리 기관 간 체결한 MOU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2027년 예산안에 편성된 부담금은 “자발적 부담금(부담금)”의 성격으로 이해된다.²⁾

한편,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자발적 부담금(부담금)”은 협력사업의 타당성과 성과에 대한 분석·검토를 거쳐 필요 최소한도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필요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상대 협력기관별 부담 내역의 구체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에서 제출한 각 기관과의 MOU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MOU에서는 양국이 공동으로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업 계획상 우리 정부만 국제부담금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2027년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다.

2) 이에 대하여 농촌진흥청은 기관 간의 MOU에 근거하여 편성된 것이기는 하지만, 동 사업비는 외국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등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부담금으로 국제부담금 편성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국제부담금(340-02목) 편성 적용 대상 및 세부 지침]

1. 적용대상

-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외국정부, 외국기관 등과 체결한 조약협정 등에 따라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부담금, 분담금, 회비 및 부대경비
 - UN 산하기구 등 각종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등과의 공동연구 등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부담금
 - 조약, 협정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의 사업 및 운영비
 - 국제기구 파견에 따른 파견경비 등 기타 국제부담금

2. 세부지침

- 국제부담금은 이를 명시한 협정서가 있거나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또는 장·차관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우리 정부가 부담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만 반영
 - 조약·법령·협정 등에 분담율·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은 동 금액을 원칙적으로 계상하되, 포괄적인 규정에 의한 국제부담금은 이를 최소한으로 조정하여 반영
- 국제기구 의무분담금은 협정상의 권한상실 등 규정을 고려하여 가급적 연체되지 않도록 편성
 - 여타 회원국의 분담금 납부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소요를 조정·반영
- **자발적 분담금은 협력사업의 타당성, 분담금 납부를 통한 성과 등을 분석·검토하여 필요 최소한도로 반영**
 - 사업연장에 따라 분담금을 계속 납부하게 되는 경우는 사업 연장의 타당성을 엄격히 검토하여 결정

자료: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농촌진흥청은 이에 대하여 동 사업 예산안에 편성된 국제부담금은 외국기관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또는 협력의향서(LOI)에 따라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서 상대 기관에 지급하는 ‘사업비’를 편성한 것이고, 협력사업비는 양 기관이 함께 부담하되, 상대기관은 현지 실증포장, 시험시설, 연구인력, 파견연구원 지원(경비, 공간) 등을 현물로 투입·제공하고, 농촌진흥청은 국제부담금을 현지 수행 직접경비(현지 시험재료비, 시험분석비 등)에 한정하여 산정하였으며, 상대기관과 과제 협약서(ACP)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MOU에서는 “각 기관이 자국의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각자의 재정 상황에 맞추어 수행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개별 협력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부담, 예산 규모 및 집행 방식은 별도의 사업별 협약(합의) 또는 이행 약정을 통

해 정한다” 라고 되어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농촌진흥청은 상대 기관과 과제협약(ACP)을 체결하여 현금·현물 분담 내역과 산정 근거, 성과 귀속사항을 명확히 하고, 국제부담금의 집행·정산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식량자급률향상모델기반조성¹⁾ 사업은 식량자급률 향상 및 기반 조성을 위해 쌀가루, 밀, 콩 등 신품종·기계화·신가공 개발기술의 현장 확산 모델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과 동일하게 35억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식량자급률향상모델기반조성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농업기술협력지원(보조)	10,140	11,842	11,842	25,474	13,632	115.1
식량자급률향상모델기반조성	3,800	3,500	3,500	3,500	0	0.0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농촌진흥청

동 사업은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을 내용으로 하며, 각 개소당 총사업비는 20억원(1년차:10억원, 2년차:10억원)이다. 동 사업은 지자체 보조 사업이고, 국비 보조율은 50%이며, 2027년 예산안은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7개소(1년차: 2개소, 2년차: 5개소) 조성 지원이 내역으로 산출되었다.

서창희 예산분석관(seochang@assembly.go.kr, 6788-4629)

1)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2131-300의 내역사업

[2027년도 식량자급률향상모델기반조성 사업 예산안 세부 편성 내역]

③ 식량자급률 향상 모델 기반조성 : ('26) 3,500 → ('27안) 3,500백만원(전년동)
- 식량작물(콩) 재배기반 구축을 통한 식량 자급률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예산 * ('26) 1,000백만원(1과제) × 7개소 × 50% → ('27) 1,000백만원(1과제) × 7개소 × 50%
- (산출) 콩 자립형 융복합 단지 조성 3,500백만원

자료: 농촌진흥청

1년차에 생산·저장·선별 기반, 2년차에 가공·유통 기반을 조성하는 구조이며, 총사업비 20억원의 세부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식량자급률향상모델기반조성 총사업비 세부 편성 근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내역	금액
1년차	대규모 생산단지(100ha) 및 채종단지 (10ha) 조성	단지 조성(신품종, 신기술 등) 100ha	50
		생력화 기계 (일괄파종기, 콩 전용수확기 등)	200
	품질 균일화 건조저장 및 선별시설	건조·저장 기반시설	300
		정선 선별기	450
2년차	소규모 가공 (두부, 전두유, 장류 등)	전처리시스템 구축	200
		가공품 살균·가공 생산 설비	600
		포장·가공 설비	100
	유통, 홍보 강화(제품 홍보 자료제작, 체험행사 및 박람회 등)		100
합 계			2,000

자료: 농촌진흥청

또한, 2023~2027년간 동 사업을 통해 조성된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3~2027년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현황]

구분		지역
2023	1년차	충남 당진, 전남 함평
2024	1년차	충북 괴산, 경남 사천
	2년차	충남 당진, 전남 함평
2025	1년차	경기 파주, 경북 영주
	2년차	충북 괴산, 경남 사천
2026	1년차	충북 충주, 충남 공주, 전북 김제·익산, 경북 울진
	2년차	경기 파주, 경북 영주
2027	1년차	충남 예산, 경북 구미
	2년차	충북 충주, 충남 공주, 전북 김제·익산, 경북 울진

자료: 농촌진흥청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은 2026년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업과의 유사중복 가능성이 지적되어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은 이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없이 2027년도부터 동 사업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로 이관하였다. 그 결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연장평가의 지적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는데, 농촌진흥청이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사업 내용이나 예산 규모에 반영하지 않고 회계만 이관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동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행 중인 전략작물산업화²⁾ 사업과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어 예산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감액 평가를 받았다.

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131-351

[농업기술협력지원(보조) 사업 2026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평가요약표]

최종 평가결과 (○ 표시)	정상추진	사업개선	감액	폐지·통합
	-	-	○	-
평가결과 근거 및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중복 가능성과 내역사업과 세부사업 간 연계성 미흡 등에 따라 사업개 선 및 예산 조정 검토가 필요함 - '식량자급률향상모델기반조성'의 경우,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어 예산 조정 검토가 필요함 - '식량자급률향상모델기반조성'은 세부사업 '농업기술협력지원'의 목적인 '공 공·민간개발기술의 현장활용과 협력', '공공·민간기술 현장활용지원'보다는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가까움 - '기술보급체계다변화'와 '농업기술산학협력지원'은 통합 추진을 검토할 필요 있음 			

자료: 2026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략작물산업화 지원 사업은 전략작물(밀·콩·가루쌀 등)의 효율적 생산, 제품개발·홍보 등을 통한 수요 확대로 생산-소비가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7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2027년 예산안은 421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다.

[전략작물산업화지원 내역 사업별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27년 예산안	비고
① 교육·컨설팅	교육·컨설팅	3,525	국비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사업운영비	250	국비 100%
② 시설·장비	밀·콩·가루쌀 등	3,750	국비50%, 지방비 40%, 자부담 10%
③ 사업다각화	밀·콩·가루쌀 등	5,680	국비40%, 지방비 40%, 자부담 20%
④ 식량작물선도경영체 교육훈련	교육·훈련	1,210	국비 100%
	성과확산	1,790	국비 100%
⑤ 제품화패키지지원	패키지지원	12,600	밀·콩 국비 50%, 지방비 50% 가루쌀 국비 80%, 지방비 20%
	신메뉴개발	1,200	국비80%, 자부담20%
	판로지원	800	국비80%, 자부담20%
	사업운영비	200	국비 100%
⑥ 전략작물가공확대지원	가공확대지원	3,200	국비 50%, 자부담 50%
⑦ 국산콩 가공산업화지원	가공확대지원	7,920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합 계		42,125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산업화 사업과 식량자급률향상모델기반조성 사업을 비교해보면, 두 사업은 모두 식량자급률 제고라는 목적, 콩이라는 대상 작물,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단계를 지원하는 구조, 지자체 보조 방식으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2026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유사 중복 가능성에 따른 감액 평가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전략작물산업화 지원 사업과의 비교]

구분	식량자급률향상모델기반조성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소관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콩 생산·저장·가공·유통 자립형 특화단지 조성으로 식량자급률 향상	전략작물(밀·콩·가루쌀) 산업화로 농작물 전환을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 및 농가소득 기반 제공
대상 작물	밀·콩·가루쌀 ¹⁾	밀·콩·가루쌀
지원 구조	생산 + 저장·선별 + 가공 + 유통·홍보 전 단계 동시 지원	생산(교육·컨설팅, 시설·장비) → 가공(사업다각화, 국산콩 가공산업화) → 소비(제품화패키지, 판로, 홍보) 전 단계
보조 유형	지자체보조 (국비 50%, 지방비 50%)	지자체보조 (국비 40~100%)

주: 1) 2023~2025년까지 밀·가루쌀도 지원하였으나, 2026년과 2027년은 콩만 사업 대상으로 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그러나 유사 중복 가능성에 따른 감액 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은 동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없이 2027년도부터 동 사업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로 이관하였다. 그 결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연장평가의 지적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

현행법령³⁾에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3)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6조(포괄보조금의 지원) ① 정부는 제78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율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 및 시·군·구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이하 “포괄보조금”이라 한다)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에 여러 개의 세부 내역을 구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7조(포괄보조금의 지원)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법 제86조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사업을 편성하려는

지자체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괄보조금으로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그 신청 금액을 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7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계속소요에 대해 지자체의 신청금액을 직접 조정할 수는 없으나, 요구내용의 적정성, 회계연도 내 실행 가능성, 조정방향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예산안 요구 절차]

구 분	주체(기한)	주요 내용
① 지자체 예산신청	시·도지사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시대위원회 (4월 30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는 계속소요를 신청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하되, 국비지원 총규모 초과 신청과 기본계획에 없는 신규 내역 신청은 불가 - 신규소요는 신청한도와 별도로 신청. 시·도지사는 기초자치단체 신청 내용을 조정 없이 종합
② 중앙행정기관 예산요구	중앙행정기관 → 기획예산처 (5월 31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보조 지출한도 규모와 동일하게 요구 - 계속소요는 신청금액을 조정하지 않되, 요구내용의 적정성, 회계연도 내 실행 가능성, 조정방향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 - 신규소요는 낙후도, 기존 지원내용(분산투자 방지), 사업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자료: 2027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토대로 재작성

경우에는 사업 목적이 같은 여러 개의 유사사업을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통합하고, 해당 사업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해야 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 그 정책목표와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2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 예산신청의 한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포괄보조금 사업과 그 세부 내역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정책목표와 다른 목적으로 포괄보조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괄보조금으로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 그 신청 금액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포괄보조금 사업의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정책목표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지방 재정 운용의 자율성 제고라는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 본래의 취지를 고려하되, 국가 정책과의 정합성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 편성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고, 그 결과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감액 의견을 받은 사업의 예산안이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어 국가보조금 사업의 성과를 철저히 검증하여 재정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환류시키려는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취지가 반감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하면, 2026년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유사중복을 사유로 예산 감액 의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은 지출구조조정 없이 2027년도부터 동 사업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로 이관하였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요구 내용의 적정성, 조정방향 등에 대한 별도의 검토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 결과 동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예산안이 편성되었는바, 농촌진흥청이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사업 내용이나 예산 규모에 반영하지 않고 회계만 이관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사업의 연례적인 집행 부진 해소 필요

가. 현 황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보조, 지역자율)¹⁾ 사업은 농촌진흥기관을 지역 농업기술보급과 교육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영농기술 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43억 5,200만원이 증액된 750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보조, 지역자율)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보조, 지역자율)	58,500	60,732	60,732	75,084	14,352	23.6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농촌진흥청

사업수행 주체는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지방자치단체)이고, 국비 50%·지방비 50%로 지원한다. 2027년도 예산안 750억 8,400만원은 전국 9개 시·도, 120개 사업에 배분되어 있으며, 사업내용은 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원 등 농촌진흥기관의 청사 신축·이전, 과학영농종합시설, 교육·실습시설, 미생물배양시설, 스마트팜·실증포장 등 다양한 과학영농기술 기반시설 구축 등이다.

서창희 예산분석관(seochang@assembly.go.kr, 6788-4629)

1)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233-300

[2027년 지역농촌지도활성화지원(보조, 지역자율) 예산안 지역별 편성 현황]

(단위: 천, 백만원)

구분	사업 건수	2027년 국비	구분	사업 건수	2027년 국비
전북	25	10,459	경북	13	7,640
광주·전남	21	16,960	충북	12	4,655
강원	14	9,645	인천	2	4,200
충남	22	9,450	경기	7	3,090
경남	4	8,985			
합 계				120	75,084

자료: 농촌진흥청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은 최근 3년간 평균 실집행률이 52.6%에 그치고 매년 대규모 이월이 반복되고 있으며, 2026년에도 약 360억원이 차년도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2027년도 예산안이 전년 대비 23.6% 증액 편성된 만큼, 농촌진흥청은 보조금 교부 시 지자체별 집행 실적과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연례적인 집행 부진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3~2026년 8월 기준 동 사업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교부현액 864억 5,100만원 중 406억 8,900만원이 이월되었고, 14억 4,9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24년에는 교부현액 1,082억 7,400만원 중 572억 3,900만원이 이월되었고, 8억 7,4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2025년에는 교부현액 1,157억 3,900만원 중 445억 5,500만원이 이월되었고, 27억 7,100만원이 불용되었다. 2026년 8월 말 기준으로는 교부현액 960억 3,900만원 중 집행액은 273억 2,300만원에 그쳐, 실집행률이 28.4%에 머무르고 있다.

[2023~2026년 지역농촌지도활성화지원(보조, 지역자율) 사업 실적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3	53,696	53,696	53,696	32,755	86,451	44,313	40,689	1,449	51.3
'24	67,585	67,585	67,585	40,689	108,274	50,161	57,239	874	46.3
'25	58,500	58,500	58,500	57,239	115,739	68,413	44,555	2,771	59.1
'26 ¹⁾	60,732	51,484	51,484	44,555	96,039	27,323	-	-	28.4

주: 1) 2026년은 8월 31일 기준임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연례적인 실적행 부진의 원인에 대해 건축기획 행정절차 지연(BF 인증, 공공건축 심의 등), 부지 선정 및 철거, 사업담당자 경험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집행률 부진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예산 집행 부진은 2026년도에도 지속되고 있다. 2026년 8월 31일 기준, 총 6차에 걸쳐 2026년도 예산이 지자체에 교부되었는데, 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5개 지역 모두, 8월 말 기준 집행액이 전년도 이월액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2026년 8월 31일 기준 경남은 집행액(28억 600만원)이 전년도 이월액 92억 7,600만원의 30.2%에 불과하고, 충남 역시 집행액(35억 7,700만원)이 전년도 이월액 77억 3,900만원의 46.2%에 불과하다.

[2026년 지역농촌지도활성화지원(보조, 지역자율) 사업 지역별 상세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지역	교부액(백만원)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C)	집행액 (D)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D/C)
	소계	1차 (1.23.)	2차 (2.21.)	3차 (4.24.)	4차 (5.22.)	5차 (6.23.)	6차 (7.29.)						
인천	2,100	300	200	500	200	200	700	-	2,100	1,132	86	-	53.9
광주	300	67	-	70	72	-	91	-	300	101	-	-	33.6
대전	984	200	100	224	100	100	260	66	1,050	434	-	34	41.3
경기	3,040	500	300	700	1,540	-	-	439	3,479	1,802	51.8	1,059	51.8
강원	8,049	-	1,200	2,630	1,150	1,391	1,678	2,342	11,978	2,336	2,643	20	19.5
충북	2,923	570	300	900	350	200	603	2,126	5,652	1,994	325	31	35.3
충남	5,851	-	1,000	2,100	800	500	1,451	7,739	15,040	3,577	6,896	17	23.8
전북	5,898	-	1,000	2,100	800	500	1,498	2,405	9,800	1,753	-	652	17.9
전남	10,252	-	2,000	3,000	1,300	-	3,952	12,382	24,322	6,802	4,221	2,100	28.0
경북	8,580	1,500	1,000	2,500	1,000	1,200	1,380	7,781	17,741	4,586	4,527	948	25.8
경남	3,598	700	327	900	500	220	951	9,276	13,826	2,806	5,343	160	20.3
합계	51,575	3,837	7,427	15,624	7,812	4,311	12,564	44,556	105,288	27,323	24,041	5,021	26.0

주: 2026년 8월 31일 기준임

자료: 농촌진흥청

다시 말해, 대다수 지역에서 2026년 8월 말 시점에도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예산조차 집행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2026년도 보조금이 연례적으로 교부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26년에도 지자체 기준 예산현액 1,052억 8,800만원 중 690억 5,000만원만 집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약 360억원이 차년도로 이월될 전망이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전년도 이월액의 집행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상황 등을 중점관리하고, 향후 보조금을 교부할 때 지자체별·사업별 집행 실적과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선정 단계에서 부지 확보 여부, 행정절차 이행 계획 등 사업 준비 정도를 충분히 점검하고, 반복적으로 지연이 발생하는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자 대상 사전 컨설팅과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산 림 청

1

현황

가. 총수입·총지출

산림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의 총수입은 일반회계, 2개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총지출은 일반회계, 3개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구성된다.

산림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3,887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482억원(11.0%) 감소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055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582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50억원이다.

[2027년도 예산안 산림청 소관 총수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54,018	101,956	101,956	105,496	3,540	3.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42,406	311,066	311,066	258,156	△52,910	△17.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974	-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935	-	-	-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2,061	23,810	23,810	25,010	1,200	5.0
합 계	433,394	436,832	436,832	388,662	△48,170	△11.0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산림청

산림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3조 1,582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299억원(4.3%)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290억원,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1조 7,798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9,785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09억원이다.

[2027년도 예산안 산림청 소관 총지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730,905	1,693,811	1,695,811	328,974	△1,366,837	△80.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83,710	378,365	378,665	1,779,837	1,401,172	37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43,166	882,925	882,925	978,503	95,578	10.8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67,449	70,866	70,866	70,907	41	0.1
합 계	2,925,230	3,025,967	3,028,267	3,158,221	129,954	4.3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산림청

나. 세입·세출예산안

산림청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구성된다.

산림청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안은 1조 9,795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7,399억원(59.7%)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055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조 8,016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25억원이다.

[2027년도 산림청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54,018	101,956	101,956	105,496	3,540	3.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37,906	1,064,906	1,065,206	1,801,592	736,386	69.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974	-	-	-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935	-	-	-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0,395	72,503	72,503	72,453	△50	△0.1
합 계	1,277,228	1,239,365	1,239,665	1,979,541	739,876	59.7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산림청

산림청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안은 4조 9,917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4,737억원(10.5%)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조 1,824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조 7,583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9,785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25억원이다.

[2027년도 산림청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2,559,592	2,495,016	2,497,316	1,182,365	△131,491	△52.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59,583	1,064,906	1,065,206	2,758,340	1,693,134	158.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43,166	882,925	882,925	978,503	95,578	10.8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68,953	72,503	72,503	72,453	△50	△0.1
합 계	4,131,294	4,515,350	4,517,950	4,991,661	473,711	10.5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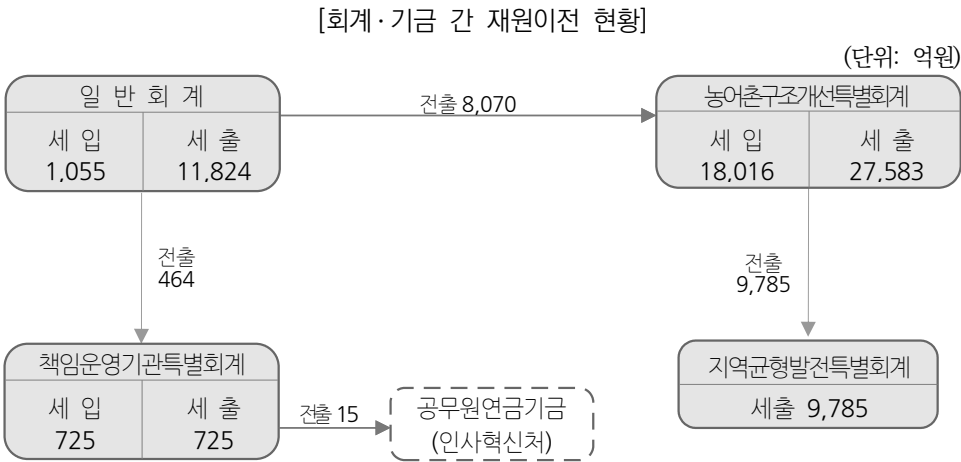
1. 총계 기준

자료: 산림청

다. 재정구조

2027년도 예산안의 산림청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의 경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8,070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464억원이 전출되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경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9,785억원이 전출되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경우 공무원연금기금으로 부담금 15억원이 전출된다.



자료: 산림청

2027년도 산림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임업인·산주 맞춤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림산업 육성 분야 예산이 증액되었고(2026년 6,236억원 → 2027년 8,542억원), ② 국민 모두가 누리는 산림복지 서비스 공간 조성을 위한 국민복지 분야 예산이 확대되었다(2026년 2,148억원 → 2027년 2,655억원).

2027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신고포상금은 피신고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제보 대가로 지급되는 재원인 만큼,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사업 집행 과정에서 각종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동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과 연계한 심사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산림사업종합자금 사업은 실질 사업 수요, 연내 실집행 가능성, 재정 리스크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 규모를 단기간에 급격히 확대하기보다는 시범적으로 일정 규모를 우선 공급하고, 향후 실제 대출 실행률, 연체율, 사업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재정 운용 측면에서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2027년도 농특회계로의 대규모 사업 이관은 농특회계의 세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농특회계의 중장기 재정 운용 여력 및 농특회계 전체 재원의 기관별·계정별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사업별로 농특회계 재원으로 추진할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림청의 2027년도 신규사업은 총 7개 사업, 499억원 규모이다.

일반회계 사업 중 산림부문 2030 NDC 이행기술 및 2040 NDC 전략 개발(R&D) 사업은 산림부문 2030 NDC 실현 및 2040 NDC 수립을 위한 국가·지역 산림흡수원의 감축수단별 기술 및 이행전략을 개발하고 감축실적 평가를 위한 디지털 MRV 분석체계 실현을 위함이고, K-방산기술 기반 스마트 산불 정밀타격 기술 개발(R&D) 사업은 산불진화헬기 물 투하 효율 고도화와 원거리 정밀타격 기술 기반 지상 산불 진화·방어체계 구축을 통한 ‘공중-지상 통합 산불 대응체계 구현’을 위한 사업이다. 산림산업 작업자 안전확보 기술개발(R&D) 사업은 산림작업 현장에서 ‘위험 감지-경보-제어-검증’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고위험 공정 별목장비 개발·상용화를 위한 사업이며, AI 기반 바이오 데이터·소재 통합·활용 지원(R&D) 사업은 산림생명자원(종자·정유·약용) 선진화 R&D를 통해 글로벌·국내 산업계 연계 및 산업화 강화, 경제적 성과 창출을 위한 것이다. 산림사업 안전·기술관리 사업은 산림사업 중대재해 예방 및 산림사업법인 정상화 운영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이며, 동서트레일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은 우리나라 최초의 백패킹형 장거리 숲길로 전구간 개통에 따른 이용객 안전 확보를 통한 국민의 장거리 숲길 수요 충족과 산림휴양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업이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사업 중 재해위험 저감 및 생산기반 구축 사업은 산림사업 안전관리 강화와 재해위험 저감을 위해 임업기계장비 운용관리 체계 구축, 산악형 전문장비 도입 및 고위험·고강도 작업에서의 임업기계 이용확대에 의한 별목작업 안전성 확보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이다.

[산림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6개)	산림부문 2030 NDC 이행기술 및 2040 NDC 전략 개발(R&D)	5,380
	K-방산기술 기반 스마트 산불 정밀타격 기술개발(R&D)	11,000
	산림산업 작업자 안전확보 기술개발(R&D)	5,500
	AI 기반 바이오 데이터·소재 통합·활용 지원(R&D)	3,905
	산림사업 안전·기술관리	3,223
	동서트레일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4,96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1개)	재해위험 저감 및 생산기반 구축	15,935
합 계		49,904

자료: 산림청

2027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산림사업종합자금, 산림병해충방제, 국산 목재목조건축실연 사업 등이 있다.

① 산림사업종합자금은 임업인 및 생산단체 등에게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임가 소득 및 임가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② 산림병해충방제는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를 강화하여 건강하고 청정한 숲으로의 전환을 위해 예산이 증액되었다. ③ 국산목재목조건축실연은 공공부문의 선도적 국산목재 이용 및 국내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이 증액되었다.

[산림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개)	국제산림협력	3,256	3,256	4,451	1,195	36.7
	산림정책개발	4,330	4,330	7,432	3,102	71.6
	기상이변 대응 새로운 밀원수종 개발로 꿀벌 보호 및 생태계 보전(R&D)	1,100	1,100	1,600	500	45.5
	산림인력개발	1,198	1,198	1,561	363	30.3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 (10개)	산림분야 그린바이오 미래형 가치사슬 기술개발(R&D)	5,747	5,747	7,663	1,916	33.3
	산림 지식재산 기반 유레카 기술개발(R&D)	1,200	1,200	3,000	1,800	150.0
	AI 기반 임도 설계 및 유지관리 최적화 기술개발(R&D)	2,500	2,500	4,561	2,061	82.4
	스마트 산림재해 대응(정보화)	3,865	3,865	8,248	4,383	113.4
	산림사업종합자금	12,908	12,908	192,908	180,000	1,394.5
	국유림 확보 및 관리	58,096	58,096	96,271	38,175	65.7
	국립산지생태원 조성	5,129	5,129	8,111	2,982	58.1
	국립난대수목원조성	6,349	6,349	27,531	21,182	333.6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지원	56,171	56,171	80,425	24,254	43.2
	산림병해충방제	140,925	140,925	193,493	52,568	37.3
지역균형 발전특별 회계 (6개)	국산목재목조건축실연(자율)	25,680	25,680	59,114	33,434	130.2
	임산물 스마트팜 실증단지(자율)	250	250	2,500	2,250	900.0
	임도시설(제주)	280	280	529	249	88.9
	산림레포츠센터 조성(자율)	315	315	600	285	90.5
	산림레포츠센터 조성(지원)	8,049	8,049	14,574	6,525	81.1
	정원도시 조성(자율)	8,747	8,747	11,987	3,240	37.0
합 계		346,095	346,095	726,559	380,464	109.9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을 반영한 최종 추경예산을 의미

1. 총계 기준

자료: 산림청

산림기술 신고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예산 규모 조정 필요

가. 현 황

산림기술 신고포상금 사업¹⁾은 산림사업 안전·기술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자격증 대여, 허위 등록, 가격 담합 등 산림산업의 건전성을 해치는 위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3억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2027년도 산림기술 신고포상금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산림사업 안전·기술 관리	-	-	-	3,223	3,223	순증
산림사업 안전감독관	-	-	-	2,704	2,704	순증
산림기술 신고 포상금	-	-	-	324	324	순증
산림사업공정신고 상담센터 운영	-	-	-	195	195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산림청

동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은 월 신고 건수(27건)와 지급 단가(건당 100만원)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산림기술 신고포상금 사업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내용	세부 산출내역	금액
산림기술 신고포상금	- 산림기술 신고포상금(324백만원) · 27건(월 신고건수)× 12개월× 1백만원	324

자료: 산림청

[2027년 산림기술 신고포상금 사업 개요]

구 분	세부내용
신고대상	① 산림기술자 ²⁾ 자격증 대여한 자, 대여받은 자, 알선한 자 등 산림기술법에 따른 산림기술자 명의대여 금지행위 ② 산림사업 현장에서의 산림기술자 및 산림사업체의 명의대여, 허위 등록, 고의로 사업을 부실하게 하는 경우 등 업계 건전성 저해 행위
지급기준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 1건당 100만원
사업절차	① 부정행위 신고서 접수 및 서류확인(산림사업 공정신고·상담센터) ② 신고서 내용(자진신고자 포함) 유선 확인, 대여자격증 사용자(산림사업체 대표) 확인 ③ 사업장 현장방문 등 조사 실시 ④ 과거 행정처분 경력확인/청문 통보 및 실시, 행정처분/경력관리 수탁기관 등에 대여사실 통보 ⑤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 확인, 신고센터에서 포상금 지급

자료: 산림청

나. 분석의견

첫째, 신고포상금은 피신고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제보 대가로 지급되는 재원인 만큼,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사업 집행 과정에서 각종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동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과

2) [산림기술자 자격증 종류 및 자격증 발급현황]

(단위: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산림경영 기술자	43,279	41,402	44,530	47,512	50,379
산림공학 기술자	12,698	12,123	13,066	13,961	14,738
녹지조경 기술자	1,514	1,995	2,323	2,691	2,995
합 계	57,491	55,520	59,919	64,164	68,112

자료: 산림청

연계한 심사가 필요해 보인다.

동 사업은 산림기술자의 자격증 대여 및 허위 등록 등 산림 사업 분야의 불법 행위 신고를 유도하고, 이에 따라 위법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불법 행위 자체를 규율하는 법령(산림기술자의 자격·경력, 사업체 등록 요건, 자격증 대여 금지 등)과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는 성격상 엄격히 구별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포상금 지급을 직접 담보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률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³⁾

산림사업 불법 행위의 신고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정책적 필요성만으로 법적 근거 없이 금전 지급 제도를 신설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신고포상금은 국가가 국민에게 직접 금전적 급부를 제공하는 수단이므로, 지급 대상과 요건, 금액, 절차 및 환수 조치 등에 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신고포상금은 일반 사업운영비와 달리 민간인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재원이라는 점에서 한층 엄격한 집행 기준이 요구된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와 신고자 범위, 행정처분 연계 여부는 물론, 복수 신고 시 지급 기준, 허위·중복 신고 발생 시 환수 방안 등을 법령 및 지침에 사전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획예산처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은 관계 법령에 지급 근거와 지급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관별 자체 운영평가를 거친 후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신고포상금은 피신고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제보 대가로 지급되는 재원인 만큼,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사업 집행 과정에서 각종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동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과 연계한 심사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동 사업은 집행 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으로, 사업 첫해부터 보수적인 검증 없이 가중치를 적용한 수요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시범 운용 성격의 적정 규모로 예산을 조정 편성한 뒤, 향후 실

3) 현재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다(「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20422호, 박균택의원 발의 2026.8.)

제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차년도 예산에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판단된다.

동 사업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산림 분야 불법 행위 행정처분(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취소 등) 및 벌점 부과 건수(연평균 218.2건)에 민간 참여 가중치 150%를 적용하여, 연간 327건(월평균 27건)의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측하고 이에 따라 총 3억 2,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산림기술 신고포상금 편성 근거]

구분	산출 근거
산림기술 신고포상금	218건 × 150% = 327건(월평균 27건)

자료: 산림청

[최근 5년간(2021~2025년) 산림사업체 및 산림기술자 처분 현황]

(단위: 건)

구분	행정처분		벌점		계
	사업체	기술자	사업체	기술자	
2021	14	73	51	21	159
2022	13	1	64	6	84
2023	43	531	67	53	694
2024	49	5	7	3	64
2025	57	8	18	7	90
합계	176	618	207	90	1,091
평균	35.2	123.6	41.4	18	218.2

자료: 산림청

그런데 산림청은 ‘불법 행위 발생 및 처분 건수’와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를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산안을 추계한 것으로 보인다. 신고포상금은 국민 등의 신고로 불법 행위가 적발·확인된 경우에 지급되는 비용인 반면, 행정처분 및 벌점 부과 건수는 정부의 자체 조사나 감독을 통해 최종 처분이 확정된 건수이다. 따라서 성격이 다른 두 지표를 동일시하여 추계 기준으로 사용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예컨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의대여 금지 위반 등은 행정조사나 자료 검증을 통해 적발되며, 산림사업의 부실 여부 역시 발주청의 관리·

감독 과정에서 확인되어 부실 측정 및 별점 부과 등 별도의 관리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전체 행정처분 및 별점 부과 건수가 곧 민간 신고로 적발되어 포상금이 지급될 건수라는 산림청의 예산 추계 전제는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해 보인다.

또한 최근 5년간 산림사업체 및 산림기술자 처분 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 이례적으로 높은 행정처분 건수가 포함되면서 연평균 수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3년 기술자 대상 행정처분 건수(531건)가 최근 5년간 전체 기술자 행정처분 총계(618건)의 약 86.0%에 달한다는 점에서, 해당 실적을 지속적인 신고 건수로 간주하기보다는 일시적인 단속 강화 등에 따른 일회성 현상인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이러한 특이 요인에 대한 별도의 보정 조치 없이 5년 단순 평균값을 그대로 적용하고, 여기에 150%의 가중치까지 추가로 부여하였는바, 이러한 추계 방식은 예산 수요를 과다 산정할 우려가 있다.

더욱이 민간 신고 활성화 정도는 홍보 수준, 신고 절차의 편의성, 신고자의 입증자료 확보 가능성 등 다양한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집행 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임에도 이러한 실질적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민간 참여 가중치 15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예산을 추산한 것은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동 사업은 집행 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으로, 사업 첫해부터 보수적인 검증 없이 가중치를 적용한 수요를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시범 운용 성격의 적정 규모로 예산을 조정 편성한 뒤, 향후 실제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차년도 예산에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판단된다.

로컬 산림자원 연계 신미식 소재 산업 육성: 사업화 검증을 통한 단계적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체계 정비 필요

가. 현황

로컬 산림자원 연계 신미식 소재 산업 육성 사업¹⁾은 국내 산림에 존재하는 유망 산림자원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발굴·검증하고, 이를 식재료 등 소재로 활용하여 지역의 산림자원이 실제 산업화로 연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1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2027년도 로컬 산림자원 연계 신미식 소재 산업 육성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산림정책개발	6,118	4,330	4,330	7,432	3,102	71.6
로컬 산림자원 연계 신미식 소재 산업 육성	-	-	-	1,400	1,400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산림청

동 사업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수행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100%), 키친가든 조성, 전문 셰프 메뉴개발, 대국민 모니터링, 연구결과 산업성 분석 DB 구축 등을 사업내용으로 한다.

[로컬 산림자원 연계 신미식 소재 산업 육성 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목적	한국 산림 내 유망 자원의 신규 활용성을 입증하고, 보전부터 산업화까지 이어지는 산림자원 활용체계 마련
사업기간	2027년~
사업예산	14억원(국비 100%)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키친가든 조성(국·공립·사립 수목원) • 전문 셰프 메뉴개발 • 대국민 모니터링(메뉴폼평) • 연구결과 산업성 분석 DB

자료: 산림청

정금연 예산분석관(nosmoking@assembly.go.kr, 6788-4632)

1) 코드: 일반회계 1532-300

나. 분석의견

첫째, 동 사업은 사업 준비 및 실제 산업화 가능성에 대한 사업계획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2027년도 예산안에서는 대상 자원과 지역·기업을 한정된 시범사업 형태로 우선 추진하면서 실제 수요와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한 후,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재정 효율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동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은 미확보종 재료 확보, 활용성 평가·개발, 산림자원 식재료 모니터링, 산업성 종합분석 등을 세부 내역으로 하여 편성되었고, 세부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27년도 로컬 산림자원 연계 신미식 소재 산업 육성 예산안 세부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 산출내역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확보종 재료확보 100점 × 1백만원 × 100% = 100백만원 • 활용성 평가·개발 40건 × 15백만원 × 100% = 600백만원 • 산림자원 식재료 모니터링: 5회 × 100백만원 × 100% = 500백만원 • 산업성 종합분석 1식 × 200백만원 × 100% = 200백만원 	1,400

자료: 산림청

2027년도 예산안은 총 14억원으로, 미확보종 재료확보(1억원), 활용성 평가·개발(6억원), 산림자원 식재료 모니터링(5억원), 산업성 종합분석(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미확보종 재료확보, 활용성 평가·개발, 식재료 모니터링 등 소재의 발굴·확보 및 평가 단계에 총 12억원이 편성되어 전체 예산의 85.7%가 집중되어 있다.

이는 사업명에서 제시하는 ‘산업 육성’이라는 취지와 실제 예산 구조 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실질적인 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재 발굴부터 제품화, 기업 참여 유도, 생산·가공·유통 및 시장 진출로 이어지는 종합적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에도 현재 예산안은 산업화 전 단계인 소재 발굴·평가에 대부분의 재원이 투입되는 구조로 보인다.

따라서 단순 소재 발굴·평가 외에 정부 지원의 구체적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향후 민간 기업의 투자 유치 및 사업화 연계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사업은 ‘미확보종 재료 100종 확보’, ‘활용성 평가·개발 40건’ 등 단순 투입 및 활동량 중심으로 예산 산출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 실질적인 산업화 가능성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산업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원 확보 외에도 식품 안전성, 생산 경제성, 기업의 사업화 의향, 최종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가 수립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현 사업 계획은 투입·활동량 지표에 치중되어 있어, 최종적으로 몇 개 소재가 산업화로 연결되는지, 몇 개 기업이 참여하는지 등 실질적인 제품화 창출로 얼마나 연결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목표 설정이 미흡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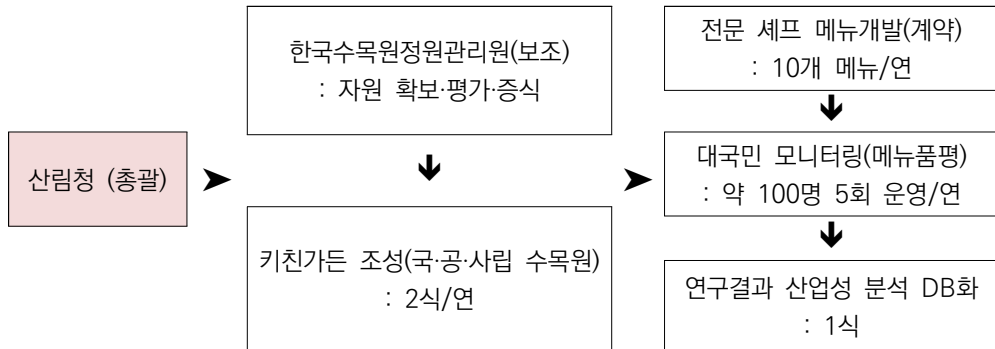
특히 민간 기업의 사업화 의향이나 실제 수요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재정(100%)으로 소재 발굴·평가를 추진할 경우, 연구 성과가 시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사업 종료 후 사장될 우려가 있어 보인다.

종합해 볼 때, 동 사업은 사업 준비 및 실제 산업화 가능성에 대한 사업계획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2027년도 예산안에서는 대상 자원과 지역·기업을 한정한 시범사업 형태로 우선 추진하면서 실제 수요와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한 후,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

둘째, 동 사업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보조사업자로 지정하여 사업 총괄 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되, 추진 단계별로 자원 발굴 기관, 식품·외식 분야 전문기관, 민간 기업 및 지역 생산자가 다양하게 참여하는 다주체 협력 체계로 사업 구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산림청이 총괄하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보조사업자로서 실질적인 집행을 담당하는 구조이다. 사업 절차는 ‘산림자원 확보·평가·증식 → 전문 셰프 메뉴 개발 → 대국민 모니터링 → 산업성 분석’ 단계로 추진되며, 국·공립수목원 내 키친가든을 조성(연 2개소)하여 산림자원의 실질적 활용 가능성을 실증·검증하는 계획이다.

[로컬 산림자원 연계 신미식 소재 산업 육성 집행 절차]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식물자원의 보전·관리 및 조사·수집·증식 분야의 전문 기관으로, 산림자원의 발굴·확보 및 증식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타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동 사업의 최종 목적이 산림자원을 활용한 신미식 소재의 산업화 및 시장 창출에 있는 만큼, 상품성 평가, 식품소재 적합성 검토, 소비자 수요조사, 제품화 및 시장검증 등 후속 단계까지 해당 기관이 전담하는 현행 추진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행 사업 내용에 전문 셰프의 메뉴 개발(연 10개), 대국민 모니터링(약 100명 × 5회), 산업성 분석 및 DB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러한 단순 절차만으로 실질적인 산업화를 담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문 셰프를 통한 메뉴 개발은 단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에 불과하며, 식품·외식기업이 해당 소재를 실제 원료로 구매하여 제품화 및 시장 출시에 나서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산업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원료의 안정적 수급 가능성, 대량생산 체계, 실질적 소비자 수요 및 기업의 지속적인 구매 의향 등이 종합적으로 검증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추진 체계는 산업계가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여 시장 수요를 제시하거나, 연구·실증 결과를 실제 제품화 및 판매로 연결할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이로 인해 사업이 자원 발굴·증식, 메뉴 개발 등 연구·실증 단계에만 머물고, 실제 기업의 제품화 및 시장 진입으로 이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장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산하 공공기관이 사업 집행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산림청,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식품·외식 전문기관, 민간 기업 등으로 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연계하는 추진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사업 목적 달성에 보다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해 볼 때, 동 사업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을 보조사업자로 지정하여 사업 총괄 기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되, 추진 단계별로 자원 발굴 기관, 식품·외식 분야 전문기관, 민간 기업 및 지역 생산자가 다양하게 참여하는 다주체 협력 체계로 사업 구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적정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체계의 타당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산림사업종합자금 사업¹⁾은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 정책자금을 융자함으로써 산림경영의 규모화 및 임업경영의 안정화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800억원이 증액된 1,929억 800만원이 편성되었다.

[2027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사업 계획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산림사업종합자금	13,228	12,908	12,908	192,908	180,000	1,394.5
기·신규대출 이차보전	13,228	12,908	12,908	12,908	-	-
신규대출 융자금	-	-	-	180,000	180,000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산림청

동 사업은 기존 이차보전사업 예산을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신규대출 융자금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해당 사업은 산림사업을 추진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에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세부 개요는 다음과 같다.

[신규대출 융자금 사업 개요]

사업대상	청년임업인(만 39세 이하), 전문임업인,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임업인
융자조건	금리 1.0~2.0%, 2~5년 거치, 2~20년 상환
집행기관	산림조합(중앙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자금용도	임야 매입, 임산물 생산·재배를 위한 시설, 생산·재배·유통·가공·관리 등에 직접 소요되는 사업비, 임산물 스마트팜 운영에 필요한 자금

자료: 산림청

정금연 예산분석관(nosmoking@assembly.go.kr, 6788-4632)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538-301

동 사업은 2027년도 예산안에 기존 내역사업인 기신규대출 이차보전 사업 129억 800만원, 신규 내역사업인 신규대출 융자금 사업에 1,800억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산림사업종합자금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 산출내역	금액
산림사업 종합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차보전금(320-05) : 12,90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기신규대출 이차보전(12,90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대출 이차보전: 497,375백만원(기대출 연평균잔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3%(평균이자율, 0.87~2.87%) = 11,605백만원 · 신규대출 이차보전: 60,722백만원(신규대출 연평균잔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5%(평균이자율, 0.87~2.87%) = 1,303백만원 ○ 기타민간융자금(450-04): 180,0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신규대출 융자금(180,00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임업인기반조성: 130명 × 5억원 = 65,000백만원 · 임산물스마트팜 : 시설 240억원(6개소×40억원)+개보수 90억원(6개소×15억원)+운영 70억원(14개소×5억원) = 40,000백만원 · 산림복합경영 : 125명 × 6억원 = 75,000백만원 	192,908

자료: 산림청

나. 분석의견

첫째, 신규 대출 융자금 사업은 실질 사업 수요, 연내 실행 가능성, 재정 리스크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 규모를 단기간에 급격히 확대하기보다는 시범적으로 일정 규모를 우선 공급하고, 향후 실제 대출 실행률, 연체율, 사업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재정 운용 측면에서 보다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림청은 2027년 신규 대출 융자금 편성 근거로 청년임업인 기반 조성(650억원), 임산물 생산(400억원), 산림복합경영(750억원) 등 총 1,800억원의 수요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객관적인 수요 조사에 바탕을 둔 실질 추계라기보다,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별 목표액을 단순 산출한 것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신규대출 융자금 사업 세부 편성 내역]

(단위: 억원)

세부내용	세부 산출내역	금액
청년임업인기반조성	- 130명×5억원	650
임산물스마트팜	- 시설: 240억원(6개소×40억원) 개보수: 90억원(6개소×15억원) 운영: 70억원(14개소×5억원)	400
산림복합경영	- 125명×6억원	750
합 계		1,800

자료: 산림청

즉, 동 신규 사업은 실제 수요조사 결과, 신청 예정 임업인 수, 사업별 평균 융자 규모, 최근의 미충족 융자 수요, 금융기관 이용 곤란 사례 등 객관적인 산출 근거가 미흡하다. 특히, 2026년까지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영되던 사업이 직접 융자 사업으로 대폭 확대되는 만큼, 단순한 정책적 목표가 아닌 실질적인 자금 수요가 면밀히 검증될 필요가 있다.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²⁾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는 사업예정연도 종합자금의 사업별·시기별 수요전망을 산림청에 제출해야 하며, 산림청은 자금 수급 상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자금 배정을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신규 융자 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업별 신규 융자 신청 예상액, 최근 3~5년간 신청액 및 실제 대출액, 신청 대비 대출 실행률, 미대출·포기액, 사업별 잔여 융자 수요 등에 대한 종합적인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엄밀한 수요 검증 없이 기존 129억원 수준의 이차보전 사업에 1,800억원의 신규 융자금을 일괄 편성하는 것은 실제 수요를 초과하여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신청 희망액이나 자금 수요 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대출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담보 능력, 사업계획의 적정

2)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

제6조(종합자금수요 전망 및 조정 등) ① 중앙회는 사업예정연도 종합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포함하는 자금수요전망을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종합자금의 사업별, 시기별 수요전망
2. 기타 종합자금의 운용과 관련된 중요사항

② 중앙회는 매월 5일까지 자금운용실적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자금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금과는 자금수급 및 자금운용상황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자금배정을 조정할 수 있다.

성, 상환 능력,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실질 용자 수요 검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2024년과 2025년 연속으로 이월이 발생하였고, 2026년에는 8월 말 기준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액은 77억 6,000만원으로 예산현액(138억 1,900만원) 대비 56.2%를 기록하고 있다.

[2023~2026년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3	13,366	13,366	-	13,366	13,366	100.0	100	-	-
2024	12,431	12,431	-	12,431	11,167	89.8	89.8	1,264	-
2025	13,240	13,240	1,264	14,504	13,228	99.9	91.2	911	365
2026.8	12,908	12,908	911	13,819	7,760	60.1	56.2	-	-

자료: 산림청

2024~2025년 기존 이차보전 사업에서 이월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산림청은 농특세 세수 부족 등에 대응하기 위한 의도적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원 운용상의 제약으로 인해 이월이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제약 여건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2027년에도 유사한 상황이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2027년도 예산안에 기존 사업 규모의 약 14배에 달하는 1,800억원의 신규 용자금이 편성된 만큼, 예산 증액에 앞서 이월 원인과 재원 확보계획을 우선 점검하고, 실제 용자 수요 및 재원 공급 시기 등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7년 신규 용자 사업은 산림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 등을 통해 임업인에게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신규 용자금이 차질 없이 집행되려면 단순한 재원 확보뿐만 아니라 대출 대상자 발굴, 사업성·상환능력 심사, 담보 설정, 자금 사용처 사후관리, 원리금 회수 및 부실채권 관리 등 여신 수행 역량이 충분히 담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산림사업종합자금의 운영내역을 보면, 2021년(1,180억원)과 2022년(801.9억원)에 직접용자가 실시된 이후 2023년부터 2026년까지는 직접용자 편성

없이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되어 운영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2027년 신규 용자 사업은 최근 4년간 중단되었던 직접용자 방식을 대규모로 재도입하는 것이다.

[산림사업종합자금 예산과 실제 용자규모 추이]

(단위: 백만원)

세부내용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예산	이차보전	5,923	6,025	9,487	12,431	13,240	12,908	12,908
	용자	118,000	80,189	-	-	-	-	180,000
용자규모		263,934	97,643	121,443	121,443	121,443	121,443	301,443

자료: 산림청

더욱이 2027년 전체 용자규모는 3,014억원으로, 최근 4년간 유지되어 온 1,214억원보다 1,800억원 증가하는 규모이다. 이에 따라 산림조합이 수행하여야 할 여신 규모 역시 기존 수준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용자 사업(1,800억원)은 전체 용자 규모(3,014억원)의 약 59.7%를 차지하고, 이는 기존 산림사업종합자금 내 직접용자 비중이 대폭 확대되는 것으로, 단순한 자금 증액을 넘어 사업 수행체계의 구조적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임업은 조림·육림, 생산시설, 스마트팜 등 장기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이 많아 투자·회수 기간이 길고 수익 변동성이 높다. 따라서 대규모 자금의 적기 공급을 위해서는 기존의 담보 중심 여신심사에서 벗어나, 사업별 현금흐름과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전문 심사체계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산림청은 신규 용자 사업 편성 전, 산림조합(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여신 취급 실적, 전문 심사 인력·조직, 임업인 평가체계, 담보·신용평가 시스템, 연체 및 부실채권 관리·회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종합해 볼 때, 신규 대출 용자금 사업은 실질 사업 수요, 연내 실행 가능성, 산림조합의 여신심사·대출실행·사후관리 역량에 대한 사전 검증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산림청은 사업규모를 일시에 확대하기보다는 일정 규모를 우선 공급하여 실제 용자수요와 집행률, 연체·부실채권 발생 여부 및 산림조합의 여신 수행능력을 점진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규 대출 용자 사업은 기존 이차보전 사업의 단순 증액이 아닌, 산림정책금융 지원 체계를 확대·개편하는 사안에 해당하므로, 기존 이차보전 방식의 한계와 2027년 직접 용자 사업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정책적 타당성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산림사업종합자금 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되었으며, 산림조합중앙회 및 지역 산림조합 등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23년 산림사업종합자금(용자금) 사업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며 기존 사업에 통합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2023년 이후에는 정부의 직접 용자 재원 조성 방식에서 금융기관 자금을 활용하고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가 개편되었다.

[산림사업종합자금 사업 추진경위]

2007	10년 이하 단기성 사업에 대하여 이차보전사업 도입
2009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규정」제정 시행
2012	15년 이하의 전문임업인육성(기타), 해외산림투자지원(단기), 산림조합육성사업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하여 대출규모 확대
2016	전문임업인육성(기타), 해외산림투자지원(단기), 사립수목장림조성사업을 국고 용자로 전환
2018	임업인의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단기산림경영자금 신설
2021	‘임업인경영자금지원’ 사업을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 및 본 사업으로 통합
2023	‘산림사업종합자금(용자금)’ 사업을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 및 본사업으로 통합

자료: 산림청

이차보전 방식은 동일한 정책금융 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정부의 직접 용자 방식보다 적은 재정 투입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2027년도 예산안에는 별도의 정책 평가나 타당성 검토 없이 직접 용자 사업이 신규 편성되어, 2023년의 사업 방식 전환 결정이 단기간에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규 용자 사업을 편성하기에 앞서, 직접 용자 방식의 재도입이 기존 이차보전 방식보다 재정 측면에서 실제로 효율적인지에 대한 상세한 비교·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23년 이차보전 전환 배경 및 추진 성과, 시중 금융기관을 통해 충족하기 어려운 신규 자금 수요, 직접 용자 방식으로의 재전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신규 대출 융자 사업은 기존 이차보전 사업의 단순 증액이 아닌, 산림 정책금융 지원 체계를 확대·개편하는 사안에 해당하므로, 기존 이차보전 방식의 한계와 2027년 직접 융자 사업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정책적 타당성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하 “농특회계”)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이하 “농어촌회계법”)¹)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회계이다.

2027년도 산림청 소관 농특회계의 세입 예산안은 1조 8,015억 9,200만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7,363억 8,600만원(69.1%) 증액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 전입금은 8,069억 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8억 2,700만원(7.0%) 증가하였고, 계정 간 전입금 7,364억 6,9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한편, 농특회계의 자체 세입은 전년 대비 529억 1,000만원(△17.0%) 감소하였다.

[2027년도 농특회계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농특회계	1,037,906	1,064,906	1,065,206	1,801,592	736,386	69.1
자체 세입	242,406	311,066	311,066	258,156	△52,910	△17.0
일반회계 전입금	786,967	753,840	754,140	806,967	52,827	7.0
보전수입	8,533	-	-	-	-	-
계정 간 전입금	-	-	-	736,469	736,469	순증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산림청

또한, 2027년도 세출 예산안은 기존 일반회계 사업이었던 산림교육치유 활성화, 국립산지생태원 조성, 산불방지대책 등 총 1조 2,514억원 규모의 사업이 농특회계로 이관되어 편성되었다.

정금연 예산분석관(nosmoking@assembly.go.kr, 6788-4632)

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財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7년도 예산안 농특회계 이관 사업 현황]

(단위:억원)

현회계	이관계정	사업명	2026	2027
일반회계	농특회계- 농특세계정	산림교육치유활성화	118	149
		국립산지생태원조성	51	81
		산불방지대책	854	697
		산사태현장대응기술개발(R&D)	59	59
		대형산불대응지능형 솔루션기술개발(R&D)	193	69
		AI기반임도설계 및 유지관리최적화(R&D)	25	46
		국립난대수목원조성	63	275
	* 재해관련 소요&산림 문화·복지 시설 및 관광휴양자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지원	562	804
		산림재해복구비	2,500	1,700
		산림재해일자리	1,101	1,167
		산림헬기도입·운영	1,938	1,602
		사방사업	3,185	2,515
		산사태재난경제피난	323	255
		스마트산림재해대응(정보화)	39	83
		국립수목원운영	158	65
		소계	11,169	9,567
	농특회계- 임업계정	산림생물종연구(R&D)	178	200
		산림과학연구(R&D)	521	496
		백두대간보전	86	56
		산림생물다양성증진	193	195
		산림공간정보기반조성	103	53
		한국임업진흥원지원	233	264
		국유림확보및관리	581	963
		산림분야그린바이오 미래형 가치사슬(R&D)	57	77
		산림지식재산기반 유레카기술개발(R&D)	12	30
		산지관리	61	52
		한국산림복지진흥원지원	431	442
		산림자원정보화(정보화)	116	119
		소계	2,572	2,947
합 계			13,741	12,514

자료: 산림청

나. 분석의견

첫째, 2027년도 농특회계로의 대규모 사업 이관은 농특회계의 세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농특회계의 중장기 재정 운용 여력 및 농특회계 전체 재원의 기관별·계정별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사업별로 농특회계 재원으로 추진할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7년도 농특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추경 대비 7,364억원 증가하였으나,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액은 528억원(7.0%)에 불과한 반면, 신규 편성된 계정 간 전입금(7,364억원)이 세입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자체 세입은 오히려 529억원(17.0%) 감소하였다.

계정 간 전입금은 농특회계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복수 기관에 의해 공동 운용되는 회계라는 특성상, 농특회계 재원을 각 계정 및 소관 기관별 사업에 배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 내부의 자원 이동에 해당한다.

[2027년도 농특회계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농특회계	10,649	10,652	18,016	7,364	69.1
일반회계 전입금	7,538	7,541	8,070	529	7.0
계정 간 전입금	-	-	7,364	7,364	순증
자체 세입	3,111	3,111	2,582	△529	△17.0
변상금 및 위약금 등 경상이전수입	2,458	2,458	2,079	△379	△15.4
용자원금회수	375	375	257	△118	△31.5
토지 및 무형자산 매각대 등 기타	278	278	246	△32	△10.5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산림청

계정 간 전입금 신규 편성은 농특회계 외부에서 새로운 재원이 추가 유입된 것이라기보다, 2027년도 농특회계 재원을 각 계정 및 기관별 사업에 배분하는 구조가 크게 변경된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2027년도 농특회계 세입 규모가 전년 대비 69.1% 증가했다는 사실만으로 농특회계의 실질적인 재정 여력이 그만큼 확대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 이관의 적정성은 단지 “농특회계 재원이 충분한가”라는 관점보다는, “기존 일반회계 사업에 농특회계 재원을 투입할 만큼 해당 사업이 농특회계의 설치 목적과 재원 성격에 부합하는가”라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농특회계는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계인 만큼, 특정 기관의 일반회계 사업을 이관할 때 농림·수산·산림 분야 간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와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7년도 예산안의 이관 대상 사업에는 산불방지대책, 산림재해복구비, 산림재해일자리, 산림헬기 도입·운영, 사방사업 등 매년 대규모 재정소요가 수반되는 사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지속성이 강한 경직성 사업은 농특회계로 이관될 경우 향후에도 재원을 지속적으로 배분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농특회계 재원이 충분한 시기에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나, 향후 농어촌특별세 등 주요 세입 여건이 악화될 경우 기존 농어촌·수산 사업과 산림 이관 사업 간 재원 배분을 둘러싼 조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더욱이 산림청 소관 농특회계 자체 세입이 정체·감소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규모 경직성 사업을 추가 이관하는 것은, 농특회계의 중장기 재정 운용 여력과 구조적 지속가능성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23~2026년 농특회계 세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3	2024	2025	2026
농특회계	10,058	9,867	10,938	10,652
자체수입	3,079(30.6)	3,381(34.3)	3,068(28.0)	3,111(29.2)
일반회계 전입금	5,495(54.6)	6,388(64.7)	7,870(72.0)	7,541(70.8)
보전수입	1,484(14.8)	98(1.0)	-	-

주: 괄호안의 수치는 농특회계 세입 총액 대비 비중임

자료: 산림청

특별회계는 특정 목적 사업에 안정적인 재원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만큼, 단순히 특정 회계의 세입 여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일반회계 사업을 이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업 이관의 필요성은 사업의 목적, 수혜 대상, 법적 근거 및 해당 특별회계 설치 목적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기준으로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2027년도 농특회계로의 대규모 사업 이관은 농특회계의 세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농특회계의 중장기 재정 운용 여력 및 농특회계 전체 재원의 기관별·계정별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사업별로 농특회계 재원으로 추진할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이관 사업별로 농특회계의 법정 세출 범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이에 해당하더라도 정책 목적과 직접적인 수혜 대상 등을 기준으로 편성의 적정성을 개별 사업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농특회계 설치 목적과의 연관성이 낮은 사업은 일반회계 편성을 검토하는 등 회계 운영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027년도 세출예산안은 산림 분야의 기존 일반회계 사업 상당수가 농특회계로 이관됨에 따라, 농특회계 산림 분야 재정 규모가 전년도 추경 대비 1조 4,014억원 (370.0%) 증액된 1조 7,798억원으로 집계되어 기존(3,784억원) 대비 약 4.7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2027년도 산림청 회계별 총지출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6(A)	2027(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6,938	3,290	△13,648	△80.6
농특회계	3,784	17,798	14,014	370.0
지특회계	8,829	9,785	956	10.8
책특회계	709	709	-	-
합계	30,260	31,582	1,322	4.4

자료: 산림청

정부는 다수의 기존 일반회계 사업을 농특회계로 이관하며, 그 근거로 「농어촌 회계법」 제5조제2항의 주요 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 법 제5조제2항제2호마목2)의 ‘농림어업인 및 농작물 재해 관련 지원’, 동 법 제5조제2항제4호라목3)의 ‘농산어촌의 문화·복지시설 지원’ 및 제5조제2항제4호사목4)의 ‘농산어촌의 관광휴양자원 개발 지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동 법 제5조제2항제2호마목의 농림어업인 및 농작물 재해 관련 지원은 농림어업인 및 농작물에 대한 재해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산림 자체의 재해 예방·대응이나 산림자원 관리를 위한 사업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근거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특히 2027년도 예산안의 이관 대상 사업에는 산불방지대책, 산사태 현장대응 기술개발(R&D), 대형산불대응 지능형 솔루션 기술개발(R&D), 산림재해복구비, 산림헬기 도입·운영, 사방사업, 산사태재난경계피난, 스마트 산림재해대응 등 산림재해의 예방·대응·복구 및 산림자원 관리에 관한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 사업은 사업의 직접적인 대상과 목적이 농림어업인이나 농작물의 재해 피해 지원이라기보다는, 산림 재해 예방·대응 및 산림관리 역량 강화에 있다는 점에서 동 법 제5조제2항제2호마목의 “농림어업인 및 농작물 재해 관련 지원” 규정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동 법 제5조제2항제2호마목을 산림재해 관련 사업 전반을 농특회계로 편성할 수 있는 근거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2) 「농어촌회계법」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②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補填)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마. 농림어업인 및 농작물 재해 관련 지원

3) 「농어촌회계법」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②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라. 농산어촌의 문화·복지시설 지원

4) 「농어촌회계법」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②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융자

사. 농산어촌의 관광휴양자원 개발 지원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이관 사업 현황]

(단위: 억원)

사업명	2026 (일반회계)	2027 (농특회계)
산림교육치유활성화	118	149
국립산지생태원조성	51	81
산불방지대책	854	697
산사태현장대응기술개발(R&D)	59	59
대형산불대응지능형 솔루션기술개발(R&D)	193	69
AI기반임도설계 및 유지관리최적화(R&D)	25	46
국립난대수목원조성	63	275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지원	562	804
산림재해복구비	2,500	1,700
산림재해일자리	1,101	1,167
산림헬기도입·운영	1,938	1,602
사방사업	3,185	2,515
산사태재난경계피난	323	255
스마트산림재해대응(정보화)	39	83
국립수목원운영	158	65
합 계	11,169	9,567

자료: 산림청

또한, 정부는 산림교육치유 활성화, 국립산지생태원 조성,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등 일부 사업의 이관 근거로 동 법 제5조제2항제4호라목의 “농산어촌의 문화·복지 시설 지원” 및 동 법 제5조제2항제4호사목의 “농산어촌의 관광휴양자원 개발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제5조제2항제4호는 본문에서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하위 항목으로 문화·복지시설 및 관광휴양자원 개발을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해당 시설이나 사업이 농산어촌 지역에 위치하거나 산림·자연자원을 활용한다는 사정만으로 제5조제2항제4호라목 또는 제5조제2항제4호사목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산림교육·치유시설이나 수목원 등이 농산어촌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농산어촌의 지역개발·산업기반 확충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국가 차원의 산림·생태·수목원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인지에 따라 농특 회계 편성의 적정성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해당 조항을 근거로 사업을 이관하는 경우에도 단지 사업의 명칭이나 입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실질적인 목적과 수혜 대상, 지역개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관 대상 사업별로 동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뿐만 아니라, ①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 ② 농림어업인 및 농산어촌과의 직접적 연관성, ③ 지역개발·산업기반 확충 효과, ④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추진의 당위성, ⑤ 기존 일반회계 대비 농특회계 이관에 따른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종합해 볼 때, 정부는 이관 사업별로 농특회계의 법정 세출 범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이에 해당하더라도 정책 목적과 직접적인 수혜 대상 등을 기준으로 편성의 적정성을 개별 사업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농특회계 설치 목적과의 연관성이 낮은 사업은 일반회계 편성을 검토하는 등 회계 운영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해양경찰청

1

현황

가. 세입·세출예산안

해양경찰청 소관 202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해양경찰청 소관 2027년도 세입예산안은 77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2억원(△3.0%) 감소하였다.

[2027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41,643	7,892	7,892	7,658	△234	△3.0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1. 총계 기준

자료: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소관 2027년도 세출예산안은 2조 2,292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1,407억원(6.7%) 증가하였다.

[2027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953,943	2,088,487	2,088,487	2,229,163	140,676	6.7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1. 총계 기준

자료: 해양경찰청

2027년도 해양경찰청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확보를 위해 파출소 드론, 동력구조보드 등 구조장비 도입과 연안안전 지킴이 확대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② 빈틈없는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서해전력 증강 3천톤급 3척, 단속전담함정 2척, 통신위성 기반시설, 함정·항공기 정비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③ 마약 등 민생침해범죄 단속을 위한 마약수사 장비 도입 및 수사환경 개선과 해양오염사고 대비 방제자재 확충, 노후 방제정 2척 교체 등 현장 중심 예산을 확대하고, ④ AI·디지털 전환 고도화 및 정보화 기반 강화를 위해 정보 화사업 예산을 확대하였다.

2027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분석 결과 향후 국회 심의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2027년도 예산안의 드론 도입·운영 예산은 현행과 같이 「경비대테러 역량강화」, 「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해양오염 예방활동」에 분산 편성하기보다, 중장기적으로 ‘드론 도입 및 관리’ 등 단일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드론의 구매·보험·유지보수·교육 및 교체 등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장비의 다목적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재정 운용 및 자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해양경찰청은 VTS 전용회선에 대한 관행적인 장기계약 방식을 지양하고, 센터별·회선별로 분산된 계약체계를 전국 또는 권역별로 일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이를 통해 대규모 계약에 따른 단가 인하와 통신사 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전용회선 이용료 급증에 따른 재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양경찰청의 2027년도 신규사업은 총 6개 사업, 169억 9,800만원 규모이다.

그중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사업(R&D)’은 고도화된 수색구조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반도 인근 초정밀 위성항법시스템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며, ‘선박충돌재현기술 고도화 및 국제표준화(R&D)’ 사업은 해양사고 원인 규명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과학기술 기반 선박사고종합분석시스템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다.

[해양경찰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안
일반회계 (6개)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KPS) 개발(R&D)	3,624
	선박 충돌 재현 기술 고도화 및 국제표준화(R&D)	2,000
	복합 해양환경 재난대응 차세대 방제 기술개발(R&D)	1,900
	해양수색구조 실시간 현장 지원 자율형 AI(SAR-X) 기술 개발(R&D)	3,850
	재난안전 임무·상황 중심 피지컬 AI 개발 및 현장 실증 사업(R&D)	4,514
	해양경찰 현장지원 기술개발(R&D)	1,110
합계		16,998

자료: 해양경찰청

2027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연안구조장비도입, 경비대테러역량강화, 위성센터 및 MDA체계운영지원 등 총 13개 사업이 있다.

① 연안구조장비도입 사업은 구조대 구조정 10척 교체 예산 등이 신규 반영되었고, ② 경비대테러역량강화 사업은 소형특수기동정 5척 건조, 특공대 노후 훈련장 공사 예산 등이 반영되었으며, ③ 위성센터 및 MDA체계운영지원 사업은 MDA운용 기반 구축 예산이 반영되었고 통신위성 기반시설 연부액이 증가하여 증액되었다.

[해양경찰청 소관 2027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	2026 ¹⁾		2027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일반회계 (13개)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6,250	6,250	10,121	3,871	61.9
	연안구조장비도입	16,832	16,832	27,750	10,918	64.9
	경비대테러역량강화	11,035	11,035	21,334	10,299	93.3
	해양상황대응역량강화	2,325	2,325	3,098	773	33.2
	위성센터및MDA체계운영지원	4,143	4,143	11,940	7,797	188.2
	항공기정비유지	37,667	37,667	50,933	13,266	35.2
	방제정건조	22,315	22,315	58,336	36,021	161.4
	복지역량강화	7,589	7,589	11,607	4,018	52.9
	국제협력강화	252	252	436	184	73.0
	현장정보시스템구축및운영 (정보화)	6,199	6,199	16,449	10,250	165.3
	해양경찰위성활용기술개발 (R&D)	4,670	4,670	6,250	1,580	33.8
	AI기반해상긴급상황접수 및대 응체계개발(R&D)	1,000	1,000	2,655	1,655	165.5
	무선신호탐지기술을통한 선박식별기술체계개발(R&D)	2,930	2,930	6,732	3,802	129.8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1. 전년 대비 30%이상 증액 기준

자료: 해양경찰청

II

주요 사업 분석

1

드론 도입 사업의 통합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운영 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해양경찰청은 경비대테러역량강화 사업¹⁾에 13억 2,600만원,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사업²⁾에 17억원, 해양오염예방활동 사업³⁾에 1억원의 드론 도입 관련 예산을 각각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7년도 드론 구매 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경비대테러역량강화	3,138	1,370	1,370	1,326	△44	△3.2
드론 구매	2,398	160	160	640	480	300
드론 보험료	268	681	681	300	△381	△55.9
드론 유지보수	138	193	193	386	193	100
드론 교육비	334	336	336	-	-	순감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	368	368	1,700	1,332	362
드론 구매	-	280	280	1,232	952	340
드론 보험료	-	30	30	162	132	440
드론 유지보수	-	28	28	28	0	0.0
드론 교육비	-	30	30	264	234	780
드론 LTE 통신요금	-	-	-	14	14	순증
해양오염예방활동	-	100	100	100	0	0.0
드론 구매	-	100	100	100	0	0.0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해양경찰청

정금연 예산분석관(nosmoking@assembly.go.kr, 6788-4632)

1) 코드: 일반회계 3102-300

2) 코드: 일반회계 3001-300

3) 코드: 일반회계 4333-300

해양경찰청은 드론을 활용하여 해양경비, 연안안전 및 해양오염 감시·예방 등 다양한 현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존의 불법조업 단속과 수색·구조 외에도, 최근에는 인력과 장비 접근이 어려운 연안 갯벌 및 방파제 안전관리까지 드론 투입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나. 분석의견

2027년도 예산안의 드론 도입·운영 예산은 현행과 같이 「경비대테러 역량강화」, 「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해양오염 예방활동」에 분산 편성하기보다, 중장기적으로 ‘드론 도입 및 관리’ 등 단일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드론의 구매·보험·유지보수·교육 및 교체 등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장비의 다목적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재정 운용 및 자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드론은 경비·대테러, 연안안전, 해양오염 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되는 장비로, 업무 목적이 다르더라도 구매·보험·유지보수·교육·통신 등 취득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본질적 성격은 동일하다.

그럼에도 해양경찰청의 2027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동일한 성격의 드론 관련 예산이 세부 사업별로 각각 분산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7년도 드론 도입·운영 예산안의 구체적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해양경찰청 드론 도입·운영 사업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세목별	경비대테러 역량강화	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	해양오염 예방활동	합 계
드론 구매	640	1,232	100	1,972
드론 보험료	300	162	-	462
드론 유지보수	386	28	-	414
드론 교육비	-	264	-	264
드론 LTE 통신요금	-	14	-	14
합 계	1,326	1,700	100	3,126

주: 2026.8.기준

자료: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의 드론 도입·운영 예산 분산 편성에 대해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드론의 취득·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동일 성격의 예산을 세부 사업별로 분산 편성하는 것은 장비의 생애주기 관리 및 재정 운용 측면에서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해양경찰청은 동일한 드론 구매 사업임에도 업무 목적에 따라 경비·대테러용은 「경비대테러 역량강화」, 연안안전용은 「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 해양오염 감시용은 「해양오염 예방활동」 사업에 각각 분산 편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7년도 예산안에는 드론 구매비 19억 7,200만원(3개 사업)을 비롯하여 보험료 4억 6,200만원, 유지보수비 4억 1,400만원, 교육비 2억 6,400만원, LTE 통신비 1,400만원 등 총 31억 2,600만원 상당의 동질적 예산이 세부사업별로 파편화되어 편성되었다.

이처럼 드론 예산을 업무 목적별로 분산 편성할 경우, 전체 보유 대수 및 신규 도입 규모, 보험·유지보수·교육·통신비 등 드론 자산 운용에 소요되는 총 재정 규모를 통합적으로 파악·관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특히 드론은 단순 구매에 그치지 않고, 취득 이후 보험 가입, 정기 유지보수, 인력 교육, 통신망 이용, 내구연한에 따른 교체 등 지속적 생애주기 관리가 필수적인 자산이다. 따라서 드론 관련 예산은 개별 업무사업에 분산 편성하기보다 ‘장비의 취득·운영 및 유지관리’라는 공통 기능·성격을 기준으로 통합하여 편성·관리하는 것이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둘째, 향후 드론 보급이 크게 확대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현행 분산 편성 방식을 유지할 경우 예산 및 자산 관리의 복잡성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다.

해양경찰청은 연안순찰용 드론을 2026년 5대 도입한 데 이어, 2027년 22대, 2028년 50대, 2029년 77대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처럼 보유 규모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예산의 분산 편성이 지속될 경우 자산 통제 및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연안 순찰 드론 배치 현황 및 계획]

구분	2026	2027	2028	2029
연안 순찰 드론	5대	22대	50대	77대

자료: 해양경찰청

이는 향후 드론이 일부 세부사업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보조 장비를 넘어, 해양경찰의 상시적인 핵심 현장 대응 자산으로 확대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드론 자산의 증가와 활용 확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사업별 분산 관리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드론의 도입·운용·유지관리 등에 관한 예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2026년 6월 「국가 드론·대드론 대전환 추진전략」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2조원 규모의 공공수요 창출과 부처별 수요의 통합 획득체계 구축을 발표하였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범정부 차원의 통합획득 방안 및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해양경찰청도 개별 사업으로 분산된 드론 예산의 편성·집행 실태를 종합 점검할 필요가 있으므로, 장비의 공동 활용성 및 구매·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한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드론 관련 예산을 단일 세부사업으로 통합·편성함으로써 드론 자산의 체계적 운용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드론 관련 예산을 통합 편성할 경우, 국회의 예산 심사권 강화는 물론 사후적인 재정 및 자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이 드론 관련 예산이 여러 사업에 분산 편성되어 있을 경우,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양경찰청 전체의 드론 도입·운영 규모와 재정 소요를 사업별로 확인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반면 드론 관련 예산을 단일 세부사업으로 일원화할 경우, 연도별 신규 도입 수량과 총 보유 대수, 유지관리 경비 및 향후 교체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즉, 경비·대테러, 연안안전, 해양오염 감시 등 드론을 활용하는 각 업무의 정책 목적과 사업 성과는 현행과 같이 개별 관리하되, 해당 업무에 공통 투입되는 드론

자산의 구매, 보험, 유지보수, 교육, 통신 등 관리 성격의 예산은 단일 세부사업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종합해 볼 때, 2027년도 예산안의 드론 도입·운영 예산은 현행과 같이 「경비 대테러 역량강화」, 「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해양오염 예방활동」에 분산 편성하기보다, 중장기적으로 ‘드론 도입 및 관리’ 등 단일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드론의 구매·보험·유지보수·교육 및 교체 등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장비의 다목적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재정 운용 및 자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VTS 구축·운영: VTS 전용회선료 통합 관리·계약을 통한 재정효율성 제고 필요

가. 현 황

VTS(Vessel Traffic Service, 해상교통관제) 구축·운영 사업¹⁾은 선박교통의 안전확보를 위해 VTS 구축, 확충, 개량 및 유지관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 대비 199억 400만원이 감액된 214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VTS구축·운영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VTS구축운영	36,886	41,347	41,347	21,443	△19,904	△48.1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해양경찰청

VTS는 선박의 안전 운항과 효율적인 항만 관제를 위하여 레이더, AIS, VHF 등의 장비로 선박의 위치 및 항행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전국 19개 관제센터에서 운용 중이다. VTS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관제센터와 현장 장비 간 통신망 확보가 필수적이므로, 매년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정보통신 회선 이용료 등 공공요금으로 집행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해양경찰청은 VTS 전용회선에 대한 관행적인 장기계약 방식을 지양하고, 센터별·회선별로 분산된 계약체계를 전국 또는 권역별로 일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이를 통해 대규모 계약에 따른 단가 인하와 통신사 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전

정금연 예산분석관(nosmoking@assembly.go.kr, 6788-4632)

1) 코드: 일반회계 3002-301

용회선 이용료 급증에 따른 재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양경찰청은 2027년도 예산안에 전국 19개 VTS 센터의 전기요금, 전용회선 이용료 등을 위해 공공요금 예산 27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VTS 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 산출내역	금액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2,784백만원 · VTS 센터 전기요금, 전용회선비 등 - 전국 VTS센터 19개소×146,531천원=2,784,090천원	2,784

자료: 해양경찰청

VTS구축운영 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2022년 12억 3,800만원에서 2026년 19억 1,800만원으로 54.9% 증가하였다. 특히 이·전용 등이 포함된 예산현액 기준으로는 2026년 25억 4,800만원으로 2022년 대비 2배 이상(105.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2024년과 2026년에는 이·전용을 통해 각각 1억 4,200만원과 6억 3,000만원을 추가로 확충하였으며, 그 외 부족한 예산은 본부 기본경비²⁾로 충당하고 있다. 실제로 2026년 8월 기준 집행액은 27억 3,4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42.5%에 달하는 등 당초 편성액을 초과 집행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VTS구축·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 과목(210-02)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A)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기본경비 지원액(B)	전체 예산 (C=A+B)	집행액 (D)	집행률 (D/C)	집행률 (D/A)
2022	1,238	-	1,238	445	1,683	1,678	99.7	135.5
2023	1,489	-	1,489	609	2,098	2,097	99.9	140.8
2024	1,489	142	1,631	640	2,271	2,271	100.0	152.5
2025	1,697	-	1,697	818	2,515	2,515	100.0	148.2
2026	1,918	630	2,548	186	2,734	2,734	100.0	142.5

주: 2026. 8. 기준

자료: 해양경찰청

2) 본부기본경비: 일반회계 7202-250

이는 VTS 공공요금에 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지속해서 발생하는 필수 경비임에도, 최근 요금 인상 및 실제 소요액 증가 등으로 인해 당초 편성된 예산만으로는 실제 소요액을 충당하기 어려워 이·전용 및 기본경비 지원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공요금 예산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2022년 대비 2026년 전기요금이 8억 2,900만원에서 10억 6,700만원으로 28.7%(2억 3,800만원) 증가한 반면, 전용회선 이용료는 7억 600만원에서 14억 4,500만원으로 104.7%(7억 3,9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전용회선 이용료의 증가액은 전기요금 증가액의 약 3.1배에 달하며, 증가율도 전기요금의 약 3.6배에 이르는 등 공공요금 예산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VTS 공공요금 예산의 증가 원인을 항목별로 살펴볼 때, 전기요금보다는 전용회선 이용료의 급증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VTS구축·운영 공공요금 집행 상세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전기요금	829	914	889	1,065	1,067
전용회선	706	1,005	1,059	1,232	1,445

자료: 해양경찰청

한편, 해양경찰청의 VTS 센터별 전용회선 계약 현황을 보면 일부 센터(경인연안, 평택항)는 지방해양경찰청 단위로 신규 회선을 통합 계약하고 있으나, 기존 회선은 개별 계약 방식을 유지하고 있고, 계약기간은 대체로 5~10년 수준으로 확인된다.

[VTS센터별 전용회선 계약체결 현황]

연번	구분	계약 형태	계약기간
1	목포광역	(신규회선) 서해지방청 통합 계약 (기존회선) 개별 계약	신규회선(5년)
2	군산광역		기존회선(10년)
3	동해광역	(신규회선) 동해지방청 통합 계약 (기존회선) 개별 계약	신규회선(5년)
4	포항광역		기존회선(10년)
5	제주광역	(신규회선) 제주지방청 통합 계약 (기존회선) 개별 계약	신규회선(5년)
			기존회선(10년)
6	경인연안	통합 장기계약 * 센터 내 모든 회선을 통합 계약	8년
7	평택항		7년
8	태안연안	회선별 장기계약 * 센터 내 회선별로 개별 계약	5~10년
9	대산항		
10	인천항		
11	경인항		
12	여수연안		
13	여수항		
14	완도항		
15	통영연안		
16	울산항		
17	마산항		
18	부산항		
19	부산신항		

자료: 해양경찰청

현재 공공요금 및 제세 과목의 예산현액이 당초 예산을 크게 초과하여 이·전용을 통한 재원 충당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전용회선 이용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VTS 전용회선은 관제센터와 현장 관제장비(레이더·AIS·VHF 등)를 연계하는 필수 인프라로서, 중장기 수요 예측이 가능하고 매년 반복 지출되는 경직성 경비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단순한 5년 이상 장기계약 방식에서 탈피하여, 센터별·회선

별로 분산된 계약을 일괄 통합하여 대량 구매 할인과 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계약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실제로, 해양경찰청의 VTS 센터별 전용회선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5~10년 단위의 장기계약 방식으로 추진되고는 있으나, 전국 19개 센터의 회선 수요를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방식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 계약 구조는 장기계약을 통해 반복적인 행정 절차의 부담은 줄일 수 있으나, 센터 및 회선 단위의 소규모 물량만으로는 대규모 수요 기반의 가격 협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개별 계약 방식이 유지될 경우 각 계약 조건에 따라 서비스가 파편화되어, 전체 수요를 통합한 복수 통신사 간 경쟁 입찰로 단가 인하를 유도할 기회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로, 해양경찰청은 정보화사업 공공요금 중 약 2,140개 네트워크 회선에 대해 회선을 통합하여 5년 단위의 장기계약을 활용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공공요금 예산액과 집행액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예산액과 집행액이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며, 별도의 이·전용이나 불용 없이 안정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정보화 사업 네트워크 회선료(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A)	이·전용 등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
2022	5,120	-	-	5,120	5,120	100
2023	5,428	-	-	5,428	5,428	100
2024	5,655	-	-	5,655	5,655	100
2025	5,942	-	-	5,942	5,942	100
2026	6,247	-	-	6,247	5,110	81.8

주: 2026. 8. 기준

자료: 해양경찰청

이러한 사례는 회선 수요를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계약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유용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일반 정보화사업과 VTS 전용회선은 회선 종류, 통신 품질 및 안정성 요건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타 사업의 계약 방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VTS 전용회선의 기술적 특성과 운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맞춤형 적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3)는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는 계약 등에 대해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 되,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법 시행령 제69조4)는 일정한 용역·임차계약 및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 등에 대해 장기계속계약을 단가계약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VTS 회선 이용료의 센터별·회선별 계약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VTS는 전국 19개 관제센터를 기반으로 지속 운영되는 필수 인프라로서 회선 수요가 소멸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정보화사업의 회선 통합 및 장기계약 방식을 적극 확대·적용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통합계약 추진 시에는 회선 증감, 서비스 변경, 신규 센터 구축 등 향후 변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약물량 및 금액 조정 조건을 명시하고, 계약 전후의 회선별 단가, 총금액, 관리비용 등을 다각도로 비교·분석하여 실질적인 예산 절감 효과를 검증하는 절차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종합해 볼 때, 해양경찰청은 VTS 전용회선에 대한 관행적인 장기계약 방식을 지양하고, 센터별·회선별로 분산된 계약체계를 전국 또는 권역별로 일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이를 통해 대규모 계약에 따른 단가 인하와 통신사 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전용회선 이용료 급증에 따른 재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각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

1.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
2. 전기·가스·수도등의 공급계약
3. 장비,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계약

단정 크레인 교체공사: 철저한 사전 검토 및 집행 관리 체계 개선 필요

가. 현 황

단정 크레인 교체공사 사업¹⁾은 함정정비유지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경비함정에 탑재되어 주요 임무를 수행하는 고속단정의 노후 크레인을 교체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 대비 4억 5,000만원이 증액된 9억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단정 크레인 교체공사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결산	2026 ¹⁾		2027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함정정비유지	16,925	16,827	16,827	19,626	2,799	16.6
단정 크레인 교체공사	871	450	450	900	450	100

주: 1) 추경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해양경찰청

동 사업은 대형 경비함정에 탑재된 단정(고속단정·리브보트)의 양하(해상에 내림) 및 양상(함상으로 올림)을 담당하는 노후 크레인 설비를 교체·개보수하는 것으로, 해양경찰청은 2027년도 예산안에 총 2대의 단정용 크레인 교체 공사 예산을 반영하였다.

[2027년도 크레인 교체공사 예산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 산출내역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비(420-03): 844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레인 교체 공사(844백만원) = 2대 × 422백만원 감리비(420-04): 56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레인 교체 공사(56백만원) = 2대 × 28백만원 	900

자료: 해양경찰청

정금연 예산분석관(nosmoking@assembly.go.kr, 6788-4632)

1) 코드: 일반회계 3103-300의 내역사업

나. 분석의견

해양경찰청은 2026년도 사업에서 발생한 계약 이행 중지 및 조달 심의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2027년도 사업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찰공고 이전 단계에서 기술적 요구 조건과 입찰참가자격의 적정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함정에 설치된 크레인의 노후도 및 운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에는 2대 교체 물량에 대해 총 9억원이 편성되었다.

현재 해양경찰청이 보유한 함정 크레인은 2026년 기준 총 127대(대형 87대, 중형 40대)로, 이 중 사용 연수가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장비²⁾는 70대로 55.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형 함정의 경우 10년 이상 노후 비율이 67.5%(27대)에 달하는 등 단정용 크레인의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어, 이를 단계적으로 교체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함정 단정용 크레인 보유 현황]

(단위: 대)

구분	10년미만	10년이상 15년미만	15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합계
대형 함정	44	34	4	5	87
중형 함정	13	11	15	1	40
합계	57	45	19	6	127

자료: 해양경찰청

그런데 동 사업의 최근 집행실적을 보면, 2023년 집행률이 34.7%에 그쳤고 2024년에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집행률 113.9%를 기록하는 등 연도별 집행실적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2026년의 경우 8월 기준 편성 예산 4억 5,000만원 대비 집행액이 전무하여, 예산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해양경찰청은 현재 함정 단정용 크레인의 내용연수를 8년으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2022~2026년 단정용 크레인 교체공사 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A)	아전용 등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
2022	-	-	-	-	-	-
2023	450	-	-	450	156	34.7
2024	900	-	232	1,132	1,025	113.9
2025	900	△18	-	882	871	96.8
2026	450	-	-	450	-	-

주: 2026. 8월 기준

자료: 해양경찰청

2026년도 사업의 경우 1월 사전회의 이후 일상감사, 계약 의뢰 및 입찰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직후 입찰참가자격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서 2026년 6월 5일부터 계약 이행이 중지된 상태로 확인된다. 이후 대전지방조달청 심의³⁾를 거쳐 2026년 10월 조달청 본청 심의가 예정되는 등 분쟁 해결을 위한 추가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크게 지연되고 있다.

[2026년 함정 크레인 교체공사 사업 추진 경과]

- (2026. 1. 22.) 태안 해양경찰서 사전 회의
- (2026. 2. 20.) 태안 해양경찰서 일상감사 의뢰
- (2026. 4. 1.) 태안 해양경찰서 계약 의뢰
- (2026. 5. 6.) 조달청 입찰 공고
- (2026. 5. 13.) 조달청 최초 개찰
- (2026. 5. 13. ~ 6. 4.) 조달청 계약 체결 지연
- (2026. 6. 4.) 조달청 계약 체결
- (2026. 6. 5.) 민원에 의한 계약 중지
- (2026. 9. 29.) 대전지방조달청 심의
- (2026. 10. 30. 예정) 조달청 본청 심의

자료: 해양경찰청

- 3) '조달청 심의'는 조달청에서 진행하는 계약, 기술 평가, 정책 결정 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는 다양한 위원회 및 심사 제도를 통칭한다. 조달청 업무 영역에 따라 크게 계약심의위원회,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심사위원회, 우수제품 지정심사(기술심의회),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으로 나뉜다.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2026년도 사업은 5월 6일 입찰공고 및 5월 13일 개찰을 거쳐 6월 4일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이튿날인 6월 5일 입찰참가자격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서 계약 이행이 중지되었고, 이후 조달청 심의 절차가 장기화됨에 따라, 2026년도 예산 4억 5,000만원은 8월 기준 전액 미집행(집행률 0.0%)된 상태로 확인된다.

특히 이번 민원의 핵심은 낙찰업체가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다점방식’⁴⁾ 크레인의 납품·설치 실적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해당 요건은 동 사업의 기술적 특성과 직접 연관되는 핵심 입찰 참가자격인 것이다.

[입찰공고문 일부 발췌]

입찰 공고 시 참가 자격을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단일 계약 건으로 안전사용하중(S.W.L) 7톤급 이상 다점방식의 고속단정 승·하강 해상용 크레인(데비트)을 제작하여 납품 및 설치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

자료: 해양경찰청

따라서 입찰공고 전 단계에서 사업부서와 계약부서가 해당 기술 요건의 정확한 의미와 적용 범위, 유사 실적 인정 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협의하였다면, 계약 체결 이후 입찰참가자격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여 사업이 중지되는 상황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다점방식’과 ‘일점방식’은 크레인의 단정 인양 방식에 관한 핵심적 기술 차이를 의미하므로, 이를 입찰참가자격 요건으로 요구할 때에는 다점방식의 구체적 의미와 인정 가능한 실적 범위를 입찰공고문 및 과업내용서 등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요건의 명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과 입찰업체 간 기술적 해석의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입찰 및 계약 이행의 적정성에 대한 행정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4) · 다점방식: 단정의 선수·선미 등 2개 이상의 지점에 와이어를 결속하여 인양하는 방식임. 환정 분야 표준인 ‘2점식’과 달리 ‘다점’ 표기는 지지점 수가 불명확하여 과업 범위의 모호성 및 입찰 분쟁을 유발할 수 있음.

· 일점방식: 단정 중앙의 단일 결속 고리에 크레인을 걸어 인양하는 방식임. 조선·해양 분야에서 ‘Single Point Davit’ 등으로 명확히 통용되어 공고문 명시 시 해석상 혼선이 없음.

결과적으로 해양경찰청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사전 준비 미흡으로 함정 운용 안전성 확보에 필수적인 단정용 크레인 교체 사업의 지연을 초래하였다. 또한, 조달 심의 등 후속 행정절차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었고, 이는 정부 조달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실추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향후 철저한 사전 검토 및 집행 관리 체계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해양경찰청은 2026년도 사업에서 발생한 계약 이행 중지 및 조달 심의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2027년도 사업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찰공고 이전 단계에서 기술적 요구 조건과 입찰참가자격의 적정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IV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26년 10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디자인여백플러스 (tel 02·2672·1535)

ISSN 3058-6224

© 국회예산정책처, 2026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